

공공부문 부채통계

: 편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지침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 일러두기: 이 책은 IMF의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Second Printing 2013〉을 연구 목적으로 번역한 한글판 번역본입니다.

발 간 사

2007년에 발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부채는 향후 지급의무를 갖기 때문에, 지불상환능력과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경제를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국가 부채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부채 관련 통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유용성이 담보된 부채 통계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채무증가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가적 채무증가는 개별 국가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신뢰도 높은 재정통계 정보를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정책결정자, 금융시장, 기타 사용자에게 이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지침>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가장 유용한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지침은 세계 최초의 공공부문 부채통계 매뉴얼로, IMF 소속기관의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각국의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들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계정체계 2008(2008 SNA)> 및 <국제수지 통계편제기준(BPM)>, <정부재정통계 매뉴얼(GFSM 2014)>

과도 조화가 되도록 동일한 분류기준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부회계와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실무자(편제자) 그리고 재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4년 GFSM 초안이 공개될 때부터 국제적 수준의 재정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79년부터 <통합 재정통계>를 발간해 왔고, 2000년 이후에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부문에 발생주의회계기준을 도입했습니다. 통합재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왔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공공부문부채통계(D2, D3)를 작성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연구본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연구사업의 하나로 본 지침의 번역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작업은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난한 연구의 결과물인 본 지침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에게 공공부문 부채통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지침이 발간되기까지 정성호 박사는 초안 번역작업부터 마지막 출간까지 어렵고도 고된 전 과정을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김재훈

목 차

전문	1
서문	3
감사의 말	5
제1장 개요	9
A. 본 지침의 목적과 핵심	11
B. 개념체계	12
C. 본 지침의 구성	12
제2장 정의 및 회계원칙	15
A. 개요	17
B. 채무의 정의	18
1. 총채무	18
2. 순채무	22
C. 기관단위 및 부문	23
D. 공공부문의 범위와 하위부문 분류	27
1. 일반정부 부문과 그 하위부문	27

2. 비금융 공기업 하위부문	38
3. 금융 공기업 하위부문	38
4. 기타 공공부분의 분류	40
5. 경제 사례	42
E. 회계원칙	54
1. 거주성	54
2. 기록시점	57
3. 가치평가	60
4. 통화	69
5. 만기	71
6. 연결	73
부록: 이자발생—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75
1. 개요	75
2. 이자발생의 개념체계	76
3. 부실채무에 대한 이자발생	83
4. 금융리스 이자	84

제3장 채무상품 및 부문의 인식	85
A. 개요	87
B. 재정상태표	87
1. 부채와 금융자산	88
2. 재정상태표와 채무 간 관계	91
C. 채무상품의 유형	93
1. 특별인출권(SDRs)	93
2. 통화 및 예금	94
3. 채무증권	96
4. 융자	99
5.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제도	101

D. 거래상대방 부문별 분류	107
제4장 공공채무 관련 주요 사안	111
A. 개요	113
B. 우발부채	113
1. 개요	113
2. 정의	114
3. 명시적 우발부채	116
4. 암묵적 우발부채	120
5. 우발부채의 측정	120
6. 공공부문 단위가 제공하는 일회성 보증의 통계 처리	121
C. 채무재조정	124
1. 채무면제	125
2. 채무재조정 및 재융자	127
3. 채무전환과 채무 조기상환	134
4. 채무인수 및 채무대납	137
5. 일부 국제 채무구제 프로그램	144
D. 기타 채무 관련 이슈	150
1. 채무의 제각 및 상각	150
2. 신규 차입자금	151
3. 채무해소	152
4. 양허성 채무	153
5. 금융리스로 인한 채무	155
6. 특수목적기관 채무	161
7. 증권화로 인한 채무	165
8. 구제금융 채무	170
9. 민관협력사업으로 발생한 채무	178
10. 시장외적 스왑으로 발생한 채무	187

11. 공공부문 고용주의 비적립식 연기금 부채	189
12. 정부의 연금부채 인수에 따른 채무	191
13. 차입금의 간접대출	192
14. IMF 관련 저량 및 유량	196

제5장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표시 203

A. 개요	205
B. 부채통계표의 표시	206
1. 요약표	210
2. 세부표	211
3. 부기항목표	221
4.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추가 정보	231
보론: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히트 채무	234
1. 서론	234
2. 주요 특징	234

제6장 자료의 수집, 편제 및 배포 237

A. 개요	239
B. 통계의 편제와 배포를 위한 일부 고려사항	240
1. 공공기관 간 협력	240
2. 자원	243
3. 법률체계	244
4. 공공부문부채통계의 배포	245
C. 주요자료 출처	247
1. 채무관리기구	249
2. 재정상태표	250
3. 질문지 및 정기 설문조사	252
4. 기타 출처	255

D. 자료수집 및 편제 관련 일부 고려사항	255
1. 자료를 어떻게 수집, 편제해야 하는가?	256
2. 정보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262
3. 어떻게 자료를 검증하는가?	262
보론: 정부채무관리기구의 기능	264
제7장 거래채무증권 보유자의 파악	267
A. 개요	269
B. 공공부문 증권 보유자에 대한 정보의 출처	270
1. 발행자로부터의 정보	271
2. 보유자로부터의 정보	273
3. 금융시장 운영자로부터의 정보	275
4. 기타 통계 출처로부터의 정보	275
C. 전체 채무증권시장에서의 거래증권 통계	276
1. 채무증권의 거래 주체별 자금흐름 체계	277
보론: 각국의 거래 채무증권 보유자 파악 방식	281
1. 브라질	281
2. 캐나다	282
3. 남아프리카공화국	285
4. 터키	286
제8장 연결 공공부문부채통계	289
A. 개요	291
B. 연결이란 무엇인가?	292
1. 정의	292
2. 총계통계 vs. 연결통계	293
C. 연결의 효과는 무엇인가?	293
D. 정부재정통계와 공공부문부채통계를 연결해야 하는 이유는? ..	296

E. 공공부문부채통계 연결	297
1. 무엇을 연결해야 하는가?	298
2. 실무 지침	301
3.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	304
제9장 공공부문부채분석을 위한 몇 가지 도구	307
A. 개요	309
B.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309
1.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체계	310
2. 저소득국을 위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SA) 체계	312
C. 포트폴리오분석 및 중기채무전략(MTDS)	315
D. 재정위험 및 취약성	319
1. 재정위험보고서	320
2. 재정위험분석	321
제10장 국제기구의 업무	323
A. 개요	325
B. 국제결제은행(BIS)	326
1. BIS 국제은행통계	326
2. BIS 국제채무증권통계	328
C. 영연방 사무국	330
1. 개요	330
2. 채무관리시스템 제공	330
3. 자문서비스	332
4. 역량강화	332
5. 발간물	334
6. 협력관계	334
D. 유럽중앙은행(ECB)	335

1. 배경	335
2. 방법론	336
3. 간행물	337
4. 채무통계	337
5. 적자-채무 조정	338
6. 기타 방법론	341
E.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342
1. 개요 -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 및 ESA95 보고 프로그램	342
2. 채무 질문서의 구성	343
3. 채무통계 발간	344
4. 방법론	344
F. 국제통화기금(IMF)	346
1. 통계	347
2. 공공부문부채 감리 및 관리	351
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6
1. OECD의 중앙정부 채무 관련 업무	357
2. 재정상태표 관련 활동(SNA)	362
H. 파리클럽사무국	364
1. 파리클럽	364
2. 상업은행 채무면제	367
I.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368
1. 채무관리 및 재정분석시스템(DMFAS)의 개요	369
2. DMFAS 자문서비스	371
3. DMFAS 교육 및 역량강화	371
4. UNCTAD's 채무관리 회의	372
5. 기타 활동	372
6. DMFAS 및 공공부문부채통계 지침	373
J. 세계은행	374

보론: 채무기록, 채무관리 및 재무분석시스템	376
1. 영연방 사무국 채무관리솔루션	376
2. UNCTAD의 DMFAS 채무관리시스템	386
부록1 공공부문부채통계와 대외 채무통계 간 관계	395
A. 개요	397
B. 정의	397
C. 기관범위	398
D. 가치평가	398
E. 분류	399
부록 2 공공부문부채 유량과 저량의 조정	401
A. 유량과 저량	403
B. 유량의 유형	404
1. 거래	404
2. 거래외 경제유량	405
C. 저량	408
D. 공공부문채무 유량과 저량 간 조정	408
1. 개념체계	408
2. 몇 가지 실무 지침	410

전문

이번에 발간되는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와 사용자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은 세계 최초의 공공부문부채통계 지침이다. 본 지침은 <대외채무통계 편제자와 사용자를 위한 지침(The External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과 마찬가지로 9개 조직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되었으며, 통계 관련 부처 간 '재정통계 합동 연구팀(Task Force on Finance Statistics)'이 개발한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본 지침은 IMF 소속기관의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각국의 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들의 협의가 포함된 노력의 결과이다.

최근 발발한 세계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각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및 채무비율 상승은 내적 재정문제를 포함해 대외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신뢰성 있고 시의적절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일반정부, 더 폭넓게는 공공부문부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지침은 주요 부채통계의 질적 개선, 시의적절성 개선, 기록관행의 통일성 개선 등에 역점을 두었다. 본 지침은 각국 통계 편제자와 사용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편제하고 배포함에 있어 각국이 본 지침을 널리 적용하길 권한다.

본 지침에 소개된 개념은 <국민계정체계 2008(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및 <국제수지 통계편제기준 제6판(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Sixth Edition)>에 부합한다. 곧 발간 예정*인 <정부재정통계 매뉴얼 개정판(GFSM 2014)>은 기존 <정부재정통계 매뉴얼(GFSM 2001)>과는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분류기준이 적용된다.

【역자 주】 *: PSDS은 2011년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곧 발간예정'이라 소개하였지만 2014년에 <GFSM 2014>가 발간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GFSM 2014'로 소개한다.

하이메 카루아나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사무총장

카말레시 샤르마

영연방(Commonwealth Secretariat) 사무총장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총재

올리 렌

유럽연합 집행위원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총재 대행

앙헬 구리아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사무총장

클레르 세르프탕스키

파리클럽(Paris Club Secretariat) 사무총장

수파차이 파닛치팍디

국제연합 무역개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사무총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총재

서문

이미 오래 전부터 일반정부, 더 폭넓게는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 국가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정책결정자, 금융시장, 기타 통계 사용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7년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유용성이 제기되고, 이러한 통계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한층 강화되었다. 부채는 향후 지급 의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불상환능력 및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와 공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비용은 이러한 취약성으로 최초로 피해를 입은 국가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와 사용자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은 (1)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개념, 정의 및 분류, (2) 해당 자료의 편제를 위한 출처 및 방법론 그리고 (3) 해당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일부 분석도구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본 지침은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편제자와 사용자를 위해 고안되었다.

배경

<국민 계정체계 1993(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을 기초로 작성된 <정부재정통계 매뉴얼 2001(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이하 GFSM 2001)>에서 채무에 대한 정의는 기타 거시경제 통계체계의 정의와 일치한다. GFSM 2001은 관심의 대상을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유량과 더불어 재정상태표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본 지침은 공공부문(정부와 공기업)을 망라하는 부채통계의 편제와 배포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포괄적 가이드라인이다. 이 자료는 <대외채무통계 편제자와 사용자를 위한 지침>을 보완한다.

본 지침은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의 모든 하위 구성요소의 총채무와 순채무의 측정을 위해 포괄적인 개념체계를 마련한다. 지침은 공공부문의 여러 구성요소와 공공부문부채를 구성하는 다양한 채무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지침은 채무상품 및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기관의 부문별로 채무를 분류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예시를 통해 공공부문부채를 기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의 문제에 대한 조언도 제공한다.

본 지침은 일반정부 더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에 걸친 채무통계를 투명하고 포괄적으로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요약표 2종, 상세표 5종, 부기항목 6종으로 구성된 일련의 핵심표를 제안한다. 이는 추가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해 일부 표를 확장하거나 추가 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특정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본 지침은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구성요소의 채무통계에 있어 자료수집, 편제 및 배포에 대해 주요 고려사항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또한 거래되는 채무증권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부문부채 통계의 통합에 대한 접근법을 논의한다. 마찬가지로 본 지침은 공공부문부채통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일부 도구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부채통계 분야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업무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언급한다.

본 지침의 핵심목적은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와 사용자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다. 본 지침이 일반정부, 더 나아가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며, 그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감사의 말

본 지침은 통계 관련 부처 간 ‘재정통계 합동 연구팀(Task Force on Finance Statistics, 이하 TFFS)’에 참여한 국제기관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각국의 공공부문부채통계 및 정부 재정통계 작성자들의 협력이 있었다. TFFS는 국제연합 통계위원회(United National Statistical Commission), 행정조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와 통계활동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tistical Activities)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일종의 기관 간 테스크포스팀이다. TFFS의 의장은 IMF가 맡고, 본 지침을 위한 작업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영연방 사무국,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파리 클럽 사무국,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은행의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본 지침에 대한 TFFS 작업의 주요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본 지침의 준비기간 동안 이들과의 협력관계는 지속되었다). 이들의 전문적인 기여와 헌신 덕분에 본 지침이 작성될 수 있었다.

의장	로버트 히스(Robert Heath) IMF 통계국 부국장
국제결제은행	카르스텐 폰 클라이스트(Karsten von Kleist) 국제 금융 및 재정 통계, 연구 및 통계, 통화 및 경제국 부국장
영연방 사무국	아린담 로이(Arindam Roy) (채무관리)/특별자문부 고문 및 부장
유럽중앙은행	한스 올슨(Hans Olsson) 통계총국 유럽지역 회계 및 경제자료 선임연구분석가
유럽연합 통계청	이자벨 간세도 발리나(Isabel Gancedo Vallina) 총국 C-국가 및 유럽계정, 유닛 C5-정부 및 부문 계정, 재무지표 통계담당관
IMF	로버트 딥펠스맨(Robert Dippelsman) 통계국 정부재정부 부부장, 토바이어스 (물토) 위킨스[Tobias (Murto) Wickens] 통계국 정부재정부 선임 경제학자
OECD	야스민 아마드(Yasmin Ahmad) 통계 및 모니터링국 개발협력이사회 주무행정관
파리클럽 사무국	니콜라스 그리스랭(Nicolas Grislain) 프랑스 재무부 총국, 국제채무 및 파리클럽 사무국 부국장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발리람 바벨(Balliram Baball) 교육 코디네이터/선임 채무관리 전문가
세계은행	이브라임 레벤트(Ibrahim Levent) 개발자료그룹 재정자료팀 선임 정보 담당관

본 지침의 작성은 IMF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했다(본 지침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소속 직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토바이어스 (물토) 위킨스[Tobias (Murto) Wickens] 통계국 정부재정부 선임 경제학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TTFS 참여자, 각국 기관 및 기타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조율하고 편집하는 일을 담당했다. 본 작업은 로버트 히스(Robert Heath) 통계국 부국장, 2008년까지 통계국 정부재정부 부장을 역임한 케이트 더블린(Keith Dublin), 2008년부터 통계국 정부재정부 부장을 맡고 있는 클라우디아 디지오벡(Claudia Dziobek), 로버트 딥펠스맨(Robert Dippelsman) 통계국 정부재정부 부부장의 감독하에 이루어졌다. 정부재정부(특히, 선임 경제학자 사제 드

클럭(Sagé de Clerck), 게리 존스(Gary Jones)와 경제학자 미구엘 알베스(Miguel Alves), 매들린 엘 라예(Majdeline El Rayess), 국제수지부 부부장 에두라도 발디비아 벨라르데(Eduardo Valdivia-Velarde), 선임 경제학자 제인 갈랜드(Jean Galand)와 리타 메시아스(Rita Mesias)를 비롯해 통계국 여러 부서의 많은 직원들이 본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IMF 여러 부서의 직원들 역시 많은 공헌을 하였다. 특별히 아드리언 체스티(Adrienne Cheasty) 재정국 선임고문, 존 가드너(John Gardner) 기술지원고문, 팀 어윈(Time Irwin) 기술지원고문, 압둘 칸(Abdul Khan) 선임 경제학자, 에두아르 마틴(Edouard Martin) 선임 경제학자, 이자벨 리알(Isabel Rial) 선임 경제학자, 금융국 조지 카브웨(George Kabwe) 부부장, 베리 웬(Barry Yuen) 부부장, 카를로스 잔다(Carlos Janada) 선임 경제학자, 통화 및 자본시장국의 우다이비르 다스(Udaibir Das) 부국장, 크리스찬 멀더(Christian Mulder) 부부장, 알리슨 홀랜드(Allison Holland) 선임 금융분야전문가, 길레르메 페드라스(Guilherme Pedras) 기술지원고문, 도미니크 데스루엘레(Dominique Desruelle) 전략정책검토국 부국장, 에르베 줄리(Hervé Joly) 부장, 비르기르 아르나손(Birgir Arnason), 앤드류 키티리(Andrew Kitili) 선임 경제학자, 겐지 호소노(Kenji Hosono) 경제학자 등이다.

또한 다양한 외부 참여 기관의 전문가들이 서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특히 다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영연방 사무국	월튼 길핀(Walton Gilpin) 재무관리, 특별자문서비스부 고문, 비카스 판데이(Vikas Pandey) 특별자문부 시스템 개발 담당관
유럽중앙은행	줄리아 캣츠(Julia Catz) 통계총국, 유로지역계정 및 경제자료 담당 수석 경제/통계학자, 마르타 로드리게즈 비베스(Marta Rodriguez Vives) 경제총국 재정정책 선임 경제학자, 레미지오 에체베르리아(Remigio Echeverría) 통계총국 유로지역계정 및 경제자료 담당 과장
유럽연합 통계청	존 베린더(John Verrinder) 총국 C-국가 및 유럽계정, 유닛 C5-정부 및 부문 계정, 재정지표 담당 책임자
OECD	한스 블롬스테인(Hans Blommestein) 재정부, 재정 및 기업부, 채권시장 및 공공채무관리유닛 책임자, 나딤 아마드(Nadim Ahmad) 국민계정국, 통계부, 연간국민계정, PPP, 물가 및 생산성 부문 책임자, 미셸 샤보아-메나토(Michèle Chavoix-Mannato) 국민계정부, 통계부, 분기국민계정 및 재정통계과 과장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바넷사 드 쏘어프(Vanessa de Thorpe) DMFAS 프로그램 프로젝트 관리자, 유펜 리(Yuefen Li) 채무 및 개발 재정 부문 책임자, 가보 피스키(Gabor Piski) 프로젝트 관리자, 디에고 리베티(Diego Rivetti) 프로젝트 관리자
세계은행	에비스 루카(Evis Rucaj) 개발자료그룹 재무자료팀 통계 담당관

TFFS는 특히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및 영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의 여러 공공부문부채통계 편제자와 사용자의 공헌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10년 8월 TFFS 홈페이지에 본 지침의 초고를 올려 이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자 세계 전역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이에 관한 회신을 보내주었고, 이들의 검토는 이 원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아델하이드 부르기-슈멜츠(Adelheid Burgi-Schmelz)
IMF 통계국 국장



제1장 개요

- 
- A. 본 지침의 목적과 핵심
 - B. 개념체계
 - C. 본 지침의 구성

제1장 개요

A. 본 지침의 목적과 핵심

1.1 본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와 사용자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의 목적은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측정하고 공시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1.2 본 지침에서는 공공부문의 총채무(gross debt liabilities)와 순채무(net debt liabilities)¹⁾를 최우선적으로 다루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채무, 채무상품 형태의 금융자산, 비채무성 부채와 기타 자산 순으로 초점을 맞춘다.
- 공공부문 기관의 총채무와 순채무는 정책결정자와 분석가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요소이다.

1.3 그러나 비채무성 부채²⁾를 포함한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 및 금융자산의 규모와 구성 역시 정책결정자와 분석가의 관심사이다. 더욱이 <정부재정통계 매뉴얼(이하 GFSM)>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저장(stock position)과 각종 경제유량(economic flow)을 통합하여 검토한다면 공공부문 단위 활동의 경제적인 영향과 특정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용이

1) 본 지침은 부채(liabilities) 중 채무(debt)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다 폭넓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공공부문 재정의 분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서라면 비채무성 부채상품(금융파생상품 등), 명시적 우발부채(정부가 지급을 보증)는 물론 암묵적 우발부채(예, 향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해야 할 정부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다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지침에는 비채무성 부채상품과 우발부채에 관해 논의한다.

2) 이러한 개념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정의된다.

해진다.

1.4 또한 본 지침은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편제하고 이를 분석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본 지침의 의도는 공공부문부채통계가 보다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지침은 정책 전반과 부채통계 사용자가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확보하고 국제비교를 쉽게 하도록 한다.

B. 개념체계

1.5 본 지침은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편제하는 데 필요한 개념체계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념체계는 <국민계정체계 2008(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하 2008 SNA)>과 <수지와 국제투자지침 제6판(the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Sixth Edition, 이하 BPM6)>을 토대로 한다. GFSM 개정판(GFSM 2014)에서는 몇 가지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GFSM 2001(이하 GFSM 2001)의 분류기준과 정의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해당 개념체계에서는 공공부문부채에 (2008 SNA에 정의된) 공공부문 단위의 모든 부채가 포함되나, 주식 및 투자기금 지분(equity and investment fund shares), 파생금융상품, 피용자 스톡옵션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채무 총액은 통계 편제대상인 해당 공공부문 단위의 총채무 잔액으로 표시된다.

C. 본 지침의 구성

1.6 본 지침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 개념체계: 제2장부터 제5장까지
- 편제원칙과 적용: 제6장부터 제8장까지
- 공공부문부채분석에 사용되는 분석수단: 제9장
- 공공부문부채통계에 관여하는 국제기구: 제10장

1.7 개념체계를 다루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제2장에서는 총채무와 순채무에 관한 정의를 제시한다. 또한 각 기관단위와 부문의 정의, 공공부문과 그 하위 부문에 관하여 정의한다. 그 외에 공공부문부채의 측정에 반드시 필요한 회계원칙을 상세히 소개한다.
- 제3장에서는 채무상품 및 채무상품의 계약 당사자인 부문에 관해 정의한다.
- 제4장에서는 공공부문부채통계에 관한 몇 가지 주요사안을 살펴본다. 특히 채무와 관련된 업무를 두루 살펴보고 그 각각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법에 관하여 지침을 제공한다.
- 제5장에서는 요약표 2종, 상세표 5종, 부기항목표 6종을 이용하여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표시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러한 표에 포함된 통계수치를 모두 검토한다면 특정 국가의 공공부문부채통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8 통계 편제원칙과 적용을 다루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제6장은 각종 채무상품에 관한 주요 자료의 출처를 비롯하여 공공부문부채통계의 편제와 배포에서 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 제7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무증권의 보유자를 파악하는 데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제8장에서는 공공부문부채통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통계 편제 대상 단위 내의 부문 간-부문

내 저량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이다.

1.9 제9장은 공공부문부채분석에 사용되는 분석수단을 소개한다. 이 장에서는 통계 편제 업무의 맥락과 목적을 소개하고 공공부문부채통계가 IMF의 업무에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준다.

제10장은 국제결제은행(BIS), 영연방 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파리클럽 사무국(Paris Club Secretariat), 국제연합 무역개발 회의(UNCTA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국제기관이 공공부문부채통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설명한다.

1.10 본 지침은 다음과 같이 부록 3종을 포함한다.

- 부록1에서는 공공부문부채통계와 대외채무통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 부록2에서는 공공부문부채통계에서 유량(flows)과 저장(stock position)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살펴본다.
- 부록3에서는 본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를 해설한다.

【역자 주】 부록3 용어설명은 한글판 번역본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제2장 정의 및 회계원칙

- A. 개요
- B. 채무의 정의
- C. 기관단위 및 부문
- D. 공공부문의 범위와 하위부문 분류
- E. 회계원칙

제2장 정의 및 회계원칙

본 장에서는 공공부문과 관련한 채무의 개념 정의와 공공부문부채통계 편제에 사용되는 주요 회계원칙에 관해 논의한다.

A. 개요

2.1. 본 장에서는 채무와 경제의 부문에 관해 정의한다. 이 정의는 채무통계 편제를 위한 개념체계를 개발하고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지침에 사용된 분류와 정의는 <국민계정체계 2008(2008 SNA)>과 <국제수지 통계편제기준(BPM6)>과 조화를 이룬다. <정부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에서도 기존 <정부재정통계 매뉴얼(GFSM 2001)>과는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분류 기준과 정의가 적용된다.

2.2. B절에서는 채무의 두 가지 주요 개념인 총채무와 순채무를 정의하고, C절과 D절에서는 공공부문, 공공부문 내 기관의 범위, 하위부문 분류에 관해 정의한다. 채무에 대한 정의와 공공부문 및 그 하위부문의 정의를 함께 살펴본다면, 공공부문의 채무뿐 아니라 공공부문 내 하위부문의 채무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본 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 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관해 논의하고, 이러한 원칙들은 기타 거시경제 통계를 따른다. 본 장의 부록에서는 이자의 발생과 이것이 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B. 채무의 정의

1. 총채무

2.3 ‘총채무’ 또는 ‘총 확정부채’로 지칭하기도 하는 채무 총액은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구성된다¹⁾. 채무상품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자 및(또는) 원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청구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²⁾ 채무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특별인출권(SDRs)
- 현금 및 예금
- 채무증권
- 용자
-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 기타 미수계정

2.4. <정부재정통계 매뉴얼(GFSM)>의 재정상태표에 포함된 부채 중 주식 및 투자기금 지분, 금융 파생상품, 피용자스톡옵션 형태의 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는 채무로 간주된다.

2.5 동일 경제권 내 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채무는 국내 채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진 채무는 대외채무로 지칭한다. 거주자에 관해서는 본 장의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정의할 것이며, 현행 국제 기준(2008 SNA와 BPM6)을 따른다. 공공부문부채와 대외채무통계 간 관계는 본 지침의 부록1에 설명되

1) 다양한 채무상품(debt instruments)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지침의 제3장에 논의한다.
 2) 이러한 채무(debt)의 정의는 <정부재정통계 매뉴얼(GFSM)>과 새로운 <국민계정(2008 SNA)> 및 <수지와 국제투자지침(BPM6)>, <대외 부채통계: 편제자 및 사용자용 지침>의 부채(debt) 정의와 일치한다.

어 있다.

2.6. 주식 및 투자기금 지분은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취약성과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선도거래 및 옵션과 같은 금융 파생상품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데, 금융 파생상품에는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이나 누적되는 이자가 없기 때문이다.³⁾ 본 지침의 제5장에서는 공공부문부채통계에 대한 보고서로서 금융 파생상품 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를 편제하여 배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 파생상품 계약들은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잘못 사용될 경우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매우 유용하다.⁴⁾

2.7 채무에 관해서는 특정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관행에 따라 앞서 소개한 것 이외에도 다른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채무에 어떤 상품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채무를 항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지침에서는 총채무를 앞서 문단 2.3에서 명시된 모든 채무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다음과 같이 협의의 정의로 사용할 때도 있다.

-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용자 등 전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채무상품에 국한된 채무
-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광의의 정의는 연금 부채를 제외한 총채무에 가까움)

a. 미상환 확정부채

2.8 부채가 채무로 인식되려면 상환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야 한다.⁵⁾ 가장

3) 시장외적 스왑은 채무의 성격을 지니며, 제4장에서 설명한다.

4) 제5장의 문단 5.50~5.52 참조.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채무는 채권자인 기관단위가 계약상의 합의에 따라 채무자인 기관단위에 경제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채무는 법적 효력⁶⁾이나 향후 이전 지급을 요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⁷⁾ 채무에는 원금과 이자의 연체액이 포함된다. 미래에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수입이 발생하기 전에는 채무로 인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용자나 수출신용 약정액 중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총채무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9 우발부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미래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일회성 보증⁸⁾과 같은 우발부채는 조건이 없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자의 채무로 인식되지 않는다. 보증채무는 해당 보증에 대한 이행청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증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상환책임이 있다. 그러나 취약성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단위에 우발부채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예측해야 한다. 우발부채가 보증자의 채무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특정 우발부채 금액이 공공부문부채통계의 부기항목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본 지침은 각 국가가 우발부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룬다.⁹⁾

5) 채무와 금융자산에 관한 보다 상세한 해설은 제3장의 문단 3.5~3.12 참조.

6) 이러한 부채에는 부과될 당시의 세금, 벌금(계약에서 발생된 위약금 포함), 패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7) 여기에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청구액, 손해보험사와 관련 없는 손해배상청구액, 복권과 사행성 활동에 따른 청구액 등이 포함된다.

8) 일회성 보증은 보증 대상인 대출이나 증권에 내재된 위험을 결코 정확히 산정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진다. 일회성 보증은 이행청구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융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으며 2008 SNA나 GFSM에도 계상되지 않는다.

9) 우발부채가 아닌 확정부채를 발생시키는 표준화 보증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한다.

b. 원금과 이자

2.10 채권자에 의한 경제적 가치 제공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채무가 생성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금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며, 동 채무 원금은 소멸될 때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할 수 있다. 이자는 채무자가 상환하기 전까지 원금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키는 비용이다.¹⁰⁾ 따라서 이자는 특정 금융자산(특별인출권, 예금, 채무증권, 용자, 기타 미수계정)의 소유자가 금융 및 기타자원을 다른 기관단위에 처분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일종의 투자소득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자는 발생주의 개념을 따른다. 그러나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의 상환을 이자지급¹¹⁾이나 원금상환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자의 발생에 관해서는 본 장의 부록에서 다룬다.

2.11 채무의 정의는 원금과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에 모두 적용된다. 다시 말해 미상환 채무의 총액은 선지급된 금액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하고 상환액을 뺀 금액이다. 특정 부채가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상환의 형태가 아니라 향후 상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상환은 현금 및 예금, 재화와 서비스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다.

2.12 원금과 이자의 향후 상환일정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라도 채무로 정의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채무증권과 용자금 등 상환일정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환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자비용 미부담 요구불예금과 같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상환일정이 정해지는 채무도 있다. 또는 채무자가 연체상태일 때, 연체액의 실제 지급 여부와 일

10) 다시 말해 이자란 채권자로부터 선지급된 금액을 상환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11) 장기 채무상품의 경우, 이자지급은 연 단위 또는 이보다 더 잦은 주기로 이루어진다.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 채무상품의 이자지급 주기는 해당 상품의 상환일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지급액은 부채가 존속하는 동안 이자가 발생한다는 개념과는 다른 회계원칙이 적용된다.

정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특정 부채가 채무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요인은 상환일정이 아니라 향후에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연기금과 생명보험사의 계약자에 대한 부채는 상환일정을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특정 시점에 상환일이 도래한다는 점에서 채무로 간주된다.

2. 순채무

2.13 위험관리를 위해 채무와 자산은 통합하여 순채무에 초점을 맞추어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채 상환에 필요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자산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순채무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채무에서 채무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것이다.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는 순자산(net worth)과 재정상태표에 관해서는 제3장 B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표 2.1. 순채무의 산정

총채무 (채무상품의 형태인 부채)(a)	채무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b)	순채무 (c)=(a)-(b)
특별인출권(SDR)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 기타 미지급계정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SDR)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 기타 미수계정	
총채무 합계	총채무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합계	순채무 합계

2.14 2008 SNA와 BPM6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화폐용 금은 채무상품의 유형(예탁된 금계정)과 비채무 상품의 유형(금괴)의 요소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화폐용 금 중 금괴는 순채무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순채무 산정 시 화폐용 금의 총량을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편제할 때 금괴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 기관단위 및 부문

Box 2.1. 기관단위의 정의

기관단위란 독자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경제활동 및 다른 실체와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를 의미한다. 기관단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관단위가 재화와 자산을 독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란 다른 기관단위와의 거래를 통해 재화나 자산의 소유권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단위는 경제적 결정을 하고 그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으며, 법적의무를 지는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관단위는 독자적으로 부채를 부담하거나 기타 의무 또는 미래의 약정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된 재정상태표를 포함한 기관단위 계정의 완전한 자료일체가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그것이 필요할 경우 완전한 계정 일체를 구축하는 것이 경제적, 법적 관점에서 가능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기관단위로 인정할 수 있는 실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 사람 또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가계, (2)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로서, 이들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람 또는 여타 실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존재로서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다.

2008 SNA와 본 지침에서 기관단위로 인정하는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는 네 가지로 기업, 준기업, 비영리 기관, 정부단위가 있다. 기관단위의 이름만으로는 그 상태(자격)를 유추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단위의 목적과 기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15 한 국가의 경제는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문은 해당 경제에 거주하는 여러 개의 기관단위(institutional unit)¹²⁾로 구성된다(Box 2.1. 참조). 본 지침에서는 2008 SNA에 근거하여 경제를 상호배타적인 5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부문별 기관단위는 다른 부문의 단위와는 차별화되는, 유사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한다. 경제의 5개 부문은 다음과 같다.

- 비금융기업 부문(The non-financial corporations sector): 시장 재화 또는 비금융 서비스의 생산에 주로 종사하는 거주 기관단위들로 구성된다.
- 금융기업 부문(The financial corporations sector): 다른 기관단위의 금융

12) 본 지침에서는 '기관단위(institutional unit)'의 약칭인 '단위(unit)'를 혼용한다.

중개를 포함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주로 종사하는 거주 기관단위들로 구성된다.

- 일반정부 부문(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정부 기능을 충족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거주 기관단위들로 구성된다. 즉, 개인이나 집단소비에 필요한 서비스(재화도 포함)를 주로 시장외적 기반에서 생산하며,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거주 기관단위이다. 그 외에도 정책적 책임성과 경제규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도 한다.
- 가계 부문(The households sector): 동일한 주거공간을 사용하고, 자신들의 소득과 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하며, 일정한 재화와 서비스(주로 주택과 식료품 등)를 공동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가계는 규모도 각각 다르며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다. 경제 주체로서의 모든 개인(physical person)은 하나의 가계에만 귀속하게 된다. 가계의 주된 기능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최종소비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가계기업으로서 재화와 비금융서비스(금융서비스도 가능)를 생산하는 것이다.
-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부문(The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 sector):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시장외 비영리 거주 기관(NPIs)으로 구성된다.¹³⁾ 이들은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제공한다.

2.16 이러한 개별 부문은 다시 하위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하위부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다른 부문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정부 부문은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라는 하위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13) NPIs는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로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목적으로 이들을 설립 통제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단위를 위해 소득, 수익, 또는 기타 금전적 이득의 원천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NPI는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러한 NPI는 2008 SNA와 동일하게 기업으로 취급한다. 또한 정부가 지배하며 시장외적 생산에 종사하는 기타 NPIs는 정부단위로 취급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되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나머지 NPIs는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부문'으로 불리는 특수단위로 분류된다. 그 상위 조직이 기업일 경우 기업의 일부로 취급한다.

비금융기업 부문은 비금융 공기업, 외국인 지배기업, 비금융 민간 국내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¹⁴⁾

2.17 공공부문은 거주 정부단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거주 기관단위로 구성된다. 즉, 일반정부 부문의 모든 기관단위와 거주 공기업이다(그림 2.1. 참조).¹⁵⁾ ‘지배(control)’란 일반적인 기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기업 정책(general corporate policy)’이란 시장 생산자인 기업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되는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가리킨다. 2008 SNA에서는 특정 기업이 정부 단위나 기타 공기업의 지배를 받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8가지 기준을 제시한다.¹⁶⁾

- (1) 투표권의 반수 이상 소유
- (2) 이사회나 다른 관리기구의 지배
- (3)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과 해임에 대한 지배
- (4) 핵심 위원회에 대한 지배
- (5) 황금주(golden shares)와 옵션(option)
- (6) 규제와 지배
- (7) 주도적인 공공부문 고객 또는 공공부문 고객그룹에 의한 지배
- (8) 정부로부터 차입과 관련된 지배

이 가운데 단일 지표만으로 충분히 지배가 확립될 수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지표들이 집합적으로 지배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14) 마찬가지로 금융기업도 공기업, 외국인지배기업, 금융민간 국내기업으로 각각 나눌 수 있다.

15) 공공부문의 유형 분류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GFSM 2001의 부속 자료로 펴낸 <Coverage and Sectorization of the Public Sector>(저자: Paul Cotterell, Ethan Weisman, Tobias Wickens, 출간일: 2006년 12월)을 참조.
(<http://www.imf.org/external/pubs/ft/gfs/manual/comp.htm>)

16) 2008 SNA의 문단 4.77~4.80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공공부문과 다른부문과의 관계

일반정부 부문	비금융기업 부문	금융기업 부문	가계 부문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부문
공공부문	공공부문	공공부문	민간	민간
	민간	민간		

2.18 일반정부 부문은 모든 정부단위와 정부단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시장외적 비영리 기관(NPIs)으로 구성된다.

- 정부단위는 특정 영역 내에서 다른 기관단위들에 대해 입법, 사법 또는 행정 권한이 있는 기관단위이다. 공동체나 개별 가계에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외적 기반에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전지급을 통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한다. 또한 수익과 다른 부문의 기관단위들이 창출한 소득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 정부단위가 지배하는 시장외적 NPIs는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로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목적으로 이들을 설립 통제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단위를 위해 소득, 수익, 또는 기타 금전적 이득의 원천이 될 수 없다. NPI가 비정부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의 일부나 다름없다. 2008 SNA는 특정 NPI가 정부단위의 지배를 받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 (1) 관리자의 임명
- (2)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타규정
- (3) 계약협정
- (4) 정부재정지원 정도
- (5) 위험노출

2.19 공기업은 정부단위 또는 다른 공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기업이 포함된

다. 정부(또는 공기업)의 지배를 받지만 해당 정부와 다른 경제권에 거주하는 기업은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¹⁷⁾ 기업은 (i) 소유주를 위하여 수익이나 기타 금전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ii) 유한책임이 있는 소유주와는 별개로 법률에 의해 법적 실체로서 인정받고 (iii) 시장 생산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등)으로 설립된다.¹⁸⁾ 준기업은 주식회사나 법인으로 설립된 기업이 아니지만, 그 기능 상 기업으로 분류된다. (시장생산에 관여하는) NPIs 역시 기업으로 분류된다. 기업은 그 주된 활동의 성격에 따라 경제체계 내에서 비금융기업 부문이나 금융기업 부문에 속하게 된다.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단위는 법에 따라 기업으로 설립되지만 시장 생산자가 아니므로(즉, 이들은 자신들의 생산품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에 판매하지 않음) 공기업 부문이 아닌 일반정부 부문의 일부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단위가 소유하며 준기업이 아닌 비법인 기업도 정부단위의 필수요소이므로 일반정부 부문에 포함된다.

D. 공공부문의 범위와 하위부문 분류

2.20 공공부문은 일반정부 부문과 모든 공기업으로 구성된다. 그림 2.2는 공공부문과 그 주요 요소들을 보여준다.

1. 일반정부 부문과 그 하위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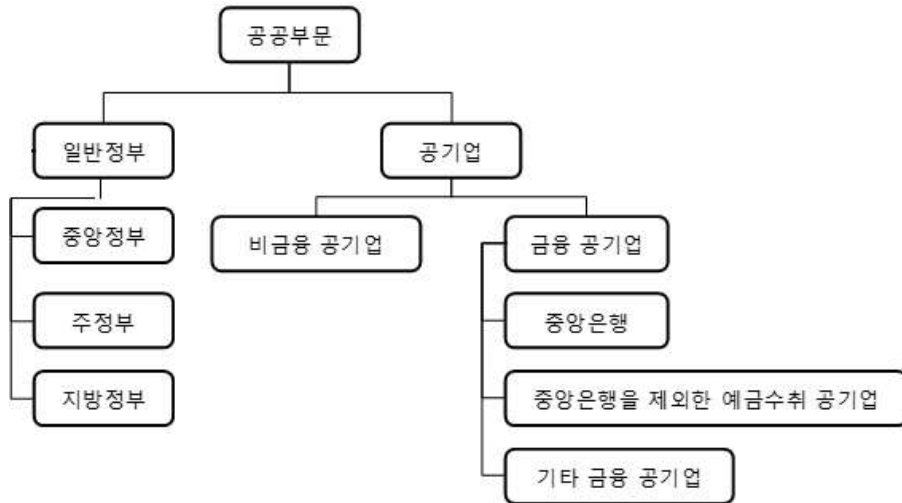
2.21 분석을 목적으로 일반정부 부문의 통계수치를 분할하여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때가 있다. 여기에서는 하위부문을 나누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은 사회보장기금을 처리하는 방식

17) 본 장 후반부 ‘거주(residence)’에 대한 설명을 참조.

18)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이란 생산자가 의도하는 공급물량과 구매자가 희망하는 구입물량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2.2. 공공부문과 그 주요 구성요소



【역자 주】원본 그림파일에 오류가 있어 그림을 수정하였음.

2.22 행정 및 법 제도에 근거하여 한 국가 내에 하나 이상의 정부단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때 통계수치는 (그 자체가 하위부문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각 단계별로 편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별로 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각 하위부문 자료는 국가별로 비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일반 정부 부문 및 공공부문 자료만이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2.23 GFSM과 2008 SNA에서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와 도 또는 지역정부, 지방정부 세 가지 하위부문으로 나눈다. 모든 국가가 정부를 세 가지 하위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만 존재하거나 중앙정부보다 한 단계 낮은 정부만 존재하는 나라도 있다. 일부 국가는 세 가지 단계 이외의 정부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정부를 여기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하위부문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한다. 정부단계 이외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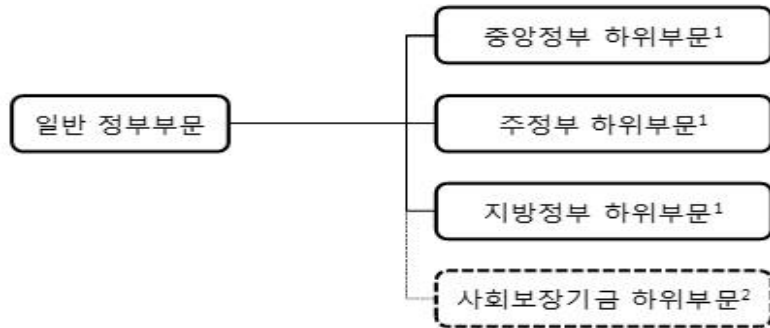
재정정책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이 존재하고 그 역할이 명시된 경우에는 모든 사회보장기금 관련 통계를 일반정부 부문에서 별도의 하위부문으로 편제해야 한다.

2.24 정부단위를 일반정부 단위를 분류하거나 해당 정부단위가 사회보장기금(문단 2.44~2.46 참조)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GFSM과 2008 SNA에 요약된 바와 같이 두 가지 다른 기준을 사용하면 된다.¹⁹⁾

- 모든 사회보장기금은 별도의 하위부문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기타 모든 일반정부 단위는 해당 정부의 단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하위부문인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모든 정부단위를 포함해야 한다(그림 2.3. 참조). 또는 사회보장기금은 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정부 단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단계의 다른 일반정부 단위와 통합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단계의 정부가 모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성된다(그림 2.3. 참조). 사회보장기금 전반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기금의 개별 통계수치가 각 정부단계 통계수치에 포함되기도 한다.
- 국가별로 여기에 제시한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목적으로 GFS 연감에서는 한 가지 기준을 채택한다.

19) 하위부문의 대안적 분류기준은 다양한 분석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정 국가에서 어떠한 방법이 보다 적합한지는 사회보장기금의 규모가 어떠한지 사회보장기금의 운영이 그와 관련된 정부단위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한 채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다르다.

그림 2.3. 일반정부 부문과 그 주요 구성요소



¹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는 방식

²대안적으로 사회보장기금이 별도의 하위부문으로 통합되는 방식(점선으로 표시)

a. 예산 및 예산외 기관

2.25 일반정부의 하위부문인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개별 기관단위이다(문단 2.23 참조). 각 하위부문은 행정제도에 따라 실체를 그룹으로 통합하고 예산 및 예산외 기관으로 구분하는 것이 분석에 유용할 때가 많다(문단 2.24에서 살펴본 사회보장기금의 처리와는 상관없이). 예산 기관은 주요(또는 일반) 예산만으로 구성되며 예산외 기관은 해당 정부 단계를 구성하는 나머지 조직 중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예산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예산자료와 통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 예산 기관인지 예산외 기관인지 여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부 단계별 통계가 거시경제통계 지침에 따라 정부 하위부문(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편제해야 한다.

2.26 대부분의 국가가 규모와 권한 측면에서 일반정부 부문이라는 기관단위가 존재하며, 특히 이는 다른 여러 기관단위나 실체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기관은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권과 관련된 기본 활동을 포괄하는 중앙정부의 단일 단위이다. 이러한 예산

기관은 일반정부의 요소로서 주요 (또는 일반)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 보통이다. 중앙정부 예산기관의 수익, 비용 및 지출은 그 나라의 재정 관련 부처나 그에 상응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반예산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앙정부 예산기관을 구성하는 부처, 기관, 위원회, 사법당국, 입법기구, 기타 실체들의 대다수가 별도의 기관단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그 자신의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그 자신의 권한으로 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나 지방정부 하위부문은 또한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기관 등의 예산 기관을 포함하며 이들은 각 정부 단계에 필요한 주요 행정, 입법, 사법권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하위부문에는 예산외 기관이 포함될 때도 있다.

2.27 예산에 의해 전액 충당이 되지 않고 개별 예산을 운용하는 일반정부의 실체는 예산외 기관으로 간주된다.²⁰⁾ 이러한 실체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지배하에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예산외 기관은 독자적인 수익원천이 있으며, 일반 예산 등으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거나 재원을 이전받아 수익을 보전한다. 또한 실체의 지출규모와 지출항목의 구성에 대해 자유재량을 지닌다. 이러한 조직은 도로 건설, 또는 보건 및 교육서비스 등 시장외적 생산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다. 예산제도가 나라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예산외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도 각각 다르나 일반적으로 ‘예산외 기금’ 또는 ‘분권 기관’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2.28 정부의 지배를 받는 시장외적 NPIs는 자산을 보유하고 부채를 부담하거나 그 자신의 권한으로 거래에 종사하기 때문에 예산외 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외적 NPI는 지배하는 정부 단계

20) 이러한 정부 실체가 완전한 회계계정 체계를 관리하고 그 자신의 권한으로 재화나 자산을 보유하며 법적 책임하에 시장외적 활동에 종사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그 자신의 권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기관단위로 간주한다. 기관단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체는 이를 지배하는 기관단위의 일부로 간주한다.

가 무엇인지에 따라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단위로 분류된다. NPIs의 정부지배에 관한 내용은 문단 2.18에서 논의한다.

2.29 정부가 자산과 부채만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활동은 할 수 없는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실체는 거주 인공 자회사(resident artificial subsidiary)로 불리며 모회사와 다른 경제권에 거주하지 않는 한 별도의 기관단위로 취급하지 않는다(문단 2.94~2.102 참조). 거주 인공 자회사는 이를 지배하는(모회사 단위의 일부 또는 모회사의 예산외 기관) 정부단위로 분류된다.

2.30 정부의 거주 인공 자회사가 특수목적기업(이하 SPE)으로 설립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형태의 거주자 인공 자회사는 법인이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외 정부 단위로서 일반정부 부문으로 분류해야 한다.²¹⁾ 이러한 예산외 단위는 시장외적 생산자이며 다른 정부 단위의 지배를 받는 한 일반정부 부문으로 분류한다.

2.31 정부가 설립하고 정부에만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며 민간부문과 입찰에서 경쟁하지 않는 법적 실체는 거주 인공 자회사와 구분된다. 이러한 실체는 부수적인 활동²²⁾만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거주 인공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기관단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32 금융 공기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정부 단위인 중앙차입기관을

21) 자신의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자산을 보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그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는 거주 SPE는 별도의 기관단위로 취급되며 주된 활동에 근거하여 부문을 분류한다. 모든 비거주 SPE는 별도의 기관단위로 취급되며 이들의 거래는 정부계정에 반영된다(문단 2.64~2.67 참조).

22) 부수적 활동이란 기업의 주된 또는 이차적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내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부수적 활동은 그 산출물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 상세한 사항은 2008 SNA의 문단 5.35~5.45 참조.

설립하는 정부도 있다. 중앙차입기관은 시장에서 조달한 돈을 일반정부 단위에 대해서만 융자해 주는데, 이때 상업적인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실체는 단지 정부의 차입을 유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일반정부에 속하는 개별 기관단위(예산외 기관) 또는 중앙차입기관을 지배하는 정부단위(예산기관)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한다.

2.33 다음 절에서는 정부의 하위부문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보장기금이 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정부단위에 속하든 또는 일반정부의 별도 하위부문으로 취급되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b. 중앙정부

2.34 중앙정부 하위부문은 중앙정부의 기관단위에 중앙정부가 지배하는 시장외 NPIs를 더한 기관단위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권한은 그 국가의 영토 전체에 적용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모든 거주 기관단위와 국가 내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비거주자 단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치적 의무로는 국방, 법과 질서의 유지, 외교가 포함된다. 또한 적절한 입법과 규제를 통해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전체의 편익을 위해 집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과 행정에 소요되는 지출을 부담해야 한다. 그 외에도 주로 개별 가계의 편익을 위해 교육이나 보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출을 부담하고, 기타 정부계층을 포함한 다른 기관단위에 이전지출을 제공할 수 있다.

2.35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하위부문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그럼에도 문단 2.24~2.3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단 2.24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보장기금이 별도의 하위부문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예산상 중앙정부, 예산외 기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2.36 중앙정부는 비금융 또는 금융기업도 지배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중앙(일반) 정부부문 분류에서 제외되며 공공부문의 일부로 분류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배를 받는 기관단위가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시장 생산자가 아니라면 공기업 부문이 아니라 일반정부 부문으로 분류된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단위의 지배를 받는 준기업이 아닌 비법인 기업은 일반정부 부문에 포함된다.

c. 주정부/도정부/지역정부

2.37 2008 SNA와 GFSM과의 일관성 및 편의성을 위해 주정부/도정부/지역정부는 앞으로 ‘주정부(state government)’로 칭한다. 주정부 하위부문은 개별 기관단위인 주정부, 도정부, 지방정부와 주정부, 도정부, 지방정부의 지배를 받는 시장외 NPIs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중앙정부보다 하위 단계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정부보다는 상위 단계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위이다. 이러한 주정부는 재정, 입법, 행정 권한이 해당 국가의 분할단위인 ‘주(states)’에만 미친다. ‘주’를 가리키는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특히 면적이 작은 국가 등은 주와 주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영토가 넓은 국가, 특히 연방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상당한 권한과 책임이 주정부에 할당될 수 있다.

2.38 주정부는 자신의 관할권 영역(다른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음) 내에서 거주하거나 경제활동과 거래에 종사하는 기관단위에 대해 과세권을 가진다. 주정부가 기관단위로 인정받으려면 완전한 회계계정 체계를 갖추고 그 자신의 권한으로 재화 또는 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법적 책임하에 비시장 활동에 종사하고 그 자신의 권한으로 부채를 부담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재원의 일부는 특정 목적에 지출하도록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주정부는 해당국가의 일반법 규정 내에서 자체 정책에 따라 징수한 조세나 기타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출하

거나 배분하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외부의 행정 지배 없이 간부를 임명할 수 있어야 주정부로 간주된다. 반면 지역단위가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중앙정부가 지역단위에서 자금의 지출방식까지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지역단위는 별개의 정부단위보다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39 주정부가 존재하는 경우, 국가전체에서 정치적 또는 행정적 목적을 위해 가장 큰 지리적 영역에 그들의 재정권한이 미친다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최소 정부단위 사이에 둘 이상의 정부단위가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 GFSM과 2008 SNA의 부문분류를 위해 이러한 중간 계층의 정부단위는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주 또는 지방정부 중 하나로 분류된다.

2.40 주정부는 중앙정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시장생산에 종사하는 기관단위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생산단위는 영업활동 및 회계기록이 이를 입증할 경우 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기업은 주정부 하위부문(및 일반정부 부문)이 아닌 공기업의 일부로 분류되어야 한다.

d. 지방정부

2.41 지방정부 하위부문은 별개의 기관단위인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배하는 시장의 NPIs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지방정부 단위는 정치적 또는 행정적 목적으로 최소지역의 범위에 그들의 재정, 입법, 행정적 권한이 미치는 기관단위이다. 그 권한의 범위는 중앙정부나 주정부보다 훨씬 작고,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기관단위에 대해 과세권을 가질 수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지방정부는 대개 상위 정부단위로부터 보조금 또는 이전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또한 일정범위 내에서 주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 단위는 완전한 회계계정 체계를 갖춰야 하며 재화나 자산을 그 자신의 권한으로 보유하고 법적 책임하에 비시장 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그 자신의 권한으로 부채를 부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외부의 행정적인 지배 없이 간부를 임명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로 인정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의 대리인으로 일정 부분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계획과 책임하에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한다면 별개의 정부단위로 취급될 수 있다.

2.42 지방정부 단위는 그들 지역에 거주하는 기관단위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지방정부는 전형적으로 지방 거주자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들 중 일부 서비스는 상위 정부단위로부터의 이전재원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중앙정부 및 주정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다루는 규칙은 지방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준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립극장, 박물관, 수영장 등의 단위는 적절한 회계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한 비금융기업 부문으로 분류한다(문단 2.59~2.60 참조). 반면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위를 지방정부 내의 시장 기관(market establishment)으로 처리한다. 교육, 보건 등 시장외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위는 이를 지배하는 지방정부의 필수 부분으로 간주한다.

2.43 주정부와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 모두를 지원하는 정부단위는 그 운영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더 많은 관련이 있는 정부단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국가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 단위의 최소정부 기관단위 사이에 한 개 이상의 정부가 존재한다. 이 경우, 이러한 중간 정부단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중 하나의 정부단위에 분류해야 한다. 일부 분석의 경우에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통계를 결합시키는 것이 유용할 때도 있다.

e. 사회보장기금

2.44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단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공동체 전반 또는 공동체의 대규모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정부단위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운영한다.²³⁾ 사회보장제도는 폭넓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노령, 거동제약, 사망, 유족, 질병과 임신, 업무상 재해, 실업, 가족수당, 의료지원 등을 위한 혜택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한다.

2.45 거시경제 통계에서는 정부단위의 다른 활동과 별도로 조직되고 관리될 때, 다른 정부단위와 별도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할 때, 자기 부담으로 재무적 거래에 종사할 때 사회보장기금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모두 사회보장기금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질병을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는 해당 국가의 보건부처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은 (별도의 기관단위로 간주하고) 사회보장기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46 GFSM과 2008 SNA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지침에서는 문단 2.2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기금을 두 가지 하위부문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23) 사회보험제도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a) 해당 제도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급여는 사회적 편익을 구성한다(2008 SNA에 명시된 바와 같음). (b)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i) 해당 제도에의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이거나 근로자나 근로자 집단의 근로계약 조항에 따른 의무사항이어야 한다. (ii) 고용 상태와는 무관하게 특정하게 지정된 근로자 집단을 위해 운영되며 그 가입이 해당 집단의 구성원에만 허용되는 공동제도여야 한다. (iii)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실제 납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를 대신하여 (실제 또는 추정)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지정된 수혜자가 해당 제도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사회보험급여는 어떤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수혜자에게 해당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지급하는 사회급여를 말한다.

2. 비금융 공기업 하위부문

2.47 일반정부 단위 또는 공기업의 지배를 받는 모든 거주 비금융기업은 비금융 공기업 하위부문의 일부이다. 비금융기업은 시장 재화 또는 비금융 서비스 생산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기업이다.

2.48 비금융 공기업의 전형적 예는 국영 항공사, 국영 전기기업, 국영 철도 기업 등이 있다. 또한 시장생산(경제적으로 유의한 요금을 청구하는 병원, 학교, 또는 대학 등)에 종사하는 비영리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만 그 지배는 받지 않는 조직은 비금융 공기업 하위부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문단 2.17 참조).

3. 금융 공기업 하위부문

2.49 일반정부 단위 또는 다른 공기업의 지배를 받는 모든 거주 금융기업은 금융 공기업 하위부문의 일부이다. 금융기업은 금융중개, 보험, 연기금 서비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거주 기업과 다른 기관단위로의 금융중개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이다. 그 외에도 금융 속성을 지닌 서비스의 시장생산에 종사하는 비영리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금융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기업의 이익을 진흥하고 도모하는 기업도 금융 공기업에 해당된다.

2.50 금융 공기업 하위부문은 예금수취 공기업과 기타 금융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의 다른 하위부문과 비교하여 금융 공기업 부문은 총채무액이 상대적으로 크며, 순채무액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인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금융중개 역할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다른 하위부문과 통합 편제하는 것보다는 금융 공기업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a. 예금수취 공기업

2.51 예금수취 공기업은 일반정부 단위나 기타 공기업이 지배하는 금융기업으로, 금융중개 업무를 주요 활동으로 하며, 예금이나 예금과 비슷한 대체 금융상품 형태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예금수취 공기업은 ‘중앙은행’과 ‘중앙은행 이외 예금수취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i. 중앙은행

2.52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핵심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금융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금융 중개기구들이 중앙은행 하위부문으로 분류된다.

- 복수의 중앙은행 시스템인 경우를 포함한 국가중앙은행
- 외환보유고에 의해 전량 태환이 가능한 국내통화를 발행하는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또는 독립적인 통화당국
- 독립된 계정체계를 갖추고 있고 중앙정부의 일부로 분류되지 않는 공적으로 출범된 (예, 외환을 관리하거나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는) 중앙통화기관, 독자적 기관단위인 감독당국은 중앙은행에 속하지는 않으나 기타 금융 (공)기업에는 포함

2.53 중앙은행이 별개의 기관단위인 한 (기본적으로 비시장 생산자라 하더라도) 항상 금융 공기업 부문에 속한다.

ii. 중앙은행 이외 예금수취 공기업

2.54 중앙은행을 제외한 예금수취 공기업은 일반정부 단위나 기타 공기업의 지배를 받는, 중앙은행을 제외한 모든 거주 예금수취기업으로 구성된다. 예

를 들어, 예금을 수취하거나 예금에 가까운 대체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상업은행, ‘겸업은행(universal bank)’, ‘다목적 은행(all purpose bank)’, 저축은행, 우체국은행, 우정은행, 지방 신용은행, 농촌 신용은행, 수출입은행, 특수은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b. 기타 금융 공기업

2.55 기타 금융 공기업은 예금수취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 단위나 기타 공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거주 금융기업으로 구성된다. 그 하위부문은 금융시장에서 예금외적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며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을 사용하는 기관단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모든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 비머니마켓투자펀드, (보험기금과 연기금을 제외한) 기타 금융중개기관, (별도의 기관단위인 감독기관을 포함한) 금융보조기관(financial auxiliary)²⁴⁾, 전속금융기관(captive financial institution), 대부업체, 보험기금, 연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기타 공공부문의 분류

2.56 이제까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크게 분류하고 이를 다시 하위부문으로 분류하였으나, 그 이외에도 거시경제 통계를 편제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부문 단위를 분류할 수 있다.

- 비금융 공공부문: 일반정부 부문 및 비금융 공기업
- 일반정부 부문 및 중앙은행
- 중앙정부 공공부문: 중앙정부 하위부문과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24) 금융 보조기관이란 주로 금융시장을 지원하는 일에 종사하지만 그 자신이 다루는 금융자산과 부채를 보유하지 않는 제도단위이다.

2.57 ‘주권국(sov​er​eign)’이란 용어는 종종 금융시장과 재정분석가들이 채무와 연계하여 사용한다. 위에서 기술한 기관단위 기준의 공공부문 분류와는 달리 ‘주권국’은 기능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주권국 발행인’은 해당 채무증권의 사법 관할구역에 대해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보통 국가 또는 연방정부)이다. 결론적으로 ‘주권국 채무’는 정부에 의해 법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채무이다. 통상 금융시장에서 ‘준주권 국가(quasi-sov​er​eign)’로 칭하는 주권국의 대리인에 의해 발행된 채무 역시 해당 국가가 명시적으로 지급보증을 하거나 주권국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권국 채무에 포함된다. 준주권국의 예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중앙은행, 기타 공기업이 있다. ‘주권국 채무’는 ‘공공부문부채’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이와 혼용해서는 안 된다. 혼란방지와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시되는 ‘주권국 채무’ 통계는 채무와 관련된 기관단위를 나타내는 포괄범위여야 하고, 이러한 주권국 채무통계가 일반정부 및(또는) 공공부문부채통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제시해야 한다.

2.58 분석적 차원에서 공공부문 단위를 다른 방식으로 통합 분류해야 할 때도 있다. 공기업은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에 판매하는 데 종사(시장활동)하지만, 그 목표가 각기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공공(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공기업이 존재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정부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핵심자원을 보호하며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경쟁을 유발하고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분야에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할 때도 있다. 공기업은 규모가 크고 (또는) 숫자가 많은 편이며,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친다.

- 공기업은 소위 준재정(quasi-fiscal) 업무에 종사하는 일이 많으며 (즉 자신을 지배하는 정부단위의 명령에 따라 정부 업무를 수행한다) 그 이외에도 공기업이 시장생산자로서 관여하는 시장활동을 수행한다.
- 공기업은 그 규모와 전략적 위치가 은행여신, 총수요, 해외차입, 국제수지

- 등 거시경제 목표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 정부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 또한 상당한 기회비용의 발생과 함께 많은 공기업들에 막대한 국가자원이 투자되었을 수도 있다. 이때 투자자원의 출처가 민간투자자가 아닌 정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는 경영효율성과 자본수익률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이 제공하는 사업분석으로부터 별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공기업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채무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정부에 의해 보증이 되는 한 정부에 재정위험이나 평판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5. 경계 사례

a. 준기업의 식별

2.59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준기업에 해당한다.

- (i) 거주 기관단위가 소유한 비법인 기업으로 회계계정 체계를 편제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충분하며 독립 법인처럼 운영되고 사실상 소유주와의 관계가 주주와 기업 간의 관계와 유사한 기업
- (ii) 비거주 기관단위가 소유한 비법인 기업이지만 해당 경제영토에서 오랜 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에 종사했기 때문에 거주 기관단위로 간주되는 기업²⁵⁾

준기업은 기업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통계체계에서는 기업처럼 취급된다. 즉, 법적으로 소속된 단위에서 분리된 별도의 기관단위처럼 취급된다. 따라서 정부단위가 소유한 준기업은 비금융 공기업 또는 금융 공

25) 우체국이나 철도청 같은 비법인기업은 정부부처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이들 비법인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별도 회계계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준기업에 해당하여 공기업의 일부로 분류된다.

기업 부문으로 분류된다. 실제로는 재정상태표를 포함한 완전한 회계계정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거나 갖출 수 있어야만 별개의 기관단위로 취급될 수 있다.

2.60 정부가 경영진에게 생산과정의 운영뿐만 아니라 자금의 사용에 관해서도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 기업이어야 정부 준기업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정부 준기업은 그 자신의 운영 잔고와 기업신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자신의 예금, 금융자산, 또는 차입을 통해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준기업과 정부 단위 사이 수익과 자본(재정)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기업이 별도의 법적 실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운영 및 재정활동이 정부 수익이나 재정통계와 분리될 수밖에 없다.

b. 구조조정기관

2.61 구조조정기관은 기업의 재조직을 위해 기업과 기타 자산을 처분하는 실체이다. 또한 구조조정기관은 종종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잠식된 자산의 처분, 부실기관의 부채 상환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62 일부 공공부문 (기관)단위는 금융기업이나 비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한다. 구조조정기관은 기존에 설립된 공공부문 단위 또는 구조조정이라는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자본투입(자본이전, 용자, 또는 지분취득)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 또는 지급보증의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다음은, 구조조정 단위가 일반정부 부문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시장/시장외적 생산물정보가 불충분하여 판별하기 어려울 때 고려해야 할 기준들이다.²⁶⁾

26) 구조조정기관은 본질적으로 산출물이 충분하지 않다.

- 전적으로 정부만을 위해 지원하는 단위는 다른 단위를 위한 활동을 병행하는 곳에 비해 일반정부 부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금융자산을 시장가격 이외의 가격으로 처분하는 단위는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는 단위에 비해 일반정부 부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을 받고,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를 대행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낮은 단위는 일반정부 부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63 구조조정기관의 운영방식은 다양하다. 다음 두 사례는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예이다.

- 구조조정기관은 공공부문의 재설정 또는 민영화과정의 간접적 운영에 관여한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형태가 포함된다. 해당 구조조정 단위는 일련의 자회사를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진정한 지주회사이다. 또한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를 대리하여 자회사로부터 다른 자회사로 자금을 이전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조정 단위는 금융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정부를 대리하여 수행한 거래는 일반정부를 통해 거래를 재설정(rerouting)해야 한다.²⁷⁾
- 구조조정 단위는 그 법적 지위여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직접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시장생산자가 아니다. 구조조정 단위의 주요 기능은 자금을 어떤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이전시킴으로써 국민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단위는 일반정부 부문으로 분류해야 한다.
- 구조조정기관은 주로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시장 위기로 인해 잠식된 자산

27) 재설정(Rerouting)은 거래의 경로가 실제와 다르게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단위와 C 단위 간 직접거래를 1차적으로 A 단위와 B 단위 간, 2차적으로 B 단위와 C 단위 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때가 있다. 통상 거래 당사자인 어떤 단위가 실무상의 이유로 실제 회계기록에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 일례로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직접 불입한 사회보장부담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경제적 중요성은 재설정을 통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부담금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일부로 보여주는 것이 재설정이며, 이렇게 지급된 부담금을 실제로는 피고용인이 납부하게 된다.

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설립된다. 이러한 구조조정 기업은 감당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와 정부 재정지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 형태가 포함된다.

- 구조조정기관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험을 부담하고 차입한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관은 금융공기업 부문의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 구조조정기관은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아 의도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다. 이때 구조조정기관은 주로 국민소득(부)의 재분배에 관여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거나 자신의 위험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정부 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c. 특수목적기관

2.64 특수목적기관(이하 SPE)에 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의는 없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항상 다른 기업이나 정부와 관련되고 종종 모회사의 거주 영역이 아닌 다른 영토에 거주한다는 것이다(문단 2.97 참조).²⁸⁾

2.65 정부는 금융상 편의를 위해 SPE를 설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PE는 재정 또는 준재정 활동(자산의 증권화, 차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일반정부에 비해 단지 수동적으로 운용되며 재정 및 준재정 활동을 수행하는 거주 SPE²⁹⁾는 기관단위가 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거시경제 통계체제에서 별개의 기관단위로 취급하지 않으며, 그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일반정부의 일부로 취급한다. 그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그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 거주 SPE는 별개의 기관단위로 취급되며

28) SPE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008 SNA, 문단 4.55~4.67을 참조.

29) 거주와 거주외의 기관단위의 정의는 추후에 나오는 본 장의 거주자 절에서 논의한다.

그 주요 활동에 따른 부문으로 분류된다(문단 3.68 참조).

2.66 그들을 지배하는 정부의 국가가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SPE는 그들이 설립된 경제권에서 항상 별개의 기관단위로 분류된다. 그러한 실체가 존재할 경우, 정부의 재정활동이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정부와 비거주 SPE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유량과 저량은 거래가 발생할 때 일반정부와 국외계정에 기록되어야 한다.

2.67 정부는 차입이나 해외에서 정부지출을 대행하는 비거주 SPE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와 SPE 사이에 기록되는 실제 유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량과 저량은 SPE에 의해 수행된 정부의 재정활동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외계정에 기록되어야 한다. 증권화 단위와 같은 특수 사례는 제4장에서 다룰 것이다.

d.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2.68 다수의 공공부문 단위들은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단체(제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공공-민간 파트너십) 또는 다른 공공부문 단위와 협정을 맺는다. 이러한 활동은 시장 또는 비시장 산출물이 될 수 있다. 조인트벤처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 ‘조인트벤처(joint ventures)’로 칭하는 공동지배 단위
- 공동지배 운영
- 공동지배 자산

2.69 조인트벤처는 각 당사자가 조인트벤처 단위의 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공동의 지배권을 갖는 기업, 파트너십, 또는 여타 기관단위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위들은 당사자들 간의 법적 협정이 단위에 대한 공동

지배를 설정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단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관단위로서 조인트벤처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의 목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조인트벤처는 자체의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70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조인트벤처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배가 공공단위로 성립되는지, 민간단위로 성립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인트벤처는 비시장 생산자로 운용된다면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정부 부문으로 분류해야 한다.

2.71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조인트벤처가 시장 생산자일 경우 정부단위에 의해 지배되는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으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비율은 지배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만일 공공단위와 민간단위가 조인트벤처기업의 동일한 지분을 소유할 경우 지배에 관한 여타 지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문단 2.17 참조).

2.72 공공부문 단위는 다른 기관단위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 합작운영방식을 체결할 수 있다. 합작운영방식은 공동지배 운영 또는 공동지배 자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분류를 요하는 단위는 없으나 회계장부 계상 시 자산의 적절한 소유권자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과 비용의 모든 공유·분담방식은 해당 계약서의 규정에 부합되게 기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단위가 합작생산과정의 상이한 단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동의할 수 있고, 하나의 단위가 자산 또는 관련된 자산의 집합체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비용은 두 단위가 공유·분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e. 감채기금(sinking funds)

2.73 감채기금은 기관단위가 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모단위 채무를 점진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기금(‘모단위’)을 사용하는 단위가 제공하는 별도의 기여금으로 구성한다. 공공부문의 일반정부 단위가 대부분 감채기금을 활용하지만, 공기업 역시 감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정부채무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상환하는 것 이외에도 신뢰감을 주기 위한 의도로 감채기금은 정부채권 시장을 지원할 수 있다.

2.74 감채기금을 하위부문으로 명확히 나누기 어려울 때도 있다. 공공부문의 감채기금은 별개의 기관단위³⁰⁾일 경우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는 제공하지 않는지에 따라 분류된다.

- 별개의 기관단위이며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채기금은 금융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 별개의 기관단위이며 시장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채기금은 일반정부 단위로 분류된다. 특히 이러한 감채기금은 그들을 지배하는 단위(중앙정부 등)의 예산외 단위로 분류된다.
- 별개의 기관단위가 아닌 감채기금은 그 단위를 지배하는 단위로 분류된다(예, 모단위).

2.75 감채기금의 운영과 모단위(예, 정부)가 행사하는 지배정도와 관련하여 감채기금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 일부 감채기금은 그들을 설립한 모단위의 채권만을 회수 또는 매입한다. 이러한 감채기금은 별개의 기관단위가 아니며, 그들을 지배하는 단위와 동일하게 분류된다.
- 일부 감채기금은 정부대출프로그램이나 목적세(earmarked taxes)의 징수 등 다른 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채기금은 별개의 기관단위가 아니며 그들을 지배하는 단위와 동일하게 분류된다.

30) 기관단위의 정의는 Box 2.1.을 참조.

- 기타 감채기금은 보통 만기일이 유사한 여타 정부 또는 국내·외 기관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그런 감채기금은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위이며, 금융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2.76 감채기금의 저장과 유량을 다른 공공부문 단위와 연결하는 것에 관해서는 본 지침 제8장에서 다룰 것이다.

f. 연금제도

2.77 퇴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지급수단은 나라마다 다르다. 공공부문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사회보장 및 사회보장 이외의 고용관련제도를 통해 개인에게 제공된다.³¹⁾

2.78 사회보험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사회보장과 사회보장 이외의 고용관련제도이다.³²⁾ 어느 나라든 사회보험성 연금은 일반정부와 고용주가 분담한다. 일반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이라 칭하고,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면 ‘사회보장 이외의 고용관련제도’라 칭한다.

2.79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개별 기관단위일 경우 일반정부 부문의 사회보장기금으로 분류된다(문단 2.44~2.46 참조). 사회보장제도가 개별 기관단위가 아닐 경우, 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정부단위로 분류된다

31) 연금은 사회부조를 통해서도 지급될 수 있다. 사회부조와 일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연금 등의 급여(연금 포함)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큰 차이점도 있다. 사회보험급여는 수급자가 해당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을 때만 지급된다. 이때 가입 여부는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해진 기여금을 부담했는지에 따라 판별할 수 있다. 사회부조는 정해진 기여금이 없으며 소득검증을 거치지만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사회부조급여를 지급할 명시적 또는 암묵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부조급여는 일반정부 단위에 의해 제공되며, 사회부조에 제공되는 연금은 본 절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32) 본 지침 문단 2.44~2.46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소개되고, 각주 23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정의된다. 2008 SNA의 문단 8.71~8.79는 사회보험제도의 구조를 상세히 소개한다. 모든 사회보험제도는 그 가입자가 자영업자든 실업자든 상관없이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문단 3.53~3.59 참조).

2.80 거시경제 통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래 연금지급액을 인식하지 않으나 재정상태표(채무) 정보에 사회보장지급액(연금 포함)에 대한 정보를 보완할 것을 권장한다. 2008 SNA의 문단 17.192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미래 연금지급액을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포함시킬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첫째, 수급권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가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신뢰성 있는 추정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사회보장지급액을 예산상 실행 가능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액의 산정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용성의 제약이 있다.

2.81 2008 SNA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후원하고 지급하는 비적립식 연기금 수급권³³⁾을 기록할 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연금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가까울수록(문단 2.44 참조), 그 지급의무가 재정상태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다.
- 연금급여가 개인의 특성에 맞춘 것이라기보다 인구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일 경우, 그 지급의무가 재정상태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다.
- 정부가 연금급여의 산정공식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재정상태표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비적립식 연기금의 지급의무가 재정상태표에 기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독적 기준은 없다.³⁴⁾

2.82 사회보장 이외의 고용관련제도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연금과 고

33) 정부 직원을 포함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고용인

34) 상세한 사항은 2008 SNA의 문단 17.191~17.206 참조.

용계약 조건에 따른 기타 수당을 지급한다. 이때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일반정부로 귀속되지 않는다. 사회보장 이외의 고용관련 제도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두 가지로 나뉜다(문단 3.54 참조). 두 제도 모두 기금 또는 별도의 책임준비금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근거로 한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경우 기금 또는 별도의 적립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기금 또는 별도의 적립금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또는 명목상의 기금으로 존재할 수 있다.

2.83 기금 또는 별도의 적립금(연금제도의 유형과 상관없이)은 다음과 같이 기관단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개별 기관단위인 기금은 자립형 연금제도이다. 이때 공공부문에 의해 지배되는 기관단위라면 금융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공공부문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경우 민간 금융기업으로 분류된다.
- 개별 기관단위가 아닌 기금은, 해당 기금을 적립한 고용주와 동일한 기관단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또는 보험사나 다수 고용주 연금제도 중 금융기관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 기금이 이를 적립한 고용주와 동일한 기관단위의 일부이며, 공공부문인 경우, 이를 지배하는 공공부문 단위로 분류한다(예, 예산상 중앙정부, 주 또는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 연기금을 적립한 고용주가 공공부문 단위가 아니라면, 이를 지배하는 민간부문 단위로 분류된다.
- 만약 기금이 보험사 또는 다수 고용주 연기금이고, 다른 금융기관의 일부이면 그 기금은 금융 공기업의 일부이다. 만약 보험사나 다수 고용주 연기금이 민간부문 단위의 지배를 받을 경우, 해당 연기금은 민간 금융기업의 일부이다.

2.84 명목 연금은 개별 기관단위가 아니며,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고용주단위와 같은 기관단위로 분류된다. 정부가 그 고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적립식, 비자립형 연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와 관련된 저량과 유량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단위로 분류한다.

2.85 사회보장 이외의 고용관련 연금제도의 연금부채(연금수급권을 비롯한)는 각 기관단위의 채무로 분류된다.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한다.

g. 강제적립기금

2.86 강제적립기금(Provident Funds)은 개별 참여자들의 기여금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 저축제도이다. 일부 정부에서는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대신 강제적립기금을 조성한다. 강제적립금 방식하에서 각각의 참여자 및 이들을 대신하여 고용주가 낸 강제적인 기여금은 별도의 계정에 보관되며 퇴직, 실업, 거동제약, 사망 등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인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금은 각 참여자들을 위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관리되고 투자된다.

2.87 강제적립기금의 설립은 이 기금이 일반정부 내 사회보장제도, 공기업, 공공부문 외부 중 어느 기관단위에 분류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앞 문단에서 정의한 강제적립기금 방식은 각 가입자의 기여금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보장하는 목적의 사회보험이 아니다. 이러한 강제적립기금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된다.

2.88 이 장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정부 부문의 정부 또는 금융기업의 하위부문이 지배하는 강제적립기금의 분류는 여타 모든 실체에 적용되는 동일한 부문화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 기관단위의 정의를 충족하고 정부에 의해 지배되는 거주 강제적립기금은 금융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개인별 기여금은 가입자에 대한 채무 증가로 기록되며, 미지급 계정은 채무감소로 기록된다.

- 기관단위가 아니지만 정부에 의해 지배되는 거주 강제적립기금은 이를 지배하는 정부단위로 분류된다. 기여금은 가입자에 대한 일반정부의 채무 증가로 기록되고, 미지급 계정은 채무 감소로 기록된다.³⁵⁾

2.89 강제적립기금은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강제적 저축제도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경우, 기금은 이 장에서 요약한 부문화원칙을 계속 적용하면서 주된 제도적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h. 국부펀드

2.90 일부 정부는 일반적으로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 SWF)로 불리는 특수목적의 정부기금을 설립한다.³⁶⁾ 일반정부가 설립하고 보유하는 것으로 국부펀드는 재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산을 보유, 관리 또는 집행하고, 해외 금융자산의 투자를 비롯한 일련의 투자전략을 이용한다. 국부펀드는 일반적으로 국제수지 흑자, 공적 외화 운영, 민영화 수익금, 재정 흑자, 그리고(또는) 상품수출대금 등에 의해 조성된다.

2.91 국부펀드의 설립은 이 기금이 일반정부의 일부, 공기업, 공공부문의 외부 중 어디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정부 또는 금융기업 부문이 지배하는 국부펀드의 유형은 여타 모든 실체에 적용되는 동일한 부문화원칙에 의해 결정된다(문단 2.15~2.19와 문단 2.92~2.93 참조).

2.92 정부에 의해 지배되는 거주 국부펀드는 기관단위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5) 비적립식 비자립형 공무원 연금제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36) 특수목적펀드는 여러 명칭으로 불리지만 이 절에서는 편의상 '국부펀드'로 칭한다.

- 국부펀드가 기관단위가 아닐 경우, 그를 지배하는 기관단위로 분류한다.
- 거주 국부펀드가 기관단위일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시장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부펀드는 금융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 문단 2.1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단위의 정의를 충족하면 일반정부 단위(예산외기금 또는 사회보장기금)로 분류된다.

2.93 만일 국부펀드가 해외 법인 또는 해외에 위치한 준기업이라면 법인의 경제권 또는 법인이 아닐 경우 법적소재지의 경제권의 금융기업 하위부분의 별개 기관단위로 분류한다.

E. 회계원칙

1. 거주성

2.94 총 공공부문부채는 기타 거주와 비거주 등 거주 공공부문 단위의 모든 채무로 구성된다. 본 절에서는 거주 공공부문 단위의 채무에 초점을 맞추지만, 거주성 여부는 채권자 단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2.95 개별 기관단위의 거주란 가장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 경제적 영역(영토, 지배적인 경제적 이익이 집결되는 곳)을 의미한다.³⁷⁾ 국제통계기준에 따르면, 거주성은 외환통제, 조세 또는 다른 목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는 거주성의 개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주성은 국적 또는 법률적 기준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비거주기관은 다른 경제적 영토에 거주하는 단위이다.

37) 거주성은 2008 SNA 문단 4.10~4.15와 제26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2.96 경제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일련의 거주 기관단위로 구성된다. 경제적 영토는 물리적으로 국외부문에 위치한 위요지(대사관, 영사관 및 군사기지 등)도 포함되는데, 이들 기관은 공식협정을 통해 현지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일반정부의 SPE는 문단 2.97에서 논의한다). 정부의 지배를 받지만 정부와는 다른 경제영역에 거주하는 기업은 공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민간기업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은 거주 경제와 관련된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2.97 SPE, 보조회사(brass plate companies) 또는 명의만 있는 회사(shell companies)의 경우에도 공공부문부채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할 수 있다. SPE는 합법적으로 설립되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법적 소재지(예, 등록 또는 허가) 경제 내 물리적 실체가 없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다른 경제권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 SPE의 경제적 이익의 중심은 어디인가 하는 논란이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SPE가 합법적으로 설립된 경제에 귀속되거나 법적 설립이 부재한 경우에는 법적 주소지에 귀속한다(문단 4.96~4.100 참조).

2.98 국제기구의 경제적 영토³⁸⁾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요지로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국제기구들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들이 위치한 국가를 포함한 어떠한 경제적 거주지로 여겨지지 않는다.

2.99 국제기구는 세계적 또는 지역적일 수 있다. 지역기구는 관세동맹, 경제동맹 및 화폐 및 통화동맹³⁹⁾과 같은 지역협정에 기초한다. 지역기구는 정부

38)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a) 국제기구의 구성원은 국가(national state)* 또는 국가가 구성원인 기타 국제기구이다. (b) 국제기구는 국제조약의 지위를 가진 구성원들 간의 공식적인 정치적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c) 국제기구의 존재는 구성원 국가의 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d) 국제기구는 국제금융조직(예,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또는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 성격의 시장외적 서비스(평화유지, 교육 및 정책 문제 등)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다.

* 원래는 '국민국가'이나 '국가'로 지칭한다.

나 세계의 특정 지역에 위치하는 경제권의 통화당국 회원들로 구성된다. 지역기구는 어떤 국가의 거주단위가 아니다.

2.100 일부 지역 협정은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조세를 징수하거나 다른 강제 기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들 기구는 종종 ‘초국가적 기구’로 설명되기도 한다. 지역 협정은 각 회원국가 내에서 정부 기능의 일부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국가의 거주단위도 아니다.

2.101 지역기구와 일반정부나 공공부문 이외의 거주 기관단위 간 재정은 개별 국가의 공공부문부채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이들 기구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별도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처럼 지역기구에 대한 채무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본 지침에서는 재정을 지역기구와 거래한 회원국가에 따라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로 하여금 지역기구가 해당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102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기구와는 달리,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정부가 소유한 지역기업은 시장 생산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지역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체제 내 법적인 실체나 별도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면 거주성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기업이 여러 경제권에 걸쳐 운영된다면, 지역기업의 운영결과는 각 경제체제에 배분되어 그들 국가경제의 공공부문부채통계에 포함된다. 그 절차는 거시경제 통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2008 SNA 문단 4.13, BPM6 문단 4.41~4.44 참조).

39) 통화동맹의 지역중앙의사결정기구는 일반적으로 통화동맹의 중앙은행이다. 통화연맹 중앙은행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통화연맹의 회원국을 위해 일반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통화연맹 중앙은행은 독자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소유하는 기관단위이며, 어떤 통화동맹 회원국 경제권에서는 비거주자이지만 통화연맹에서는 거주자이다(통화연맹 및 기타 지역협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BPM6 부록3 참조).

2. 기록시점

2.103 유량과 저량은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환, 교환, 이전 및 소멸되는 시점에 기록된다.

2.104 본 지침은 다른 거시경제 통계 매뉴얼과 일관성 있게 경제 유량을 기록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발생주의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발생주의기준에 따르면 기록시점과 실제 자원의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이 일치한다. 현금주의기준에 따르는 경우, 기록시점은 크게 경제적 사건의 발생시점과 현금흐름이 발생한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급일 도래 기준(due-for-payment basis)은 일반적으로 자원흐름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거래를 기록한다. 원인행위 기준(commitment basis)에 따르면 실질적인 자원의 흐름보다 기록이 선행된다.

2.105 발생주의기준은 비화폐성 거래(현물거래 등)와 거래외 경제유량(재평가 등 거래 이외 유량)을 포함한 모든 자원의 유량을 기록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⁴⁰⁾ 이러한 포괄적 기록은 재정상태표(채무잔액)에서 유량과 변동의 연결을 가능케 한다.

2.106 금융자산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소유권 변경일(인도일)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신의 회계장부에 각각 권리와 채무를 기록하는 일자이다. 양측 모두의 회계장부상 기록이 일치하도록 해당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대금을 수령하였거나 기타 금융청구권을 획득한 일자를 결정 요인으로 한다. 예를 들어, 융자금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금융청구권이 확정된 시점에 장부에 기록한다. 실무적으로, 공공부문부채는 공공부문 단위의 관점에서 기록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40) 순수 현금주의는 비화폐성 거래, 귀속 및 거래외 경제유량 등의 흐름은 기록하지 않는다.

2.107 거래외 경제유량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었거나, 이자가 발생하거나, 권리양도(손해보험 등)를 수반한 사건이 발생할 때, 채무가 생성되고 지급 또는 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된다. 서비스 비용은 이자와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주식 및 투자기금 지분은 채무상품은 아니지만, 일단 배당락된 배당금은 지급될 때까지 기타 미지급/미수계정으로 기록된다.⁴¹⁾

2.108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본비용과 금융비용이 일치한다. 이는 기타 거시경제 통계 매뉴얼과 일반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접근법과 일치한다.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고기간 내에 지급된 이자의 경우, 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지급일 도래가 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이자의 경우(이하 ‘지급일 미도래 발생이자’), 예를 들어, 용자에 대한 이자를 매 6개월마다 지급하며 해당 기간의 처음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총채무를 측정한다면, 3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만큼 총채무는 증가한다.
-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이자의 경우, 총채무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여 해당 기간이 종료시점에 연체된 이자만큼 증가한다.

a. 지급일 미도래 발생이자

2.109 지급일 미도래 발생이자란 상품 가치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즉, 지급일 미도래 발생이자로 인하여 미지급 채무상품의 원금은 이자지급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2008 SNA, GFSM, BPM6, 일반회계기준 및 경제개념과 일치한다.

41) 주식이 ‘배당락’으로 명시되면, 이는 주식 매입자가 공표된 배당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청구권의 성격이 자본의 일부에서 주식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정액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2.110 채권(대폭할인 및 무이자 포함), 어음 및 유사 단기유가증권이 할인하여 발행되거나 할증하여 발행된 경우, 발행가와 만기 시 액면가 또는 상환가의 차이는 발생주의기준에 근거하여 유가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이자로 취급된다. 할인 발행된 경우, 각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유가증권에 재투자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미지급 원금이 늘어난다. 이는 이자 발생과 일치하는데, 동일한 이자가 유가증권 소유자에 대한 보유이익은 아니다. 할증 발행된 경우, 각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이자비용과 더불어 채권 가치를 감소시킨다.

2.111 일부 공공부문부채기록은 발생주의기준에 따른 이자비용을 기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국제통계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며, 부채를 누락하기 때문에 채무통계가 과소 계상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유의한 기준의 수익과 비용의 측정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b. 연체

2.112 연체란 지급해야 할 기간을 넘긴 미지급금액으로 정의된다. 지급일을 넘긴 금액만이 연체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기간을 넘긴 채무상환의 경우, 지급일을 경과한 부분만 연체로 본다.

2.113 채무가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즉,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이 지급기일⁴²⁾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연체가 된다. 발생주의 회계에서 연체된 채무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편제자가 추가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⁴³⁾ 연체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종류의 정책분석과 지불능력 평가에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채무통계에 추가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제5장 참조). 연체가 발생하는 시점, 즉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

42) 예를 들어, 채권만기일

43) 이외 비채무성 부채(Nondebt liabilities) 역시 연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파생계약은 채무상품은 아니지만, 금융파생계약의 만기가 도래해서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미상환된 경우 연체가 발생한다.

(지급이 되지 않은 시점)⁴⁴⁾에서부터 연체의 상황, 연장, 또는 채권자에 의한 면제 등으로 소멸될 때까지 연체 정보를 지속적으로 편제해야 한다.

2.114 제3자에 의해 보증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원채무자는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때까지 연체로 기록한다. 보증채무의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에 해당 채무는 보증인에게 귀속되고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연체는 소멸된다.⁴⁵⁾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이 요구된 경우, 동 금액은 보증인의 연체로 분류되지 않는 대신 지급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채무로 분류된다(상세한 내용은 제4장 채무인수 참조).

3. 가치평가

2.115 원칙적으로, 금융자산과 부채(채무상품 포함)는 거시경제 통계에서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동 금융자산과 부채를 재정상태표일(기준일)에 시장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처럼 본다는 의미이다. 채무증권 이외 채무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상품의 가치는 명목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여 추정해야 한다.

2.116 본 지침에 따르면, 채무상품은 기준일의 명목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거래된 채무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⁴⁶⁾ 두 평가기준 모두 채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44) 경우에 따라서 연체는 상환의 지체 또는 불능이라기보다는 운영상 이유(사소한 행정적 지연 등)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체도 원칙적으로 기준일에 미지급된 경우 연체로 기록해야 한다.

45) 원채무자가 보증계약의 일부로 인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46) 금융자산과 부채에 관한 가치평가원칙은 GFSM 제7장, BPM6 제6장 및 2008 SNA 제13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2.117 명목가는 법적 부채를 확정하는 출발점으로,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 분석에 사용된다. 명목가의 가치평가는 신용도의 변화 자체로는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18 거래된 채무증권의 시장가격은 통상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며⁴⁷⁾ 이는 경제주체들이 현재 특정 금융청구권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⁴⁸⁾ 이는 2008 SNA, GFSM 및 BPM6에서 채택한 가치평가원칙이다. 채무상품에 표시된 명목상 의무와 함께, 시장가격은 지불위험, 시장이자율, 시장의 유동성, 환매(또는 유사 형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의 사용 가능성, 잠재 구매자의 위험회피와 시장에 대한 기타 기회를 고려하게 한다. 시장가격은 실현가능한 금액이므로 특히 채권자에게 유용하다. 시장가격은 화폐 금융통계와 국제투자대조표는 물론, 국민계정과 정부재정통계의 재정상태표에서도 활용되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일관성 있는 기록을 위해 중요하다. 채무통계를 위해 액면가는 중요하다(문단 2.117 및 문단 2.120 참조). 유가증권 이외 상품의 경우 시장가가 잠재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기준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시장가를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

2.119 거래된 채무증권의 시장가는 저량이 측정되는 기준일의 통상 시장가에 따라 결정된다. 거래된 채무증권의 시장가에 대한 이상치는 해당 상품이 상당량 거래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되는 금융시장 또는 기타 금융시장에서의 시장가치이다. 다만 출처가 없는 경우, 시장가는 적절한 시장이자율에 따라 미래 지급액을 할인하여 추정할 수 있다. 기준일에 금융시장이 폐장한

47) 거래의 시장가는 자발적 매입자가 자발적 매도자로부터 무언가를 획득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환은 독립 당사자 간 오직 상업적 고려에 기준한 '상호 대등한 입장(at arm's length)'에서 이루어진다.

48) 고채무 빈곤국가 채무면제 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Initiative]과 쉽게 거래되지 않는 유가증권의 경우, 기준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미래 지급액을 할인한다. 이 방법은 기회비용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해당 프로그램(HIPC)의 국가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경우, 가장 최근 개장한 시장의 통상 시장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 시장의 경우 거래된 채무증권의 시장가는 지급 미도래 발생이자를 고려하지 않지만(‘공시가격’), 이러한 이자는 시장가에 포함되어야 한다(‘현금가격’).

2.120 채무상품의 명목가는 채무자 입장에서 가치평가의 척도이다. 어느 시점에서라도 명목가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명목가는 전형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조건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채무상품의 명목가는 발생시점의 채무가치에 거래 등 모든 미래의 경제유량(원금 지급)을 반영하고, 환율과 함께 시장가 변동을 제외한 기타 가치변동액을 반영한다. 명목가와 액면가의 용어의 구분은 거시경제통계 기준에서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명목가와 액면가가 혼용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채무상품의 명목가는 기존 약정이자율에 따라 미래이자와 원금지급액을 할인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⁴⁹⁾ 약정이자율은 고정 또는 변동일 수 있다. 고정이자율 상품과 계약에 따라 사전에 이자율이 확정된 상품의 경우, 적용되는 미래 상환일정과 이자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⁵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변하는 변동이자율을 채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본 장의 부록에서는 미래 이자와 원금 지급액을 할인하여 채무상품의 명목가를 계산하는 예를 다룬다.

2.121 채무상품의 액면가는 만기 시에 상환되어야 하는 할인되지 않은 원금을 말하며, 때로 명목가라 부른다. 총채무를 측정하기 위해 명목가에 대한 대응치로 액면가를 사용하면, 모든 상품에 일관성 없는 접근이 될 수 있기

49) 개별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여 모든 미래 기간 동안의 지급액을 할인한다. 일부 경우, 다양한 미래 지급액에 대해 각기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보증할 수 있다. 만기일까지 기간에 따라 단일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각 지급액에 대한 다른 할인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할인율을 10%로 할 때, 1년 만기 지급에 대한 할인 계수는 0.909[또는 $1 \div (1+0.1)$], 2년 만기 지급에 대해서는 0.826[또는 $1 \div (1+0.1)^2$]가 될 수 있다.

50) 계약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금액에 근거하여 채무의 존속기간에 걸쳐 이자율이 단계별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채무의 경우, 미래 지급액에 적용되는 할인계수의 기간별 모형(time profile)은 이러한 단계별 변화를 반영하여 비선형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이는 권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폭 할인채 및 무이자채권의 액면가는 미발생 이자(interest not yet accrued)를 포함하는데, 이는 발생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명목가와 액면가의 비교에 대하여는 본 장 부록 Box 2.4. 참조).

2.122 채무상품의 공정가는 ‘시장등가’를 말하며,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자발적인 상호 대등한 입장(an arm’s length)에서 거래를 통해 금융자산을 교환하거나 부채를 정산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금융청구권을 매각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추정치를 나타낸다. 용자자산의 공정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부기 항목에 표시해야 한다.

2.123 다음 두 절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채무상품과 거래된 채무증권의 가치 평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본다(이에 상응하는 금융자산 포함).

a. 거래되지 않은 채무상품

2.124 금융 및 기타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지 않는(또는 거래 가능한) 채무상품(용자, 현금과 예금, 기타 미지급/미수계정)은 명목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채무상품의 명목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금 상환, 채무 면제와 거래외 경제유량(물가 연동으로 발생한 경우 등)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상품의 명목가는 당초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채무상품의 명목가는 이자발생이나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인해 당초 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

2.125 용자는 명목가(당초 지급액에 발생한 이자를 더하고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로 기록한다. 명목가의 사용은 이용 가능한 자료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용자가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의 추정은 주관적일 수 있다. 또한 명목가는 실질적인 법적 부채와 채권자의 회수행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유용하다. 용자는 종종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거나 공정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추정할 수 있다. 명목가는 특히 용자가 부실화될 경우 채권자의 재무 상태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제시한다고 인식되고 있다.⁵¹⁾ 이와 같은 경우, 부실채권의 공정가뿐만 아니라 명목가에 대한 정보는 공공부문 순채무통계상 부기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⁵²⁾

2.126 예금과 기타 미지급/미수 계정은 명목가로 기록해야 한다. 이들은 명목가와 공정가와 관련하여 용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 청산 중인 은행 및 기타 공공 예금수취기업의 예금자산은 제각될 때까지 명목가로 기록되어야 한다. 손상된 예금(공공 예금수취 기관이 청산되지 않는지만 파산한 경우)은 동일하게 기록한다.

2.127 대부분의 무역신용장과 선급금처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채무상품의 경우, 차입 금액은 명목가로 기록해야 한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확정채무에 대한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⁵³⁾이 소요된 경우, 유사한 채무상품과 같이 만기와 기존 약정이자율을 반영한 금액만큼의 원금가치를 감소시켜야 한다. 일단 원금가치를 감소시키면,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원금을 할인할 때 적용한 이자율로 이자가 발생한다.

2.128 용자 등 일부 채무상품의 경우, 기간에 걸쳐 상품이나 기타 재화로 분할 납부한다는 상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당초 채무의 가치는 원금 지급액과 동일하다. 재화나 상품의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금의

51) 부실용자는 다음과 같다. (a)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b) 3개월(90일) 이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이자지급을 자본화(원금에 재투자)하였거나 합의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경우, (c)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등 3개월(90일)이 경과되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금을 부실용자로 재분류할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52) 손실을 고려하여 용자자산을 측정한다.

5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경우를 이례적인 오랜 기간으로 간주하느냐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이자율 수준이 높을수록, 연체된 지급에 대한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가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재화 및 상품의 시장가에 따라 감소된다.

2.129 물물교환협정에 따라 무역신용부채를 소멸하기 위해 제공된 상품, 기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채무의 생성시점, 즉 가치의 교환이 발생했을 때 결정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원금 가치는 만기와 기존 약정이자율을 반영한 금액만큼 감소되고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

2.130 연체의 명목가는 손실된 이자와 원금 지급액과 추가 이자의 발생 등 추후 경제유량을 반영한 가치와 동일하다.

2.131 명목가가 불확실한 거래되지 않는 채무상품의 경우, 기존 약정이자율로 미래 이자와 원금 지급액을 할인하여 명목가를 추정할 수 있다.

b. 거래된 채무증권

2.132 어음, 채권, 채무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자산유동화증권 등 금융 및 기타 금융시장에서 거래된(거래 가능한) 채무증권은 명목가와 시장가를 모두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거래된 채무증권의 경우, 명목가는 채무 발생시점의 가치와 추후 경제유량으로 결정될 수 있는 반면, 시장가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기초한다.

2.133 통상 거래가 가능하나 시장가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채무증권의 경우, 채무증권과 관련하여 미래 예상되는 지급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⁵⁴⁾를 산출함으로써 시장가를 측정할 수 있다. Box 2.2.에서는 시장가를 추정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과 다른 방법을 보여준다. 비상장 유가증권

54) 현재가치는 미래 지급액 또는 적정 복리이자율로 할인된 일련의 지급액에 대한 현재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를 '적정가(time value of money)' 또는 '현금흐름 할인(discounted cash flow)'이라 부른다.

의 경우, 회계 또는 규제 목적으로 보고된 가격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방법보다 선호도가 낮다. 유사하게 대폭할인채 및 무이표채권의 경우, 시장가가 없을 때 발행가격에 할인 상각액(amortization of the discount)을 더한 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Box 2.2. 시장가치 추정하는 일반적인 방법

거래 가능한 채무증권에 대한 시장가격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라 불리는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2. 유사한 금융자산과 부채의 시장가를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현재의 시장가 또는 시간에 따른 할인된 미래 현금흐름의 가치를 기준으로 금융자산과 부채를 평가한다. 이는 이론과 실무 두 가지 측면에서 적합한 가치평가기법이다. 금융자산 또는 부채의 시장가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계산된다. 시장가는 다음 방정식을 통해 계산된다.

$$\text{할인 현재 가치} = \sum_{t=1}^n (\text{현금흐름})_t / (1 + i)^t$$

여기서 (현금흐름)_t는 t(미래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n은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미래 기간의 수를, i는 기간 t 동안 미래 현금흐름에 할인을 적용한 이자율을 의미한다. 이 방정식에서는 채무상품의 존속기간 동안 단일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는 변동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미래 현금흐름을 확실하게 알 수 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만기와 신용도에 대한 시장이자율(또는 일련의 시장이자율)을 파악할 수 있다면, 금융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데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시장가를 직접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유사 금융상품의 시장가를 직접 적용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만기가 5년 남은 채권의 시장가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5년채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유사 금융상품의 시장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상품 간의 유동성과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장가치를 다소 조정해야 한다.

일부 경우, 금융자산 또는 부채는 특정 금융상품과 유사하지 않더라도 여러 금융상품 각각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경우,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시장가와 기타 특성(예, 상품의 종류, 발행자, 만기, 신용등급 등)에 대한 정보는 해당 상품의 시장가를 추정할 수 있다.

2.134 매입-매도 차액(buy-sell spread)이 발생하는 시장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 상품의 가치는 중간가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차액은 매입자와 매도자가 시장 플랫폼 또는 딜러 등 중개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는 암묵적인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c. 보험, 연금 및 표준화 보증 상품

2.135 채무상품은 제3장에서 정의하기로 한다. 거래되는 채무증권과는 달리, **보험, 연금 및 표준화 보증 상품** 형태의 채무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 명목가를 산출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채무상품에 적용하는 가치평가원칙은 시장 가치평가와 동일하다.

2.136 공공부문 단위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연기금의 운영자이자 표준화 보증의 발행자로서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 상품에 대한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⁵⁵⁾ 이들 부채는 다음의 거시경제 통계로 평가된다.

- **책임준비금(technical reserves):** 책임준비금은 재정상태표(또는 채무) 작성일 기준으로 기납입 미경과 보험료와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 적립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미지급 보험금은 보험금 확정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현재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미 발생했지만 보고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충당금(allowances)과 함께 소송 중인 보험금도 포함된다. 손해보험료의 선급금(미경과 보험료)은 보험료 대부분이 보험으로 인한 보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선급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는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수익이 될 수 없다. 선급보험료의 가치는 비율로 나누어 결정한다. 예를 들어, 120 통화단위의 보험료를 내는 1년 유효보험계약이 4월 1일에 시행되고 연도별로 회계장부에 기록한다면, 해당 연도의 경과보험료는 90이다. 선급보험료란 회계기준일을 지난 기간에 대해 수급한 실제 보험료이다. 주어진 사례에서와 같이,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에, 미경과 보험료 30이 남아 있을 것이고, 이는 다음해 첫 3개월 동

55) 퇴직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급여의 미래 지급에 대한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단 2.80을 참조.

안 보험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생명보험과 연금수급권:** 생명보험과 연금수급권에 대해 저량으로 기록된 금액은 이미 발생한 미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을 나타내는 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과 유사하다. 생명보험의 경우, 적립금은 상당한 수준이며,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보험금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⁵⁶⁾
- **확정급여형 연금의 수급권:** 해당 수급권은 사전에 합의한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비자립형 연기금과 비적립식 연기금 포함)의 부채는 약정된 급여의 현재가치를 보여준다.
- **확정기여형 연금의 연금수급권:** 해당 수급권은 미래 연금 수급자의 부담금(contributions)으로 획득한 금융자산의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확정기여형 연기금의 채무는 기금 자산의 현재 시장가치와 동일하다.⁵⁷⁾
- **표준화 보증 충당부채:** 보증인의 회계에서 부채의 가치는 미지급 보증에 대해 예상되는 지급요청액의 현재가치로, 손해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인의 순 회수금액과 같다. 이러한 부채를 표준화 상품에 대한 충당부채로 칭한다.

2.137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 증권 형태의 보험계약자로서 공공부문 단위의 자산 가치는 선급보험료와 공공부문 단위의 미지급 청구권(claims)에 대한 추정액의 합으로 결정된다.

2.138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및 연기금과 표준화 보증상품의 운영자는 해당 제도에 따른 부채를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은 해당 채무상품 통계를 편제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된다.

56) 보험회사의 기업 계정 중 일부는 보너스와 리베이트에 대한 준비금을 의미한다. 이는 전 기간에 걸쳐 이익을 분산시키고, 가능하면 해당 보험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일부 이익을 유지하려는 보험업계의 관행이 낳은 결과이다.

57) 연금수급권 산정 기준은 2008 SNA 제17장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4. 통화

a. 계정단위

2.139 채무통계, 특히 대외채무편제는 부채가 최초로 다양한 통화로 표시되거나 특별인출권(SDRs)과 같은 다른 가치기준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다른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전환하거나 상품을 기준계정단위(reference unit of account)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분석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채무통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부문부채의 중요부분이 외화단위로 표시된다면, 국제유동성관리 등 정책적인 이유와 더불어 의미 있는 통계를 편제하기 위하여 통화 단위별 채무 자료가 필요하다.

2.140 국내 편제의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대외채무를 측정하는 데 자국통화 단위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국 통화단위로 표시된 대외채무는 국민 계정과 거래외 경제 통계 대부분과 양립할 수 있다. 하지만 자국 통화가 기타 통화와의 관계에서 큰 변동성이 있으면, 평가의 변동이 연도별 비교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가 유용할 수 있다.

b. 통화 전환

2.141 다른 통화로 표시된 채무(채무상품 형태의 금융자산)를 국내통화로 전환하는 데 적용할 가장 바람직한 환율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장(현물) 환율이다. 매입환율과 매도환율의 중간값(mid-point)을 적용하여야 한다.⁵⁸⁾

2.142 채무 거래의 경우, 각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환율을 통화전환

58) 복수환율제도에 따라 채무를 전환하는 경우, 특정 부채(및 대응하는 금융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환율로 재정상태표일 환율을 사용해야 한다. 복수환율제도는 당국이 정한 환율의 편성표에 근거하여 다양한 범주의 거래나 거래업체에게 각기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일 거래에 대한 일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대개 유사한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일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최단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해야 한다.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처럼, 일부 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량에 대하여는 통화전환시 동 유량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통화전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BPM6 문단 3.104~3.108에서 다룬다.

c. 자국통화와 외화

2.143 한 경제권에서 자국통화는 외화와 구별된다. 자국통화는 그 경제권의 법적 통화이며, 경제권의 통화당국이 발행한다. 즉, 개별 경제권 또는 경제권이 속한 공동 통화지역 중 한 곳이다. 다른 모든 통화는 외화로 취급된다.

2.144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미국 달러처럼 다른 경제권 또는 그 경제체제가 속하지 않은 공동 통화지역의 통화당국이 발행한 법적 화폐를 사용하는 경제체제는 비록 국내 거래에서 이 통화가 사용되더라도 외화로 분류되어야 한다. 예탁된 금계정(unallocated gold accounts)과 금이나 귀금속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기타 예탁된 금계정은 외화로 표시된 것으로 취급한다.

2.145 특별인출권(SDRs)은 SDR 바스켓(SDR basket)에서 통화를 발행하는 경제권을 포함하는 모든 경우에 외화로 취급한다. 통화 연합을 제외한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기타 통화단위(문단 2.144 참조)는 외화로 간주한다.

d.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2.146 표시통화와 결제통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표시통화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명시되어 유량과 저량의 가치가 고정된 통화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현금흐름은 표시통화를 사용하여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결제 또는 회계 작성을 위해 자국통화 또는 다른 단위로 환산된다. 표시통화는 거래가와 보유손익을 구별하는 데 중요하다. 본 지침에서는 채무구성을 설계할 때 표시통화의 사용을 권고한다(제5장 참조).

2.147 결제통화는 표시통화와 다를 수 있다. 표시통화와 다른 결제통화를 사용하면 매번 결제 시마다 통화 환산이 수반된다. 결제통화는 보유자산은 물론 국제유동성과 잠재적 외화 고갈을 측정하는 데 중요하다.

2.148 채무상품은 만기결제 및 외화와 연계된(또는 지수화된) 모든 지급액과 모든 주기적인 결제(중도 이자지급 쿠폰) 둘 다 자국통화로 결제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통화는 외화가 된다. 일부 채무상품은 둘 이상의 통화로 표시된다. 그러나 미지급금이 특정 통화와 연계되는 경우, 그 부채는 그 특정 통화로 귀속되어야 한다.

5. 만기

2.149 채무상품의 만기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채무가 소멸⁵⁹⁾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채무상품의 만기는 단기 및 장기 모두 가능하며, 이러한 구분은 채무의 유동성 규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 단기는 요구불⁶⁰⁾ 또는 1년 미만의 만기로 정의된다.
- 장기는 1년 이상의 만기 또는 불특정 만기(단기에 포함되는 요구불 제외)로 정의된다.

59) 통계 지침에 따르면, 본 기간은 채무의 발생일 또는 기준일(당초 만기/잔여 만기, 각각)로부터 채무가 소멸되는 날짜까지를 지칭한다.

60) '요구불'이란 채권자가 내리는 결정을 의미하며, 그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언제라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간은 단기 또는 장기가 될 수 있다.

2.150 만기란 다음을 의미한다.

- 발행일로부터 최종 계약상 상환예정일까지 기간으로, 당초 만기
- 기준일(재정상태표일)로부터 최종 계약상 상환예정일까지 기간인 잔여 만기 또는 잔존 만기

2.151 본 지침은 당초 만기 및 잔존 만기를 토대로 채무통계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다음 세 가지 분류를 권고한다.

- (a) 당초 만기를 기준으로 한 단기 채무
- (b) 만기가 1년 미만의 장기 채무⁶¹⁾
- (c)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채무

2.152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 채무를 산출하기 위해 (b) 항목은 (a) 항목과 결합될 수 있다. 당초 만기를 기준으로 장기 채무를 산출하기 위해 (b) 항목은 (c) 항목과 결합될 수 있다.

2.153 제공된 정보의 내용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권고하는 이유이다. 당초 만기를 기준으로 한 단기 채무는 총 대외채무 잔액과 구분된다. 만기가 1년 미만 남은 장기 공공부문 미지급 채무(당초 만기)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대용치는 만기가 1년 미만 남은 장기 공공부문부채(당초 만기 기준)에 대한 미할인 원금의 가치이다. 이러한 대용치는 다음 연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이자지급을 다루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채무상환일람표의 지급 예상에 대한 원칙을 이용하여 편제할 수 있다(제5장 참조).

61) 개념상 기준일 현재 만기가 1년 미만 남은 장기 미지급 대외채무(당초 만기)의 가치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할 금액의 할인가라 할 수 있다.

6. 연결

2.154 연결이란 일련의 단위(또는 실체)가 마치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취급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GFSM은 단위군에 통계를 연결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일반정부 부문과 그 하위부문에 대한 통계는 연결기준으로 표시된다. 공공부문 단위에 포함되어 표시되는 경우, 공기업에 관한 자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된다. 공기업에 대한 별도의 하위부문과 일반정부 단위에 연결된 공공부문이다. 이 두 경우 모두 통계는 각각 그룹 내 연결기준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155 연결은 연결 단위 간 발생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자-채권자 관계의 제거를 수반한다. 달리 말해, 하나의 단위의 거래 또는 저량은 두 번째 단위에 대해 기록된 동일한 거래 또는 저량과 한 쌍을 이루며, 이 두 거래와 저량은 제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반정부 단위가 다른 일반정부 단위에서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고 이 두 단위가 연결되어 있다면, 자산 및 부채로 보유하고 있는 저량은 마치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고된다. 만약 중앙은행이 일반정부의 예금 및(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금융자산과 부채에 관해 두 단위가 연결되고 있다면, 연결 공공부문의 금융자산과 부채는 예금 및(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고된다.

2.156 공공부문 통계를 편제할 때는 두 유형의 연결이 필요하다.

- 첫째, 특정 하위부문(예, 중앙정부 또는 비금융 공기업의 하위부문 내 연결)에 대한 연결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특정 하위부문 내 연결
- 둘째, 공공부문을 특정 집단에 대한 연결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공공부문 하위부문 간의 연결(예컨대, 일반정부 부문, 비금융 공기업의 하위부문 및 금융 공기업의 하위부문 간 연결)

2.157 실무적 관점에서 어떠한 채무상품이 연결되어야 하는지와 연결의 메커니즘은 제8장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된다.

부록: 이자발생—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BPM6의 제11장에 근거한 본 보론(annex)은 이자발생에 관한 개념체제와 채무상품별 발생 원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1. 개요

2.158 이자란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을 다른 기관단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함으로써 특정 종류의 금융자산(SDRs, 예금, 채무증권, 용자, 기타 미수계 정)의 소유자가 수취하는 일종의 투자소득의 한 형태이다.

2.159 이자는 발생주의기준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액에 대해 계속해서 발생하 는 것으로 기록된다. 계약협정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미지급액, 미 리 결정된 금액의 합계, 정해진 지표에 따른 변동 합계 또는 이러한 방법들 의 일부 조합에 대한 비율일 수 있다. 발생주의기준으로 이자가 발생하면서 미지급 채무 또한 증가한다. 즉, 미지급 경과이자(interest accrued but not yet paid)가 미지급 채무가치에 합산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일컫는 이자지 급은 채무자의 미지급 채무를 감소시키는 거래이다.

2.160 미지급 채무를 감소시키는 주기적 채무상환은 초기 원금(초기 선급금 또는 차입금 또한 초기 원금이라고 칭함) 상환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할 수 있다. 현금주의 기준에서 보면 주기적 채무상환은 이자지급 또는 원금지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61 우선, 공공부문부채의 명목가와 시장가를 표시하는 데 있어 이자발생 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부 핵심원칙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함시킨다.
- 이자의 발생은 Box 2.3.에 설명된 대로 복리계산법으로 계산될 수 있다.
- 할인 발행된 모든 상품은 유사한 방식으로 취급한다.
- 이자발생은 변동이자율 및 지수연동상품에도 적용한다.

2. 이자발생의 개념체계

a. 현금흐름을 알 수 있는 채무증권 이자

2.162 이자란 채권자가 용자해준 금액의 상환에 덧붙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자는 채무상품의 출시 초기에 책정된 조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전체 존속기간 동안 상품에 대해 발생한다. 발생이자는 당초 만기수익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채권 발행 시 책정된 단일 유효이자율은 채권의 만기일까지의 각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산출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채무자 접근법(debtor approach)’이라고 알려져 있다.

2.163 발행가격과 상환가격이 동일한(즉, 액면가로 발행된) 채무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전체 존속기간 동안 발생한 총이자 는 주기적 이자지급으로 제공된다. 이자지급이 고정된 경우, 발생이자 는 일일복리공식을 이용해 이자지급을 해당기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이자지급은 각 이표 지급일에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증권 보유자에게 계약상 약정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지급은 이표율, 채무증권의 액면가, 연간 지급 횟수에 따라 산출되며 발생이자와는 상이할 수 있다).

2.164 단기 환어음과 무이자 채권과 같은 특정 채무증권에 있어 채무자는 그 부채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실상, 채무자의 부채는 당초 차입한 금액과 부채의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하여 축

적된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일시불로 변제된다. 이러한 유형의 상품은 초기 차입금액이 상환될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할인되었다고 한다. 계약 종료 시에 상환될 금액과 당초 차입한 금액 간의 차이는 이자로서, 계약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회계기간 동안 할당된다. 각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비용으로 기록되며 재정상태표에서 동일한 금액만큼 상품에 대한 채무자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그 예시는 Box 2.4.에 제시되어 있다.

2.165 대폭할인채는 다소 복잡한 경우로 이 또한 주기적으로 이표를 지급해야 하는 할인 상품이다. 이러한 경우, 발생이자(상환금액과 발행가격의 차이)를 야기하는 각 기간별 발생이자의 금액과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표를 합산한 금액이다. 주기적 이자지급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문단 2.163에서 설명된 대로 산출되며, 할인발행차금 상각(amortization of the discount, 발행가격과 상환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한 이자는 문단 2.164에서 설명한다. 상각률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일별 상각률을 적용하면 상각된 할인발행차금을 각 보고기간으로 배분할 수 있다.

Box 2.3. 복리 계산

a. 기본 복리

기본 복리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미래 가치} = \text{현재 가치} \times (1 + \text{이자율})^n$$

여기서 n 은 전체 기간에 걸쳐 이자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수를 뜻하며 ‘이자율’이란 연간 이자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율 5%를 적용하면 1년 동안 100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자가 발생한다.

$$105.00 = 100 \times (1 + 0.05)^1$$

b. 연속 복리

거시경제 통계에 따르면 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연속적으로 미지급 원금에 가산된다. 지정 이자율(limit)에서부터 이자는 매 순간 발생한다. 실제로 이자는 일간, 월간, 분기 또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text{미래 가치} = \text{현재 가치} \times [1 + (\text{이자율} \div p)]^{np}$$

여기서 p 는 연간 이자가 발생하는 횟수이며 n 은 전체 기간에 걸쳐 이자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수(즉, $p \times n$ 이자가 발생하는 전체 기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5%의 이자는 1년 동안 100에 대해 계속해서 발생한다. 총 발생이자 는 다음과 같다.

$$\text{일간: } 105.127 = 100 \times [1 + (0.05 \div 365)]^{1 \times 365}$$

$$\text{월간: } 105.116 = 100 \times [1 + (0.05 \div 12)]^{1 \times 12}$$

$$\text{분기: } 105.095 = 100 \times [1 + (0.05 \div 4)]^{1 \times 4}$$

$$\text{연간: } 105.000 = 100 \times [1 + (0.05 \div 1)]^{1 \times 1}$$

c. 채무증권에 대한 할인/할증으로 인한 이자의 발생

상기 연속 복리이자 계산식을 이용하여 할인 발행된 채무증권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text{만기 또는 미래가치} = \text{발행가격 또는 현재가치} \times [1 + (\text{이자율} \div p)]^{np}$$

여기서 p 는 연간 이자가 발생하는 시기의 횟수이며 n 은 전체 기간에 걸쳐 이자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수(즉, $n \times p$ 이자가 발생하는 전체 기간)를 말한다.

$$[1 + (\text{이자율} \div p)] = (\text{만기 가치} \div \text{발행 가치}) [1 \div (1 \div (np))]$$

예컨대, 액면가치가 100인 5년 만기의 증권은 80에 발행된다. 채무증권의 할인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월별로 계산된다. 이자는 다음과 같다.

$$(100 \div 80) [1 \div (12 \times 5)] = 1.003726 \text{ (월 } 0.3726\%)$$

따라서 첫 번째 달 말에 원금 잔액은 $1.003726 \times 80 = 80.30$ (이자 0.30), 두 번째 달 말에는 $1.003726 \times 80.30 = 80.60$, 60개월 말(5년) 원금 잔액의 가치는 100이 된다. 채무증권의 할인으로 발생한 총이자 20($100 - 80$)이며, 동 이자에 발생 가능한 이표이자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표이자 지급은 부가적인 이자 요인(예, 고정 이표)이다.

채무증권의 대한 할증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부(-)의 금액이다.

2.166 채무증권은 (할인이 아닌) 할증하여 발행될 수도 있다. 발생이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할인된 상품의 경우와 동일하다. 단, 할증 발행된 경우 상환 금액과 발행가격 간의 차이가 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상각되고 각 기간별 발생하는 이자금액을 (증가가 아닌)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Box 2.4. 무이자 채권에 대한 발생이자 계산의 예

이표 없이 5년 내 100을 상환해야 하는 한 채권이 1차년도, 1월 1일에 발행되었다.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이 해당 만기 및 등급에 대해 10%라고 한다면, 동 채권은 62.09의 가격으로 발행될 것이다(Box 2.3.의 식 = $100 \div [1 + 0.10]^5$). 이자는 연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연간 이자 계산 및 연동되는 원금 잔액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채권의 최초 명목가치 (a)	발생된 이자 거래 (b)	채권의 최종 명목가 (c)=(a)+(b)	채권의 관찰된 최초 시장가 (d)	거래의 경제유량(재평가) (f)=(g)-(d)-(b)	채권의 관찰된 최종 시장가 (g)	채권의 액면가
1차년도	62.09	6.21	68.30	62.09	1.70	70.00	100.00
2차년도	68.30	6.83	75.13	70.00	-5.70	71.13	100.00
3차년도	75.13	7.51	82.64	71.13	1.85	80.49	100.00
4차년도	82.64	8.26	90.91	80.49	6.25	95.00	100.00
5차년도	90.91	9.09	100.00	95.00	-4.09	100.00	100.00
1~5 년도		37.91			0.00		

주:

- 각 기간별 이자는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다(채무자 접근방식).
- 5년 동안의 이자의 합계는 37.91이며, 이는 62.09(발행 시 가격)와 100(상환 시 가격)의 차이와 같다.
- 매년 발생된 이자는 발생이자의 누계액이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 발생이자에 상응하는 기록은 재정상태표상 채무증권 부채의 증가로 나타난다.
- 본 예시에서 채권의 시장가가 제시되었으며 재평가액(보유이익/손실)은 잔여액(즉, 관찰된 시장가와 발생이자의 차이)으로 산정되었다. 재평가는 시장이자율의 변화 등 공시된 시장가격의 변동에서 비롯된다. 본 예시에서는 환율변화에 따른 재평가는 고려하지 않았다.
- 채권의 명목가는 발행가격과 발생이자의 합으로 산정된다.
- 채권의 액면가는 각 연도별로 100이다. 따라서 만기 시까지 액면가를 적용하면 채무의 가치가 과대평가된다.

b. 지수연동 채무증권

2.167 지수연동 채무증권의 경우, 지수연계방법은 만기에 상환되는 금액 또

는 이자지급액(또는 둘 다)을 당사자들 간의 합의된 지표에 연결시킨다. 그 지표의 가치는 사전에 알려지지 않는다.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지수연동 채무증권의 경우 이러한 금액은 상환시점에만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상환 전의 총이자 유량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다. 준거지표의 값이 알려지기 전에 발생한 이자를 추정하기 위해 일부 대용치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 방식을 구별하는 것이 유용하다.

-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은 지수연계하지 않고 이자지급만 지수연계된 경우
- 이자지급은 지수연계하지 않고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지수연계된 경우
-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과 이자지급이 모두 지수연계된 경우

2.168 지수연동 채무증권에 대해 기술된 다음의 원칙은 모든 지수연동 채무상품에 적용된다.

2.169 이자지급만 지수연동된 경우, 지수연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 전체는 이자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로 취급한다. 이자지급일 이후 작성된 자료에 한하여 지수값은 알려지며 지급액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자료가 이자지급일 이전에 수집되는 경우, 이자지급 기간에 속하는 일부 동안의 지수값 변동이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170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지수연동되는 경우, 상환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금액은 불확실하다. 어떤 경우에 만기시점이 수년 후가 될 수 있다. 지수가 준거항목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한정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BPM6, 문단 11.59~11.65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Box 2.5. 지수연동채권에 대한 발생이자 계산의 예 [포괄적 지수]

채권은 1차년도 1월 1일 발행하며 액면가 1,000, 5년 만기, 이표 없는 포괄적 가격지수 연동으로 한다. 해당 기간의 시작 시 지수가치는 100이다.

파생이자와 재평가(보유 이득/손실)가 있는 지수 및 채권가치는 다음과 같다(재평가 외 거래외 경제유량은 없는 것으로 가정).

	포괄가격지수: 12월 31일	발생이자	거래외 경제유량 (재평가)	채권의 관찰된 시장가: 12월 31일	채권의 명목가: 12월 31일
1차년도	107.0	$70 = [(107 \div 100) - 1] \times 1,000$	-12	1,058	1,070
2차년도	113.0	$60 = [(113 \div 107) - 1] \times 1,070$	-17	1,101	1,130
3차년도	129.0	$160 = [(129 \div 113) - 1] \times 1,130$	58	1,319	1,290
4차년도	148.0	$190 = [(148 \div 129) - 1] \times 1,290$	10	1,519	1,480
5차년도	140.3	$-77 = [(140.3 \div 148) - 1] \times 1,480$	-39	1,403	1,403
1~5년도		$403 = [(140.3 \div 100) - 1] \times 1,000$	0		

주:

- 5년 동안의 총이자(403)는 지수의 변화(40.3% 증가)에 따라 결정된다.
- 채권의 특성상 시장이자율, 신용등급 및 지수의 향후 경로에 대한 예상의 변화 등과 같은 시장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재평가가 발생한다. 하지만, 지수연동가로 채권이 상환될 때 채권의 존속기간 동안 재평가액은 0이다. 이러한 예에서 재평가액은 잔여액(즉, 관찰된 시장가치와 발생이자 간의 차이)으로 산정된다.
- 지수가 감소하는 경우 이자는 부(-)의 금액으로 발생할 수 있다.
- 발생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은 금융계정에 채무증권의 증가로 기록한다.
- 시장이자율의 변동은 채권가치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자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채권의 명목가는 발행가격과 발생이자의 합으로 산정되며 지수연동 채권가치와 일치한다.

2.171 만기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이 포괄적 기준의 항목(소비자물가지수 등)으로 지수연동되는 경우, 보고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 보고기간에 포함되는 이자지급액의 지수연동으로 초래되는 금액(문단 2.169 설명)
- 관련지수의 변동으로 인한 보고기간 초기와 말기 사이의 미상환 잔액의 변화

2.172 Box 2.5.는 포괄적 기준지수를 이용하여 지수연동채권에 대한 발생이자를 계산하는 예이다.

2.173 만기지급액 또는 이자지급액과 만기지급액이 보유이득 목적을 포함하는 한정된 지수(금지수와 같은)와 연동되는 경우, 보고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발행시점에 만기수익율을 고정시킴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이자는 최초의 발행가격과 시장의 기대가격 간 차이를 조정한 비율로 상품의 만기 시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택할 경우, 발행 시 만기수익률은 비용으로 계상되는데, 만기수익률에는 상품이 구성될 당시 지수연동에 따른 추정치가 포함된다. 당초 예상된 경로에서 기초지수가 이탈한 경우 상품의 존속기간 동안 보유이익 또는 손실이 야기되며 이는 만기 동안 취소가 불가능하다.⁶²⁾

2.174 만기지급액과 이자지급액 모두가 외화와 연동되는 채무상품은 그 외화로 표시되는 것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동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 거래외 경제유량, 저량은 외화표시상품에 적용되는 동일한 원칙을 사용하여 산출된다. 이자는 표시통화로 외화를 사용하여 해당 보고기간 동안 발생하며 시장 환율의 중간값(mid-point market exchange rates)을 적용하여 자국통화로 환산된다. 이와 유사하게, 원금 잔액은 외화를 산정단위로 하여 가치평가를 하는데, 이때 (모든 발생 이자를 포함한) 전체 채무상품의 국내통화 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말 환율을 기준 환율로 한다. 환율과 이자율 변화에 따른 채무증권의 시장가의 변화는 재평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c. 파생금융상품이 내재된 채무증권

2.175 콜옵션, 풋옵션 또는 주식전환옵션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이 내재된 채

62) 지수연동상품의 가치변화는 포괄적 지수를 활용하든, 한정적지수를 활용하든 명목가치에 포함된다.

무증권의 경우, 발생이자란 그러한 특성이 없는 증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된다. 옵션의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옵션의 존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재된 조건이 실현될 때 증권은 상환되고 이자의 발생은 중단된다.

3. 부실채무에 대한 이자발생

2.176 부실채무액은 채무자의 법적 책임으로 남아 있으며 (예컨대, 상환 또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쌍방 약정의 결과로)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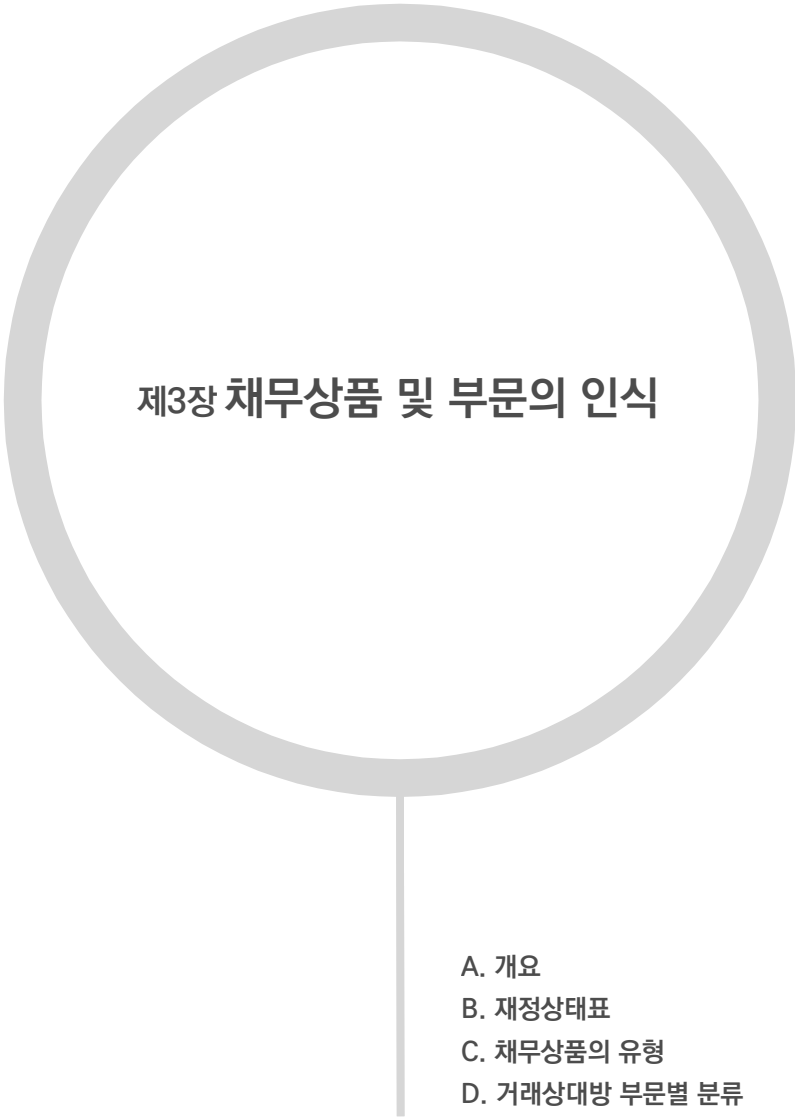
2.177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만기에 지급되지 않는 채무상환 연체(주기적 지급 및 만기 시 지급 모두 포함)는 해당 부채가 소멸될 때까지 동일한 상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채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연체는 원채무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한다. 단, 연체에 대한 다른 이자율이 채무계약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경우 명시된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명시된 이자율은 원채무에 이자뿐 아니라 벌칙이자율도 포함할 수 있다. 연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상품의 조건과 특성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해당 융자금에 대한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변화는 금융자산 및 부채 계정의 기타 변화에 대한 재분류 조정으로 계상되어야 한다(연체 처리에 대해서는 문단 2.112~2.114 참조). 만일 계약이 재협상되는 경우, 거래는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된다. 한 항목을 신용융자로 구입하고 채무자가 매입 시 명시한 기간 내에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이자로 간주되며 그 채무가 소멸될 때까지 발생한다.

2.178 부실화된 채무를 포함하는 일회성 보증이 실행되면, 보증인은 그 부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당 채무보증이 실행된 시기부터, 발생한 이자는

보증인의 책임이 된다. 반면, 보증인은 보증이 실행되기 전이라도, 자신이 보증인 역할을 하는 용자금 또는 다른 단위의 이자발생부채에 대해 만기가 도래하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보증인이 부채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원채무자의 책임이며, 보증인에 의한 모든 지급은 보증인과 원채무자 사이의 계약 약정에 준하여 분류되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제시한다.

4. 금융리스 이자

2.179 금융리스를 용자로 취급함은 그 용자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의 시장가와 동일한 가치의 용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 용자는 리스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상환된다. 간주된 용자에 대한 이자율은 임대 시작 당시의 자산의 시장가를 적용하여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만기 시 '상환'될 모든 가치 포함)로 지급해야 할 총액에 의해 암묵적으로 결정된다. 금융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루고 있다.



제3장 채무상품 및 부문의 인식

- A. 개요
- B. 재정상태표
- C. 채무상품의 유형
- D. 거래상대방 부문별 분류

제3장 채무상품 및 부문의 인식

본 장에서는 채무상품을 소개하고 채권자의 부문별로 채무를 분류한다. 또한 2008 SNA의 용어를 소개한다.

A. 개요

3.1 채무는 재정상태표상 부채의 하위항목이다. 본 장에서는 재정상태표와 그 구성요소를 간략히 살펴보고 재정상태표상 채무와 그 이외의 요소 간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채무상품의 상세한 분류에 관해 알아본다. 본 장에서는 채무상품을 보유한 채권자의 부문별 채무상품 분류에 관해 논의한다.

B. 재정상태표

3.2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작성한 기관단위 또는 단위군이 소유한 자산과 부담해야 할 부채의 저량 가치에 관한 표이다.¹⁾ 재정상태표는 보통 보고기간 기말에 작성되는데, 이는 다음 보고기간의 기초가 된다. 거시경제통계 재정상태표에서는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 순자산을 구분한다.

3.3 기관단위(또는 단위군)의 순자산은 자산의 총가치에서 부채의 총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부(wealth)의 척도이다. 또한 순자산은 이전 모든 기간의 거래나 거래외 경제유량²⁾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관단위(또는 단위군)의

1) 재정상태표의 편제는 공공부문, 일반정부 부문, 일반정부 부문의 하위부문, 기타 공공부문 단위나 단위군 모두 가능하다.

2) 거래외 경제유량이란 거래 이외에 발생하는 유량을 말한다. 거래외 경제유량은 보유이익/손실(재평가)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으로 나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록 2 참조.

순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총가치에서 부채의 총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³⁾

3.4 거시경제 통계체제에서는 경제적 자산만을 기록한다. 경제적 자산이란
(i) 기관단위에 의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경제적 소유권⁴⁾이 행사되고,
(ii) 일정 기간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자산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편익이 발생될 수 있는 실체를 말한다.

1. 부채와 금융자산

3.5 부채는 특정 상황하에서 한 단위(채무자)가 다른 단위(채권자)에게 자금
이나 기타 자원을 공급할 의무를 가질 때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지
불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명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의해 발생되
며, 이러한 계약에 의한 지불은 무조건적이다. 이미 제2장 문단 2.8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법적 효력과 향후 이전지급을 요하는 상황에 의해서도 부채
가 발생할 수 있다.

3.6 부채가 존재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채에 상응하는 금융청구
권을 갖는다. 금융청구권은 보통 자산의 소유주(채권자)가 부채의 조건에 의
해 다른 기관단위로부터 자금 또는 기타 자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자산으로, 금융청구권은 무조건적이다.⁵⁾ 금융청구권은 가치 저장수단
이 되거나 이자, 기타 재산소득, 보유이익 등을 발생시킴으로써 채권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금융청구권은 주식 및 투자기금 지분, 채무상품, 파생금융
상품, 주식매입선택권, 예약된 금계정형태의 화폐용 금 등으로 구성된다. 금

3) 부채의 총가치에서 금융자산의 총가치를 차감하는 것과 같이 계산할 경우 그 결과는 순금
융부채라 칭한다.

4) 경제적 소유권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산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대가로
그에 따른 편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기관단위에 부여한다.

5) 그 이외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청구권도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채무자는 상환을 요구받는 대로 무조건 이를 시행해야 하는 반면 요구 자체는 채권
자의 자유재량에 따른다.

용자산은 금융청구권과 통화당국이 준비자산(reserve asset)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괴로 구성된다.

3.7 채무상품과 주식 및 투자기금지분은 한 기관단위가 다른 기관단위에게 자금이나 기타자원(예, 매입채무의 경우 재화와 같은)을 제공하고, 다른 기관단위는 미래에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금융상품이다. 반면, 금융파생상품은 해당계약이 위험이전(risk transfer)을 수반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파생상품계약은 자금이나 기타자원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 항목의 소유권 변동 없이 당사자 간 항목의 가치를 변동시키는 것이다.

3.8 대부분의 경우, 부채(와 그에 대응되는 금융청구권)는 채무자-채권자 관계를 명시하는 공식 문서에 의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부채는 금융리스 계약에 따라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명목용자와 같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 애초에 부채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계약에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는 순간 소멸된다.⁶⁾

3.9 기업 및 이와 유사한 법적 형태의 조직이 발행한 주식 및 투자기금 지분은 발행 단위의 부채로 취급된다. 해당 청구권의 소유자가 발행 단위에 대해 사전에 결정되거나 정해진 금전적 청구권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식 및 투자기금 지분은 소유권자에게 배당금과 기타 소유권에 따른 분배이익 등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주식 및 투자기금 지분은 소유권자가 보유회익을 얻으리라는 기대하에 보유하는 일이 많다. 발행 단위가 청산될 경우, 주식 및 기타지분은 채권자의 청구권이 모두 충당된 이후 단위의 잔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이 된다.

3.10 공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행한 주식이나 다른 형태의 지분이 있을 경우, 이는 해당 기업의 부채이자 정부 또는 이를 보유한 기관단위의 자산으로 인

6) 부채는 채권자의 철회에 따라라도 소멸될 수 있다.

식된다. 공기업이 어떤 형태의 주식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해당 공기업의 잔여가치에 대한 부문 단위의 청구권을 감안하여 기타 형태의 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11 실제 부채(와 자산)는 재정상태표에 포함한다.⁷⁾

- 우발자산과 우발부채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금융자산 및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 특정 단위의 향후 부채(확정부채든 우발부채든) 또는 향후 지출을 위해 기업에서 별도로 적립한 충당부채(provisions)는 거시경제 통계체제에서 인식하지 않는다.
-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향후 사회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약정은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문단 2.80 참조).⁸⁾
- 신용여신, 신용장, 용자약정은 미래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그러나 용자 형태의 금융자산(및 부채)은 자금이 실제로 선지급되기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미불입 자본금(uncalled share capital)은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한 우발성으로 간주된다.
- 미래 환경정화, 폐쇄, 처리비용을 산정한 환경부채는 인식하지 않는다.

3.12 금괴 형태의 화폐용 금은 금융청구권이 아닌데, 이는 다른 기관단위의 부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화폐용 금은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금융청구권을 정산할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예탁된 금계정형태의 화폐용 금은 금융청구권이자 다른 기관단위의 현금 및 예금 형태의 부채로 간주한다(문단 3.26 참조).⁹⁾

7)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제4장 문단 4.3~4.26에서 추가로 논한다.

8) 그러나 지급기일이 도래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회보장급여는 재정상태표상 미지급계정에 포함된다.

9) 제2장에서 언급한 대로 화폐용 금 가운데 금괴는 순채무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

3.13 비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을 제외한 경제적 자산이다.¹⁰⁾ 비금융자산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고정자산, 재고, 기타유가물 등 생산자산(produced assets)¹¹⁾, 천연자원, 계약, 리스, 면허, 영업권, 마케팅 자산 등 비생산자산(nonproduced assets), 비금융자산은 가치 저장수단이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사용됨으로써 편익을 제공하거나, 재산소득의 형태로 편익을 제공한다.

2. 재정상태표와 채무 간 관계

3.14 문단 2.3에서는 미래 특정일자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 및(또는) 원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모든 부채를 채무로 정의하였다. 거시경제 통계체제에서는 재정상태표상의 모든 부채를 채무로 간주한다. 단 여기에서 주식 및 투자기금 지분, 파생금융상품, 주식매입선택권은 제외된다.¹²⁾ 우발부채는 일련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보증자의 채무가 아니다. 채무는 아래에서 논하는 채무상품으로 구성된다.

3.15 표 3.1.은 정부재정통계(GFS)에 근거한 재정상태표의 구성을 보여준다.¹³⁾ 밑줄과 굵은 글자체로 강조한 것은 채무상품과 그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이다.

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화폐용 금의 총액을 순채무 산정에 통합하기도 하는데, 공공부문부채통계 작성자가 금괴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0) 비금융자산은 암묵적으로 다른 기관단위에 대한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부채도 없다. 예를 들어 상품은 금융자산 거래시장과 유사한 정규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하지만 부채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 11) 고정자산에는 건물, 기계 및 장치, 배양 생명자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된다. 재고자산에는 원재료, 재공품, 곡식 등의 전략 비축이 포함된다. 귀중품에는 귀금속, 골동품 등 가치 저장수단의 일차적인 예술품이 포함된다.
- 12) 금괴 형태(준비자산)의 화폐용 금은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유일한 금융자산이다. 다른 부채성 화폐용 금은 현금 및 예금 형태로 채무에 해당한다.
- 13) 금융상품별 금융자산과 부채의 분류는 2008 SNA 분류체계를 따른다.

표 3.1. 정부 재정통계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기말 재정상태표
비금융자산	789	845
금융자산	396	392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	80	81
통화 및 예금	150	128
채무증권	0	6
유가	115	118
주식 및 투자기금 지분	12	13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20	21
금융파생상품, 주식매입선택권	0	0
기타미수계정	19	25
부채	687	780
특별인출권	0	0
통화 및 예금	102	139
채무증권	212	253
유가	328	333
지분 및 투자기금 지분	4	4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19	19
금융파생상품, 주식매입선택권	0	0
기타미지급계정	22	32
순자산(Net Worth) (총자산 - 총부채)	498	457
부기항목		
순금융자산 (총금융자산 - 총부채)	-291	-388
총채무	683	776
순채무	299	397

강조(굵은 폰트와 밑줄)된 항목은 채무상품 및 이에 대응하는 자산항목이다.

주 :

- 예시에서 기말 재정상태표상 총부채는 780이다. (총)채무는 776인데, 이는 주식 및 투자기금 지분, 파생금융 상품, 주식매입선택권을 제외한 총부채와 동일한 액수가 된다(780-4-0).
- 기말 재정상태표상 순금융자산은 -388이다. 순채무는 397인데, 이는 총채무 776에서 대응되는 금융자산 379를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다(392-13-0).
- 예시에 사용된 수치는 2008 SNA에서 일반정부 부문의 수치에 사용된 것이다.

3.16 금융상품은 금융자산과 부채 모두를 발생시키므로 이 둘에 대해서는 동일한 설명이 적용된다. 편의상 본 장에서는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따로 구분할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상품’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C. 채무상품의 유형

3.17 채무의 정의에 따라 다음을 채무상품으로 본다.

- 특별인출권(SDRs)
- 통화 및 예금
- 채무증권
- 용자
-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 기타 미지급/미수 계정

3.18 채무상품의 유형은 모든 금융자산 및 부채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를 규정짓는 해당 상품의 법적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금융상품의 유동성은 유통성(negotiability), 양도가능성(transferability), 시장성(marketability), 전환가능성(convertability)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3.19 금융자산의 특성뿐 아니라 해당 상품과 관련된 상대측 당사자(금융자산의 채무자와 부채의 채권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서도 채무상품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거주성에 관해서는 문단 2.94~2.102에 정의되어 있다.

3.20 이슬람계 금융상품의 유형은 <2000년 통화 및 금융통계 지침>의 부록2 '이슬람 금융' 및 <증권통계 소책자-채무증권 이슈>의 부속서2 '이슬람 채무증권'에서 논의된다.

1. 특별인출권(SDRs)

3.21 SDRs은 IMF가 도입한 국제 준비자산으로, 계정 참가국에 한해 보유할 수 있다. IMF의 SDR 부서는 (집합적으로 '참가국'으로 알려진) IMF 회원국

에 SDR을 할당한다. SDR 할당액은 회원국의 부채이다. 이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한다.

3.22 SDR를 보유한 국가는 다른 IMF 회원국으로부터 외환 또는 기타 준비자산을 조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이자를 발생시키며 IMF가 아닌 전체 참가국이 청구권을 갖는다. 개별 참가국은 다른 참가국에 보유한 SDR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외환 등 다른 준비자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서 SDR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3.23 SDR의 창출('SDR의 할당')과 소멸('SDR의 파기')은 거래로 취급된다. 이러한 거래와 그 저량은 할당 총액으로 계상된다. SDR은 참가국 및 기타 공식적인 보유자 간에 양도가 가능하다. 보유하고 할당된 SDR을 어떠한 공공부문 재정 계정에 계상할 것인지 등 SDR과 관련된 기타 방법론은 제4장에서 논의된다.

3.24 SDRs은 금융상품일 뿐 아니라 다른 채무상품을 기록하는 계정단위로도 사용된다.

2. 통화 및 예금

3.25 통화는 명목가가 고정된 지폐와 주화로 구성되며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발행하거나 발행을 위임한다. 모든 부문은 통화를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화를 발행하는 곳은 중앙은행과 정부뿐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나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상업은행이 통화를 발행하기도 한다. 통화는 이를 발행하는 기관단위의 부채로 인식된다. 공공부문 기관단위가 보유한 미발행 통화는 공공부문의 금융자산 또는 중앙은행의 부채로 취급되지 않는다. 법정통화 또는 화폐용 금으로 유통되지 않는

금과 기념주화는 통화가 아닌 비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3.26 모든 예금은 예치금이라는 입증수단을 지닌 (중앙은행을 비롯한) 예금 수취기관의 청구권(claims)이며, 일반정부와 기타 기관단위도 이를 청구권으로 보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표준 계약이며, 국민 개개인은 이를 통해 다양한 액수의 돈을 예치할 수 있다. 공공부문 단위는 외화예금을 비롯하여 자산의 형태로 다양한 유형의 예금을 보유한다. 또한 정부단위가 예금의 형태로 부채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법원 또는 조세당국이 소송이 끝나거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공탁금(security deposit)을 보유하는 일도 있다. (중앙은행 등의) 금융공기업이 예금의 형태로 정부단위에 대한 부채를 부담하기도 한다. 또한 자국 통화 표시와 외화 표시로 통화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예탁된 귀금속 계정은 역시 예금이다. 단, 여기에서 통화당국이 지급준비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화폐용금 자산으로 분류되는 예탁된 금계정은 제외되나, 거래 당사자 부채항목에서는 예금으로 계상된다(문단 3.12 참조).¹⁴⁾ 통화는 양도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다.

3.27 양도 가능한 예금은 (i) (별금이나 제약조건 없이) 액면가로 교환 가능한 요구불예금과 (ii) 수표, 지로, 즉시 지급 및 입금, 기타 직불수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자 지급수단으로 구성된다. 양도 불가능한 예금은 예치금으로 창출되며 양도 가능한 예금을 제외한 기타 모든 금융채권으로 구성된다.¹⁵⁾

14) 화폐용 금과 금 계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BPM6의 문단 5.74~5.77 참조.

15) 기타예금으로는 곧바로 현금인출이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직접 이전이 불가능한 요구불예금, 저축, 정기예금, 광의의 통화량 집계에 포함되는 단기 환매조건부증권, 국가의 정책적인 외환배급에 따라 동결된 외화예금, IMF의 준비잔액 등이 있다.

3. 채무증권

3.28 채무증권은 양도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채무의 입증수단으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은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의 일정이 명시된다. 채무증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 단기증권(bills)
- 은행인수어음(banker's acceptances)
- 신종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양도성예금증서(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
- 전환사채를 비롯한 채권 및 차입 증명서
-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용자
- 비참가적 우선주
- 자산담보부 증권 및 부채담보부 증권
- 위의 사례와 유사하며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3.29 단기증권을 보유한 이는 별도의 조건 없이 특정일자에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기증권은 보통 이자율과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액면가의 할인된 금액으로 정규시장에서 거래된다. 단기증권에는 단기 재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은행인수어음, 약속어음, 신종기업어음이 포함된다.

3.30 은행인수어음은 금융기업이 수수료를 받고 수표나 환어음을 인수하고 특정일자에 특정 금액을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약속할 때 발생한다. 국제무역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결제된다. 은행인수어음은 채무증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은행인수어음은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 청구권(claim), 인수주체인 금융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 부채이다. 이러한 금융기업의 부채에 대응되는 자산은 고객에 대한 청구권(claim)이다. 은행인수어

음은 실제로 자금이 교환되는 시점이 인수시점 이후라 하더라도 인수시점에 금융자산으로 인식된다.

3.31 채권(Bonds) 및 차입증명서를 보유한 이는 특정일자에 사전에 정해지거나 계약상 합의한 금액을 1회 또는 2회 이상 무조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자는 채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산정된다.

3.32 무이표채권(zero-coupon bonds)은 만기일까지 분할상환이 되지 않는 장기증권이다. 단기증권과 유사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은 만기일에 단 한 번 이루어진다. 대폭할인채권(deep-discount bonds)은 만기일까지 액면이자를 분할 지급해야 하는 장기증권이다. 그러나 지급해야 할 액면이자는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된다.

3.33 내재 파생상품은 파생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특성이 내재된 증권이나 용자상품은 당초 상품의 특성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분류된다. 내재된 파생특성으로 인해 해당 증권이나 용자상품의 가치가 유사한 상품과 다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채권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동일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회사채를 들 수 있다. 그러한 전환옵션이 회사채와 별도로 거래된다면 별도의 상품으로 취급되며 채무가 아니라 파생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3.34 보유자 간의 양도가 가능한 용자상품(문단 3.39 참조)은 상황에 따라 채무증권으로 재분류되기도 한다. 채무증권으로 분류되는 용자상품은 시장조성자가 존재하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거래되며 매매가격이 매입-매도 호가(bid-offer spread) 등에 의해 유동적으로 책정된다.¹⁶⁾

16) 채권단이 제공하고 하나 이상의 상업은행 또는 투자은행이 구성, 할당, 관리를 맡는 신디케이트론을 예로 들 수 있다. 신디케이트론의 일부가 시장에서 널리 거래된다면 이 역시 증권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

3.35 비참가적 우선주는 고정된 배당을 지급받지만 법인 사업체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배분에는 참여할 수 없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채무증권으로 분류된다. 지분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은 전환되기 이전 시점에는 채무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3.36 자산담보부 증권 및 부채담보부 증권에서는 이자지급과 원금 상황이 사전에 특정한 자산이나 이익흐름에 대한 지급금을 담보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이러한 과정은 ‘증권화(securitization)’로 설명된다(상세한 사항은 제 4장 참조). 자산담보부 증권은 다양한 유형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하는데, 모기지(저당권)와 신용카드 대출, 미래에 발생할 정부의 이익 흐름 등이 그 예이다. 거시경제 통계체제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일부는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3.37 분할증권(stripped securities)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한 원금에서 만기의 범위가 이자지급일 및 원금상환일과 일치하는 일련의 무이자 채권으로 전환된 증권이다. 분할은 특정 현금흐름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를 원래 증권의 현금흐름 조합과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분할증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제3자가 원래 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분할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신규 금융상품이 발생한다.
- 새로운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며, 원래 증권에 대한 지급금이 발행자 또는 발행자의 동의를 얻어 행동하는 중개인(분할 중개인 같은)에 의해 분할되고 판매되는 경우. 이 경우 새로운 상품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3.38 지수연동증권은 이표지급액(이자)이나 원금, 또는 둘 모두가 물가지수 이자율 또는 상품가격 등의 다른 항목과 연계되는 금융상품이다. 지수액면 이자지급 및(또는) 원금 상황이 물가지수나 상품가격 등 다른 품목에 연동되

는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증권은 변동이자율 상품으로 분류된다. 지수연동 증권의 이자율을 책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는 제2장의 부록에서 다룬다.

4. 용자

3.39 용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자산의 증거로서 배서양도 불가능 증서를 수취할 때 창출되는 금융상품이다.¹⁷⁾ 이 유형에는 당자대월,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외상금 및 선수금의 금융대출, 환매조건부 채권, 금융리스로 발생한 금융자산과 부채, 차관 형태의 IMF에 대한 채권 또는 부채 등이 포함된다. 외상금 및 선수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미지급/미수 계정은 용자가 아니다(문단 3.64~3.65 참조).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용자상품은 채무증권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문단 3.34 참조). 그러나 간헐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용자는 채무증권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3.40 금융리스는 용자의 귀속과 관련된다.¹⁸⁾ 금융리스하에서 재화가 취득되면 비록 리스된 재화는 법적으로 리스제공자의 재산이지만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소유권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사실상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유권의 변화는 용자를 통해 조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는 리스제공자의 자산이자 리스이용자의 부채가 된다.

3.41 환매조건부 증권(repo)은 증권을 정해진 금액의 현금으로 매각함과 동시에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증권을 고정된 가격에 미리 정해진 미래 날짜(보통 하루 또는 며칠 후) 또는 확정되지 않은 만기 내에 재구입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¹⁹⁾ 이러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해당 증권의 소유권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원 소유자(증권제공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담보부 여신

17) 대출은 이를 입증하는 근거 서류의 양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예금과 구별된다.

18) 금융리스는 자산의 법적 소유주인 리스제공자가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

19) 계약의 양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하기로 합의한 때를 만기일로 한다.

(또는 예금²⁰⁾)과 같다. 따라서 증권 수취인(현금제공자)이 증권제공자(현금수령자)에게 제공한 자금은 용자로 취급되며, 해당 증권은 법적 소유권이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제공자의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3.42 증권대여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증권이 특정한 시점에 또는 요구에 의해 반환된다는 조건하에 증권소유자가 다른 당사자(증권 수취인)에게 증권을 양도하는 계약이다. 환매조건부증권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원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 증권수취인이 현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이는 환매조건부증권이 된다(문단 3.41 참조). 증권수취인이 현금 이외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 거래는 기록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증권은 원 소유자의 재정상태표에 남아 있게 된다.

3.43 금 스왑은 금과 외화예금을 교환하는 동시에 그 거래가 합의된 미래 날짜에 합의된 금 가격으로 재교환되는 계약과 관련된다. 금 수취인(현금제공자)의 재정상태표에 금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반면 금 제공자(현금수취인)는 일반적으로 금을 자신의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해서는 안 된다. 금 스왑은 담보가 금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환매조건부증권과 유사하다. 따라서 담보부여신 또는 예금으로 기록해야 한다. 금 대여는 증권대여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며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3.44 장외 스왑(off-market swap)은 현행 시장가치와는 다른 가격이 설정된 준거비율을 적용한 결과로, 즉, 장외 가치가 최초 0이 아닌 가격을 가진 스왑²¹⁾이다. 이러한 스왑은 통상 최초시점에 한 계약자에서 다른 계약자로의 일괄지급을 초래한다. 장외스왑의 경제적 실질은 용자와 같은 차입(일괄 지급)과 시장스왑(파생금융상품)의 조합에 해당된다. 장외 스왑 중 용자는 채무로 분류

20) 어떤 국가의 광의의 통화량 집계에 포함되는 환매조건부증권은 비양도성 예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기타 환매조건부 증권은 용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21) 스왑계약이란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토대로 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되며, 이러한 용자가 공공부문 단위에 일괄 지급될 경우 공공부문부채로 분류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4장 문단 4.127~4.131을 참조.

5.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제도

3.45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비생명보험 책임준비금(technical reserves)
- 생명보험 및 연금분할금 수급권
- 연금수급권
- 연금관리 주체에 대한 연금청구권
- 표준화 보증제도가 구상권 충당부채

3.46 이러한 준비금, 수급권, 상환충당금은 보험사, 연금기금, 또는 표준화 보증의 발행자로서 공공부문의 부채로 표시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수혜자에게는 자산으로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공기업이 보험제도를 운영한다. 일반정부 단위는 비생명보험, 비자립적 또는 부과식 연금제도, 그리고 표준화보증제도의 운영자로서 이러한 준비금, 수급권과 충당금에 대한 부채를 부담한다.²²⁾

3.47 다음 문단에서는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제도에 적용되는 준비금, 수급권 및 충당부채의 유형을 간략히 정의한다. 이러한 이슈는 2008 SNA의 제17장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가치평가는 제2장 비생명보험 책임준비금 항목(문단 2.135~2.138)에서 다룬다.

22) 일반정부 단위가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부채를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 피용자를 대상으로 제도 운용 시 부채를 부담할 가능성은 있다.

a. 비생명보험 책임준비금

3.48 비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i) 순 비생명보험료의 선지급과 (ii) 미해결된 보험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비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수취되었으나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보험료(소위 선수보험료)와 발생은 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청구권으로 구성된다.²³⁾

3.49 보험료는 보통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시작시점에 지급된다. 발생주의 관점에서 볼 때 보험료는 계약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므로 최초지급에는 선급금 또는 선수금이 관련된다. 여기에는 아직 소멸되지 않은 위험에 대한 준비금도 포함된다.

3.50 보험사는 이미 발생했으며 청구되었으나 아직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미지급 보험청구액에 대한 준비금을 적립한다. 보험사는 평준화준비금(equalization reserves) 등 기타 준비금을 적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금은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 있을 때에만 부채(가입자의 입장에서 자산)로 인식된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준비금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저축액으로 보험사 내부 회계항목이므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기존의 해당청구권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b.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수급권

3.51 생명보험 및 연금분할 수급권은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 또는 연금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 가지는 금융청구권이다.

23)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청구를 야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경우(미해결청구)를 포함한다.

3.52 이 유형은 생명보험회사 및 연금보험제공자가 생명보험계약자 및 연금보험수혜자로부터 받은 선급보험료와 미경과 부채로 구성된다. 생명보험과 연금분할 수급권은 보험계약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또는 보험계약자의 사망 시에 수혜자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의무이므로 보험계약자 기금과 분리되어 보유한다. 이러한 수급권은 보험사의 부채이자 보험계약자 및 수혜자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연금분할 수급권은 수혜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해야 할 미래이익 의무의 현재가치를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다.

c. 연금수급권

3.53 연금수급권은 고용주와 피용자 간의 보상협정의 일환으로 피용자가 획득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연금수급자가 갖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가 책정한 기금에 대한 금융청구권이다. 이러한 청구권의 성격과 연기금을 운영하는 기관단위가 부담하는 해당 부채는 약속된 급여의 종류에 달려 있다.

3.54 연금제도의 주된 두 유형은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이다.²⁴⁾ 확정급여형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제도에 참가하는 피용자와 기타 가족구성원에게 약속한 연금급여의 수준이 참가자의 근무연한과 급여에 기초한 보험통계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확정기여형제도에서는 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수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기금의 자산에 달려 있다.

3.55 공공부문 피용자에 대한 연기금은 공공 또는 민간 보험기업이 공공부문을 대행하여 관리하거나, 또는 공공부문 단위가 자립 또는 비자립형 기금을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연기금 또는 자립형 연기금은 순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기금의 자산이 퇴직급여로 적립된 부채를 초과하거나 미달될 때 순자산은 각각 + 와 -로 기록된다. 다른 공기업의

24) 확정기여형 제도는 '금전구입제도'라고도 한다.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순자산은 연기금을 설립한 단수 또는 복수의 고용주가 보유한다. 비자립형 연기금은 별도의 기관단위가 아니며 해당 기금을 설립한 고용주의 자산이다. 그러나 피용자는 비자립형 연기금을 운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청구권이 있으며 고용주는 약정한 급여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부채를 부담한다.

3.56 연기금의 부채에 더해 부과식 연금제도의 부채도 연금수급권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부과식 연금제도는 고용주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고용주는 일반정부 단위 또는 공기업이 될 수 있다.

3.57 사회보장제도²⁵⁾하의 급여에 대한 거시경제 통계체제에서는 사회보장기금 또는 기타 분리된 계정의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미래에 퇴직연금 및 기타 급여를 지급한다는 정부의 약정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²⁶⁾ 지급일이 도래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에 대한 부채는 기타미지급계정으로 인식한다. 사회보장기금이 연기금(과거 및 현재 정부 공무원의 급여와 같이)의 역할을 하는 경우 연금지급 의무는 연금수급권에 포함되지만 해당 연기금의 사회보장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3.58 연금뿐만 아니라 일부 제도에도 건강급여와 같은 기타관련부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비연금급여에 대한 수급권에 포함된다. 연기금은 수혜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부채를 부담하지만 고용주나 기타 후원자, 기금의 관리주체 등 기타 당사자에 대해 청구권을 갖기도 한다. 반면 후원자나 기타 당사자가 기금의 잔여분에 대해 청구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청구권은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제도에 따라 연금기금이 후원자에 대해 갖는 청구권으로 분류된다.

25) 사회보장기금은 제2장 문단 2.44~2.45에 정의되어 있다.

26) GFSM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지급의무를 재정상태표상 부기항목으로 포함시킨다. 기존 법규에 따라 발생했으나 미래에 지급해야 할 사회보장급여의 현재가치는 고용주 연기금 부채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3.59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과 산정방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채무통계를 작성할 때는 보장액과 추정액을 메타데이터(metadata)의 형태로 설명해야 한다.

d. 연금관리주체에 대한 연금청구권

3.60 고용주는 자산의 피용자를 위한 연기금의 관리를 위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지속적으로 연금제도의 조건을 결정하고, 모든 초과수익을 보유할 권리뿐 아니라 모든 자원부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고용주는 연금관리주체로 간주되며, 연금관리주체의 지시하에 운영되는 단위는 연금운영자가 된다. 만일 고용주가 자원부족에 따르는 모든 위험과 책임을 연금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연금운영자는 그 대가로 초과수익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기로 서로 합의한다면 연금운영자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연금의 관리주체가 된다.

3.61 만일 연금관리주체가 연금운영자와 다른 기관단위이며, 자원부족에 대한 책임이나 초과 수익에 대한 모든 권리가 연금관리주체에게 있다면 연금청구권은 연금관리주체에 있다. (연기금이 연금수급권의 증가분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투자수익을 연금수급권을 통해 거두고 그 차익이 해당 연기금의 연금관리주체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될 경우, 해당 연기금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다.)

e. 표준화 보증제도가 구상권 총당부채

3.62 표준화 보증은 통상 아주 작은 금액에 대한 획일적 조건으로 대규모로 발행되는 보증이다.²⁷⁾ 표준화 보증은 차입자(채무자), 대출자(채권자), 보증인

27) 반면 일회성 보증은 개별적으로 발행되며, 보증인이 보증이 발효될 위험성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일회성 보증은 (보증이 발효되지 않는 한) 보증인의 채무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4장 문단 4.15~4.16 참조.

이렇게 3인의 당사자가 개입된다. 차입자 또는 대출자는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증인이 대출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을 보증인과 체결한다. 수출신용보증, 예치보증, 학자금대출보증 등이 그 예이다. 채무 불이행의 확률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일련의 유사한 채무상품을 대상으로 채무불이행률²⁸⁾을 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증인이 순수 상업적 목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보증인은 모든 수수료와 해당 수수료 및 적립금으로부터 거둔 자산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잔여 보증계약 중 채무불이행액과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기대된다. 이는 비생명보험에 적용되는 패러다임(paradigm)과 동일한데, 유사한 방식이 '표준화 보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비생명보험과 유사한 거래 및 재정상태표 항목이 적용된다.

3.63 표준화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부단위도 표준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비금융기업이 표준화 보증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표준화 용자보증을 제공하는 기관단위는 수수료를 수취하며 보증채무 이행 요구에 상응하는 부채를 발생시킨다.

3.64 기타 미지급/미수 계정에는 매입채무 및 선수금, 그리고 지급되거나 수취하기로 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기타항목으로 구성된다. 매입채무와 선수금(공급자의 신용)에는 (i)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매입채무와 (ii) 작업이 수행되기 전의 건설과정 중에 미리 지급하는 중도금이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과 같이 진행 중이거나 착수하는 일에 대한 선수금이 있다. 이러한 매입채무는 대금지급의 정상적인 지연으로부터 발생하거나, 판매의 자금마련을 위한 의도적인 매입채무(vendor credit) 제공으로부터 발생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자가 제공하는 매입채무는 대출, 채무증권, 또는 제3자가 매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타 부채는 포함되

28) 이러한 채무불이행률은 표준화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지 않는다. 정부단위가 지급이 도래된 일부 매입채무의 대금을 연결하기 위해 약속어음이나 기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약속어음과 증권은 채무증권으로 분류된다.

3.65 여러 종류의 기타 미지급/미수계정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납된 조세, 배당, 증권의 매입과 매도, 지대, 임금과 급여, 사회기여금, 사회급여 및 등 이와 유사한 항목 등을 포함한다. 조세의 선납 등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급된 경우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발생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는 이 유형(미지급/미수금계정)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원금에 추가해야 한다. 미수 조세 또는 미지급 피용자 보상은 금액이 상당히 클 경우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3.66 미지급/미수계정은 그 정의로 볼 때 발생주의기준의 개념이다. 따라서 순수 현금주의기준에 기초한 회계기준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D. 거래상대방 부문별 분류

3.67 앞의 절에서는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금융상품의 특성에 기초하여 채무상품을 분류하였다. 일반정부 또는 공공부문부채에 관해 보다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금융관계에서 거래 상대방을 고려해야 한다.²⁹⁾ 일반정부 또는 공공부문에 자금조달(자금원)을 하는 경제 부문에 따라 분석하면 채무상품별로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문과 하위부문 간 채무자-채권자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공공부문부채통계의 연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채무상품을 보유한 기관단위가 금융공기업인지, 또는 민간금융기업인지 구분하는

29) 모든 채무상품에는 양 당사자가 개입된다. 결과적으로 채무상품의 발행기관과 채권기관을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분리하여 작성해야 한다.

것은 공공부문부채통계를 정확히 편제하는 데 필요하다.

3.68 거주 기관단위가 청구권을 갖는 채무상품에서 제2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부문으로 분류된다.

- 일반정부
- 중앙은행
- 중앙은행을 제외한 예금수취 기업
 - 중앙은행을 제외한 예금수취 공기업
 - 중앙은행을 제외한 예금수취 민간기업
- 기타 금융기업³⁰⁾
 - 기타 금융 공기업
 - 기타 민간 금융기업
- 비금융기업
 - 비금융 공기업
 - 비금융 민간기업
-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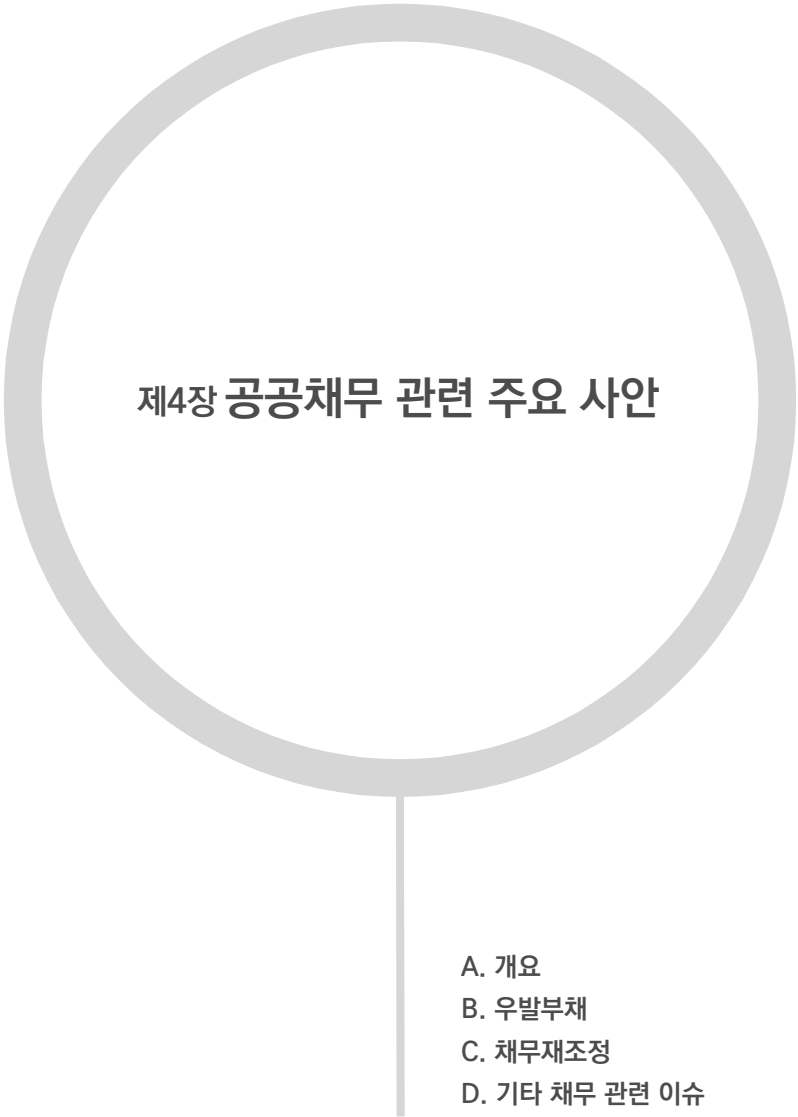
3.69 비거주자 기관단위가 청구권을 갖는 채무상품에서 제2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정부
- 중앙은행
- 국제기구
- 기타 미분류 금융기업
- 기타 비거주자

30) 즉 예금수취기업 이외의 금융기업

3.70 부문 정의는 본 지침 제2장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GFSM 제2장과 2008 SNA 제4장에서 보다 폭넓게 다루고 있다. 채무증권 거래 상대방을 파악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 지침 제7장에서 다룬다.

3.71 환매조건부 증권과 증권대여는 문단 3.41~3.42에서 정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발행한 증권 가운데 상당수가 환매조건부와 증권대여에 따라 거래된다. 두 경우 모두 계약에 따라 법적소유권이 다른 상대방에게 이전되지만 증권의 경제적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거래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에 기재된 소유권자가 법적 소유자인지, 또는 경제적 소유권자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공공채무 관련 주요 사안

- A. 개요
- B. 우발부채
- C. 채무재조정
- D. 기타 채무 관련 이슈

제4장 공공채무 관련 주요 사안

본 장은 공공채무 관련 유량 및 저량을 기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발부채, 채무재조정, 채무제각(debt write-offs), 기타 채무 관련 거래 등의 이슈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A. 개요

4.1 공공채무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방법론적 이슈는 채무와 관련한 저량보다는 유량(‘거래’ 및 ‘거래외 경제유량’)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유량이 저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두 부분 모두에 초점을 맞춘다.

4.2 우선, 우발부채와 일부 채무재조정 유형에 대한 정의와 통계 처리에 대해 설명한 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채무와 관련한 다양한 방법론적 이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가능한 경우, 예시를 들어 해당 항목의 통계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예는 GFSM 분석 체계를 따른다.

B. 우발부채

1. 개요

4.3 우발부채는 재정위험¹⁾을 발생시키며, 의도적인 공공정책이나 재정위기

1) 재정위험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실제와 예측 재정상황(예: 재정수지, 공공채무) 간의 잠재적인 차이이다. 우발부채는 재정위험을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원인이다. 재정위험과 취

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GFSM에서 공공부문 단위의 일부 우발부채는 재정상태표상 부기항목으로 계상해야 한다.

4.4 공공채무통계 편제자 및 분석가들이 우발부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본 절에서는 우발부채의 유형에 대해 소개한다. 그 유형은 2008 SNA, BPM6, 대외채무지침, 일반정부 재정적자 및 채무에 관한 ESA95 지침과 각국의 관련 사례들을 토대로 한다. 이 유형은 공공부문 분석의 전통적 접근법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림 4.1.은 부채와 우발부채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이 절의 나머지 부분은 우발부채의 정의와 유형, 측정 방법, 일회성 보증의 통계 처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의

4.5 우발부채는 미래에 개별적인 특정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 의무이다. 우발부채와 부채²⁾(그리고 공공부문부채)의 핵심적인 차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금융거래로 기록된다는 점이다. 우발부채에는 보통 현금지급이 요구되는지 여부와 잠재적 크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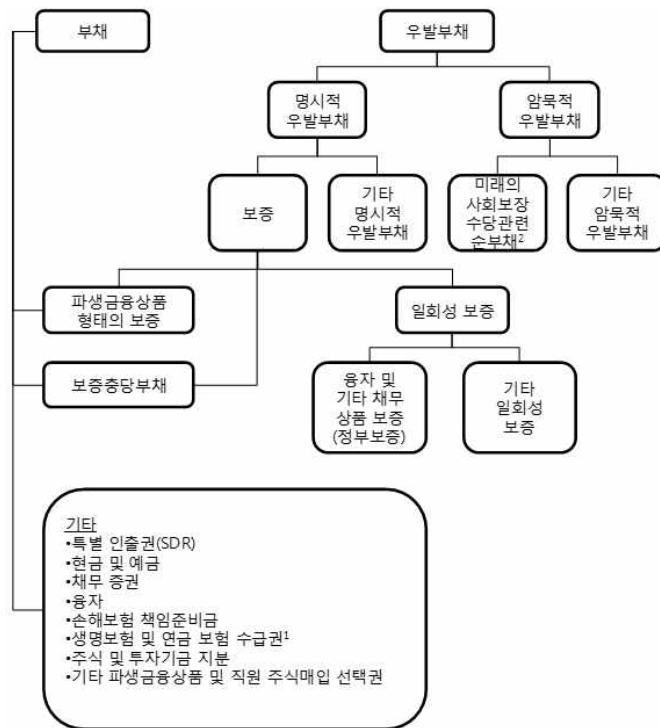
4.6. 일반적으로 우발부채는 특정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기 전까지 거시경제통계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표준화 보증(문단 4.12~4.13 참조)의 경우, 유사한 보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부 보증은 각 개별 계약이 우발부채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부채로 처리한다.⁴⁾ 해당 항목이

약성에 대한 설명은 9장을 참조.

- 2) 부채는 특정 기관단위의 순자산 산정 시 거시경제 통계의 재정상태표에 인식되는 부채를 지칭하며, 우발부채는 순자산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 3) 시장가격 때문에 부채의 가치를 확실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부채가 우발부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항목들 역시 재정상태표에 기록되는 부채에 해당한다.
- 4) 표준화 보증은 손해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처리방식도 유사하다.

부채(상대방에게는 금융자산)인지 우발부채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⁵⁾ 자금 교환이 없더라도 은행 인수어음은 금융자산(부채)으로 처리된다. 반면, 상환규모와 상환의무가 매우 확실하더라도 미래의 현금 지급이 부채(금융자산)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판매 계약상 미래 대금지급이나 정부에 대한 세금납부는 부채를 발생시키는 사건, 가령 판매계약상 재화와 서비스의 수령이 발생하기 전에는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

그림 4.1. 거시경제 통계상의 부채와 우발부채의 개요



¹비자율적 부과식 고용자 연금제도에 대한 부채는 포함

²비자율적 부과식 고용자 연금제도에 대한 부채는 제외

5) 은행 인수어음은 금융기업이 수수료를 받고 수표나 환어음을 인수한 뒤 특정 날짜에 특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약속할 때 발생한다. 은행 인수어음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붙지 않은 청구권, 인수 은행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붙지 않는 부채이며, 이에 상응하는 은행의 자산은 고객에 대한 청구권이다.

4.7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는 구분된다. 모든 거시경제 통계체제하에서 명시적 우발부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불을 하계끔 만드는 조건부적 요건을 발생시키는 법적 또는 계약상의 금융협정이다. 이러한 요건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약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효력이 생긴다.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거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사건이 실현되어야 인정된다. 본 지침(그리고 기타 거시경제 통계 시스템)은 대체로 명시적 우발부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암묵적 우발부채의 중요성은 제9장의 재정위험 및 취약성에서 다룬다.

3. 명시적 우발부채

4.8 명시적 우발부채는 보증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지만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는 아니다. 다양한 보증의 유형 및 우발부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4.9 보증 이외의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다.

- 잠재적인 법적 청구권으로 계류 중인 법정소송사건에서 비롯되는 청구권
- 배상금, 즉 다른 당사자에 의한 손실 위험 또는 다른 당사자의 위험을 수용하는 약속
- 불입 자본으로 주주로 있는 기관 또는 기업(예, 국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제공해야 할 의무

a. 보증의 유형

4.10 2008 SNA는 보증을 파생금융상품 보증, 표준화 보증, 일회성 보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i.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

4.11 첫 번째 유형의 보증은 신용부도 스왑(CDS) 등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제공된다. 거시경제 통계체계에서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자산과 부채 포지션(다른 파생금융상품에서와 마찬가지로)은 금융자산 및 부채이나, 채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문단 2.6 참조).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부채(와 금융자산)는 채무 표시(표 5.1.~5.10.)와 명시적 우발부채 및 미래의 사회보장 급여 관련 순의무(표 5.12.)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문단 5.50~5.52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파생금융상품 정보를 채무통계와 함께 기록(표 5.11.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 계약이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에 포함되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표준화 보증

4.12 표준화 보증은 통상 아주 작은 금액에 대해 획일적 조건으로 대규모로 발행하는 보증이다. 여기에는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들이 많으며, 보증인은 확률 가중개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계에 기반하여 평균손실(채무불이행률)을 추정할 수 있다.⁶⁾ 표준화 보증에는 수출(무역)신용 보증, 환보증, 다양한 종류의 보험(예금, 농작물, 자연재해 보험 등), 농민 용자, 모기지론, 학자금 용자, 중소기업(SME) 용자 등이 있다.

4.13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일련의 유사한 보증들에 대해 채무불이행률을 추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률로 인해 보증은 공공부문의 우발부채가 아니라 ‘표준화 보증 충당부채’로 불리는데, 이 부채는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 채무상품에 속한다.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상태표에는 예상되는 구상권의 현행가치에서 예상

6) 표준화 보증의 처리는 손해보험의 처리와 유사하다. 세부 사항은 본 지침의 제3장 문단 3.62~3.63과 2008 SNA의 제17장 3부를 참조.

되는 회수금액을 차감한 가치가 기록된다.⁷⁾

iii. 일회성 보증

4.14 일회성 보증은 채무상품이 매우 특수하여 그 채무와 관련된 위험정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유형의 보증이다. 표준화 보증과 대조적으로 일회성 보증은 개별적이며, 보증인이 보전요구의 위험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추정을 할 수 없다.

4.15 대부분의 경우, 일회성 보증은 보증인의 우발채무로 간주된다. 일회성 보증하의 부채는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및 요구할 때까지 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귀속된다.

4.16 이와 대조적으로 재정 압박에 놓인 상태에서 보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에 정부가 부여하는 일회성 보증은 마치 처음부터 보증이 요구된 것처럼 취급한다.⁸⁾ 이러한 일회성 보증에 따른 현실화는 채무인수로 취급되며(문단 4.56~4.57 참조) 이러한 부채는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상태표(및 채무)에 반영된다.

4.17 일회성 보증은 ‘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과 ‘기타 일회성 보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

7) 표준화 보증 총당부채 관련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는 미경과 수수료와 미정산 요구액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보험 적립금과 유사하다.

8) 이러한 처리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채무의 이중산정을 피하고, 여전히 원 채무자에게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계상하는 기타 거시경제 통계와의 불일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Eurostat는 정부보증채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실무적 지침을 따른다. 즉, 정부가 보증자로서 3년 연속 기존 보증채무를 지급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채무는 통상 완전히(또는 충분한 근거에 기반하여 정부가 상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만큼) 정부에 인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 또는 지급에 대한 '일회성 보증'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미지급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확약이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도록 요구한다. 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은 공공부문 단위와 민간 부문의 채무로 정의되며 공공부문 단위가 계약에 의거해 지급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무가 된다(제5장 문단 5.36~5.41 참조).
- 기타 일회성 보증에는 신용보증(용자한도와 차입약정), 우발 '신용 가용성' 보증, 우발 신용지원 등이 있다. 용자한도와 차입약정은 인출하지 않은 자금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으로 이러한 자금이 실제로 제공되기 전까지는 금융부채나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인출 신용한도 또는 미제공된 차입약정은 발행기관(일반적으로 은행)의 우발부채로 인식된다. 신용장은 문서에 미리 약정된 서류의 제출에 의해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다. 인수된 증권발행보증(NIF)은 차입자가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고, 인수기관이 판매되지 않은 어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인수기관이 자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만 부채/자산이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우발부채로 간주된다. 그 밖의 우발 신용 또는 매입지원보증을 제공하는 기타증권담보보증에는 회전인수보증(RUFs), 다중옵션보증(MOFs), 글로벌증권보증(GNFs) 등이 있다. 은행 및 은행 이외 금융기관이 매입지원보증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보증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우발부채이다.

4.18 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공적보증채무)은 일회성 보증의 다른 유형과는 다르다. 이는 보증인이 기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단위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기타 일회성 보증의 경우, 자금이 실제로 제공되거나 선급될 때까지 금융부채/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4.19 공적보증채무의 저량에 대한 정보는 재정정책 및 분석에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본 지침은 공적보증채무(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의 일회성 보증)의

명목가치를 공공부문 통계(표 5.1. 참조)의 부기항목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5.8a., 5.8b.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4.20 일회성 보증은 명시적 우발부채이기 때문에, 모든 일회성 보증은 다양한 명시적 우발부채 유형 및 미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암묵적 우발부채는 아래 문단 4.21 참조)의 세부 내용을 보여주는 표 5.12.(주요 우발부채)에 포함되어 있다.

4. 암묵적 우발부채

4.21 문단 4.7에 설명되어 있듯이,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상 원천으로부터 발생되지 않고, 특정한 조건이나 사건이 실현된 후에 인식된다. 이러한 암묵적 우발부채의 예로는 미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 채무 불이행 시 은행 부문의 상환 또는 주 및 지방정부나 중앙은행의 의무보장, 환경부채(environmental liabilities), 공공부문의 무보증채무, 기타 공공부문의 보증제공 실패 시 보증의무, 자연재해 구호비용 등이 있다.

4.22 표 5.12.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지침은 미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우발부채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 의미가 있고, 분석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포함할 수 있다.

5. 우발부채의 측정

4.23 우발부채에 대한 측정기준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발부채가 매우 복잡하여 단일한 측정방법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우발부채를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필요성은 매우

9) 비자립형 비적립식 고용주 연금에 대한 부채는 부채에 해당하며, 고용주가 공공부문일 경우 공공부문부채에 해당된다.

높으며, 표 5.12.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의 주요 우발부채를 편제할 수 있다.

4.24 우발부채의 가치 산정은 몇 가지 접근법이 있다.¹⁰⁾ 문단 4.19에 설명되어 있듯이 본 지침은 보증된 공공부문부채(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의 일회성 보증)를 명목가치로 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신용보증(융자한도, 차입약정), 우발 ‘신용한도’ 보증, 우발 신용지원은 명목가치로 기록한다. 단, 이러한 방법은 우발상황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과다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의 최대 잠재적 손실은 명목가치보다는 적을 것인데, 모든 채무가 불이행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손실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은 그 밖에도 다양하며, 각각 장단점을 갖는다. 이러한 방법들은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는 단순한 기법부터 복잡한 옵션가치평가 방법까지 다양하다(Box 4.1. 참조). 실제 적용방법은 우발의 유형과 관련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발부채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6. 공공부문 단위가 제공하는 일회성 보증의 통계 처리

4.25 대부분의 경우, 일회성 보증의 제공은 우발부채로 간주하고, 보증인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형태의 일회성 보증의 실제 이행은 일회성 보증의 제공에 따른 경제적 사건이며 채무인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문단 4.56~4.57 참조). 원 채무는 소멸되고 보증인(신규 채무자)과 채권자 사이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다. 보증인이 원 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획득하지 않을 경우, 보증의 이행은 원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자본이전으로 간주되며, 이는 금융자산(원 채무자에게는 채무)으로 인식된다.

10) 기법 가운데 일부는 “제9장 국제통화기금(IMF)의 민관 협력, 정부보증, 그리고 재정 위험(2006)”, <국외채무지침 2003>, 37~40p에 설명되어 있다.

4.26 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채무를 즉각적으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발생주의기준에 따라 보증이 이행되고 채무가 인수되는 시점에 인수되는 채무의 총액이 기록되어야 한다. 일회성 보증하에서 채무인수는 보증 요청이 있거나 요청가능성이 높을 때 기록된다.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이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회성 보증은 처음부터 보증채무 이행요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문단 4.16 참조). 단적인 예가 정부의 구제금융인데, 문단 4.109~4.118에서 논의한다. 인수한 채무에 대한 보증인(신규 채무자)의 원금상환과 그 채무에 대한 이자는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 계상된다.

Box 4.1.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의 예상손실 가치 측정

예상손실을 측정할 수 있다면, 손실의 현재가치(예상 현재가치)도 측정할 수 있다. 즉, 지급이 미래에 이뤄지면 임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되는 미래의 지급 흐름은 보증인이 지급해야 하는 시장이자율을 통해 할인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모든 현재가치 계산에서는 적절한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우발부채에는 국채수익률과 같은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한다. 이러한 현재가치 산정방법에 따르면 보증이 발행될 때 보증의 예상비용에 대한 현재가치는 현 회계연도의 (운용 계정상) 지출이나 비용으로 기록될 수 있고 재정상태표와 같은 재무제표에 포함될 수 있다.

정확한 가치측정은 세부적인 시장정보가 필요하지만 그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이는 시장실패 또는 불완전시장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완전한 금융시장이란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자산 가격이 균형가격을 이루는 시장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발부채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유사한 유형의 우발부채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가령, 어떤 융자의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융자 보증과 보증 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의 확률분포를 통해 해당 융자 보증의 예상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보험업계의 보험수리적 기법과 유사하다. 유사한 실체에 대한 등급정보 역시 융자 보증의 채무불이행 가치산정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

시장가치 측정 시 우발부채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시장정보를 활용한다. 이 방법론은 다양한 우발부채에 적용될 수 있지만,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의 가치를 산정할 때 특히 유용하다. 이 방법론은 보증이 있거나 없는 유사한 상품들을 시장에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장이 보증을 통해 위험을 완전히 측정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방법에 따르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의 가치는 보증이 없는 증권과 보증이 있는 증권의 가격 차이를 통해 산정된다. 융자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의 명목가치는 무보증 융자에 대한 약정이자율(ip)과 보증 융자에 대한 약정이자율(ig)의 차이에 융자의 명목가치(L)를 곱하여 산정되며, 수식으로 하면 $(ip - ig)L$ 이 된다. 보증의 시장가치를 산정하려면 동 산식에서 약정이자율을 시장이자율로 대체하면 된다.

우발부채의 가치평가는 재무이론의 옵션가치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방법에서는 보증을 옵션으로, 융자 보증은 해당 융자의 담보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으로 본다. 따라서 융자 보증 시 보증인은 융자자에게 풋옵션을 매도한다고 볼 수 있으며, 풋옵션 매입자인 융자자는 보증인에게 해당 융자를 '풋(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F라는 명목가치와 V라는 내재가치(underlying value)를 지닌 융자에 대한 보증을 생각해보자. V가 F보다 작을 경우($V-F<0$), 풋옵션이 행사될 것이고 융자자는 F의 행사가격을 받게 된다. 행사 시 풋옵션의 가치는 $F-V$ 이다. V가 F보다 클 경우($V-F>0$), 옵션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다. 보증은 풋옵션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용상품의 가치가 보증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가치보다 낮을 경우, 해당 보증에 대해서는 이행 요구가 발생할 것이다.

옵션가치평가 방법은 상당히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파이낸싱, 이자 및 원금 지급에 대한 보증의 가치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표준 옵션가치평가 방법에도 한계는 있다. 표준 옵션가치평가 모형이 외재적 stok캐스틱(stochastic) 방법을 통해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인데, 이는 보증(특히, 정부보증)의 존재 자체가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C. 채무재조정

4.27 채무재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제3자 개입도 가능)가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상환과 관련해 합의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채무자, 채권자, 또는 보증인으로 채무재조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4.28 채무재조정은 통상 채무자에게 채무의 기간과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채무재조정은 채무자가 현금 부족으로 기한 내 채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에 제약이 있거나, 중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된다.

4.29 채무재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채무불이행 등) 해서 반드시 채무재조정 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유사하게, 채권자는 채무제각을 통해 채무자의 계정에서 채무 청구권의 가치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채무제각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특정 청구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재정상태표에서 해당 청구권을 제거하는 일방적 조치로 이는 채무재조정은 아니다.

4.30 채무구조조정에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 채무면제는 채권자와 채권자의 계약상 합의를 통한 채무의 규모를 줄이거나 소멸시킨다.
- 채무재조정 또는 재융자(또는 채무교환)는 채무 기간과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채무 부담의 현재가치를 줄인다.
- 채무전환 및 조기상환(또는 현금채무 환매)은 채권자가 채무 청구권을 또 다른 채무 청구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다른 것과 교환하는 것으로, 채무전환의 사례로는 출자전환, 부동산 스왑, 채무 대 개발 스왑, 채

무 대 자연 스왑 등이 있다.¹¹⁾

- 채무인수 및 채무대납의 경우 제3자가 개입된다.

4.31 채무구조조정은 위에서 언급된 유형들이 한 가지 이상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면제와 관련한 채무구조조정은 대부분 면제 또는 해지되지 않는 채무의 일부에 대한 재조정을 수반한다.

4.32 이처럼 다양한 채무구조조정 유형에 대한 통계 처리는 표 4.1.에 요약되어 있다. 공공부문 단위나 하위부문에 대한 채무구조조정이 중요할 경우, 대외채무지침의 표 8.1.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추가 정보를 배포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1. 채무면제

a. 정의

4.33 채무면제(채무해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상 합의를 통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발적 면제이다.¹²⁾ 채무면제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특정한 편익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존재한다. 반면 채무제각의 경우 채무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채권자의 일방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어떠한 합의나 의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문단 4.75~4.78 참조).¹³⁾ 면제된 채무는 발생한 연체이자(과거 지불기한을 넘긴 이자), 발생한 기타 이자비용을 포함한 미상환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면제는 아직 지

11) 채무전환으로 불리는 일부 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점에서 볼 때 채무면제와 같다. 채무자가 개발, 환경이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비용 부담을 약속하는 계약도 있는데,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가치가 없음을 감안할 때 이는 채무면제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12) 여기에는 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신용연계 채권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채무 계약서에 명시된 유형의 사건(대형 참사 등)의 발생에 따른 원금의 면제가 포함된다.

13) 채무면제가 공기업과 같은 상업적 실체들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불기한이 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은 장래이자에 대상이 아니다.

b. 채무 면제의 통계 처리

4.34 채무면제는 항상 자본출연 또는 채무자로의 이전¹⁴⁾으로 기록하며, 이는 금융청구권과 이에 상응하는 부채를 소멸시킨다. 공공부문 단위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채무면제에 관여할 수 있다.

4.35 Box 4.2.는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관점에서 채무면제의 통계 처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채권자의 경우 총채무는 변하지 않으나 면제된 채무 가치만큼 순채무가 증가하며,
-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와 순채무가 감소한다.

4.36 채무면제의 가치산정은 시장가격을 기반으로 한다. 단, 용자의 경우에는 명목가치를 사용한다.

14) GFSM에 따르면, 정부단위 사이에 발생한 자본이전은 미수 또는 미지급 자본출연으로 지칭하며 수익과 비용 계정에 각각 출연으로 기록한다. 정부단위와 비정부단위(공기업 등) 사이의 자본이전은 자본이전으로 부르며, 수익 계정에는 '출연 이외의 자발적 이전', 비용 계정에는 '기타 미분류비용'으로 각각 기록한다.

Box 4.2. 채무면제의 통계 처리

다음은 채무면제(100)에 대한 공공부문 단위의 통계 처리를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관점에서 나타낸 것이다.

	채권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채무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경제 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경 제 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100		
자본이전/출연						100		
비용		100						
자본이전/출연		100						
순자산/ 순운영수지	100	-100		0	-100	100		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재(+)/순차입(-)	100	-100		0	-100	100		
금융자산	100	-100		0				
부채					100	-100		0
총채무	0	0		0	100	-100		0
순채무	-100	100		0	100	-100		0

2. 채무재조정 및 재융자

4.37 채무재조정 및 재융자는 기존 채무상품을 새로운 채무상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통상 원리금 상환기한이 연장된다.¹⁵⁾ 채무재조정은 기존 채무와 동일한 원금 가치와 동일한 채권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유형의 상품을 조정하는 것이다. 반면, 채무재융자는 기존 채무와 다른 가치를 지닌 상이한 채무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 역시 달라질 수 있다.¹⁶⁾ 구체적인 예를 들

15) 채무(융자, 채무증권, 기타 채무상품)의 원 조건이 당사자들 간 재협상을 통해 변경되는 경우, 원 채무가 상환되고 신규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반면, 원 계약에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의 사건 발생 시 만기나 이자율 조건을 변경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항목들은 재분류된다(원 조건과 신규 조건의 원금, 상품 및 만기의 종류가 다를 경우 이는 순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경우 해당 항목들은 상쇄된다).

16) 채무자의 관점에서 채무재융자에는 제3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

면, 채권자는 파리클럽 합의의 조건을 적용하여, 채무재조정 옵션(채무자에 대한 기존 청구권의 기간과 조건 변경)이나 재용자(채무자가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신규 용자제공)를 선택할 수 있다.

표 4.1. 다양한 채무구조조정 유형에 대한 통계 처리

		수익	비용	운영수지 및 순자산에 대한 영향	순용자(+)/순차입(-) 및 순금융자산에 대한 영향	금융자산 (유량 및 저장)	부채 (유량 및 저장)
1. 채무면제 및 채무해지 (문단 4.33~4.36, Box 4.2.)	채무자	자본출연 또는 자본이전		Positive (+)	Positive (+)		채무 감소
	채권자		자본출연 또는 자본이전	Negative (-)	Negative (-)	금융청구권 감소	
2. 채무재조정 (문단 4.37~4.40, Box 4.3.)	채무자			영향 없음 ¹	영향 없음 ¹		기존채무 감소, 신규채무 증가
	채권자					기존 금융청구권 감소, 신규금융청구권 증가	
2. 채무재용자 (문단 4.41~4.47, Box 4.4.)	채무자			기존상품과 신규 상품의 가치가 다를 경우, 가치 재평가가 발생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존상품과 신규 상품의 가치가 다를 경우, 가치 재평가가 발생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존채무 감소, 신규채무 증가
	채권자					기존 금융청구권 감소, 신규 금융청구권 증가	
3. 채무전환 (문단 4.48~4.51, Box 4.5.)	채무자			할인 시 (+), 그 외에는 변화 없음	할인 시 (+), 그 외에는 변화 없음		채무 감소, 비채무성 부채 증가
	채권자			할인 시 (-), 그 외에는 변화 없음	할인 시 (-), 그 외에는 변화 없음	채무에 상응하는 금융청구권 감소, 비채무성 금융청구권 증가	
3. 채무 조기 상환 (문단 4.53~4.55, Box 4.6.)	채무자			영향 없음 ²	영향 없음 ²	현금 및 예금 감소	채무증가
	채권자					부채에 상응하는 금융청구권 감소, 현금 및 예금 증가	
4. 채무인수(원 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금융청구권 획득) (문단 4.56~4.57, Box 4.7., 예시1)	채무인수자(새로운 채무자)		부채와 취득 금융자산이 다를 경우 자본이전/출연	자본이전/출연 미발생 시 영향 없음. 그 외의 경우에는 (-)	자본이전/출연 미발생 시 영향 없음. 그 외의 경우에는 (-)	용자 증가	채무증가
	원 채무자	원채무와 채무인수자에 대한 채무가 다를 경우 자본이전/출연		자본이전/출연 미발생 시 영향 없음. 그 외의 경우에는 (+)	자본이전/출연 미발생 시 영향 없음. 그 외의 경우에는 (+)		원 채무감소, 채무인수자에 대한 부채 증가
	채권자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변화 없음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지침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거래에 국한된 협의의 채무재용자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4. 채무인수(원 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금융청구권 미확득) (문단 4.56~4.57, Box 4.7. 예시2)	채무인수자(신채무자)		자본이전/출연	Negative (-)	Negative (-)		채무증가
	원 채무자	자본이전/출연		Positive (+)	Positive (+)		채무감소
	채권자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변화 없음	
4. 채무인수(계속 기업인 공기업 원 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금융청구권 미확득) (문단 4.56~4.57, Box 4.7. 예시3)	채무인수자(새로운 채무자)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주식 및 투자기금지분 증가	채무증가
	원 채무자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원채무감소. 비채무성부채주식 및 투자기금지분증가
	채권자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변화 없음	
4. 채무대납(유효한 금융청구권 획득) (문단 4.58~4.61, Box 4.8.)	지급 단위			영향 없음	영향 없음	현금 및 예금 감소, 용자증가	
	원 채무자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원채무 감소. 지급단위에 대한 부채증가
4. 채무대납(유효한 금융청구권 미확득, 지급단위와 기존채무자의성격에 따라 다름) (문단 4.58~4.61, Box 4.8.)	지급 단위		자본출연 비용 또는 자본 이전비용	Negative (-)	Negative (-)	현금 및 예금 감소	
	원 채무자	자본출연 수익 또는 자본이전 수익 (기타수익)		Positive (+)	Positive (+)	현금 및 예금 증가	

¹이러한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면제 및 그 밖의 조정(가치 재평가)도 포함될 수 있음.

²이러한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면제가 포함될 수 있음.

a. 채무재조정

i. 정의

4.38 채무재조정은 채무지불에 대한 공식적인 연장과 보통 만기연장을 의미하는 새로운 만기의 적용으로 구성되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쌍방 계약이다. 새로운 조건은 통상적으로 상환기간 연장, 계약이자율 인하, 이자와 원금지급에 대한 거치기간 추가 또는 연장, 유리한 수준의 외채 변동률 고정,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연체이자 지급의 재조정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무이자 채권의 경우, 계약이 효력을 발휘할 때의 미상환 원금상환 시 지불되는 원금 감소분은 계약이자율이 유효하게 변하거나 계약이자율이 변화하지 않고 원금이 감소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만기에 지불해야 하는

원금의 감소는 채무면제 또는 채무재조정(쌍방 합의를 통해 약정이자의 변화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파리클럽 채권국은 채무국을 대상으로 재조정의 형태로 채무 구제를 제공한다. 이는 연장을 통한 채무 구제 또는 양허성 재조정의 경우 규정된 기간(유량) 또는 특정 날짜(저량)의 채무 상환의무의 감소를 의미한다.

ii. 채무재조정의 통계 처리

4.39 채무재조정의 경우, 기존 채무는 상환되고 새로운 기간과 조건의 새로운 채무상품(또는 상품들)이 생겨난 것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기존 채무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재조정되는 연체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존 채무계약은 재조정 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연체 이자만 재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채무상품은 재조정된 연체이자와 관련하여 기록한다. Box 4.3.은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관점에서 채무재조정의 통계 처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총채무와 순채무는 변화가 없다.

4.40 채무재조정 거래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시점(계약서상 합의)에 새로운 채무의 가치(채무재조정하 기존 채무와 동일한 가치)로 기록한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조건변화를 기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채무재조정의 효력이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발생할 경우, 만기 시(다년 파리클럽 재조정과 같이) 해당 조건이 충족될 때만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Box 4.3. 채무재조정의 통계 처리

다음은 채무재조정(100)에 대한 공공부문 단위의 통계 처리를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관점에서 나타낸 것이다.

	채권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채무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비용								
순자산/ 순운영수지	100	0		100	-100	0		-10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100	0		100	-100	0		-100
금융자산	100	0		100				
기존채무상품	100	-100		0				
신채무상품	0	100		100				
부채					100	0		100
기존채무상품					100	-100		0
신채무상품					0	100		100
총채무	0	0		0	100	0		100
순채무	-100	0		-100	100	0		100

b. 채무재융자

i. 정의

4.41 채무재융자는 연체를 포함한 기존 채무상품을 새로운 채무상품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형태의 채무상품 교환(융자 대 융자와 같은) 또는 다른 형태의 채무상품(채권 대 융자와 같은)으로의 교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단위는 여러 수출 신용 채무를 단일 융자로 전환하거나, 채권자가 제안하는 교환(기간과 조건 변경이 아닌)을 통해 기존 채권을 새로운 채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ii. 채무재용자의 통계 처리

4.42 채무재용자 거래의 처리는 채무재조정과 유사하다. 즉, 재용자된 채무는 소멸되고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대체된다. 하지만, 채무재조정과 달리 기존 채무는 새로운 채무상품의 가치에서 소멸된다. 단, 공적 채권자에게 빌린 시장외적 채무(예, 융자)는 제외한다.

4.43 Box 4.4.는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관점에서 채무재용자의 통계 처리를 보여준다. 재용자가 융자-채권 전환(loan-for-bond swap) 등 직접적인 채무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는 적절한 채무계약 내 부채는 감소한 것으로 계상하고 신규 채무계약 관련 부채는 증가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거래는 신규 채무의 가치(해당 채무의 현행 가치를 반영)로 계상하며 기존 채무와 신규 채무의 가치 차이는 재평가로 처리한다. 이러한 재평가의 결과, 채무자는 총채무와 순채무가 감소하고, 채권자는 순채무가 증가하지만 총채무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적 채권자로부터 빌린 시장외적 채무의 경우, 기존 채무는 당초 가치로 소멸되고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 간 차액은 채무면제로 기록된다(문단 4.33~4.36 참조).

4.44 새로운 채권에 대해 확정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적절한 대응치(대체가격)를 사용한다. 예컨대,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채권과 비슷할 경우, 교환된 채권의 시장가격은 새로운 채권가치에 대한 대응치로 활용할 수 있다. 교환된 채권이 최근에 채권자에 의해 취득되었다면 취득가격은 적절한 대응치가 될 수 있다. 대안으로 새로운 채권의 이자율이 보통 이자율 이하라면 보통 이자율을 활용한 채권의 할인가치는 대응치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을 때는 발행되는 채권의 액면가가 대응치로 활용될 수 있다. 출자전환(채무 대 지분)은 다음과 같다.

4.45 재정상태표에는 기존 채무상품을 소멸시키고, 가치변화와 함께 새로운

채무상품을 창출하는 거래에 따라 저량의 변화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용자대 채권교환(loan-for-bond exchange)의 경우, 용자는 명목가치로 기록되고, 채권은 이보다 낮은 시장가치로 기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부채 감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감소)를 초래한다.

4.46 새로운 채무의 수익이 일부 기존 채무 상황에 사용되는 경우, 별도의 거래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지 않은 한 기존채무는 상환된 것으로 기록하고 잔여 채무는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한다.

4.47 신규차입 조건이 양허성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전을 제공한다고 간주될 수 있다. 양허성 채무는 문단 4.81~4.86에서 논의한다.

Box 4.4. 채무재융자의 통계처리

다음의 사례는 공공부문 단위가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로서 채무 리파이낸싱을 통계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기존 채무상품 100은 새로운 채무상품 95로 교환하고 차액인 -5는 재평가한 것으로 기록한다.

	채권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채무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비용								
순자산/ 순운영수지	100	0	-5	95	-100	0	5	-95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100	0	-5	95	-100	0	5	-95
금융자산	100	0	-5	95				
기존채무상품	100	-95	-5	0				
신채무상품	0	95		95				
부채					100	0	-5	95
기존채무상품					100	-95	-5	0
신채무상품					0	95		95
총채무	0	0	0	0	100	0	-5	95
순채무	-100	0	5	-95	100	0	-5	95

3. 채무전환과 채무 조기상환

a. 채무전환

i. 정의

4.48 채무전환(스왑)은 일반적으로 할인을 의미하며, 비채무 청구권 또는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대응자금(counterpart funds)을 교환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공공부문부채는 소멸되고 채무전환으로 비채무성 부채가 생겨난다.

4.49 채무전환의 예로 채무 대 지분 전환(debt-for-equity swaps)이 있다. 지분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는 경우, 지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지분 발행단위가 공기업일 경우 특히 그렇다. 지분이 거래되지 않는 경우, 이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는 기업의 총자산 가치에서 총부채 가치를 차감한 값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주식 및 투자기금지분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4.50 채무전환의 또 다른 예는 채무전환의 기타 유형(수출에 대한 대외채무 의무를 나타내는 '채무 대 수출 전환' 등),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특정 목적으로 채무를 대응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이때 특정목적은 야생동물 보호, 보건, 교육 및 환경보호(채무 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포함한다.

4.51 직접·간접 채무전환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직접 전환은 채무자에게서 비채무성 청구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다(채무 대 주식 전환 등). 간접 전환은 예금처럼 추후 지분 구매를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청구권의 개입이다.

ii. 채무전환의 통계처리

4.52 채무자의 경우 채무-주식 전환은 채무의 감소와 ‘주식 및 투자기금지분’이라는 비채무성 부채의 증가를 야기한다.¹⁷⁾ 채권자의 경우 이러한 전환은 채무상품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의 감소와 ‘주식 및 투자기금지분’이라는 금융자산의 증가를 가져온다. Box 4.5.는 채무-주식 전환을 예로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입장에서의 채무전환에 대한 통계처리 방식을 보여준다.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에게 나타나는 순자산과 순금융자산의 변화 여부는 그 전환이 할인되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Box 4.5. 채무전환의 통계처리

다음 사례는 공기업이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로서 채무 대 주식 스왑에 대한 통계처리 방식을 보여준다. 기존 채무상품 100은 공기업 주식 100으로 교환된다.

	채권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채무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의 경 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의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비용								
순자산/ 순운영수지	100	0		100	-100	0		-10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100	0		100	-100	0		-100
금융자산	100	0		100				
기존채무상품	100	-100		0				
지분 및 투자기금주식	0	100		100				
부채					100	0		100
기존채무상품					100	-100		0
지분 및 투자기금주식					0	100		100
총채무	0	0		0	100	-100		0
순채무	-100	100		0	100	-100		0

17) 채무-주식 전환에는 제3자가 참여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권을 매입하고 공기업(채무자)의 주식을 수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b. 채무 조기상환

i. 정의

4.53 채무 조기상환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된 조건에 따른 채무의 재매입 또는 조기상환을 의미한다. 채무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된 현금상환에 따라 소멸된다. 채무 조기상환은 유리한 경제적 성과나 시장조건을 이용하여 채무를 재매입하기 위해 또는 채무 포트폴리오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채무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할 수 있다.

ii. 채무 조기상환의 통계처리

4.54 채무자의 경우 채무 조기상환은 부채와 금융자산인 ‘현금과 예금’의 감소로 이어진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 조기상환은 부채에 상응하는 금융청구권은 감소되고, 금융자산인 현금과 예금은 증가로 이어진다. 채무면제가 아니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순채무는 변함이 없다. 해당 거래는 선지급된 채무로 기록한다.

4.55 채무가 공적 채권자에 귀속되어 있거나/또는 시장외적(예: 용자) 상태라면, 채무면제의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이익 이전 목적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기상환). 이미 채무면제에서 설명했듯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자본이전 또는 자본출연은 채무면제로 기록되며, 이는 미상환 부채 및 청구권 가치의 감소이다. Box 4.6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각의 입장에서 채무면제의 요소가 개입된 채무의 조기상환에 대한 통계처리 방식을 보여준다. 채무면제는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총채무와 순채무의 감소로 이어진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면제는 금융자산 순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Box 4.6. 채무 조기상환의 통계처리

다음 사례는 공공부문 단위가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로서 채무의 조기상환에 대한 통계처리 방식을 보여준다. 용자 100은 현금 85로 조기상환되고, 이는 15만큼의 채무면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미수/미지급 자본이전/자본출연).

	채권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채무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 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 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15		
자본이전/출연						15		
비용		15						
자본이전/출연		15						
순자산/ 순운영수지	300	-15		285	100	15		115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300	-15		285	100	15		115
금융자산	300	-15		285	200	-85		115
현금 및 예금	200	+85		285	200	-85		115
기존채무상품	100	-15-85		0				
부채					100	-100		0
기존채무상품					100	-15-85		0
총채무	0	0		0	100	-100		0
순채무	-300	15		-285	-100	-15		-115

4. 채무인수 및 채무대납

a. 채무인수

i. 정의

4.56 채무인수는 채권자, 기존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보통 정부단위) 사이의 계약으로 새로운 채무자는 기존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상환한 부채를 인수하여 채무상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증요청은 채무인수의 대표적

사례이다. 기존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을 허용하는 계약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보증인 단위는 주요 채무자로서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기존채무자의 부채는 소멸됨). 공공부문 단위는 채무불이행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계약을 통해 다른 정부단위가 제3자에 빌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¹⁸⁾

ii. 채무인수의 통계처리

4.57 채무인수의 통계처리는 (i) 새로운 채무자가 기존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취득했는지 (ii) 유효한 금융청구권이 없는 경우 새로운 채무자와 기존채무자 간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기존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더 이상 계속기업(going concern)이 아닌지 여부에 달려있다.¹⁹⁾ 이는 다음 세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 채무인수자(새로운 채무자)가 기존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취득한다. 채무인수자는 기존채무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기록하면서 기존채무자에 대한 부채증가와 융자 등 금융자산의 증가를 기록한다. 기존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기존 부채의 감소와 융자와 같은 부채 증가로 기록한다. 기존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가치는 채무인수자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현재 가치이다. 이 금액이 추정되는 부채와 동일한 경우 어떤 추가적 기록도 필요하지 않다. 채무인수자의 총채무는 증가한다. 기존 채무자의 총채무가 채무인수자의 부채와 동일한 경우, 인수채무와 동일하다. 이 경우, 채무인수자 또는 기존채무자의 순채무는 변화가 없다.

18)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은행에 진 채무를 중앙정부 단위가 제각하기 위하여 자금 제공을 제안한 경우.

19) '유효한 금융청구권'란 이행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 새로운 채무자와 기존채무자가 맺은 계약 또는 약정(특히, 정부의 경우)에 의해 뒷받침되는 청구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기존채무자는 새로운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한다. '계속기업(going concern)'은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하는 실체를 말한다.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추정되는 부채보다 적은 경우, 채무인수자는 발생한 부채와 용자 등으로 취득된 금융자산 간의 차액에 대해 기존채무자에 대한 자본이전/출연 형태의 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채무인수자의 경우, 추정되는 채무만큼 총채무가 증가하며, 순채무는 자본이전 또는 자본출연 금액만큼 증가한다. 기존채무자의 경우, 총채무와 순채무는 모두 자본이전 또는 자본출연 금액만큼 감소한다. 새로운 채무자와 기존채무자(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관점에서의 실제 기록사례는 Box 4.7의 예시1을 참조하라.

- 채무인수자(새로운 채무자)는 기존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채무자가 파산을 하였거나 더 이상 계속기업이 아닌 경우, 또는 채무인수자가 기존채무자에게 혜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채무인수자는 기존채무자에 대한 자본이전/출연 형태인 비용과 기존채무자에 대한 부채의 증가로 기록한다. 기존채무자는 재정상태표에서 부채는 제거하고, 자본이전/출연의 형태로 수익을 기록해야 한다. 채무인수자의 경우, 총채무와 순채무는 증가한다. 기존채무자의 경우, 총채무와 순채무는 감소한다. 새로운 채무자와 기존채무자(채무 불이행 채무자) 관점에서의 실제 기록사례는 Box 4.7의 예시2를 참조하라. 기존채무자가 공기업으로서 계속기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 채무인수자(새로운 채무자)가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기존채무자가 계속기업으로 지속되는 공기업의 경우가 있다. 이러한 채무인수는 공기업(기존채무자)에서 채무인수자에 의해 보유되는 지분이 증가된다. 채무인수자는 기존채권자에 대한 부채증가와 지분 및 투자기금주식 형태의 금융자산 증가를 기록해야 한다. 공기업은 기존 채권자에 대한 부채 감소와 지분 및 투자기금주식 형태의 부채 증가를 기록한다. 새로운 채무자와 기존채무자(채무불이행 채무자) 관점에서의 실제 기록사례는 Box 4.7의 예시3을 참조하라. 채무인수자의 총채무와 순채무는 증가한다. 공기업(기존채무자)의 총채무와 순채무는 감소한다.

Box 4.7. 채무인수의 통계처리

예시1. 다음 사례는 일반정부 단위와 공기업에 대한 채무인수의 통계처리를 보여준다. 여기서 일반정부 단위는 공기업의 용자 100을 인수하고 채무불이행 공기업에 대한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취득한다. 공기업은 해당청구권 중 90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정부 (새로운 채무자)				공기업 (기존 채무자)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경제 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경제 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10		
자본이전/출연						10		
비용		10						
자본이전/출연		10						
순자산/ 순운영수지		-10		-10	-100	10		-9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용자(+)/순차입(-)		-10		-10	-100	10		-90
금융자산		90		90				
공기업에 용자		90		90				
부채		100		100	100	-10		90
기존채권자로부터용자		100		100	100	-100		0
정부의 용자					0	90		90
총채무	0	100		100	100	-10		90
순채무	0	10		10	100	-10		90

주: 발생한 부채(100)와 획득한 금융청구권(90)의 차이로 인해 일반정부의 순자산과 금융자산은 감소한다. 동일한 이유로, 원채무자의 계정에서는 그 반대로 이루어진다.

예시2. 다음 사례는 일반정부 단위와 민간기업에 대한 채무인수의 통계처리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일반정부 단위는 유효한 금융청구권의 취득 없이 민간기업의 용자 100을 인수한다.

	일반정부 (새로운 채무자)				민간기업 (기존 채무자)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경제 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경제 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100		
자본이전/출연						100		
비용		100						
자본이전/출연		100						
순자산/ 순운영수지		-100		-100	-100	100		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용자(+)/순차입(-)		-100		-100	-100	100		0
금융자산								
부채		100		100	100	-100		0
기존채권자로부터용자		100		100	100	-100		0
총채무	0	100		100	100	-100		0
순채무	0	100		100	100	-100		0

주: 일반정부가 부채 100을 인수했기 때문에 정부의 순자산과 순금융자산은 감소한다. 민간기업이 재정상태표상에 원채권자에 대한 부채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순자산과 순금융자산은 증가한다.

예시 3. 다음 사례는 일반정부 단위와 공기업에 대한 채무인수의 통계처리를 보여준다. 여기서 일반정부 단위는 공기업 용자 100을 인수한다. 일반정부는 채무를 불이행한 공기업에 대한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해당 공기업은 계속기업 상태를 유지한다.

	일반정부 (새로운 채무자)				공기업 (기존 채무자)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경제 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경제 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자본이전/출연								
비용								
자본이전/출연								
순자산/ 순운영수지		0		0	-100	0		-10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0		0	-100	0		-100
금융자산		100		100				
공기업의 지분		100		100				
부채		100		100	100	0		100
기존채권자로부터융자		100		100	100	-100		0
정부의 지분부채						100		100
총채무	0	100		100	100	-100		0
순채무	0	100		100	100	-100		0

주: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순자산과 순금융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일반정부의 경우 부채의 발생은 금융자산으로 대체되며, 공기업의 경우 부채는 일반정부의 공기업주식 보유 형태인 비채무성 부채로 대체된다.

b. 채무대납

i. 정의

4.58 채무인수 외에 공공부문 단위는 보증요청이나 채무인수 없이 또는 다른 기관단위(기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거나 특정 지급을 이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는 유일한 법적 채무자인 다른 기관단위의 재정상태표에 기록된 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기존 채무의 조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대납은 채무재조정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채무자가 영구적으로 지불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ii. 채무대납의 통계처리

4.59 채무대납의 처리는 채무를 갚는 공공부문 단위가 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사례는 Box 4.8.을 참조하라.

4.60 지불하는 기관단위가 기존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지불하는 기관단위는 금융자산(용자 등)의 증가와 통화와 예금의 감소로 기록한다. 수혜자(채무자)는 기존 부채의 감소와 부채를 상환한 기관에 대한 기타 부채(채무 또는 비채무성 부채)의 증가를 기록한다. 채무자에 대한 해당 기관의 청구권이 채무상품의 형태인 경우 지불하는 기관단위와 수혜자(채무자)의 총채무와 순채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불하는 기관단위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비채무성 상품의 형태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지불하는 기관단위의 경우, 총채무는 변화하지 않아 동일하지만, 순채무는 증가한다(통화 및 예금 형태의 금융자산 감소로 인해).
- 수혜자(채무자)의 경우, 총채무와 순채무는 감소한다(부채 감소로 인해).

4.61 지불하는 기관단위가 기존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불하는 해당 기관단위는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자본이전 형태의 비용과 통화 및 예금 형태의 금융자산의 감소로 기록한다. 해당 비용으로 인해 지불하는 기관단위의 순자산과 순금융자산은 감소한다. 현금과 예금 형태의 금융자산 감소는 지불하는 기관단위의 순채무를 증가시킨다(총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음). 수혜자(채무자)는 지불하는 기관단위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자본이전 형태의 수익과 기존 채무의 감소로 기록한다. 이 수익은 채무자의 순자산과 순금융자산을 증가시키고, 기존채무의 감소로 인해 채무자의 총채무와 순채무는 감소된다.

20) 채무대납은 문단 4.16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증이행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애초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Box 4.8. 채무대납의 통계 처리

예시1. 다음 예시는 공공부문 단위의 채무 20을 공공부문 단위 A가 대납한 경우의 통계처리를 보여준다. 여기서 공공부문 단위 A는 공공부문 단위 B에 대한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취득한다.

	공공부문 단위 A				공공부문 단위 B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자본이전/출연								
비용								
자본이전/출연								
순자산/ 순운영수지	20	0		20	-300	0		-30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20	0		20	-300	0		-300
금융자산	20	0		20				
현금 및 예금	20	-20		0				
단위 B로 융자		20		20				
부채					300	0		300
기존 채무상품					300	-20		280
단위 A로부터 융자					0	20		20
총채무	0	0		0	300	0		300
순채무	-20	0		-20	300	0		300

예시2. 다음 예시는 공공부문 단위 B의 채무 원금 20을 공공부문 단위 A가 대납한 경우의 통계처리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공공부문 단위 A는 공공부문 단위 B에 대한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공부문 단위 A				공공부문 단위 B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20		
자본이전/출연						20		
비용		20						
자본이전/출연		20						
순자산/ 순운영수지	20	-20		0	-300	20		-28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20	-20		0	-300	20		-280
금융자산	20	-20		0				
현금 및 예금	20	-20		0				
부채					300	-20		280
기존 채무상품					300	-20		280
총채무	0	0		0	300	-20		280
순채무	-20	20		0	300	-20		280

5. 일부 국제 채무구제 프로그램

4.62 국가에 채무구제를 제공하는 국제협력이 존재한다. 채무구제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합의
- 채권자가 제공하는 채무상환 유예
- 고채무 빈곤국가 채무구제계획(HIPC)
- 다자간 채무구제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

a.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합의

4.63 채권국들의 비공식 모임인 파리클럽²¹⁾은 채권국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들이 채무국의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 제공한 (계약 또는 보증) 채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채무는 공적으로 보증된 수출신용과 양자 용자로 이루어진다. 파리클럽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채무를 재조정한다.

- 통상적으로 해당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정된 분할상환과 이자지급 모두에 적용하는 유량방식(flow treatments)과
- 특정일자에 전체 미상환 원금에 적용하는 저장방식(stock treatments)이 있는데, 이 방식은 재조정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만족할만한 성과를 파리클럽에 보여주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4.64 이러한 유량 및 저장방식은 본질을 기록해야 하는데, 본 장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채무재조정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파리클럽의 합의 의사록과 특정 이행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상환에 대한 기록은 특수한 사례에 속한다.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합의에 의거하여, 채권국들은 하나의

21) 파리클럽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10장 참조.

그룹으로서 대개 직접 서명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사록’에 따라 파리 클럽 양자 간 협정의 특정 유효(이행)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상 채무를 상환일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급조건에 동의한다. 그러나 기존 용자조건에 근거한 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공식적으로 양자 간 협정이 체결된 시점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4.65 지급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기술적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²²⁾ 기존 계약의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유예된다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상호합의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기술적 연체는 새로운 조건들이 적용²³⁾ 되는 양자 간 협정의 유효일까지 채무국에서 만기가 재조정된 단기채무로 간주되어 기타미지급으로 분류된다.

b. 채권자가 제공한 채무상환 유예

4.66 채무상환 유예란 개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에 대한 상환을 공식적으로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채무상환 유예는 자연재해 발생 시 인정되는 경우(2005년 쓰나미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채무유예와 같은)가 종종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공식적인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공식적인 양자 간 협정체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4.67 대개 이러한 채무유예는 채무자에게 단기채무를 구제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공하는 채무상환 유예는 채무 재조정으로 분류된다. 단, 서신교환과 같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공식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기존 계약에 따른 채무상환 미납은 연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채무상환에 대한

22) <대외채무통계: 작성자 및 사용자 지침>, 제3장 참조.

23) 이 방식은 제 조건이 유사한 채무재조정 합의에 적용된다.

재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만기일에 채무상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채무의 상황에 해당하는) 해당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며, 동시에 (신규채무의 발생을 나타내는) 동일한 채무상품의 증가를 기록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예로 인해 이후의 모든 채무상환에 대한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채무는 전액 상환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한다(각주 15 참조).

c. 고채무 빈곤국가 채무구제계획(HIPC)

4.68 1996년 IMF와 세계은행이 발족한 HIPC는 고채무 빈곤국가의 대외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제금융기구(다자간 기구 및 정부를 포함)에 협조를 요청한다. HIPC 프로그램에 따른 채무구제는 조건부이며 일반적으로 ‘결정시점’과 ‘완료시점’으로 불리는 두 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4.69 ‘결정시점’에 도달하기 위해 채무국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²⁴⁾ 어떤 국가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켰거나 충분한 진전을 이루었다면, IMF와 세계은행의 집행이사회는 해당 국가의 채무구제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며,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수준까지 채무를 감축시킬 것을 약속한다. HIPC는 공식적 양자 또는 민간채권자 및 다자간 기구들의 입장에서 이에 상응하는 채무구제를 하게 된다. 어떤 국가가 ‘결정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즉시 해당 국가는 만기가 도래되는 채무에 대한 잠정구제를 받기 시작한다. 어떤 채무국이 ‘완료시점’에 이르면, 해당 국가는 결정시점에 약속된 채무에 대해 전액 취소 불가능한 면제를 받게 된다.²⁵⁾

24) 해당 국가는 (i)세계 극빈국들에게 무이자 차관과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의 국제개발기구(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IDA)와 보조금이 지원된 이자율로 저임금 국가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IMF의 신용확대프로그램(Extended Credit Facility)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ii) 전통적인 채무구제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부담에 직면하고 있어야 하고, (iii) IMF와 세계은행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개혁과 건전한 정책에 대한 실적을 쌓아야 하며, (iv) 해당국가 내 광범위한 참여 방식을 통해 빈곤퇴치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를 마련해야 한다.

25) 이 단계에서 해당 국가는 (i)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차관으로 인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ii) 결정시점에 합의된 주요 개혁을 충분히

4.70 1999년, 공개 협의과정을 포함하여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와 IMF의 포괄적 검토를 통해 HIPC 프로그램은 강화되었다. 본 프로그램에 따라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이 하향조정되어 더 광범위한 국가들에게 더 많은 금액의 채무를 구제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주요 다자간 기구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은 결정시점에 잠정구제의 형태로 적격 국가들에게 조지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동적 완료시점(floating completion point)’을 도입하여 개혁의 속도를 앞당기고 국가 오너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4.71 HIPC 프로그램 하 채무구제의 통계처리 방법은 제공되는 채무구제의 형태에 달려 있으며, 채무 면제, 채무재조정 및 채무재융자를 포함할 수 있다(문단 4.74 참조).

d. 다자간 채무구제계획(MDRI)

4.72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HIPC 프로그램의 보완책으로 다자 간 채무구제계획(MDRI)이 마련되었다.²⁶⁾ MDRI는 세 다자간 기구[즉 IMF, 세계은행의 IDA,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을 통하여 적격 채무에 대해 100% 구제한다.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개선한 HIPC 프로그램에 따라 ‘완료시점’에 도달하였거나 결과적으로 도달하게 될 국가들은 MDRI에 대한 자격이 있다. 1인당 소득이 미화 380달러 이하인 회원국들(비 HIPC 국가 포함) 또한 자격이 있다.

4.73 MDRI는 해당 국가들이 MDGs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추가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주기 위해 채무 전액을 구제해 준다는 점에서 HIPC 보다 한발 앞선 프로그램이다. HIPC 프로그램과는 달리, MDRI는 공식적 양

이행하며, (iii) 빈곤퇴치전략보고서를 최소 1년 동안 적용 및 이행하여야 한다.

26) UN 새천년개발목표는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 또는 민간 채권자, IMF, IDA, AfDF 이외의 다자간 기구들을 대신해서 상응하는 채무구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7년 초, 미주개발은행(IDB)은 서반구의 다섯 개 HIPC 지원국들에게 이와 유사한 채무구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개선된 HIPC 프로그램에 따른 채무구제는 주로 채무 유량의 구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MDRI에 따른 채무구제는 채무 저량의 구제를 제공한다.

4.74 MDRI는 대개 IMF에 의한 채무해지라고도 불리지만 사실상 채무국에 출연하는 주체는 MDRI 트러스트(Trusts)이며, 이러한 출연은 IMF에 대한 적격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MDRI를 기록하는 데 있어 무상원조 부문과 채무자의 이자 및 분할상환일정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채가 중앙은행의 책임으로 기록되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MDRI의 부채구제 규모(stock-of-debt-relief)의 통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IMF의 HIPC 및 MDRI 트러스트에서 제공한 구제: MDRI 트러스트로부터 IMF에게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기관단위(즉,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대한 대외 자본출연(대변)형태의 수익을 기록하고, IMF에 대한 기관단위의 채무상환을 나타내는 대외채무(차변)의 감소를 기록한다.
- IMF에 대한 대외채무가 중앙은행의 책임인 경우, 채무구제는 일반정부 재정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대외원조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일반정부를 거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일반정부는 수익 이전, 즉 중앙은행에서 특정 정부예금계좌로 직접 이전되거나 또는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청구권의 감소(즉, IMF 용자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을 당초 정부에게 용자한 경우)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중앙은행이 대외용자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을 정부에게 용자해준 경우, 정부의 계정에서 MDRI 구제의 출연으로부터 생겨난 수익금에 대한 기록은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계정을 작성하는 국가들과 오직 현금주의에

입각하여 계정을 작성하는 국가들에 따라 달라진다.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중앙은행을 통한 MDRI 채무구제에서 비롯된 출연에 대해 일반정부통계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자본이전으로 직접 표시하며, 이에 상응하여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미상환 부채의 감소로 기록한다.²⁷⁾ 그러나 현금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의 경우, 어떠한 수익이나 금융거래도 일반정부통계에 기록되지 않는다. 채무구제의 결과로서 정부와 중앙은행 간 또는 정부와 MDRI 트러스트스 간에 어떠한 현금흐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무구제로 인한 정부의 편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자지급액과 중앙은행에 대한 국채 상환액의 감소로 나타난다.²⁸⁾ 하지만, 중앙은행으로부터 일반정부로의 실제 이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채무의 감소로 기록해야 한다.

- MDRI 트러스트스에 대한 대외채무가 중앙정부의 책임인 경우, 통계처리 는 IDA와 AfDF, 또는 다른 당사자(즉, IDA 또는 AfDF가 아닌 MDRI 트러스트스)로부터의 MDRI 채무구제의 경우와 유사하다. 달리 말해, 일반정부는 MDRI 트러스트스로부터 미수 자본출연(대변)과 IMF에 대한 대외부채 감소(차변)로 기록한다.
- IDA와 AfDF로부터의 구제: MDRI 채무구제는 본 장의 문단 4.33~4.36에서 다른 직접 채무면제를 의미한다.

27) 중앙은행이 IMF 대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일반정부에 용자해주기 때문에, 일반정부는 중앙은행에 대한 국내채무를 갖게 된다. 문단 4.158 참조.

28) IMF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외채무가 감소함에 따라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국내부채는 감소한다.

D. 기타 채무 관련 이슈

1. 채무의 제각 및 상각

a. 정의

4.75 채무의 제각(write-offs) 또는 상각(write-downs)은 채권자가 채무액을 일방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되지 않음으로 인해(주로,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 채권자가 채무가 어떤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거나 감소하였다고 결론짓는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반정부로부터 차입한 공기업이 지급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 단위의 청구권은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단위(채권자)의 재정상태표에서 제각 또는 상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채무자에 의한 일방적 제각 또는 채무변제의 거부는 거시경제 통계체계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b. 채무제각 및 상각에 따른 통계처리

4.76 상호 합의된 채무면제(문단 4.33~4.36 참조)와는 달리, 채무제각의 거래는 일방적인 조치이며, 따라서 거시경제 통계체계에서는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기록된다.²⁹⁾ Box 4.9.는 채무제각의 통계처리를 보여준다.

4.77 금융자산은 ‘자산 및 부채 규모의 기타 변동’이라고 불리는 ‘거래외 경제유량’을 통해 채권자의 재정상태표에서 소멸된다. 그 결과, (금융자산 감소로 인해) 채권자의 순채무는 증가하며, 총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9) 본 지침의 부록 2에 설명된 대로, 거시경제 회계는 재정상태표에서 저량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흐름, 즉 거래 및 거래외 경제유량을 구분한다. 거래외 경제유량에는 두 가지 유형(즉, 보유이익/손실(재평가)과 자산 및 부채 규모의 기타 변화)이 존재한다.

4.78 ‘자산 및 부채 규모의 기타 변동’에서 채무자의 재정상태표에 상응하는 부채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채무자의 총채무 및 순채무는 감소한다.

Box 4.9. 채무제각의 통계처리

다음 예시는 공공부문 단위가 채권자일 때 채무제각을 통계처리하는 방식이다. 일반정부 단위가 공기업에 대한 융자 100을 제각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채권자로서 일반정부 단위				채무자로서 공기업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의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의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자본이전/출연								
비용								
자본이전/출연								
순자산/ 순운영수지	100		-100	0	-100		100	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100		-100	0	-100		100	0
금융자산	100		-100	0				
공기업에 융자	100		-100	0				
부채					100		-100	0
정부로부터 융자					100		-100	0
총채무	0	0	0	0	100	0	-100	0
순채무	-100	0	100	0	100	0	-100	0

주: 채무제각이 일방적으로 수행되더라도 거시경제 통계에서는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채무자 계정에 제각을 기록해야 한다.

2. 신규 차입자금

4.79 채무자의 일시적인 조달 문제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채무구조조정 약정에 따라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만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신규 차입자금이 제공된다. 만기 채무와 신규 차입자금은 별도로 처리된다(상세한 사항은 Box 4.10. 참조). 이때 신규 차입의 조건이 양허성(concessional)을 띠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양허성 채무는 문단 4.81~4.86절에서 논의한다.

Box 4.10. 신규 차입자금 통계처리

다음 예시는 공공부문 단위가 각각 채권자 및 채무자인 경우 신규 차입자금의 통계처리를 보여준다. 공공부문 단위 채무자가 다른 공공부문 단위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만기채무 100을 상환하기 위하여 신규 차입자금 100을 받을 때의 통계처리를 살펴보자.

	채권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채무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자본이전/출연								
비용								
자본이전/출연								
순자산/ 순운영수지	350	0		350	-100	0		-10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350	0		350	-100	0		-100
금융자산	350	0		350	0	0		0
현금 및 예금	250	100-100		250	0	100-100		0
기존 융자	100	-100		0				
신규차입자금(융자)	0	100		100				
부채					100	0		100
기존 융자					100	-100		0
신규차입자금(융자)					0	100		100
총채무	0	0		0	100	0		100
순채무	-350	0		-350	100	0		100

3. 채무해소

4.80 채무해소(Debt defeasance)를 통해 채무자 단위는 소득이나 가치가 원리금 상환을 전부 충당할 만큼 충분한 금융자산과 대응시킴으로써 재정상태표에서 부채를 제거한다. 채무해소는 관련 기관단위 내 별도의 계정에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거나 다른 기관단위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어떤 경우든 거시경제 통계체계에서는 채무해소가 채무자의 미상환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법적의무에 변화가 없는 한 채무해소와 관련된 어떤 거래도 GFSM 체계에 기록되지 않는다. 자산과 부채가 기

관단위 내 별도 계정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러한 자산과 부채는 모두 총계 기준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만일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 기관단위가 설립되는 경우, 새로운 단위(실체)는 보조단위로 처리되고, 채무해소 단위와 연결해야 한다.

4. 양허성 채무

a. 개요

4.81 거시경제 통계에는 양허성 채무(Debt concessionality)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의나 측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허성 차관은 어떤 기관단위가 다른 단위에게 대출을 해주고 계약상 이자율이 달리 적용되며, 시장이자율 이하로 설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허성의 정도는 거치기간³⁰⁾, 지불빈도,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만기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4.82 양허성 차관의 조건은 채무자에게 시장조건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양허성 차관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로의 자본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SNA와 기타 거시경제 통계에서의 몇 가지 대안 이외에는 이러한 이전의 효과를 명확히 산정하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허성 채무의 적절한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양허성 채무에 관한 정보는 보충표에 제공되어야 한다.

b. 파리클럽의 채무구조조정 사례

4.83 파리클럽은 시장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채의 현재가치를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채무구조조정을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할인율은 OECD의 상업표준이자율(이하 CIRRR)이다.³¹⁾ 해당 채무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 간 차

30) 거치기간이란 채무자에게 대출액이 지급된 날로부터 1차 상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액은 채무구조조정에 따른 자본이전 금액과 같다.

4.84 채무구조조정에 따라 중요한 자본이전을 하는 경우, 국가의 채무통계 시 자본이전 내역을 부기항목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본이전은 용자 개시시점의 채무의 명목가치와 (일반적으로 CIRR과 같은 시장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 간의 차액이 일회성 거래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상환기간, 거치기간, 지불빈도 이자율, 기타 소요 비용 등 자본이전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감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용자의 명목가치와도 일치한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하면 서로 특성이 다른 양허성 용자와 상업성 용자 간의 경제적 등가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법은 보조금 35%가 결합된 양허성 용자 100단위와 직접 출연 35단위가 결합된 상업성 용자 100단위 간의 경제적 등가가 일치한다. 자본이전 가치는 실제로 자본이 이전되는 시점, 즉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산정되며, 채무의 명목가치와 지급흐름을 적절한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간의 차액과 동일하다.

4.85 용자가 만기 이전에 상환되어 신규 용자로 대체되면 이전에 부기항목으로 기록된 자본이전 내역을 조정해야 한다. 즉, 기존 용자에 대하여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자본이전 금액을 기존에 산정된 자본이전 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허성 금액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대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4.86 이러한 조정액은 실제 상환일정 경과를 참조하여 재조정 당시 총 미상환채무의 회수가치를 비롯하여 채무 개시시점의 자본이전 금액을 재산정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다.³²⁾ 이렇게 재산정된 금액이 과거 부기항목 데이터에

31) CIRR은 매월 15일 15개국 통화에 대해 설정되는 이자율로, 잔여만기가 5년인 국채에 대한 유통시장수익률을 기반으로 한다. 캐나다 달러와 덴마크 크로네, 일본 엔,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 미국 달러 및 유로화에 대해서는 3년 및 7년 만기의 국채수익률이 적용된다.

포함된 기존 산정액을 대체하여야 한다. 다양한 시장 이자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이를 통해 신규 양허성 자본이전과 기존 용자 중 미상환액을 구별함으로써 과거 데이터가 실제 자본이전 금액을 반영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산정에는 다량의 정보가 필요하고 편제에 상당한 노력이 수반된다.

5. 금융리스로 인한 채무

a. 정의

4.87 금융리스는 자산의 법적 소유주로서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소유권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편익)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 즉 리스이용자가 자산의 경제적 소유주가 된다. 금융리스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용자를 계상하고 리스이용자는 이를 자산 취득으로 기록한다. 따라서 리스가 된 자산은 리스제공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의 재정상태표에 기록한다. 리스가 된 자산에 상응하는 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는 자산으로 리스이용자에게는 부채로 인식된다.

4.88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된다.

- 리스기간 종료 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때
-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이용자에게 옵션의 행사가 적절하도록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할 때
- 리스기간이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주요(상당)부분을 차지할 때
- 초기 리스금액의 현재가치가 자산의 모든 가치일 때
-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32) 이러한 채무 회수에는 채무면제도 포함된다. 채무면제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전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부담할 때

- 자산의 잔존가치로부터의 이득과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할 때
- 리스이용자가 시장가격보다 대체로 낮은 금액으로 지불하고 다음 기간에도 리스를 계속할 권한을 가질 때

4.89 이러한 리스계약의 조건은 모든 위험을 차단시킬 정도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리스 종료시점에 당시의 공정가격으로 리스이용자에게 넘겨지면 리스제공자는 소유권에 따른 위험을 지게 된다. 따라서 리스는 운영리스로 간주된다(아래 참조). 금융리스는 재무리스 또는 자본리스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금융리스의 목적이 자산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계규칙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금융리스로 인식한다. 금융리스는 민간사업 계정에서 주로 인식하지만 민관협력사업 중에서도 금융리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³³⁾(2008 SNA 제22장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참조).

4.90 금융리스는 주로 자산의 소유권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이 법적 소유자(리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통계에서 파악하는 기타 유형의 리스와는 구별된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운영리스: 운영리스는 생산자산의 법적 소유자가 경제적 소유자와 동일하며 자산의 소유권에 따르는 모든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는 리스계약을 말한다. 운영리스 관련지표 중 하나는 자산의 유지보수가 법적 소유자의 책임인가이다. 운영리스하의 자산은 리스제공자의 재정상태표에 기록한다. 운영리스에 따라 지급되는 돈은 '임대료(rental)'로 칭하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금(비용)으로 기록된다.

33) 예를 들어, 자산의 소유에 따르는 위험과 편익을 정부에 이전하기 위해 건설, 보유, 운영, 이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이때 민간합작 참가자는 금융리스의 제공자로 취급된다.

- 자원리스: 자원리스는 내용연수가 무한한 천연자원의 법적 소유자가 규칙적인 임대료를 받고 그 지불의 대가로서 천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이 비용은 지대로 기록된다. 또한 천연자원은 리스이용자가 이용하더라도 리스제공자의 재정상태표에 계속적으로 기록된다. 천연자원과 관련된 리스는 (무기한 제공되는 전자기파 사용권과 같이)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계약, 리스, 면허: 금융리스를 제외한 양도성 리스로서 경제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며 재정상태표에 비생산 비금융자산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리스는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그 예로 천연자원사용허가는 이러한 자원의 소유권으로 기록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구입하기 위한 재정지원이다.³⁴⁾

34) 보다 상세한 사항은 BPM6의 문단 13.11~13.16 및 2008 SNA의 제17장 5부를 참조.

Box 4.11. 금융리스의 통계처리

다음은 각각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금융리스를 통계처리하는 법을 예시로 보여준다. 공적으로 통제되는 항공사가 항공기를 리스해주는 사례이다. 공기업인 항공사가 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된다. 항공기의 취득은 용자로 충당되며 이때 용자는 부채로 계상된다. 항공기의 시가는 1000, 리스개시일은 1월 1일, 연간 상환액은 140, 상환일은 매년 12월 31일, 리스기간은 10년이라 가정해보자.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리스이용자는 항공기를 그 잔존가치와 일치하는 32.8에 구입하게 된다. 당 계약의 이자율은 연간 7%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리스기간 10년 동안 고정자본 소비와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자산재평가 등 유량이 발생하지 않아 (비금융자산인) 항공기의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리스계약 1년째의 미연결 재정상태표를 살펴보자.

	리스제공자로서 공공부문 단위(은행)				리스이용자로서 공공부문 단위(항공사)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70						
미수 이자		70						
비용						70		
미지급 이자						70		
순자산/ 순운영수지	1,000	70		1,070	2,500	-70		2,430
비금융자산	1,000	-1,000		0	0	1,000		1,000
순금융자산/ 순용자(+)/순차입(-)	0	1,070		1,070	2,500	-1,070		1,430
금융자산 현금 및 예금 항공사에 용자		1,070		1,070	2,500	-140		2,360
		140 1,000+ 70-140		140 930	2,500	-140		2,360
부채 은행으로부터 용자						930 1,000+ 70-140		930 930
총채무	0	0		0	0	930		930
순채무	0	-1,070		-1,070	-2,500	1,070		-1,430

주: 이자는 $0.07 \times 1,000 = 70$ 으로 산정된다.

리스계약 2년째의 미연결 재정상태표를 살펴보자.

	리스제공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은행)				리스이용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항공사)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65.1						
미수 이자		65.1						
비용						65.1		
미지급 이자						65.1		
순자산/ 순운영수지	1,070	65.1		1,135.1	2,430	-65.1		2,364.9
비금융자산	0			0	1,000			1,000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1,070	65.1		1,135.1	1,430	-65.1		1,364.9
금융자산	1,070	65.1		1,135.1	2,360	-140		2,220
현금 및 예금	140	140		280	2,360	-140		2,220
항공사에 융자	930	65.1-140		855.1				
부채					930	-74.9		855.1
은행으로부터 융자					930	65.1-140		855.1
총채무	0	0		0	930	-74.9		855.1
순채무	-1,070	-65.1		-1,135.1	-1,430	65.1		-1,364.9

주: 이자는 $0.07 \times 930 = 65.1$ 로 산정된다.

리스계약 10년째의 비연결 재정상태표를 살펴보자.

	리스제공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은행)				리스이용자로서 공공부문 단위 (항공사)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11.3						
미수 이자		11.3						
비용						11.3		
미지급 이자						11.3		
순자산/ 순운영수지	1,421.5	11.3		1,432.8	2,078.5	-11.3		2,067.2
비금융자산	0			0	1,000			1,000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1,421.5	11.3		1,432.8	1,078.5	-11.3		1,067.2
금융자산	1,421.5	11.3		1,432.8	1,240	-172.8		1,067.2
현금 및 예금	1,260	140+32.8		1,432.8	1,240	-140-32.8		1,067.2
항공사에 융자	161.5	11.3-140-32.8		0				
부채					161.5	-161.5		0
은행으로부터 융자					161.5	11.3-140-32.8		0
총채무	0	0		0	161.5	-161.5		0
순채무	-1,421.5	-11.3		-1,432.8	-1,078.5	11.5		-1,067.2

주:

- 이자는 $0.07 \times 161.5 = 11.3$ 으로 산정된다.
- 최종 리스료 지급 이후 항공기의 잔존가치는 32.8인데, 이는 $161.5 + 11.3 - 140$ 으로 산정된다.

b. 금융리스의 통계처리

4.91 금융리스의 통계처리는 리스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 금융리스하의 자산은 사용자가 구입 및 소유한 것과 같이 취급된다.³⁵⁾

4.92 금융리스는 자산의 전체 내용연수의 보장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유지되는 리스계약의 경우,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용자가치가 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그러한 가치에는 자산 비용과 이자발생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리스제공자가 청구하는 수수료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 리스계약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용자가치는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리스계약 종료 이후에도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재정상태표에 기록되며, 그 가치는 리스계약 종료 시점에 리스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용자의 가치와 동일하다.

4.93 용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분할지급(이자와 원금으로 구성³⁶⁾)과 계약 종료시점의 잔여 지불(또는 대안적으로 리스제공자에게 재화의 보상수단)로 상환된다. 금융리스에 대한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통계처리는 Box 4.11.에 정리되어 있다.

4.94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리스가 개시되면 총채무와 순채무가 증가하며, 그에 따른 리스료 지급으로 인해 총채무와 순채무가 감소한다. 리스료에는 이자가 포함되며 그러한 이자지급으로 결과적으로 순자산과 순금융자산이

35) 법적 합의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안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않는다.

36) 금융중개기관이 개입되면 이러한 구성요소에 금융중개서비스 간접 측정금액(FISIM)이 포함된다. 이는 국민계정통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감소한다. 원금상환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거래로 인식되므로 리스이용자의 순자산 및 순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95 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 금융리스는 총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리스제공자의 순채무가 감소하는 이유는 리스료로 인해 금융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6. 특수목적기관 채무

a. 정의

4.96 특수목적기관(이하 SPE)은 제2장 문단 2.64~2.67에서 설명된다. 공공부문의 채무를 파악하기 위해 SPE에 대한 적절한 단위와 기관부문화가 결정되어야 한다. SPE가 공공부문에 속한다면 그 채무는 공공부문 또는 그 하위부문 채무의 일부이다.

4.97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정부계약에 의해 민간부문과 경쟁 없이 정부에 재화와 서비스를 독점판매하는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업은 인공 자회사로 불리며 (그 모 기관단위인) 일반정부 부문의 일부로 분류된다. 이러한 정부의 인공 자회사는 종종 SPE의 형태로 설립된다. 법적 기업인 이러한 단위는 일반정부 부문의 일부로 분류된다. 따라서 그 채무 역시 일반정부의 채무에 속한다.

4.98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실체를 통해 재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SPE를 통해 해외에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SPE는 그 어떤 국가의 일반정부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체는 경제주권국의 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대사관 또는 위요지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단위/실체에 대해 직접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 실체를 통해 수행되는 재정활동이 본국 정부의 거래와 저량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외 SPE 간 거래와 저량에 대한 특별추정(special imputations)이 사용되어야 한다.³⁷⁾ 이에 따라 정부를 대신하여 SPE가 발생시키는 실제적 내재적 채무는 정부에 귀속된다.

b. 일반정부의 비거주 SPE에 대한 통계처리

4.99 한 경제 안에 거주하는 SPE 실체가 다른 경제의 정부를 대신하여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차용할 경우, 정부계정에서의 통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차입시점: 차입을 하는 실체에 대해 정부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래는 차입액과 동일하게 추정된다. 거래 상대방의 부기는 차입하는 실체의 정부 지분의 증가로 기록한다.
- 자금 또는 자금으로 취득되는 자산이 정부로 이전되는 시점(해당되는 경우): 자금이나 자산 유량의 거래가 기록되며 그 규모는 차입하는 실체의 정부 지분감소액과 동일하다.
- 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입하는 실체에 의해 (정부로 이전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시점: 정부와 실체 간 경상 또는 자본이전은 정부 지분 감소액과 동일하다.

4.100 Box 4.12.의 두 가지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차입하는 실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입하는 실체와 채권자 또는 기타 제3자 간의 거래 또는 저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추정치가 아니라 발생에 기초하여 기록해야 한다.

37) 정부조직에 대하여 특별한 접근법을 취하는 이유는 비거주 실체가 민간부문과 달리 상업적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정부를 대행하여 공공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출 및 채무에 관련된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Box 4.12. 일반정부 소속 비거주 SPE가 창출하는 채무와 유량의 통계처리

다음은 일반정부가 설립한 비거주 SPE와 관련된 채무 및 유량의 통계처리를 두 가지 예시로 보여 준다.

예시1. 정부 A가 정부 B에 SPE를 설립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SPE의 역할은 정부를 대행하여 차입활동을 수행하고 수익으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다. SPE가 기계장치 등 비금융자산의 취득을 정부 B에서 차입한 100으로 충당하고 해당 기계장치를 정부 B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반정부 A				일반정부의 비거주 SPE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 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비용								
순자산/ 순운영수지		0		0		0		0
비금융자산						(c) 100		100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0		0		-100		-100
금융자산 현금 및 예금		100		100		100		100
현금 및 예금						(a) 100		
SPE에서 정부로 융자(암묵적)						(c) -100		
SPE의 지분(암묵적)		(b) 100		100		(b) 100		100
부채		100		100		200		200
SPE에서 정부로 융자(암묵적)		(b) 100		100		(a) 100		100
SPE에 의한 차입								
정부의 지분부채 (암묵적)						(b) 100		100
총채무	0	100		100	0	100		100
순채무	0	100		100	0	0		0

주:

- 정부 A의 계정에는 SPE로부터의 융자를 차입금액인 100 혹은 (b)와 동일하게 계상하고 그에 대응하여 SPE에 대한 정부의 지분이 100(b)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함으로써 SPE가 차입한 금액(a)을 귀속시킨다. SPE는 정부에 대한 지분부채 혹은 (b)를 귀속시키고 그에 대응하여 정부에 대한 금융청구권을 갖는 것(b)으로 계상한다(정부에 실시한 융자).
- 취득한 기계장치 100은 SPE의 비금융자산(c)으로 계상하고 그에 대응하여 현금 및 예금이 100 감소(c)한 것으로 인식한다.
- SPE가 정부에 실시한 융자로 정부의 총채무는 100만큼 증가한다. SPE의 채무 역시 100만큼 감소한다(정부에 대한 SPE의 지분부채 100은 채무가 아니다).
- 거래귀속의 결과 결산 재정상태표상 정부부채 및 순자산 가치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차입활동을 수행할 때의 부채 및 순자산 가치와 동일해진다.

예시2. 정부 A가 정부 B에 지분 20을 투자하여 SPE를 설립하고, SPE는 정부 A를 대신하여 차입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SPE는 정부 B에서 100을 차입하여 정부 A가 정부 C에서 차입한 111에 대한 상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일반정부 A				일반정부의 비거주 SPE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111		
자본이전(암묵적)						(e) 111		
비용		111				111		
서비스 비용 자본이전(암묵적)		(e) 111				(d) 111		
순자산/순운영수지		-111		-111		0		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순융자(+)/순차입(-)		-111		-111		0		0
금융자산		-11		-11		109		109
현금 및 예금		(a) -20		-20		(a) 20		9
현금 및 예금						(b) 100		
SPE에서 정부로 융자(암묵적)		(c) 100				(d) -111		100
SPE의 지분(암묵적)		(a) 20		9		(c) 100		
SPE의 지분		(e) -111						
SPE의 지분(암묵적)								
부채		100		100		109		109
SPE에서 정부로 융자(암묵적)		(c) 100		100				
SPE에 의한 차입						(b) 100		100
정부의 지분부채(암묵적)						(c) 100		
정부의 지분부채						(a) 20		9
정부의 지분부채						(e) -111		
총채무	0	100		100	0	109		109
순채무	0	120		120	0	-9		-9

주:

- 정부 A의 계정에는 SPE에 대한 출연금 20이 SPE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실제 거래(a)로 계상된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금융자산인 현금 및 예금(a)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된다. SPE는 정부에 대한 지분 부채의 증가를 계상하고(a), 그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의 현금 및 예금(a)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 정부 A의 계정에는 SPE로부터의 융자를 차입금액인 100 또는 (c)와 동일하게 계상하고 그에 대응하여 SPE에 대한 정부의 지분(c)이 100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함으로써 SPE가 차입한 금액(b)을 귀속시킨다. SPE는 정부에 대한 지분부채 또는 (c)를 귀속시키고 그에 대응하여 정부에 대한 금융청구권을 갖는 것(c)으로 계상한다(정부에 실시한 융자).
- SPE의 계정에는 정부 C에 대한 상환비용 111(d)이 비용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의 현금 및 예금(d)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된다.
- 정부 A의 계정에는 비용 111(e)이 SPE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귀속되고 그에 상응하는 SPE의 지분이 암묵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된다(e). SPE의 계정에는 수익 (e) 111이 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으로 귀속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에 대한 지분부채가 감소하는 것(e)으로 인식된다.
- 그 결과 정부의 순자산이 (비용을 반영하여) 111만큼 감소하나 SPE의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 정부 A의 총채무는 SPE로부터의 융자를 반영하여 100만큼 증가한다. SPE의 총채무 역시 100만큼 증가한다[SPE의 지분 부채 9(=100+20-111)는 채무가 아니다].
- 결산 재정상태표상 정부부채 및 순자산 가치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차입활동을 수행할 때의 부채 및 순자산 가치와 동일해진다.

7. 증권화로 인한 채무

a. 정의

4.101 증권화는 ‘자산보유자(originator)’ 단위가 금융 및 비금융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장래에 특정 유량을 받을 권리를 다른 증권화 단위에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대가로 증권화 단위는 자체 자금원에서 자산보유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증권화 단위는 자산보유자에 의해 담보로 이전되는 자산이나 장래 유량에 대한 권리를 이용하여 채무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체재원을 얻게 된다.³⁸⁾ 공공부문 단위가 발행한 자산담보부 증권은 공공부문부채의 일부가 된다.

4.102 증권화로 인해 이표나 원금지급(또는 둘 다)이 특정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또는 미래의 수익원으로 유동화되는 채무증권이 생성된다. 다양한 유형의 자산 또는 미래의 수익원은 거주 및 상업 담보대출, 소비자 금융, 정부대출, 신용 파생상품을 포함한 증권화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정부 단위는 특정 목적세 수익(earmarked revenue)으로 유동화된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거시경제 통계체제에서 조세 및 기타 정부수익 증가는 증권화에 사용될 수 있는 정부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행료 등과 같은 미래 수익이 일반정부 단위에 의해 발행되는 채무증권들에 사용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은 증권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문단 4.106 및 4.108 참조).

4.103 증권화방식은 채무증권 시장에 걸쳐, 그 안에서 변화한다. 광의의 관

38) 증권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국제결제은행, 유럽중앙은행, IMF가 발간한 <증권통계에 관한 소책자> 및 <2008 SNA>의 문단 22.131~22.133을 참조. <증권통계에 관한 소책자>는 증권화 단위나 자산이전이 개입되지 않는 증권화도 다루고 있다.

39) 예를 들어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아 미래의 조세수익이 창출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자산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점에서 증권화 단위가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진다. 채무 증권이 증권화 단위에 의해 발행될 때 발행 기관단위는 금융기업 부문의 금융중개기관이다. 종종 증권화 단위는 SPE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2장 문단 2.6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정부와 관련하여 수동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거주 SPE들은 거시경제 체제에서 별도의 기관단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SPE는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일반정부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 증권화 단위가 개입될 경우, 거시경제 통계관점에서 증권화 방식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실질적 매매 증권화(true sale securitization)⁴⁰⁾는 거시경제 통계의 관점⁴¹⁾에서 기존 자산보유자의 재정상태표로부터 증권화 단위의 재정상태표까지 자산이 실질적으로 이전(매매)되는 방식이다.
 - 실질적 매매가 없는 증권화(no true-sale securitization)⁴²⁾는 거시경제 통계 관점에서 자산보유자의 재정상태표로부터 증권화 단위의 재정상태표까지 실질적으로 이전(매각)되지 않는 방식이다.
 - 자산이 없는 증권화(no asset securitization)⁴³⁾는 거시경제 통계에서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미래 수익원의 증권화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 증권화 단위의 합성증권화(synthetic securitization)⁴⁴⁾는 증권화 단위를 통한 신용위험의 이전(자산의 이전 없이)만 포함하는 방식이다.

40) <증권통계에 대한 소책자>에서는 ‘두 번째 유형’으로, 2008 SNA의 증권화에서는 ‘제1예시’로 설명한다.

41) 매각으로 취급하려면 자산이 이미 (중앙정부 등의)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소유권이 완전히 증권화 단위로 변경되어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편익이 증권화 단위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때 다음이 감안되어야 한다. (i) 매입가격이 현재 시장가격과 동일하지 않으면 매각이 아니다. (ii) 증권화 단위가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채무의 상환을 (중앙정부 등의) 자산보유자가 보장할 경우 해당 자산과 관련된 위험이 모두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매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42) 2008 SNA에서는 증권화의 ‘제1예시’로 다룬다.

43) 2008 SNA에서는 증권화의 ‘제2예시’로 다룬다.

44) <증권통계에 대한 소책자>에서는 ‘세 번째 유형’으로 다룬다.

- 어떤 증권화 단위도 개입하지 않는 경우, 증권화 방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부내증권화(on-balance sheet securitization)⁴⁵⁾는 기존 자산보유자가 새로운 채무증권을 발행하고 자산의 어떠한 이전도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다.
 - 증권화 단위가 없는 합성증권화⁴⁶⁾는 기존자산보유자가 채무증권을 직접 발행함으로써 신용위험의 이전(자산의 이전 없이)만 포함하는 방식이다.

b. 증권화로 인한 채무와 유량의 통계 처리

4.104 실질적 매매 증권화는 증권화 단위에 의해 발행한 채무증권을 포함하며, 이 경우 원 자산은 기존 자산소유자의 재정상태표에서 증권화 단위의 재정상태표로 이전된다. 증권화 단위는 자산취득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채무증권을 매각하여 생긴 수익을 활용한다. 발행되는 채무증권에 대한 이표지급과 원금상환을 위해 자산 풀에서 수익원(보통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사용된다. 공공부문 단위에 의한 실질매매 증권화의 경우, 기존 자산소유자의 총채무가 증권화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증권화 단위의 총채무는 발행된 증권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가한다. 이때 증권화 단위가 금융공기업이라면 총채무는 공공부문부채의 일부가 된다. SPE이지만 기관단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주 증권화 단위는 그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일반정부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러한 SPE의 채무는 일반정부의 채무의 일부로 처리한다(문단 4.103 참조).

4.105 거시경제 통계의 관점에서 어떤 실질적 매매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각주 41 참조) 원보유자인 공공부문 단위가 증권화 단위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융자 형태의 차입으로 처리한다.⁴⁷⁾ 증권화 단위가 공공부문

45) <증권통계에 대한 소책자>에서는 ‘첫 번째 유형’으로 다룬다.

46) <증권통계에 대한 소책자>에서는 ‘세 번째 유형’으로 다룬다.

의 일부이라면 증권화 단위가 발행한 채무증권은 공공부문부채의 일부가 된다.

4.106 자산이 없는 증권화는 미래 수익원의 증권화를 포함한다. 문단 4.102에서 언급한 대로 세율을 인상하거나 기타 정부수익을 증대시키는 수단은 실질매매 증권화에 사용될 수 있는 정부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담보로 사용되는 미래 수익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미래 수익의 상당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공공부문 단위의 의무이다. 차입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분은 공공부문 단위가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 정부 수익에 대한 권리가 증권화 단위로 이전된 경우, 채무증권 발행수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단위가 증권화 단위에서 받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대출형태의 차입으로 간주한다.⁴⁸⁾ 증권화 단위가 공공부문의 일부라면 증권화 단위가 발행한 채무증권은 공공부문부채의 일부이다.

4.107 합성증권화는 증권화 단위를 통해 또는 기존 자산소유자에 의한 직접 채무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 자체의 이전 없이 자산 풀(pool) 관련 신용위험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 증권화 단위가 있는 합성증권화: 자산 소유자(보장매입자)는 신용부도 스왑(이하 CDS)을 이용하여 증권화 단위(보장매도자)로부터 자산 풀(pool)에 대한 잠재적 채무불이행 손실이 보장이다.⁴⁹⁾ 보장매도자는 이러한 자산 풀로 유동화되는 채무상품을 발행한다. 증권화 단위에 의한 채무증권 발행 수익은 위험도가 적지만 수익이 낮은 금융자산(예금 등)에 투자되며,

47) 자산보유자와 증권화 단위 모두 공공부문 단위에 속할 경우 이러한 대출은 통합을 통해 공공부문부채에서 제외된다. 본 지침 제8장 참조.

48) 자산보유자와 증권화 단위 모두 공공부문 단위에 속할 경우 이러한 대출은 통합을 통해 공공부문부채에서 제외된다. 본 지침 제8장 참조.

49) 신용부도 스왑은 신용부도위험을 거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금융파생상품이다.

이러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CDS의 수수료와 함께 증권화 단위가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채무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에 자금을 조달한다. 만기 시 채무의 보유자는 자산 풀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없을 경우 보상을 받게 된다.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무증권 소유자(투자자들)가 동일한 가치의 손실을 겪는 반면 보장 매입자는 자산 풀과 관련된 채무 불이행 손실에 대해 매도자로부터 보상받는다. 증권화 단위가 공공부문의 일부라면 증권화 단위가 발행한 채무증권은 공공부문부채의 일부이다.

- 증권화 단위가 없는 합성증권화: 자산의 소유자가 신용연계채권(이하 CLN)을 발행한다. CLN은 (융자 및 채권 등) 준거자산들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채무증권으로, CDS가 내재되어 신용위험이 발행자로부터 투자자로 이전된다. 자산 풀에 대한 신용보장은 CLN을 구매함으로써 투자자에 의해 보장 구매자(또는 발행자나 CLN)에게 매도된다.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황은 자산 풀의 성과에 좌우된다. 채권의 수명기간 동안 어떤 채무불이행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만기 시 채권의 전체 상환가치가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만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투자자들은 채권의 상환가치에서 부도손실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만큼 받게 된다.

증권화 단위가 없는 합성증권화의 경우, 공공부문 단위가 발행하는 채무증권(CLN)은 해당 단위 채무의 일부로 간주된다.

4.108 부내증권화는 자산에 의해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원으로 유동화되는 채무증권이다. 자산은 채무증권 발행자(기존 자산소유자)의 재정상태표에서 일반적으로 별도의 포트폴리오 형태로 유지된다. 어떠한 증권화 단위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자산소유자는 자금을 제공받아 발행된 채무증권은 기존 자산보유자의 채무의 일부를 형성한다.

8. 구제금융 채무

a. 정의

4.109 구제금융(bailout)은 재정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제를 의미한다. 이는 통상 정부단위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생존을 돕기 위해 단기간 금융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기업의 자본재조정을 돕기 위해 장기간 금융재원을 투입하는 경우이다.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경우, 이는 국유화로 간주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이다. 구제금융은 대규모의 대중적 관심을 받는 일회성 거래가 많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다.

4.110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단위에 자본화, 자본재조정을 위해 상당한 재정이 지원될 때 ‘자본유입’이라 칭한다. 2008 SNA는 거시경제통계에서 규정한 직접개입을 의미하는 자본유입을 활용하는데, 자본이전, 용자, 자본의 취득 또는 이들의 조합이다. 일반정부의 개입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일반정부의 직접적 개입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용자재원의 유입 또는 기업의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자본 재조성(자본유입)
- 우호적 조건 또는 그렇지 않은 (일반) 조건으로 고통을 겪는 기업에 용자를 제공하거나 그 기업의 지분을 획득(보상된 자본재조정)
- 실제 시장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대상 기업의 자산 구매

4.111 간접적으로 일반정부는 제공하는 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

4.112 정부는 지원 대상기업의 자산 또는 부채를 매각하거나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SPE 또는 기타 공공단체를 설립하기도 한다. 제2장에서 간략히

논의한 바와 같이 하위부문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SPE 또는 공공단체가 일반 정부 또는 금융공기업 부문의 일부인지 파악해야 한다.

b. 구제금융 절차의 통계처리

4.113 정부(또는 다른 공공부문 단위)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위에 지원하는 자금은 통상 자본이전 또는 자본유입으로 기록된다. 몇 가지 구제금융 통계처리는 Box 4.13.에 설명한 바와 같다.

4.114 정부단위와 같은 공공부문 단위 (투자자 단위)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단위에 합법적인 용자형태의 자본지원을 통해 개입한다면 그 통계처리는 문단 4.57 및 4.60에 설명된 바와 같이 투자자 단위가 기업에 대해 금융청구권을 획득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4.115 정부와 같은 공공부문 단위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용자 이외의 자본 유입을 통해 개입한다면, 그 투자가 실질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계처리를 해야 한다(펀드의 실질수익률은 나중에 배당이나 이득을 얻기에 충분한 수익률로 표시되며, 이는 기업의 잔존가치에 대한 청구권이다).

- 공공부문 단위(투자자 단위)가 투자에 대해 실질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투자단위는 지분 및 투자펀드주식 형태의 금융자산 증가로 기록하고, 금융자산(현금 및 예금과 같은)의 감소 또는 취득을 위한 부채 증가로 기록해야 한다. 지분취득이 신규 부채를 발행하여 조달하였다면, 투자자 단위의 총부채와 순부채가 증가하고, 순자산과 순금융자산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모든 거래가 금융자산과 부채의 변동과 연관되기 때문). 지분의 취득이 금융자산의 감소(현금과 예금 형태와 같은)와 연관되면, 투자자의 총부채는 변하지 않지만 금융자산의 감소로 인해 순부채가 증가한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금융자산(현금 및 예금 형태와 같은)이 증가하고 동시에 지분 및 투자기금 주식형태의 비채무성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기록한다. 총채무에는 변동이 없지만 금융자산 증가로 순채무가 감소한다.

- 투자 가운데 실질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전부가 될 수 있음)은 문단 4.116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자본이전으로 취급한다.

4.116 자금이 제공될 때 자본이전(전체 또는 부분) 형태의 자본유입으로 기록한다.

- 실질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고,
- 교환에서 동등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 과거 누적된 손실, 채무 불이행 또는 부실 자산으로 인해 손상된 자산 또는 자본의 보상

4.117 자금을 지원하는 단위는 해당지출을 자본이전 형태의 비용으로 기록한다. 또한 자본이전 방식에 따라 금융자산(현금 및 예금 형태의)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기록한다. 수취인은 자본이전 형태의 수익으로 기록하고, 현금 및 예금 형태의 금융자산은 증가한 것으로 기록한다. 만일 신규채무를 발행한 것으로 자본이 이전된다면 자금을 지원하는 단위의 총채무와 순채무는 증가하는 반면 비용으로써 순자산과 순금융자산은 감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본이전(현금 및 예금 형태의)이 금융자산의 감소를 통하여 충당된다면 순부채가 증가하지만 총채무에는 변동이 없다. 자본이전의 규모를 결정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감안해야 한다.

- 정부가 지원 대상 기업의 자산을 매입한다면 매입대금이 자산의 실제 시장가치보다 클 수 있다.
- 용자가 아닌 자산매입은 현재 시장가치로 계상되어야 하며, 자본이전은 시장가치와 실제 지급된 대금의 차액을 기록해야 한다.

- 정부는 종종 규제금융 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상품을 매입한다. 해당 용자상품이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며, 널리 통용되는 시장가치로 거래되지 않은 한 항상 명목가치로 기록된다. 용자상품은 전용시장이 개발되어 정기적으로 거래되어야 증권으로 재분류하고(문단 3.34 및 3.39 참조) 시장가치로 기록될 수 있다.
- 정부가 명목가치보다 훨씬 낮은 공정가치에 용자상품을 매입하면 자본이전의 가치 차액을 기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용자상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정보가 있을 경우 기업의 재정상태표에 용자상품의 가치를 0으로 삭감(기타규모의 변동)하고, 자본이전은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가치와 동일하게 기록한다. 그러한 용자상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가 결과적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가치재평가'로 기록한다.
- 규제금융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보증이 일회성보증인지 또는 표준화보증상품인지의 여부에 따라 기록한다(보증의 통계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문단 4.10~4.20 참조).

4.118 정부가 규제금융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한 공공기관 단위는 일반정부 부문으로 분류해야 한다. 신설 기관단위가 다른 기능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규제금융 기능을 수행한다면 제2장의 구조조정기관 절에서 설명한 규칙에 따라 정부단위 또는 공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Box 4.13. 구제금융 절차로 인한 채무와 유량의 통계처리

다음 예시는 구제금융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와 유량의 통계처리 방식을 보여준다.

예시1. 정부가 금융 공기업에 대하여 비채무성, 비상환성 자본 100을 투입한다. 이때 채권 발행액 75와 현금 25를 이용하여 자본투입을 충당한다. 단순화하여 설명하기 위해 가치재평가와 같은 거래외 경제유량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정부				금융 공기업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수익						100		
자본이전						100		
비용		100				100		
자본이전		100						
순자산/순운영수지	250	-100		150		100		10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250	-100		150		100		100
금융자산	250	-25		225				
현금 및 예금	250	-25		225		100		100
부채				75		75		
채무증권				75		75		
총채무	0	75		75	0	0		0
순채무	-250	100		-150	0	-100		-100

주: 정부 채무는 (가치재평가와 같은 거래외 경제유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75만큼 증가하고 순자산은 100만큼 감소한다. 이는 부채가 75 증가하고 현금 및 예금이 25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시2. 1월 1일 정부는 금융 공기업에 100의 자본을 투입한다. 해당 금융공기업은 5년에 걸쳐 이러한 융자를 상환하는 데 합의한다. (시장이자율은 10%인데 비해) 4%의 이자율로 상환하기로 한다. 해당 기업은 매년 12월 31일 이자에 20을 더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단순화하여 설명하기 위해 가치재평가와 같은 기타 경제 유량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정부				금융 공기업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의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의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수익		10				6		
이자수익 자본이전		10				6		
비용		6				10		
이자비용 자본이전		6				10		
순자산/순운영수지	250	4		254		-4		-4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250	4		254				-4
금융자산	250	79		329		76		76
현금 및 예금	250	-25+24		249		100-24		76
금융공기업에 융자		100+10 -6-24		80				
부채		75		75		80		80
채무증권		75		75				
정부로부터 융자						100+10 -6-24		80
총채무	0	75		75	0	80		80
순채무	-250	-4		-254	0	4		4

주:

- 정부 채무는 (가치재평가와 같은 거래의 경제유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75만큼 증가하고 순자산은 4만큼 감소한다. 이는 금융자산이 79 증가하고 부채가 75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공기업의 채무는 80만큼 증가하고 순자산은 4만큼 감소한다.
- 개시 시점에 정부는 금융 공기업에 시장이자율 10%로 자본이전한다. 이후 1차년도에 6%, 2차년도에 4.8%, 3차년도에 3.6%, 4차년도에 2.4%, 최종연도에 1.2%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미수/미지급 이자는 정부와 금융 공기업에 대하여 모두 10으로 계상한다.

예시 3. 정부가 금융경색을 겪고 있는 금융 공기업의 융자 이외 금융자산을 150에 구입한다. 자산의 시장가치는 100이다. 정부는 자산 구입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일반정부				금융 공기업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수익						50		
자본이전						50		
비용		50						
자본이전		50						
순자산/순운영수지	220	-50		170	100	50		15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220	-50		170	100	50		150
금융자산	220	100		320	100	50		150
현금 및 예금	220	150- 100=50		220		150		150
융자와 금융자산		100		100	100	-100		0
부채		150		150				
채무증권		150		150				
총채무	0	150		150	0	0		0
순채무	-220	50		-170	-100	-50		-150

주: (가치재평가와 같은 거래외 경제유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이러한 구제금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차입한 돈이 150이기 때문에 정부의 채무는 150만큼 증가한다. 실제 시장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에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정부의 순자산은 50만큼 감소한다(자본이전 50). 정부가 시장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에 자산을 취득한 결과로 정부로부터 50의 자본이전이 있는 셈이므로 금융 공기업의 순자산은 50만큼 증가한다.

예시 4. (a) 정부가 금융경색을 겪고 있는 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명목가치 150으로 융자를 구입한다. 믿을 만한 정보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융자금 전액이 회수불능 상태이며 그 공정가치가 실제로는 0이라고 한다. (b) 그러나 이러한 융자 가운데 일부를 미래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해 말, 앞으로 융자 10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1차년도에 발생할 경우, 그 통계처리하는 다음과 같다.

	일반정부				금융 공기업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의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의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수익						150		
자본이전						(a) 150		
비용		150						
자본이전		(a) 150						
순자산/순운영수지	220	-150	10	80	150	150	-150	150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순차입(-)	220	-150	10	80	150	150	-150	150
금융자산	220	-150 (a) -150	10	80	150	150	-150	150
현금 및 예금	220			70				
현금 및 예금			(a) 0		150	(a) 150	(a) 150	150
융자			(b) 10	10				0
부채								
채무증권								
총채무	0	0	0	0	0	0	0	0
순채무	-220	150	-10	-80	-150	-150	150	-150

주: 금융 공기업에 대한 자본이전(150)과 금융 공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융자금 가치의 증가분 10 때문에 정부의 순자산은 140만큼 감소한다. 금융 공기업의 순자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금 및 예금 형태의 자본이전(150)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며 재정상태표상 융자 가치가 150 감소하기 때문이다.

(회수 가능한 융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이후 연도에 계속해서 융자 가치가 증가하면 이러한 증가분 역시 정부 재정상태표에 가치재평가로 계상되어야 한다.

9. 민관협력사업으로 발생한 채무

4.119 각국 정부가 민관협력사업(PPPs)에 참여하는 이유는 민간경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 등 다양하다. 본 절에서는 2008 SNA 문단 22.154~22.163을 기초로 PPP 자산과 그와 관련된 채무가 어떠한 단위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2008 SNA의 현재 국제 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IPSASB)에서 개발 중인 PPPs에 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다.

a. 정의

4.120 민관협력사업(PPP)은 두 단위 간의 장기계약으로, 한 단위가 자산이나 자산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고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한 후 제2의 단위에 해당 자산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약은 통상 민간기업과 정부 간에 체결되지만 기타 당사자 간 체결도 가능하다. 예컨대, 공기업이 계약의 ‘갑’이 되고 민간 비영리조직이 ‘을’이 되는 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PPP 이외에도 민간자본투자(PFI), 혹은 건설, 소유, 운영, 이전(BOOTS)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편의상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사업을 PPPs로 칭할 것이다.

4.121 PPPs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다음 사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PPP이다. 민간기업이 복합적인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서비스 생산에 다른 요소와 함께 이를 투입하는 데 합의한다. 이렇게 생산된 서비스는 정부에 제공되어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도 있고(자동차 유지보수 서비스 등), 무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교육 서비스나 통행료 없는 도로 등). 이러한 경우 정부는 계약기간 동안 민간기업에 정기적으로 대금을 분할 지급하게 된다.⁵⁰⁾ 민간기업은 지출에 대한 투자비용을 충당하고 적절한 수익률이

50) 계약기간이란 PPP에 참여하는 양 당사자의 계약협정 기간을 의미한다.

발생되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은 공공에 재화를 판매한다(예, 유료도로). 가격은 정부의 규제를 받기는 하나, 민간기업이 비용을 충당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계약 종료시점에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자산의 법적·경제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PPP 계약은 계약 종료시점의 자산 처분, 계약기간 동안의 자산의 운영 및 유지보수, 가격과 품질, 생산된 서비스의 양 등 갖가지 규정이 있을 수 있다.

4.122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PPP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계상할지 또는 민간기업에 계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간기업은 고정자산을 취득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취득이 정부의 지원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이 정부가 규정한 설계, 품질, 생산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기업이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 명시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표준을 명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계약기간보다 내용연수가 훨씬 더 길다. 따라서 그런 이유만으로도 정부가 내용연수 대부분 동안 자산을 통제하고 위험을 부담하며 그에 대한 편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이를 통제하거나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고 편익의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기업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대부분’은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단일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각기 다른 다양한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을 의미할 때도 있다.

b. 민관협력사업의 통계처리

4.123 통계처리는 해당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에 기초한다. 거시경제 통계체계에서는 법적 소유권과 경제적 소유권을 구별한다. PPP의 경우, 법적 경제적 소유자가 다른 당사자일 수 있다. 재화와 서비스, 천연자원, 금융자산, 부

채와 같은 실체의 법적 소유자는 법률에 따라 그러한 실체와 관련된 편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관단위이다. 재화와 서비스, 천연자원, 금융자산, 부채와 같은 실체의 경제적 소유자는 그러한 실체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경제활동과정에서 그 편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기관단위가 된다. 그러한 실체의 경제적 소유에 따른 위험은 Box 4.14.에 요약되어 있다.

4.124 모든 유형의 PPP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규정하기란 불가능하다. 각 PPP 계약의 조항을 검토해야만 어떤 당사자가 계약기간 동안과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경제적 소유주인지 판단할 수 있다. Box 4.15.는 일부 국가에서 PPP의 경제적 소유권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간략히 보여준다. PPP의 통계처리에 관한 설명은 2008 SNA에 근거한다.

4.125 계약기간 동안 정부가 해당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약 개시시점에 어떠한 대금도 명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암묵적 거래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방식은 암묵적 금융리스를 통한 자산 취득이다. 이러한 형태의 PPP가 실제 금융리스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시행 여부는 계약 조항, 그러한 계약조항의 해석방식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 예를 들어, 용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에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 이를 분할 지급하고 각각의 대금지급을 용자 상환으로 인식할 수 있다(문단 4.87~4.95 참조). 정부가 리스이용자인 금융리스의 통계처리 예시는 Box 4.11.에 제시되어 있다.

4.126 계약기간 동안 민간기업이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산 취득에 따른 채무는 민간기업에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정부가 유의한 대금 지급 없이도 해당 자산의 법적·경제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자산 취득에는 두 가지 방식을 고

려해볼 수 있다.

- (제1방식) 계약기간 동안 정부는 점진적으로 금융청구권(기타 미수금계정 등)을 적립하고 민간기업은 점진적으로 그에 대응되는 (기타 미지급금계정 등) 부채를 적립하여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금융청구권과 부채의 가치가 자산의 잔존가치와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정부는 자산취득을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융청구권(기타 미수금계정)이 감소한 것으로 기록한다. 민간기업은 자산의 처분을 계상하고 그에 대응하여 부채(기타 미지급금계정)가 감소한 것으로 기록한다. Box 4.16.은 제1방식을 예시로 보여준다. 이를 위해 기대 자산가치 및 이자율에 대한 추정을 토대로 새로운 거래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 (제2방식) 대안적 방식은 계약 종료시점에 법적·경제적 소유권이 다른 단위에서 정부로 변경되는 것을 자본이전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계약 종료시점에 정부는 자산취득에 충당하는 자본이전으로 수익을 기록하고 상대 단위는 자산의 처분으로 조달된 자본을 정부에 이전하는 것으로 비용으로 기록한다. Box 4.16.에서는 제2방식을 예시로 제시한다. 자본이전 방식 역시 거래에 내재하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가 있고, 자본의 기대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이 불확실하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 자본이전 방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Box 4.14. 경제적 소유권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PPP 자산 관련 위험*

PPP와 관련된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결정할 때 감안해야 할 요인으로는 해당 자산의 취득과 사용과 관련된다.

자산 취득에 수반되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자산의 설계, 품질, 크기, 유지보수에 관한 정부 통제 정도
- 납기지연이나 사양 또는 건축법 미충족으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시공위험(construction risk), 제3자에 대한 지급을 발생시키는 환경 및 기타 위험

생산관련 자산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가 생산되는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위를 통제하고 생산된 서비스의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공급위험
- 정부로부터 또는 공공으로부터 유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예상 수준보다 크거나 또는 작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수요위험
- 계약 종료시점의 자산가치가 정부와 합의한 자산 이전 가치와 다를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는 잔존가치 및 노후화 위험
- 서비스의 물량 및(또는) 품질이 계약서에 명시된 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추가비용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는 가용성 위험

개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개별 PPP마다 다를 수 있다.

* 본 지침의 초안이 작성되는 지금, 이러한 방식은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를 자산의 경제적 소유주로 볼 것을 제안한 IPSASB의 기준에 부합한다.

Box 4.15. 경제적 소유권 개념의 실질적 적용

경제적 소유권(즉, 위험을 부담하고 편익을 가지는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을 판별하는 데 있어 각국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이 회원국에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PPP에 대한 시공위험 및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가용성 위험 또는 수요위험 가운데 하나를 부담할 경우 해당 PPP를 정부계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Eurostat은 건설기간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배분하고 정부기관의 보증 여부와 범위를 규정하며 자본비용 대부분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을 결정지으며 계약해지 조항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위험범주에 추가하여) 기타 요소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시했다(정부적자와 채무에 관한 ESA 95 지침 2010, V1.5항 참조). 일부 국가는 금융리스에 적용되는(문단 4.87~4.95 참조) 계기준(예, IPSAS)에 근거한다. PPP 계약이 금융리스로 간주된다면 자산과 부채는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상태표에 계상되며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운영비용으로 계상된다. 또한 상각은 금융자산 거래로 계상된다.

IPSAS는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간주한다.

- 계약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리스
- 계약 종료시점에 자산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PPP의 경우 공공부문 단위)
- 리스이용자가 계약 종료시점에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리스
- 계약에 명시된 대금의 현재가치가 자산의 공정 시장가치에 근접하는 리스
- 주로 리스이용자에게 필요한 자산이 거래되는 리스

Box 4.16. 민관협력사업으로 발생한 채무와 유량의 통계처리

다음과 같은 간략한 예시를 통해, 민관의 관점에서 PPP로 발생한 채무와 유량의 통계처리를 살펴 본다.

예시1a. 정부와 민간기업은 장기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이 고정자산 100을 건설하고 이를 20년 동안 운영한 후에 해당 자산을 잔존가치 20에 정부에 양도한다는 조건에 합의한다. 민간기업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 경제적·법적 소유자로 간주되며 정부는 명시적 지급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법적·경제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고정자산 사용의 대가로 연간 5를 지급한다. 민간기업은 기존 현금잔고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자금을 조달한다. 단순화하면, 예시1a는 고정자본 소비를 무시하고 더 이상 거래와 경제유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들 거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정부에게는 금융청구권이 점진적으로 발생해서 20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해당 고정자산을 잔존가치에 취득하고 민간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부채가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1차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저량과 유량이 정부와 민간기업 각각의 통계에 기록된다.

	일반정부				민간기업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수익		1				5		
-자본이전		(c) 1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b) 5		
비용		5				1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b) 5				(c) 1		
-자본이전								
순자산/순운영수지	135	-4		131	220	4		224
비금융자산						(a) 100		100
순금융자산/ 순융자 / 순차입	135	-4		131	220	-96		124
금융자산	135	-4		131	220	-95		125
현금 및 예금					220	(a) -100		120
현금 및 예금	135	(b) -5		130		(b) 5		5
기타미수계정		(c) 1		1				
부채						1		1
기타미수계정						(c) 1		1
총채무	0	0		0	0	1		1
순채무	-135	4		-131	-220	96		-124

주:

- 민간기업은 현금 및 예금(a)의 감소를 통한 자금을 조달하여 고정자산 100(a)을 건설한다.
- 운영리스(자산의 사용)로, 정부에게는 현금(재화와 서비스의 사용)으로 매년 비용 5(b)가 발생한다. 민간기업은 정부로부터 현금(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으로 매년 5(b)를 수령한다.
-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청구권(연간 1, 잔존가치 20 ÷ 20년)(c)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년 만기시점에 명시적 지급 없이 해당 고정자산을 수령한다. 이에 대응하여 20년(c) 동안 매년 1에 해당하는 암묵적 자본이전을 기록한다. 민간기업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부채(c)와 암묵적 자본이전(c)가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 민간기업의 총채무는 매년 1만큼 증가한다.
-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부의 순자산은 4만큼 감소한다(운영리스 5의 현금지급과 자본이전 1을 반영). 민간기업의 순자산은 4만큼 증가하는데, 이는 운영리스 5에 대한 수익과 비용 1을 반영한 결과이다(자산과 부채의 순증감과 일치).

예시1b. 정부와 민간기업은 장기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이 고정자산 100을 건설하고 이를 20년 동안 운영한 후에 해당 자산을 잔존가치 20으로 정부에 양도한다는 조건에 합의한다. 해당 민간기업은 계약기간 동안 경제적·법적 소유자로서 간주되며 정부는 명시적 지급 없이 계약 종료 시점에 법적·경제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에게 고정자산 사용의 대가로 연간 5를 지급한다. 민간기업은 기존 현금잔고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자금을 조달한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번 예시에서는 고정자산소비를 무시하고 더 이상 거래외 경제유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들 거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정부는 금융청구권을 점진적으로 축적하여 20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해당 고정자산을 잔존가치에 취득하고, 민간기업에는 이에 상응되는 부채가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20년째 되는 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저량과 유량이 정부와 민간기업 각각의 통계에 기록된다.

	일반정부				민간기업			
	기초 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수익		1				5		
-자본이전		(c) 1				(b) 5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1		
비용		5				(c) 1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b) 5						
-자본이전								
순자산/순운영수지	59	-4		55	216	4		220
비금융자산		(d) 20		20	20	(d) -20		0
순금융자산/ 순융자 / 순차입	59	-24		35	196	24		220
금융자산	59	-24		35	215	5		220
현금 및 예금					215	(b) 5		220
현금 및 예금	40	(b) -5		35				
기타미수계정	19	(c) 1		20				
기타미수계정		(d) -20		-20				
부채					19	-19		0
기타미지급계정					19	(c) 1		0
기타미지급계정						(d) -20		0
총채무	0	0		0	19	-19		0
순채무	-59	24		-35	-196	-24		-220

주:

- 20년 만기시점에 해당 민간기업은 채무 20이 발생되는데, 이는 해당 고정자산을 잔존가치 20(d)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멸한다. 따라서 20년 만기시점에 민간기업의 총채무는 '0'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의 미수계정은 20이며, 이는 고정자산(d)의 획득과 함께 소멸한다.
- 20년 만기시점에 정부는 비금융자산 20을 소유한다(민간기업이 더 이상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 전체 기간에 거쳐, 정부의 순자산은 135에서 55로 감소하는데(80 감소), 이는 수취한 자본이전 20과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100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순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이는 자산의 가치가 100에서 20으로 감소(80 감소)하였지만, 해당 감소분이 운영리스 수익 100과 자본이전 비용 20으로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예시2a. 예시2a는 예시1과 동일하지만, 여기서는 정부가 20년 만기 시점에 자본이전 방식을 통해 해당 자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와 민간기업은 장기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이 고정자산 100을 건설하고 이를 20년 동안 운영한 후에 해당 자산을 잔존가치 20으로 정부에 양도한다는 조건에 합의한다. 민간기업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 경제적·법적 소유주로 간주되며 정부는 명시적 지급 없이 계약 종료 시점에 법적·경제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고정자산 사용의 대가로 연간 5를 지급한다. 민간기업은 기존 현금잔고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자금을 조달한다. 단순화하면, 예시2a는 고정자본소비를 무시하고 더 이상 거래외 경제유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들 거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1차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저량과 유량이 정부와 민간기업 각각의 통계에 기록된다.

	일반정부				민간기업			
	기초 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수익						5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5		
비용		5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5						
순자산/순운영수지	135	-5		130	220	5		225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융자 / 순차입	135	-5		130	220	5		225
금융자산 현금 및 예금	135	-5		130	220	5		225
	135	-5		130	220	5		225
부채 기타미지급계정								
총채무	0	0		0	0	0		0
순채무	-135	5		-130	-220	-5		-225

주:

- 운영리스로 정부는 연간 비용 5를 현금으로 지급한다(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민간기업은 정부로부터 연간 5를 현금으로 수령한다(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 예시1과는 달리, 금융청구권이나 부채의 점진적인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해당 거래로 인한 총부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 1차년도 말에, 정부의 순자산은 5만큼 감소한다(현금지급 5 반영). 민간기업의 순자산은 5만큼 증가하는데, 이는 수익 5를 반영한 결과이다.

예시2b. 예시2b는 예시1과 동일하지만, 여기서는 정부가 20년 만기 시점에 자본이전 방식을 통해 해당 자산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와 민간기업은 장기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이 고정자산 100을 건설하고 이를 20년 동안 운영한 후에 해당 자산을 잔존가치 20에 정부에 양도한다는 조건에 합의한다. 민간기업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 경제적·법적 소유주로 간주되며 정부는 명시적 지급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법적·경제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에게 고정자산 사용의 대가로 연간 5를 지급한다. 민간기업은 기존 현금잔고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자금을 조달한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번 예시에서는 고정자본소비를 무시하고 더 이상 거래외 경제유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들 거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20차년도에, 다음과 같은 저량과 유량이 정부와 민간기업 각각의 통계에 기록된다.

	일반정부				민간기업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수익		20				5		
-자본이전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20				5		
비용		5				20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자본이전		5				20		
순자산/순운영수지	40	15		55	235	-15		220
비금융자산		20		20	20	-20		0
순금융자산/ 순융자 / 순차입	40	-5		35	215	5		220
금융자산 현금 및 예금	40 40	-5 -5		35 35	215 215	5 5		220 220
부채								
총채무 순채무	0 -40	0 5		0 -35	0 -215	0 -5		0 -220

주:

- 20년 만기시점에, 정부는 비금융자산 20을 취득하고(민간기업이 더 이상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주가 아니다), 자본이전 20을 기록한다.
- 전체 기간에 걸쳐, 정부의 순자산은 135에서 55로 감소하는데(80 감소), 이는 수취한 자본이전 20과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100을 반영한 결과이다. 민간기업의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자산의 가치가 100에서 20으로 감소(80 감소)하였고, 해당 감소분이 운영리스에 의한 수익(100)과 자본이전비용 20으로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 본 예시에서 20년 만기된 시점의 결과는 예시1의 처리와 비교했을 때 민관합작사업의 양 당사자에 대해 동일하다. 차이점이라면 예시1에서는 20년에 걸쳐 자본이전이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20년 만기시점에 자본이전 20이 발생한다.

10. 시장외적 스왑으로 발생한 채무

4.127 거시경제 통계에서 스왑⁵¹⁾은 비채무성 상품인 파생금융상품을 발생시킨다(문단 2.6 참조). 그러나 시장외적 스왑에는 채무의 요소를 지닌다.

a. 정의

4.128 시장외적 스왑(off-market swaps)은 현재 시장가치와 다른 참고금리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즉, 시장외적) 처음에 0이 아닌 가치를 갖는 스왑이다. 이러한 스왑은 일반적으로 시작부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의 일시불로 지급하는 거래이다. 시장외적 스왑의 경제적 특성은 대출, 그리고 시장스왑(금융파생상품) 형태의 차입의 조합(즉, 일시불)이다. 시장외적 스왑의 용자요소는 채무이며, 공공부문 단위가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공공부문부채의 일부가 된다. 시장외적 참고 금리(off-market reference rates) 관련 스왑계약의 예는 금리스왑과 통화스왑이 있다.

b. 시장외적 스왑의 통계처리

4.129 시장외적 스왑의 경제적 특성은 대출과 파생금융상품의 조합과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저량이 재정상태표에 기록된다(Box 4.17. 참조).

- 용자(채무상품)는 처음에 '0'이 아닌 스왑의 가치와 동일하고 만기일이 스왑의 만기일과 동일하다
- 금융파생상품(스왑) 요소(비채무상품)는 시장외적 스왑의 명목원금(순대출)과 동일한 명목원금을 지니고, 처음에 '0'의 시장가치를 갖는 시장스왑이다.

51) 스왑계약은 사전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초항목의 기준가격에 기반하여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여러 거래 당사자들을 포함한다.

4.130 용자 포지션은 일시불로 수령한 거래 당사자의 부채인 반면, 파생상품 포지션은 재정상태표 작성일의 시장가격에 따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로 나타날 수 있다.

4.131 이들 저량과 관련한 미래 유량흐름은 각각 대출관련요소와 파생금융상품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Box 4.17. 시장외적 스왑의 통계 처리

다음 예시는 공공부문 단위의 '시장외적 스왑'의 통계처리를 보여준다. 시장외적 스왑과 비교를 위해 '시장 스왑'을 먼저 다룬다.

시장 스왑: 국가채무관리기구가 5년 만기 변동이자율 채권(액면발행)을 발행하는데, 액면가는 국내 통화 100이고 액면이자 3개월 국내통화 리보(LIBOR)이자율이라고 가정한다. 이 시점에 해당 채권의 시장가치는 국내통화 100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채무관리기구는 5년짜리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국내통화단위 1 = 외화 1.25로 하는 지배적인 시장환율로 국내통화 100의 원금을 외화와 교환하며(국가채무관리기구는 외화 125의 원금을 수령한다), 3개월 국내통화 리보와 3개월 외화 리보 각각에 관련된 기초 현금흐름이 나타난다. 이 시점에서, 채무의 시장가치는 여전히 국내통화 100이다. 첫 3개월 동안 현금흐름은 국내통화와 외화 각각에 대해 시작시점에 결정되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데, 이때 향후 기간에 대한 현금흐름이 결정된다. 통화스왑의 종료시점에 원금을 서로 교환하여 국가채무관리기구는 국내통화 100의 원금을 되돌려 받는다. 해당 원금은 당초 채권(국내통화 100)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며, 이에 반해 외화 125의 원금을 상환한다. 통화스왑은 전체적으로 기존 국내통화 변동이자율 채권의 성격을 동일한 금액의 외화 변동이자율 채권으로 전환한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정부채무 포트폴리오의 환율과 이자율 노출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온다.

거시경제 통계에서, 해당 파생금융상품의 가치는 처음에 0이다. 이후에, 파생금융상품 잔액은 재정상태표 작성일의 해당 파생상품의 가치에 따라 재정상태표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항목으로 기재될 수 있다.

시장외적 스왑: 앞서 언급한 조건과 같다고 가정한다. 단, 원금의 교환에 대한 추정환율은 국내통화 1 = 외화 1의 비율로 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지배적인 시장환율이 1.25라면, 스왑 후 채무(post-swap debt)의 시장가치는 국내통화 100이 아닌 국내통화 80(외화 100과 동일한 가치)이며, 이때 80은 계산[$100 \times (1 \div 1.25)$]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현금흐름이 기존 스왑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식으로 시장외적 스왑이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면, 다시 말해 외화에 대한 액면이자 흐름이 계수 1.25만큼 늘어난 3개월 외화 리보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면, 시작 시점에 시장외적 스왑의 가치는 국내통화 20일 것이다(외화 25와 동일한 가치). 국가채무관리기구는 외화 25(국내통화 20과 동일한 가치)를 실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거시경제 통계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금지급은 스왑 상대방에 대한 국가채무관리기구의 용자(부채)를 의미한다. 시작 시점에서 해당 파생금융상품 부문의 가치는 0이다. 이후, 재정상태표상에서 해당 파생금융상품의 잔액은 재정상태표 작성일의 (용자액

을 차감한) 해당 파생상품의 가치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나타낼 수 있다.

처음 시작시점에, 일반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거래와 저량이 기록된다.

	일반정부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비용				
순자산/순운영수지	0	0		0
비금융자산	0	0		0
순금융자산 / 순융자 / 순차입	0	0		0
금융자산	0	100		100
현금 및 예금: 자국통화표시	0	100-100		0
현금 및 예금: 외국통화표시	0	+80+20		100
금융파생상품	0	0		0
부채	0	100		100
채권: 국내통화표시	0	100-100		0
채권: 외국통화표시	0	+80		80
스왑상대자로부터융자: 외국통화표시	0	+20		20
금융파생상품	0	0		0
총채무	0	100		100
순채무	0	0		0

주:

- 현금 및 예금: 채권이 발행될 때 100(국내통화)만큼 증가하고 스왑으로 인해 100만큼 감소한다. 그 다음, 외화표시 현금과 예금은 100만큼 증가하는데, 이는 스왑(80)과 일괄현금지급(20)의 결과로 채권의 신규가치를 구성한다.
- 전체 총채무는 변함없이 동일하지만(국내통화 100), 그 구성에 있어 국내통화표시에서 외화통화표시로 변경이 이루어진다. 스왑 이후 채권의 시장가치는 80이며 융자부채는 20이다. 스왑 이전과 이후 모두 순채무는 0이다.
- 시작 시점에 파생금융상품 부문(시장 스왑)의 가치는 0이다.

11. 공공부문 고용주의 비적립식 연기금 부채

4.132 공공부문 피용자를 위한 연기금은 공공부문 단위(예, 정부)를 대신해서 공공이나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부문 단위가 자율형이나 비자율형 연기금으로 조직해 운영할 수 있다.

4.133 비자율형 연기금은 별개의 기관단위가 아니며 해당 연기금의 자산은 고용주에게 귀속된다. 본질적으로, 비적립 연기제도는 별개의 기관단위가 아니라 고용주가 조직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이때 고용주는 일반정부 단위 또는 공기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피용자에게는 고용주에 대한 금융청구권이 생기며, 고용주에게는 미래의 미지급 급여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부채가 발생한다. 해당 부채는 채무의 일부로, 채무상품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으로 분류된다.

4.134 중앙정부의 예산기관 등 공공부문 단위가 비적립식 연기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보험, 연금 및 표준화 보증상품에 대한 채무에 있어 다음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 공공부문 단위에 미래 퇴직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개인이나 가계를 대신하여 피용자, 고용주 및 기타 기관단위를 통해 수령하는 현재의 사회보험료는 공공부문 단위의 채무를 증가시킨다. 미래에 지급될 수당은 단기간에 걸쳐 할인되기 때문에 기존 부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보험, 연금 및 표준화 보증상품 형태의 채무는 증가하고(대변), 이에 상응하는 암묵적 사회보험료 형태의 비용으로 기록된다(차변).
- 현재 정기적인 지급 또는 일괄 지급 형태로 퇴직자 또는 그들의 부양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채무감소(차변)로, 이에 상응하여 현금과 예금 감소로 기록한다(대변).

4.135 공공부문 고용주가 운영하는 비적립 연기제도와 관련하여, 저량과 유량의 기록 예시는 Box 4.18.을 참조하라.

Box 4.18. 비적립 비자율형 연금제도의 통계 처리

다음 사례는 정부 등 공공부문 단위의 비적립 비자율형 퇴직연금제도의 통계 처리방식을 보여준다. 기초 재정상태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한다. 12월 31일, 보험수리계산은 기존 상황을 바탕으로 한 미래급여의 현재가치가 1,005라는 점을 보여준다. 해당연도의 미지급 급여는 45이다. 급여의 변동과 같은 거래외 경제유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저량과 유량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일반정부			
	기초 재정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 재정상태표
수익				
비용		50		
암묵적 사회보험료		50		
순자산/순운영수지	-800	-50		-850
비금융자산	0			0
순금융자산 / 순융자 / 순차입	-800	-50		-850
금융자산	200	-45		155
현금 및 예금	200	-45		155
부채	1,000	5		1,005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1,000	50-45		1,005
총채무	1,000	5		1,005
순채무	800	50		850

주:

-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대신해 지급한 암묵적 사회보험료 50은 기말 재정상태표의 가치(1,005)에서 기초 재정상태표 가치(1,000)와 미지급 급여(-45) 및 거래외 경제유량(0)을 차감한 잔존가치를 계산한 값이다. 피고용자가 납부한 실질 사회보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 미지급 암묵적 사회보험료(50)와 미지급 급여(45)로 인해 전체 총채무는 1,000에서 1,005로 증가한다. 순채무는 800에서 850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현금 및 예금의 감소(45)와 미래 퇴직급여에 대한 부채의 순증가 5 때문이다

12. 정부의 연금부채 인수에 따른 채무

4.136 정부와 다른 공공부문 단위(통상 공기업) 사이에 연금개혁이나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대규모 일회성 거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거래는 통상 기존의 연금부채를 해당 공기업의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쟁력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기업으로부터 동일한 가치의 현금을 받는 대가로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현금지급과 발생한 부채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액은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기록된다.

4.137 인수자(정부)는 연금에 대한 채무 증가(대변), 현금 및 예금 형태의 금융자산 증가(차변), 공기업에 대한 자본이전 형태의 비용(차변)으로 기록한다. 공기업은 연금에 대한 부채 감소(차변), 현금 및 예금 형태의 금융자산 감소(대변), 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형태의 수익(차변)으로 기록한다.

4.138 정부의 총채무는 연금부채의 추정 가치만큼 증가하고 순채무는 자본이전의 가치와 동일하게 증가한다. 순자산과 순금융자산은 자본이전 가치만큼 감소한다. 공기업의 총채무는 연금부채의 추정 가치만큼 감소하고 순채무는 자본이전 가치만큼 감소한다. 순자산과 순금융자산은 자본이전 가치만큼 증가한다.

13. 차입금의 간접대출

a. 정의

4.139 차입금 간접대출(On-lending of borrowed funds)은 기관단위 B(일반적으로 비거주자 단위)로부터 차입한 거주 기관단위 A(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이러한 차입으로부터의 수익을 제3의 기관단위인 C(대개 주 또는 지방정부나 공기업)에게 간접 대출하는 것이다. 이때 기관단위 A는 기관단위 C에 대한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갖게 된다. 차입금의 간접대출은 다음의 조건으로 기관단위 B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기관단위 A는 기관단위 C가 기관단위 B에게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관단위 B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기관단위 C의 차입능력은 외환규정 등 요소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기관

단위 A만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4.140 간접대출은 (최소) 두 개의 별도 금융청구권을 발생시킨다. 해당 청구권을 GFS 및 PSDS에서 서로 상쇄시켜서는 안 된다. 즉, 기관단위 A는 기관단위 B에 대해 부채가 발생하고, 기관단위 C는 기관단위 A에 대해 부채가 발생하는데, 이는 연결될 수 있다(문단 4.145 참조). 기관단위 B와 C 각각의 거주지에 따라, 해당 채무(이에 상응하는 금융청구권)는 국내 또는 국외로 분류된다.

b. 차입금 간접대출의 통계처리

4.141 기관단위 C에게 차입금을 용자하는 거주 기관단위 A가 기관단위 C에 대한 유효한 금융청구권을 확보한 경우, 차입금 간접대출의 통계처리는 기관단위 A가 차입금을 용자해준 기관단위 C의 거주지는 물론 기관단위 A가 차입을 한 채권자(기관단위 B)의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요약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기관단위 A의 차입금 간접대출의 통계처리 요약

1. 기관단위 A가 기관단위 B로부터 차입	기관단위 B의 거주지에 따라, 기관단위 A는 기관단위 B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채무가 발생한다(기관단위 B에게 기관단위 A에 대한 국내/대외 금융청구권이 발생한다).
2. 기관단위 A가 기관단위 C에게 간접 대출	기관단위 C의 거주지에 따라, 기관단위 A는 기관단위 C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금융청구권이 발생한다(기관단위 C에게 기관단위 A에 대한 국내 또는 대외 부채가 발생한다).

4.142 기관단위 A가 기관단위 B에게 차입한 채무의 분류는 관련된 기관단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차입은 용자 또는 채무증권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경우, 기관단위 A의 용자 및 채무증권 형태의 채무

는 기관단위 B로부터 차입의 결과로 증가하고(대변), 이에 상응하여 기관단위 A의 현금 및 예금 형태의 금융자산은 증가한다(차변). 이러한 경우 기관단위 A의 총채무 잔액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순채무 잔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4.143 차입금 간접대출의 결과로 기관단위 C가 기관단위 A에 차입한 부채는 일반적으로 융자의 형태이다. 다시 말해, 기관단위 C의 채무는 기관단위 A로부터의 차입으로 인해 증가하고(대변), 이에 상응하여 기관단위 C의 현금 및 예금 형태의 금융자산은 증가한다(차변). 이러한 경우 기관단위 C의 총채무 잔액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순채무 잔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4.144 기관단위 A의 금융자산(예, 융자)은 기관단위 C에 대한 간접대출의 결과로 증가하고(차변), 현금 및 예금 형태의 금융자산은 감소한다(대변). 기관단위 A의 경우, 이러한 사건으로 총채무와 순채무의 잔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145 기관단위 C가 기관단위 A와 동일 부문, 하위부문 또는 단위군으로 분류되면, 해당 채무(및 이에 상응하는 금융청구권)는 통합 시 제거되며 이는 제8장에서 다룬다.

4.146 해당 채무 각각(및 이에 대응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상각은 해당 기관단위의 재정상태표 채무에 계상된다. 따라서 기관단위 A가 기관단위 B에 대한 채무를 지니고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국외) 부채의 상각(차변)은 설령 이러한 차입금을 기관단위 C에 다시 융자해준다고 하더라도 기관단위 A의 회계장부에 기록된다. 기관단위 A의 기관단위 B에 대한 채무의 상각으로 기관단위 A의 총채무는 개선되지만 순채무에는 변동이 없다.

4.147 유사하게, 기관단위 A에 대한 기관단위 C의 (통상적으로 국내) 부채의

상각(차변)은 기관단위 C의 회계장부에 기록된다. 기관단위 A는 기관단위 C에 대한 (국내) 금융청구권의 감소(대변)를 계상한다. 기관단위 A에 대한 기관단위 C의 부채 상각으로 기관단위 C의 총채무는 개선되지만 순채무에는 변동이 없다. 기관단위 A의 총채무 및 순채무 잔액은 기관단위 C에 대해 단위 A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청구권의 소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관단위 A가 현금 및 예금에 대한 용자의 형태의 금융자산을 교환하기 때문이다.

4.148 Box 4.19.는 차입금 간접대출 및 그에 따른 상각의 통계처리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Box 4.19. 차입금 간접대출의 통계처리

다음 예시는 차입금 간접대출의 통계처리를 보여준다. 일반정부 단위(A)는 외국정부(B)로부터 100을 차입하고 이 자금을 거주 공기업(C)에 다시 용자해준다. 해당 국외 용자는 5년에 걸쳐 상환되며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 해당 공기업은 매년 국외용자 상각을 위한 자금(23.1)을 제공한다. 단순화하면 거래외 경제유량(환율변동 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차년도 일반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저량과 유량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일반정부				공기업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기초재정 상태표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기말재정 상태표
수익		5						
-공기업용자에 대한 이자		(c) 5						
비용		5				5		
-국외용자에 대한 이자								
-정부용자에 대한 이자		(d) 5				(c) 5		
순자산/순운영수지		0		0		-5		-5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용자 / 순차입		0		0		-5		-5
금융자산		81.9		81.9		76.9		76.9
현금 및 예금		(a) 100		0		(b) 100		76.9
현금 및 예금		(b) -100						
현금 및 예금		(e) 23.1				(e) -23.1		
현금 및 예금		(f) -23.1						
공기업에 용자		(b) 100		81.9				

공기업에 융자(발생이자)		(c) 5					
공기업에 융자(상환)		(e) 23.1					
부채		81.9		81.9		81.9	81.9
국외융자		(a) 100		81.9			
국외융자(발생이자)		(d) 5					
국외융자(상환)		(f) -23.1					
정부로부터 융자					(b) 100		81.9
정부로부터 융자(발생이자)					(c) 5		
정부로부터 융자(상환)					(e) -23.1		
총채무		81.9		81.9		81.9	81.9
순채무		0		0		5	5

주:

- 정부의 금융자산: 국외 채무(a)가 100만큼 증가함에 따라 현금 및 예금은 100(a)만큼 증가한다.
- 정부의 금융자산: 공기업에 (국내) 융자(b)를 제공한 결과로 현금 및 예금은 100(b)만큼 감소한다. 공기업의 금융자산: 일반정부에 대한 공기업의 채무(b)가 증가함에 따라 현금 및 예금은 100(b)만큼 증가한다.
- 정부가 공기업에 제공한 국내 융자와 정부가 외국정부로부터 얻은 대외 융자(d)에 대한 이자 5(c)가 발생한다.
- 공기업은 일반정부로부터 얻은 국내 융자를 상환하기 위해 연 23.10을 지급한다. 그 결과, 공기업의 일반정부에 대한 채무는 23.1(e)만큼 감소하고 해당 공기업의 금융자산, 즉 현금 및 예금은 23.1만큼 감소한다. 공기업에 대한 일반정부의 청구권은 23.1(e)만큼 감소하며 해당 공기업의 현금 및 예금은 23.1(e)만큼 증가한다.
- 일반정부는 외국정부로부터 얻은 국외 융자를 상환하기 위해 매년 23.10을 지급한다. 그 결과, 정부의 외국정부에 대한 채무는 23.1(f)만큼 감소하며 해당 정부의 금융자산, 즉 현금 및 예금은 23.1(f)만큼 감소한다.
- 일반정부의 총(국외)채무는 1차년도 말에 81.9이지만, 일반정부의 순채무는 차입과 차입금 간접 융자의 결과로 변동되지 않는다. 공기업의 총(국내)채무는 1차년도 말에 81.9이며 순채무는 5(81.9-76.9)이다.

14. IMF 관련 저량 및 유량

4.149 본 절은 PSDS와 관련된 IMF 회원국의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저량과 유량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채무 편제자는 우선 IMF 관련 저량 및 유량을 기록할 공공부문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IMF 회원국의 금융자산 및 부채의 저량과 유량은 보통 회원국의 법적, 제도적 방식에 기초하여 공공부문의 계정에 기록된다.

4.150 IMF는 재정기관과 예탁기관을 통해 회원국과 금융거래를 한다.

- 각 회원국은 회원(자국)을 대신하여 IMF와의 금융거래를 수행할 재정기관을 지정한다.⁵²⁾
- 각 회원국은 또한 IMF가 회원국 통화를 보유하는 예탁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을 지정해야 한다.⁵³⁾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중앙은행은 재정기관이자 예금기관이 된다.

4.151 다음 절은 회원국들의 IMF내 할당과 책임준비금, IMF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이자), 행정적 지급을 위해 사용되는 계정(No.2 계정), 특별인출권 배정과 보유에 관해 논의한다.

a. 할당

4.152 회원국들은 IMF에 참여함으로써 할당에 개입하게 된다. 할당이란 각 회원국이 참여의 대가로 IMF에 납입해야 하는 출자금이며, 이는 SDRs로 표시되며 다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국외통화 부분: 가입국은 할당 중 25%를 SDRs이나, IMF가 특정하는 국외 통화로 지불해야 한다. 이 비율은 회원국의 준비자산의 일부이며, '리저브 트랑쉐(reserve tranche)'라고 부른다. 공공부문 단위의 계정에서 이 비율에 대한 지불은 현금 및 예금 형태의 국외 금융자산(즉, 리저브 트랑쉐 포지션) 증가와 관련된 거래로 기록된다. 이는 IMF에 대한 금융청구권(차변)이며, 동일한 금액이 국외 금융자산에서 감소된다(대변).⁵⁴⁾

52) 재정기관은 회원국의 재무성(재무부), 중앙은행, 공식통화기관, 안정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말한다. IMF는 오직 지정된 재정기관과 거래를 하거나 그 기관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53) 해당 회원국에 중앙은행이 없는 경우, IMF가 용인한 통화기관 또는 상업은행을 예금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4) 상품의 유형은 다양하다.

- 자국통화 부분: 할당된 나머지 75%는 지정된 예탁기관에서 회원국의 자국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자국 통화(IMF의 No.1 and No.2계정) 또는 약속어음(IMF 증권계정에 기록되는)을 발행하여 납입할 수 있다. No.1계정은 IMF의 운영거래(예, 매입 및 환매)를 위해 사용되며, 이 계정(No.1)에서 No.2계정으로 소규모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전은 IMF에 의해 회원국의 통화로 발생된 현지 행정적 비용을 위해 사용된다. 약속어음은 IMF가 필요 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할당 중 국내 통화로 납입하는 부분은 공공부문 단위 계정에 기록되지 않으나 No.2계정은 예외로 한다(아래 참조). 예금과 어음은 어떠한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

4.153 회원국의 할당 규모는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회원국의 할당 변동을 반영하는 거래기록은 최초로 할당이 납입될 때 이루어지는 기록과 동일하다.

b. IMF 책임준비금

4.154 IMF가 보유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은 리저브 트랑쉐와 회원국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IMF의 일반 자원계정에 속하는 총부채(융자 또는 어음매입 계약에 따른)를 더한 것이다(상세한 내용은 BMP6의 문단 6.85를 참조). 리저브 트랑쉐는 회원국의 IMF에 대한 무조건적 출금을 위하며, 이는 할당 출자금의 외환비율과 IMF의 회원국 통화에 대한 판매(환매)를 통한 증가액(감소)을 더한 금액이다. IMF는 이러한 판매(환매)를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을 위한 자금조달 필요로부터 회원국들이 IMF의 재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로부터 기인한다. IMF에서 회원국의 책임준비금은 준비자산(국외 금융자산)의 일부를 구성한다.

4.155 IMF의 리저브 트랑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국제수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국 통화로 IMF로부터 외환을 매수해야 한다. 외환 가치와 동일한 자국 통화는 회원국 중앙은행을 통해 또는 IMF의 증권 계정에 기록되는 IMF에 대한 약속어음의 발행을 통해 No.1계정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거

래는 공공부문 단위 계정의 현금 및 예금(즉, IMF 리저브 트랑쉐 잔액) 형태의 회원국 국외 금융자산의 감소로 기록된다. 이는 회원국의 국외 금융자산(상품의 형태는 다양) 증가로 나타난다.

c. IMF로부터의 차관

4.156 회원국은 IMF로부터 추가적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IMF(저소득 국가에 대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신탁하에 IMF 차관 또는 양허성 차관을 이용할 수 있다. IMF 차관과 양허성 차관의 결과는 동일하다. 즉, 이를 이용하는 회원국은 일련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동의하는 대가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IMF 차관 및 양허성 차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집행되지만 모두 차관 형태의 국외 부채로서 공공부문 단위 계정으로 분류된다.

- 이러한 양허성 차관을 통해 회원국은 상환 약정과 함께 외화를 차입한다. 이러한 용자는 IMF No.1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회원국이 IMF 차관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통화를 대가로 IMF로부터 외화를 '매입'한다. IMF 차관의 이용은 공공부문 단위 계정에서 회원국의 차관부채(SDR로 표시된)로 기록되며, 거래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다. IMF 차관 계약에 따른 부채는 회원국이 자국통화 '환매'를 위해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소멸된다.

4.157 IMF 차관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국의 국내 통화의 가치가 SDR과 관련하여 변동한다면, 일정한 SDR 부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통화의 No.1, No.2, 그리고 증권 계정에 대해 1년에 한 번 '가치지불관리'가 이루어진다. 부채는 SDR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치지불관리는 중앙은행의 계정이 아닌 자국통화 계정단위로 보유이득/손실(가치재평가)로 기록된다.

4.158 중앙은행이 IMF로부터의 차입금을 일반정부 단위에 넘기는 경우:

- 중앙은행은 일반정부 단위에 대해 국내 금융청구권(용자)을 갖게 되며 일반정부 단위는 상환해야 하는 국내 채무(원금 및 이자)가 발생한다.
- 중앙은행은 상환해야 할 국외 채무를 지게 되며 일반정부 단위로부터 수취한 채무상환지급액을 사용할 수 있다.

d. 보상

4.159 무이자 재원인 금으로 기존에 IMF에 지불된 일부를 제외하고, IMF는 리저스 트랑슈를 기준으로 분기마다 회원국들에게 ‘보상(SDRs로 표시된)’을 하게 된다. 이 보상은 발생주의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단위의 이자소득(수익)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는 현금 및 예금 형태의 국외 금융자산의 증가로 나타난다.

e. IMF No.2계정

4.160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IMF No.2계정은 지불관리를 위해 IMF에 의해 사용되며 공공부문 단위 계정에서 부채로 기록된다. No.2계정과 관련된 거래는 이러한 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로 기록되며 (증가 시) 자금의 유입 또는 (감소 시) 자금의 사용에 의해 상쇄된다. IMF가 No.1에서 No.2계정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 공공부문 단위 계정은 리저브 트랑슈(즉, 현금 및 예금)가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는 No.1계정에서 IMF의 회원국 통화 보유량의 감소를 의미하며 현금 및 예금 관련 회원국의 부채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

f. 특별인출권(SDRs)

4.161 SDR은 1969년 IMF에 의해 창설된 국제준비자산이다. SDR은 IMF의 SDR부서에 의해 관리되며, IMF의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에 의거 일반부서의 계정과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SDR부서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발생시킨다. SDR 체계에서 회원국에

대한 금융청구권 및 부채는 협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류 즉, 기타 비거주자는 SDR 보유 및 분배의 거래 상대방이 된다.⁵⁵⁾

4.162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SDR은 SDRs형태의 부채(공공부문 단위의 총채무의 일부)로 기록하며 이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으로서 SDR 보유도 기록한다. 공공부문 단위의 순채무 계산 시 SDR 보유 및 배정을 고려한다. SDR 보유(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SDR 배정에 대한 이자비용은 미지불 금융자산 및 부채 각각의 총액기준이다.

4.163 SDR 배정은 수혜자(즉, SDR 부서의 참여자)의 채무이며, 공공부문부채의 일부이다. SDR 보유는 공공부문 금융자산의 일부이다. 하지만, 국제통계체계에서는 어떤 재정상태표(예, 중앙은행 또는 재무부나 재무성과 같은 일반정부기구)에 SDR 보유 및 배정이 기록되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IMF의 SDR부서에 참여하는 IMF 회원국을 대상으로 SDR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회원국들이 공공부문에서 SDR 배정 및 보유에 대한 소유권과 기록을 결정하는 것은 국내의 법적, 제도적 체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4.164 SDR 보유와 배정이 어떤 공공부문 단위 계정에 기록되는지는 특히, GFS와 PSDS에서 중요하다. SDR 배정이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기록되는 경우, 이는 일반정부 부채의 일부가 된다. SDR 배정이 중앙은행의 재정상태표에 기록되는 경우, 이는 일반정부 부채의 일부가 아닌 공공부문 부채의 일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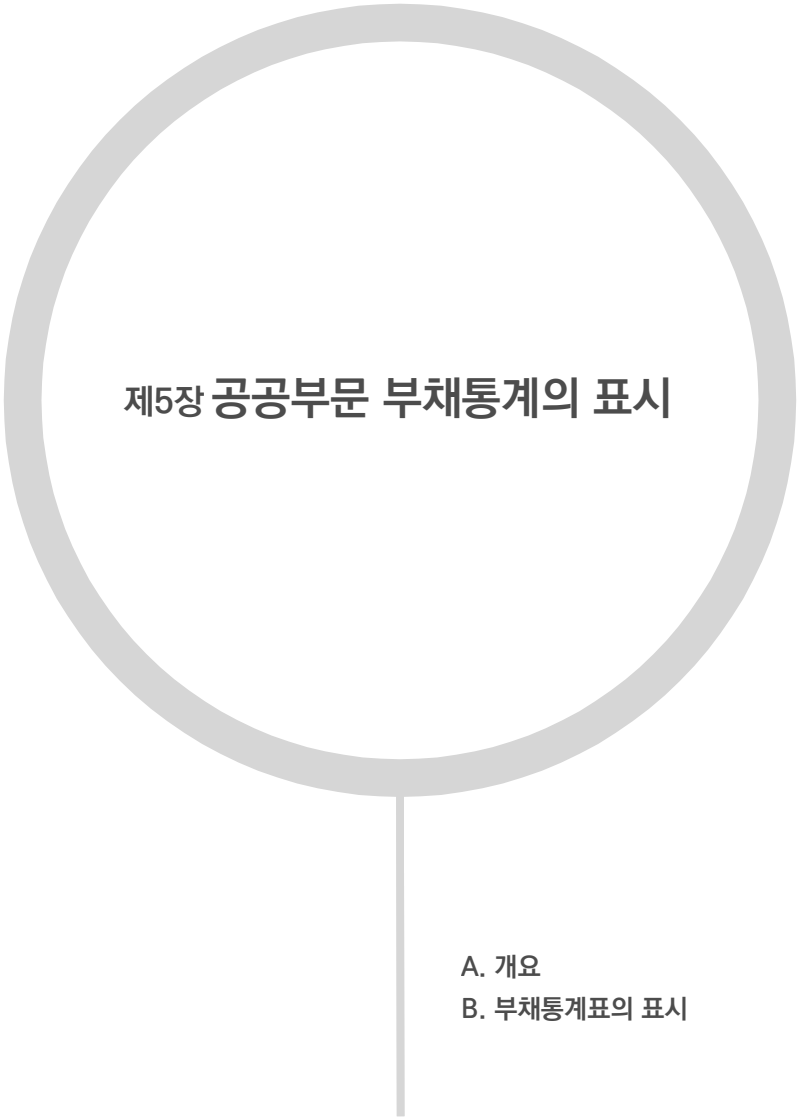
4.165 SDRs는 IMF 참여국 및 지정된 보유자⁵⁶⁾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이

55) 부문별 상대방 분류에 대한 논의는 제3장을 참고한다.

56) IMF는 SDR부서에 참가하는 회원국들을 SDR의 보유자라고 간주하지만 회원국들은 SDR을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SDR 배정을 부채로 지니고 있는 기관들(예, 중앙은행, 재무부장관 및 재무부)에 관한 자국의 협정을 채택할 수 있다. IMF는 또한 제한된 수의 국제

들 간의 이전이 가능하다. SDR의 배정시점에, SDR 배정(부채)과 보유(금융 자산)로 기록되는 금액은 동일하며,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상태표에 기록된다. 이러한 공식적 보유자인 공공부문 단위는 추후 SDR 보유(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로이 사용가능한 통화로 기타 공식보유자들 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상태표에서 SDR 배정 및 보유는 더 이상 동일하지 않게 된다. SDR 보유는 자유로이 사용가능한 통화(즉, 현금 및 예금)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배정보다 그 가치가 낮아진다. 따라서 공공부문 단위의 SDR 배정에 지급되는 이자는 SDR 보유에 대한 미수이자보다 더 커진다. 전환된 SDR 보유에 대한 미수이자는 새로운 보유자에게 귀속된다.

금융기관을 SDRs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5장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표시

A. 개요

B. 부채통계표의 표시

제5장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표시

본 장은 포괄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2개의 요약표, 5개의 세부표, 6개의 부기항목표에 관해 설명한다.

A. 개요

5.1 본 장에서는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표시 방식을 소개하고 통계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 제4장에서 제시된 정의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제한 자료를 표형식으로 설명함으로써 공공부문과 그 하위부문의 총·순부채 현황 전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바람직한 공표 시기와 주기에 대한 지침은 IMF의 특별통계 공표기준(SDDS), 일반통계 공표기준(GDDS)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1) 2)}

5.2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공표할 때는 자료 편제에 사용된 방법 및 개념에 대한 설명과 본 지침의 개념 및 방법(메타데이터)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든 표는 해당 부채통계가 어떤 기관단위(일반정부 부문, 비금융공공 부문 등)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명시된 기관단위의 부채통계는 온전히 연결(관련 통계가 표시되는 실체들 사이의 채무 저량 제거 등)해야 한다. 연결은 제8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5.3 본 장의 표에 수록된 부채통계는 명목 및 시장가치(제2장 문단 2.115~2.138에서 설명)³⁾로 계상된다. ‘총채무의 시장가치’란 시장가격으로 산정되는

1) <http://www.dsbbs.imf.org> for details on the SDDS and GDDS 참조.

2)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채무 제시(본 장 보론에 설명)는 본 장의 설명과 다를 수 있으나 조정이 가능하다.

3) 일부 국가에서는 명목가치가 본 지침의 ‘액면가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채무증권을 의미하며, 시장의 가치평가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의 모든 채무상품은 명목가격으로 가치가 측정되는데, 명목가격은 이들의 시장가격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외 가치평가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표에 명시해야 한다.

5.4 본 장이 제시하는 표는 개별 국가가 공표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공부문 부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표를 추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추가 정보 관련 예시는 본 장의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다.

B. 부채통계표의 표시

5.5 본 지침은 공공부문 부채통계에 대한 요약표 2개, 세부표 5개, 부기항목표 6개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 총채무의 명목 및 시장가치(표 5.1. 참조)
- 총채무 및 순채무의 명목 및 시장가치(표 5.2. 참조)

표 5.1. 총채무 요약 [대상 제도 단위 명시]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총계		
채무상품 유형별 총채무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원 만기별 총채무		
단기 원 만기		

장기 원 만기 잔존 만기별 총채무 단기 잔존 만기 장기 잔존 만기		
표시 통화별 총채무 자국 통화 표시 외화 표시		
이자율 유형별 총채무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채권자의 거주지별 총채무 국내 채권자 국외 채권자		
부기 항목 정부보증채무 연체		

주: 본 지침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한 것과 다른 가치평가 및 유형 분류 원칙을 따를 경우 이를 명시할 것.

5.6 세부표는 요약표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담고 있으며 명목 및 시장가치를 보여준다.

- 만기 및 유형별 총채무(표 5.3. 참조)
- 표시 통화 및 만기별 총채무(표 5.4. 참조)
- 이자율 유형 및 표시 통화별 총채무(표 5.5. 참조)
- 채권자의 거주지별 총채무(이는 아래 항목으로 세분)
 - 채무상품의 유형(표 5.6a. 참조)
 - 채권자의 기관 유형(표 5.6b. 참조)
 - 표시 통화(표 5.6c. 참조)
- 총미상환 채무의 원리금 상환일정(표 5.7. 참조)

5.7 부기항목표는 다음 정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 만기 및 상품 유형별 정부(공적) 보증채무의 명목가치(표 5.8. 참조)

- 연체 및 상품 유형별 연체금(표 5.9. 참조)
- 채권자의 거주지 및 기관 유형별 채무증권의 시장 및 명목가치 조정액(표 5.10. 참조)
-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가치 및 명목가치(표 5.11. 참조)
- 총 명시적 우발부채 및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표 5.12. 참조)
- 원 만기 및 상품 유형별 평균 이자율(표 5.13. 참조)

5.8 표 5.7.은 제외하고 표 5.1.~5.12. 부채통계에서 통상 시계열 형식으로 부채통계를 보여주는데, 시계열 형식이란 특정 시점의 저량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부채통계를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다. 표 5.1.~5.13.에서 해당 부채통계의 대상 기관단위는 자료이용 가능성과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편제자는 다음 두 가지 형식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여 통계를 편제할 수 있다.

- 자료 수집이 가능한 공공부문 내 하위부문 각각에 대한 표를 별도로 만드는 방법
- 하나의 표에 열을 만들어 공공부문 내 하위부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여주는 방법

5.9 각국은 이용 가능한 정보의 제한으로 공공부문 내 모든 하위부문에 대한 통계표를 편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각국의 상황에 따라 최대한 취득 가능한 정보를 표에 포함시켜야 한다.⁴⁾ 하지만, 가급적 본 장에서 권고하는 부채통계표를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공공부문 부채통계 공표(배포)와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들 표에서 보다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표의 하위 범주 또는 부기항목에 세부 내용

4) 문단 5.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지침과 다른 개념 및 방법을 적용할 경우,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관련 개념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채무상품의 각 범주는 본 장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관련 정보 등 표구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을 첨가하거나 추가 표(본 장 뒷부분 예시 참조)를 작성할 수 있다.

표 5.2. 총채무 및 순채무 요약 [대상 기관단위 명시]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채무상품 형태의 부채) (a)	채무상품에 대응되는 금융 자산 (b)	순채무 (c)=(a)-(b)	총채무 (채무상품형태의 부채) (a)	채무상품에 대응되는 금융 자산 (b)	순채무(c)=(a)- (b)
총계						
채무상품 유형별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응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미수 계정						
원 만기별						
단기 원 만기						
장기 원 만기						
잔존 만기별						
단기 잔존 만기						
장기 잔존 만기						
표시 통화별						
자국 통화 표시						
외화 표시						
이자율 유형별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채권자의 거주지별						
국내 채권자						
국외 채권자						

주: 본 지침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한 것 이외의 가치평가 및 유형 분류 원칙을 따를 경우 명시할 것. 화폐용 금은 금융자산으로서만 존재함.

1. 요약표

a. 총채무 요약

5.10 첫 번째 요약표(표 5.1. 참조)는 명시된 대상 기관단위의 연결 총채무를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5.11 우선, 본 요약표는 상품 유형별 총채무의 총계를 제시한다. 보다 자세한 상품 설명은 제3장에 설명되어 있다. 이 유형은 만기, 표시 통화, 이자율 유형, 채권자의 거주지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네 가지 유형의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채무관련표(표 5.3.~5.7. 참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추가로 이 표는 공적보증채무, 연체 등 두 가지 부기항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⁵⁾ 두 가지 부기항목은 명목가치로 표시된다(문단 5.36~5.46 참조). 공적보증채무와 연체의 세부 내용은 표 5.8.과 표 5.9.에 각각 제시된다.

b. 총채무 및 순채무 요약

5.12 두 번째 요약표(표 5.2. 참조)는 명시된 대상 기관단위의 연결 총채무 및 순채무 잔액을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공공부문 단위의 순채무는 특히 GDP 대비 총채무의 비율이 높거나 미래 부채 상환을 위해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을 (암묵적 또는 명시적) 차지하고 있다면 재정분석과 금융시장분석 측면에서 중요하다.⁶⁾ 실제로 공공부문 단위는 위험관리 목적으로 채무와 화폐용 금 및 해당 채무상품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통합방식으로 운용하기도 한다.⁷⁾

5) 우발부채와 연체금의 가치평가는 관련 상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

6) 분석가들은 순금융자산(총금융자산-총부채) 또는 총 순자산(총자산-총부채) 등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상태에 대해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한다.

7) 온전한 분석을 위해 GFS 체계의 전체 재정상태표를 활용할 수 있다.

5.13 본 표의 행은 표 5.1.과 같다(부기항목 제외). 열은 총채무(표 5.1.의 항목들과 동일), 채무상품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의 저량, 순채무 잔액 등의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 등을 보여주고 있다.

5.14 순채무는 총채무에서 채무상품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개별 채무상품의 순가치를 측정하거나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의 순채무를 산정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⁸⁾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 유형의 자산을 특정 유형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채무상품의 순가치를 1대 1로 측정하는 방법은 분석에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폐용 금에는 채무상품(예탁된 금계정)과 비채무성 상품(금괴)이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화폐용 금 중 금괴는 순채무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화폐용 금의 총금액은 순채무 계산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자가 금괴만을 제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금괴의 명목가치는 시장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세부표

a. 만기 및 채무상품 유형별 총채무의 세부 내용

5.15 총채무 요약표(표 5.1.)의 두 번째 부분은 만기별 통합 총채무를 나타낸다. 표 5.3.은 명시된 기관단위 연결 총채무의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를 만기 및 채무상품 유형별로 더 자세한 정보를 나타낸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지침은 원 만기와 잔존 만기⁹⁾를 구분하여 편제할 것

8) 대부분의 경우, 높은 유동자산의 순채무는 총채무에서 현금 및 예금 형태의 금융 자산을 뺀 값이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채무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채무증권은 높은 유동자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

9) 잔존 만기를 잔여 만기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을 권고한다.

- 잔존 만기 기준 단기 채무는 원 만기 기준 단기 채무와 원 만기 기준 1년 이하의 장기 채무를 더한 것과 같다.
- 원 만기 기준 장기 채무는 원 만기 기준 1년 이하의 장기 채무와 원 만기 기준 1년 초과와 장기 채무를 더한 것과 같다.
- 그 밖의 원 만기 또는 잔존 만기 총계는 표 5.3.에서 직접 도출할 수 있다.

5.16 잔존 만기 기준 통계는 분석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채무 상환일이 언제 도래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래가 임박한 상환일 관련 정보는 분석적으로 유용하다. 잔존 만기 기준 통계는 채무 관리목적으로 활용된다. 원 만기 기준 통계는 차입자의 신용등급과 차입 시장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17 표 5.3.의 두 번째 부분은 채무상품 유형별 분류로, 이러한 상품은 제3장에서 설명되어 있다.

표 5.3. 만기 및 채무상품 유형별 총채무 [대상 기관단위 명시]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총계		
채무상품유형별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단기, 원 만기별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미수 계정		
장기, 원 만기별		
만기 1년 이하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만기 1년 초과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주: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한 원칙과 다른 가치평가 및 분류를 명시할 것.

b. 표시 통화 및 만기별 총채무의 세부 내용

5.18 총채무 요약표(표 5.1.)의 세 번째 부분은 표시 통화별 통합 총채무를 나타낸다. 표 5.4는 명시된 대상 기관단위의 연결 총채무를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로 표시하여 표시 통화 및 만기별로 나타낸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시 통화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채무잔액과 관련 유량의 가치가 고정되는 통화에 의해 결정된다.¹⁰⁾ 표시 통화를 통해 채무 관련 거래 가치와 재평가된 가치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를 기반으로 해당 채무잔액에 대한 환율 변동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5.4. 표시 통화 및 만기별 총채무 [대상 기관단위 명시]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총계		
자국 통화 표시		
단기, 원 만기별		
장기, 원 만기별		
만기 1년 이하		
만기 1년 초과		
외화 표시		
단기, 원 만기별		
장기, 원 만기별		
만기 1년 이하		
만기 1년 초과		

주: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한 원칙과 다른 가치평가 및 분류를 명시할 것.

5.19 표 5.4의 첫 번째 부분에는 채무상품들이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표시로 구분되어 있다. 표 5.4의 두 번째 부분에는 만기별로 제시되어 있다(문단 5.15 참조). 일부의 경우 주요 통화별로 외국 통화 표시를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10) 결제 통화는 표시 통화와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통화를 별도의 하위 범주에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문단 5.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 필요에 따른 분류를 적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c. 이자율 유형 및 표시 통화별 총채무의 세부 내용

5.20 총채무 요약표(표 5.1.)의 세 번째 부분은 이자율 유형별 연결 총채무를 나타낸다. 표 5.5.는 명시된 기관단위의 연결 총채무에 대한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를 이자율 유형 및 표시 통화별로 나타낸다. 변동이자율 상품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수입 유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고정이자율 증권의 경우 시장가격이 변화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부 분류는 분석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표 5.5. 이자율 유형 및 표시 통화별 총채무 [대상 기관단위 명시]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총계		
고정이자율 상품 자국통화표시 외화표시		
변동이자율 상품 자국통화표시 외화표시		

주: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한 원칙과 다른 가치평가 및 분류를 명시할 것.

5.21 이 표(표 5.5.) 첫 번째 부분에는 채무상품들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변동이자율 채무상품은 이자율이 LIBOR(런던 은행 간 이자율), 가격지수, 특정 상품가격, 특정 금융상품 가격 등 시장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준지수와 연계된 상품이다.¹¹⁾ 그 밖의 모든 채무상품들은 고정이자율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5.22 신용등급은 시장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입자의 신용등급과 연계된 채무 이자율은 고정이자율로 분류되어야 한다. 기준 가격지수와 연계된 채무 이자율의 경우 기준 지수의 기반이 되는 가격이 일차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면 변동이자율로 분류되어야 한다.

11) 이자율이 1년 이상을 주기로 조정된다면 고정이자율로 간주한다.

5.23 이자율로 상품을 분류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격이 변동될 수 있다. 예컨대, 몇 년 동안은 고정이자율이 적용된 후 변동이자율로 변경될 수 있다. 고정이자율이 지급되는 동안은 고정이자율 채무로 분류되다가 이자율이 변동으로 바뀔 때 변동이자율 채무로 범주가 바뀌는 것이다. 이자율이 기준지수, 상품 가격, 금융상품 가격에 연동되지만, 기준 지수나 가격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고정된다면 고정이자율로 분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후 이자율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된다면 변동이자율 상품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대안적으로 이자율이 사전에 정해놓은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변동이자율을 적용한다면, 도달 후에는 고정이자율 채무상품으로 변경된다. 변동이자율 상품의 수입 흐름이 고정이자율 상품의 수입 흐름과 교환될 경우, 해당 교환은 파생금융상품을 발생시킨 것으로 계상되지만 원 채무상품에 대한 분류는 변경되지 않는다.

5.24 지수연동상품은 변동이자율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상품에서는 원금이나 액면이자 또는 원금과 액면이자 모두가 일반 또는 특정 가격지수에 연동된다. 지수연동 상품이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연동 체계가 원금이나 액면이자 또는 원금과 액면이자 모두(제2장 부록에서 설명한 이자 처리방식에서 예외)에 적용될 경우, 채무상품은 변동이자율 상품으로 분류된다. 특별히 중요한 유형의 지수연동증권(인플레이션 연동 증권 등)에 대한 정보는 표 5.5에 부기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5.25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은 보통 변동이자율 상품으로 분류된다. 채무상품의 적용 이자율이 당사자 간 미리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보험준비금과 확정기여형 연금부채는 투자한 자금의 수익률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반면 확정급여형 연금부채와 표준화 보증 충당부채는 약정 수익 또는 기대청구권을 반영하여 계산된 할인율을 기준으로 한다.

5.26 표 5.5의 두 번째 부분은 표시 통화별 분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제2장에 설명되어 있다(문단 5.18 참조).

d. 채권자 거주지별 총채무의 세부 내용

5.27 총채무 요약표(표 5.1.)의 네 번째 부분은 채권자의 거주지별 연결 총채무를 나타낸다. 채권자 거주지¹²⁾를 기준으로 명시된 대상 기관단위의 연결 총채무를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별로 구분할 경우, 표 5.6a.(채무상품 유형), 5.6b(채권자의 (기관)부문), 5.6c(표시통화)와 같이 두 번째 요약표의 세 개의 하위 범주에 표시된다. 채무상품 및 채권자의 부문은 제3장에 설명되어 있으며, 거주지별 거래 채무증권 및 채권자 부문의 유형 분류에 대한 실무적 지침은 제7장에 제시되어 있다. 표시통화는 제2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5.6a. 채권자 거주지 및 채무상품 유형별 총부채 [대상 기관단위 명시]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총계		
국내 채권자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국외 채권자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주: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한 원칙과 다른 가치평가 및 분류를 명시할 것.

e. 총 미상환 채무의 상환일정

5.28 채무 상환일정은 공공부문 단위의 유동성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단위 부채 상환연장 관련 위험평가도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부채 관리자들에게 공공부문 및 공적보증채무의 원리금 상환일정 점검은 중요

12) 거주지에 대한 설명은 제2장, 문단 2.94~2.102 참조.

한 관리전략이다. 이 정보는 그 밖의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공공부문 신규 채권 발행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5.29 표 5.7.은 명시된 대상 기관단위의 미상환 총채무 원리금 상환일정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리금 상환일정은 채무상품 유형별, 표시통화별로 분류할 수 있다. 필요 시, 이자율 유형, 채권자 거주지 등 분류를 추가할 수 있다.

5.30 표 5.7.에 표시된 통계는 특정 기준시점의 연결 총 미상환 채무에 대한 미래의 예상 이자 및 원금 상환액(즉, 현재가치로 할인되지 않은 예상 금액)을 나타낸다. 이러한 통계에는 미래 공공부문 부채의 예상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는다.¹³⁾ 예상액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미래가 아닌) 기준 시점의 이자율, 환율, 대표 가격(연동 상품의 경우)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단, 미래의 이자율, 환율, 가격을 예상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료는 특정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표 5.6b. 채권자의 거주지 및 부문별 총채무 [대상 기관단위 명시]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총계		
국내 채권자		
일반정부 ¹		
중앙은행 ¹		
중앙은행 외 예금수취 기관 ¹		
기타 금융기관 ¹		
비금융기업 ¹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국외 채권자		
일반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그 밖의 금융기업		
기타 비거주자		

주: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한 원칙과 다른 가치평가 및 분류를 명시할 것.

¹연결부채통계차원에서 공공부문 단위의 부문 간, 부문 내 저량은 제거된다.

13) 즉, 이들 정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채무 부채가 아닌 기존 부채만을 대상으로 한다.

5.31 표 5.7.의 각 열은 1년 이하, 1년 초과~2년, 2년 초과~5년, 5년 초과 등의 기간을 나타낸다. 이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향후 2~5년 동안의 매년 연간 상환 관련 자료는 잠재 상환액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국가는 향후 10년 또는 15년 동안 매년 연간 상환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 5.7.은 이와 관련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며, 필요 시 세부 사항이 더 추가될 수 있다.

5.32 하위 기간은 1년 이하, 1년 초과~2년으로 세분된다. 전자의 경우 '즉시 상환'(문단 5.33 참조)과 분기단위로 분류되는데, '0개월 초과~3개월'은 '즉시 상환' 범주에 해당하는 상환액이 제외된다. 1년 초과~2년은 반기단위(학기)로 구분된다.

5.33 1년 이하의 하위 범주인 '즉시 상환'은 요구 즉시 상환되는 모든 채무(예, 은행 예금)와 연체된 모든 채무(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를 가리킨다. 즉시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실제 상환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1년 이하 만기 도래 채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시'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포함한 단기 채무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표 5.6c. 채권자의 거주지 및 표시 통화별 총채무 [대상 기관단위 명시]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총계		
국내 채권자		
자국통화표시		
외화표시		
국외 채권자		
자국통화표시		
외화표시		

주: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한 원칙과 다른 가치평가 및 분류는 명시할 것.

5.34 특정 시점이나 그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되팔 수 있는 옵션이 내재된 증권¹⁴⁾의 경우, 표 5.7.의 예상 상환액 산정에 이러한 내재 풋옵션을 반영해

서는 안 된다는 것과 채무가 옵션 기일에 조기 상환된다고 가정할 때 예상 상환액을 부기항목에 넣을 것을 권고한다. 풋옵션 채권의 예상 상환액을 옵션 기일까지만 추정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는 국가라면 채권에 대한 원 만기일까지의 예상 상환액을 부기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표 5.7. 미상환 총채무의 원리금 상환일정 [기준 시점 명시][대상 기관단위 명시]

	1년 이하(월)					1년 초과~2년(월)		2년 초과~5년	5년 초과
	즉시 상환	0~3	3~6	6~9	9~12	12~18	18~24		
상품 유형별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	-	-	-	-	-	-	-	
표시 통화별 자국통화표시 원금 ² 이자 ³ 외화 통화표시 원금 ² 이자 ³									
부기 항목 옵션 채무증권 ⁴ 공적보증채무 ⁵ 원금 ² 이자 ³ 공적보증사적채무 원금 ² 이자 ³									

¹ 요구 즉시 상환 또는 만기가 임박한 채무이며, 연체, 연체이자, 일부 예금이 포함된다.

² 당초 원금을 지칭한다.

³ 연체이자, 연체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이자로 구성된다.

⁴ 특정 시점 또는 그 이후 채무자에게 채무를 되팔 수 있는 옵션이 내재된 증권만 포함한다.

⁵ 총부채통계가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공공부문의 보증채무는 0이다. 이는 보증채무가 이미 채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부채통계가 공공부문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공부문의 보증채무에는 보증인이 자신의 총부채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공공부문 단위에 보증을 제공한 채무 금액이 반영된다.

14) 제2장 문단 2.175, 제3장 문단 3.33 참조.

5.35 기타 내재 옵션은 특정 기일보다는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특정 사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의 가격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환 조건이 성립된다. 부기항목에는 이러한 상품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반면 필요 시 공공부문 부채의 유형과 가치에 대한 추가 자료는 편제해야 한다.

3. 부기항목표

a. 만기 및 상품 유형별 정부보증채무

5.36 총채무 요약표(표 5.1.)의 마지막 부분은 공적보증채무의 총계를 나타낸다. 2개의 부기항목표는 공적보증채무와 관련된다.

- 표 5.8a.는 대상 기관단위의 정부보증채무에 대한 명목가치를 만기 및 상품 유형별로 세분해 보여주고 있다.
- 표 5.8b.는 정부보증채무의 기초와 기말 시점의 저량 차이를 세부적으로 나타낸다.

5.37 공적보증채무는 공공부문 단위가 계약에 따라 변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공공 및 민간부문 단위의 부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증에는 특정 형태의 일회성 보증(제4장 문단 4.14~4.20 참조)을 구성하는 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이 포함된다.¹⁵⁾ 이러한 채무가 민간부문이나 기타 공공부문의 채무이기는 하지만, 보증을 제공하는 공공부문 단위에는 잠재적 부채, 즉 명시적 우발부채가 된다.¹⁶⁾ 이러한 우발부채는 부채 관리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및 분석 시 중요하다. 표 5.8a.와 5.8b.의 통계는 제2장과 제3장에서

15) 이들 표에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우발부채는 아닌)인 표준화 보증하 총당부채 청구권(제3장 문단 3.62~3.63 참조)은 포함되지 않는다. 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 외의 명시적 우발부채 역시 제외된다. 표 5.12.는 사회보장 순의무(암묵적 우발부채)뿐 아니라 모든 명시적 우발부채를 제시한다.

16) 보증에 대한 이행 요구 시 해당 부채는 보증인에게 인수되면서 보증인의 재정상태표에 기록된다.

설명한 개념을 활용하여 편제해야 한다.

5.38 표 5.8a.의 첫 번째 부분은 공공부문 보증부채와 정부가 보증한 민간부문 채무로 구분한다.

- **공공부문 보증부채**는 표 5.1.~5.7.의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포괄단위인 공공부문 단위(들)가 계약에 따른 변제를 보증한 공공부문 부채총액이다. 이러한 채무의 규모는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포괄범위인 기관단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표 5.1.~5.7.의 통합 총부채통계가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공공부문 보증부채는 0이다. 통합 총부채통계가 공공부문의 일부(예, 일반정부 부문 포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증인(이 경우, 일반정부)이 자신의 총부채통계에서 제외되나 공공부문 단위(이 경우, 모든 공기업)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채무가 공공부문의 보증채무가 된다.
- **정부보증 민간부문 채무**는 표 5.1.~5.7.의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포괄범위인 공공부문 단위가 계약에 따라 변제를 보증한 거주 단위의 민간부문 채무총액이다. 공공부문 단위(예,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 보증)가 민간부문 단위의 채무 중 일부를 보증한 경우, 정부가 보증하는 민간부문 채무에는 보증된 상환액의 명목가치만 포함된다.
- **비거주자 단위의 정부보증채무**는 중요한 경우 표 5.8a.에 별도의 범주로 포함해야 한다.

5.39 표 5.8a.의 두 번째 부분은 만기(문단 5.15~5.16 참조), 세 번째 부분은 채무상품의 유형을 기준으로 정부보증채무를 분류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본 지침의 제3장에 설명되어 있다.

표 5.8a. 만기 및 채무상품 유형별 정부보증채무, 명목가치 [대상 기관 명시]

정부보증채무 채무 총계 공공부문 보증채무 총계¹ 단기, 원 만기별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장기, 원 만기별 만기 1년 이하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만기 1년 초과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정부 보증 민간부문 채무 총계 단기, 원 만기별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장기, 원 만기별 만기 1년 이하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만기 1년 초과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비거주자에 대한 정부보증채무 총계 <i>[세부내용 명시]</i>

¹ 통합 총부채통계가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공공부문의 보증채무는 0이다. 이는 보증채무가 이미 채무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가 공공부문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정부보증채무에는 보증인이 자신의 총부채통계에 반영되지 않지만 공공부문 단위에 보증을 제공한 채무 금액이 반영된다.

표 5.8b. 정부보증채무의 기초 및 기말 저장 간 조정, 명목가치 [대상 기관단위 명시]

개시시점 정부보증채무 총계
더하기 : 발생 이자 빼기 : 채무 상환 ¹ 더하기 : 기간 동안 제공된 신규 보증 빼기 : 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 종료된 보증 빼기 : 기간 동안 명시적 채무인수 원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청구권 미획득 원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청구권 획득 더하기 / 빼기 : 기타 변화
결산시점 정부보증채무 총계
부기 항목 채무자가 보증인에 지급한 보증 수수료 결산 시점에 명시적으로 인수된 보증채무 저장 원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청구권 미획득 원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청구권 획득

주: 통계는 명목가치로 계상된다. 따라서 환율 변동을 반영한 외화 표시 보증의 재평가 조정은 포함하지 않지만 시장가격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¹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5.40 표 5.8b.는 기준기간 동안 유량 변화를 통해 총 정부보증채무 저장의 조정을 나타낸다. 다양한 형태의 유량은 정부보증채무의 저장에 영향을 미친다.

- 미상환 채무에 대한 이자는 정부보증채무의 규모를 증가시킨다.
-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 상환은 정부보증채무의 규모를 감소시킨다.
- 신규 보증 제공은 정부보증채무의 규모를 증가시킨다.
- 보증인과 원 채무자 사이의 계약상(예, 상호) 합의에 따른 보증 종료는 정부보증채무의 규모를 감소시킨다.
- 명시적 보증 이행 요구(예, 계약상 합의)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채무인수는 정부보증채무의 규모를 감소시킨다.
- 기타 변화는 정부보증채무의 규모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기타 내용 변화(보증인과 채무자 간 상호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유량)는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계약상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보증을

종료할 경우, 정부보증채무의 규모는 줄어든다. 기타 유량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표시 보증채무의 가치가 변하는 경우 정부보증채무 규모의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 기타 변화에는 원 채무자의 연속적 채무 불이행 후 채무가 인수된 것으로 간주될 때(제4장, 각주8 참조), 보증채무를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채무는 감소된다. ‘암묵적 보증’이 특정 조건하에서 다시 보증이 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규모는 증가한다. 이러한 세부 내용들은 필요할 경우 표 5.8b.에 ‘기타 유량’ 항목을 넣어 명시할 수 있다. 통계가 명목가치로 계상된다면 시장가격 변동은 표에서 제외된다.

5.41 부기항목은 표 5.8b.에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다.

- 채무자가 해당 기간 동안 보증인에 지급한 보증 수수료
- 정부보증채무의 총 저량은 보증인이 인수한 부분과 미상환 부분으로 추정한다. 거래를 통해 인수된 부분을 원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청구권 취득 유무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b. 연체 및 상품 유형별 연체금

5.42 총부채 요약표(표 5.1.)의 마지막 요약 부분은 총채무 상환 연체금을 나타낸다. 총부채 대비 연체금의 규모가 클 경우, 연체 관련 정보는 세부 부기항목표로 표시해야 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체금은 지급일 도래가 지난 미상환 금액을 지칭한다. 기한이 지난 금액만 연체금으로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 기한이 지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부분만 연체금에 해당된다.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자와 같은 연체금이 발생한다. 발생주의기준에서는 연체금과 관련한 유량이나 연체된 채무상품 유형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편제자들은 연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정책 분석

및 지불능력 평가에 유용하다.

5.43 표 5.9.는 명시된 대상 기관단위의 연결 채무 연체금을 연체금 및 채무상품 유형별로 세분한 것이다. 연체금의 세 가지 유형은 연체 원금, 연체 이자, 연체 원리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구분된다.

5.44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발생했으나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이자는 미상환 원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표 5.9.에서 ‘원금’과 ‘이자’는 각각 기한이 지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의미한다.

표 5.9. 연체 유형 및 채무상품별 연체금 [대상 기관단위 명시]

총 연체
연체 유형별 원금 이자 연체이자 채무상품 유형별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주: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각 연체금 유형을 채무상품 유형의 하위 범주로 넣어 표를 작성할 수 있다.

5.45 연체로 발생한 이자(원금과 연체이자)는 연체이자라 부른다. 연체금에 부과하는 이자율이 원 채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 계약에서 발생한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은 원 채무에 대한 이자율과 동일해야 한다. 연체 이자율에는 원 채무에 대한 이자율에 별칙 이자율이 가산될 수도 있다. 기타 연체금의 경우 다른 정보가 없다면, 익일 상환 차입에 대한 시장 이자율로 연체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또, 과거 연체와 관련한 추가 비용(벌금 등)은 합의가 이행되는 시점에 채무자의 연체금에 대한 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신용 구매에 대한 대금을 구매 시점에 규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연체금에 대한 이자로 간주되며 채무가 소멸될 때까지 발생된다.

5.46 표 5.9.에서 연체금에 대한 정보를 연체금 유형 및 채무상품 유형별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 채무상품별로 어떤 유형의 연체금이 있는지 세부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분석적 유용성이 있다면, 표 5.9.와 같이 연체금 유형을 각 채무상품의 하위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

c.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및 명목가치 조정

5.47 본 지침은 채무증권의 가치를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로 산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장가치는 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 반면 명목가치는 그렇지 않다. 시장가격은 시간에 걸쳐 시장이자율,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변화, 시장 구조(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한다.

5.48 특정 시점, 시간에 걸친 채무증권의 시장가치와 명목가치 간 차이는 분석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표 5.10.은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 조정 체계를 거주자 및 채권자 기관 부문별로 보여준다. 채권자가 속한 부문은 제3장에서 설명되었다.

d. 비채무성 부채, 명시적 우발부채, 미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

5.49 거시경제통계에서 공공부문 단위의 비채무성 부채, 명시적 우발부채, 미래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부채**가 아니다. 하지만 유의미하고(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표로 공공부문 부채통계표를 보충할 수도 있다.¹⁷⁾ 이 절은 파생금융상품(공공부문 단

위의 재정상태표상 비채무성 부채 및 금융 자산), 명시적 우발부채, 미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의 저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5.10. 채권자의 거주지별, 부문별 채무증권-시장가치 및 명목가치 조정
[대상 기관단위 명시]

	시장가치	명목가치와의 차이	명목가치
거주지 및 채권자의 부문유형별 총채무 총계			
국내 채권자			
일반정부			
중앙은행			
중앙은행 외 예금수취기관			
기타 금융기관			
비금융기업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국외 채권자			
일반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그 밖의 금융기업			
기타 비거주자			

주: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한 원칙과 다른 가치평가 및 분류 원칙을 따를 경우 이를 명시할 것.

i 파생금융상품 포지션

5.50 표 5.11.은 파생금융상품의 저량을 보여준다. 파생금융상품은 채무가 아닌 부채로 인식된다. 하지만 포지션 보유뿐 아니라 재정상태 헤지(hedge)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에 포함되며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공공부문 부채와 파생금융상품 관련 수치를 비교할 때 파생금융상품이 자산이나 부채 현황 또는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헤지 수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7) 예를 들어, 연금의 보장 범위를 나타내는 보충표를 작성할 수 있다(2008 SNA의 표 17.10, 제2장 문단 2.77~2.85 참조).

표 5.11. 파생금융상품 포지션 [대상 기관단위 명시]

	시장가치	개념적 가치
순금융 파생상품 포지션 옵션 시장위험 범주별 ¹ 선도유형 계약 시장위험 범주별 ¹		
금융파생상품 자산 옵션 시장위험 범주별 ¹ 선도유형 계약 시장위험 범주별 ¹		
금융파생상품 부채 옵션 시장위험 범주별 ¹ 선도유형 계약 시장위험 범주별 ¹		

주: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한 원칙과 다른 가치평가 및 분류는 명시할 것.

¹ 시장위험 범주는 외환, 단일 통화 환율, 주식, 상품, 신용, 기타 등이 있다.

5.51 표 5.11.은 상계계약을 발생시키는 시장관행과 특정 기간에서 다음 기간으로 넘어갈 때 자산에서 부채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되는 선도 유형의 상품이 존재할 가능성 때문에 총부채뿐만 아니라 총자산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선도 거래를 통해 외화 차입을 헤지할 경우, 특정 기간에서 다음 기간으로 넘어갈 때 헤지의 가치는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부채만 기재할 경우, 총공공부문 부채는 선도 계약이 외화 차입이 헤지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부채와 파생금융상품 자산은 함께 기재해야 한다.

5.52 파생금융상품 포지션은 시장가치와 명목가치로 기록한다. 명목금액으로 지칭되는 개념적 금액은 파생금융상품 관련 지급액이나 수령액 산정 시 필요한 기준 가치를 의미한다.¹⁸⁾ 스왑 계약의 경우, 시장가치는 예상되는 총수

18) 예를 들어, 어떤 선도계약이 10만의 환율 변동을 가정한다고 할 때, 개념적 가치는 10만이지만 시장가치는 0일 수 있다.

령액과 총지급액 간 차이를 적절하게 할인한 금액, 즉 순 현재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선도계약의 시장가치는 자산의 시장가격 및 계약가격, 계약의 잔존만기, 명목가치, 시장이자율 등 확보 가능한 정보에 기반해 산정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의 관점에서 선도계약의 가치는 (-, 부채) 또는 (+,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자산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금액과 방향이 변할 수 있다. 선도계약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과 마찬가지로 일일 정산되며 시장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일일 정산되기 때문에 각 마감 시점의 가치는 0이 될 것이다.

ii. 명시적 우발부채 및 미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

5.53 본 지침은 중요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시적 우발부채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것을 권고한다. 제4장에서 설명된 명시적 우발부채는 표 5.12.에서와 같이 세 가지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일회성 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 높음)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5.8a.와 표 5.8b.(정부보증채무)에 설명되어 있다. 나머지 유형들에 대한 정보는 필요할 경우 표 5.12.와 같이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그 밖의 하위 유형들도 표 5.12.에 추가될 수 있다.

5.54 제2장 문단 2.8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시경제 통계체제에서 퇴직금, 건강보험 등 미래에 지급될 사회보장급여는 부채가 아니다.¹⁹⁾ 이러한 의무는 암묵적 우발부채로 인식된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모든 기여금은 수익(이전), 모든 지급액은 지출(이전)로 처리된다. 기존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납부되었으나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현재가치는 고용주 퇴직금 관련 부채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금액에서 사회보장제도 기여금의 현재가치를 뺀 경우, 정부의 미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19) 반대로, 지급 기한이 도래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사회보장급여는 공공부문 단위 재정상태표상 미지급 계정에 포함된다. 정부 피용자를 위한 비적립식 비자율형 연금 관련 부채 역시 재정상태표에 포함되며, 따라서 암묵적 우발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알 수 있다.

표 5.12. 명시적 우발부채 및 미래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 [대상 기관단위 명시]

총 명시적 우발부채
일회성 보증 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 ¹ 기타 일회성 보증 ² 그 밖의 명시적 우발채무 법정청구권 배상금 미불입 자본금 . .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 미래 사회보장급여 관련 의무의 현재가치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의 현재 가치

¹ 본 지침은 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즉, 정부보증채무)의 세부 내용을 표 5.8a., 표 5.8b.와 같이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² 신용보증 및 기타 유사한 우발부채(용자한도, 용자약정), 우발 신용한도 보증, 우발 신용지원 등이 있다.

4.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추가 정보

5.55 제5장에서 설명된 핵심표는 총채권 발행에 대한 역사적 자료,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수익률 정보, 특정 유형 채무상품의 신용등급 등 기타 정보에 대한 표를 작성해 위의 표들을 보완할 수 있다. 이 표는 자료의 확보 가능성 및 분석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5.56 분석적 이익 차원에서 공공부문 부채 및 채무상품의 평균이자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균이자율은 공공부문 단위의 차입 비용, 채무 이자지급액 등을 추정하는 데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평균이자율을 파악함으로써 차입의 양허성 수준도 계산할 수 있다. 전체 평균이자율에 단기 및 장기 원 만기 상품에 대한 평균이자율(표 5.13. 참조)이나 표시 통화별 평균이자율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공공부문 부채의 가중평균이자율과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차입에

대해 합의한 가중평균이자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표 5.13.을 작성할 수 있다.

표 5.13. 원 만기 및 채무상품 유형별 평균이자율 [대상 기관단위 명시]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총계		
단기, 원 만기별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미수 계정		
장기, 원 만기별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주: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한 원칙과 다른 가치평가 및 분류는 명시할 것.

표의 완결성을 위해 모든 채무상품 유형을 기재했으나, 현금, 보험, 연금 및 표준화 보증상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한 평균이자율 정보를 기재한 것은 아님.

5.57 평균이자율은 미상환 총공공부문 부채나 특정 채무상품의 기준 시점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에 대한 가중 평균이자율을 지칭하며, 가중치는 각 차입 계정 단위의 가치가 총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일반정부 부문의 경우, 각 채무 상품의 이자율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일반정부 부문의 총채무에서 해당 채무 계정 단위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채무증권과 융자에 대한 평균이자율은 세부 채무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대안적으로, 채무의 관련 가치 대비 지급이자율의 연이율을 기반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이자율은 발생주의기준에 기반하여 계상해야 하는데, 현금주의 기준을 기반으로 할 경우 대폭할인채권의 평균이자율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이자지급시기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은 이자에 대해 성격이 다른 재산소

득을 발생한다. 하지만 평균수익률은 투자 펀드 수익이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계수를 토대로 산출할 수 있다.

5.58 각 채무상품의 이자율 수준은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등 해당 상품의 이자율 유형(문단 5.20~5.26 참조)에 따라 달라진다. 고정이자율 상품일 경우 발행 시 할인 및 할증을 감안한 해당 고정이자율을 사용해야 하며, 이자율이 과거에는 변동이었다가 고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는 고정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변동이자율 상품일 경우 기준일에 발생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즉, 변동이자율은 보통 일정한 주기로 이자율 수준이 재설정되는데, 기준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변동이자율 수준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기준일의 기준지수 수준 또는 이자율이 기준 지수의 변화에 연동되는 경우, 기준일까지의 특정 기간이나 가능한 가장 근접한 기간 동안 발생한 변화 등 적절한 가격과 차입자가 지급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기반으로 이자율 수준을 산정해야 한다.

5.59 기간 동안 신규 차입에 합의된 가중 평균이자율을 계산할 때, 이자율은 차입시점에 설정된 이자율을 기록한다. 고정이자율 상품의 경우 해당 이자율을 사용하고, 변동이자율 상품일 경우에는 청구권이 설정된 날 발생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평균이자율 편제 시 적용되는 가중치는 청구권 설정일 기준 각 차입 계정 단위의 가치가 특정 기간 동안의 총 차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초하여 결정된다.

보론: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히트 채무

본 보론에서는 유럽연합(EU) 마스트리히트 채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한다.

1. 서론

5.60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은 EU 가입국들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이다. SGP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두 가지 지표는 일반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및 채무비율이다. SGP의 핵심 원칙은 EU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과도한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다[유럽공동체(EC) 설립에 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104조,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개정]. 구체적으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비율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정도로 기준에 접근하지 않는 한, 재정적자는 GDP의 3%, 채무는 GDP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 재정지표와 상한선은 EU 가입 및 3단계 유럽통화연합(Stage Three of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또는 유로 지역 진입을 위한 재정통합의 기준이기도 하다.

2. 주요 특징

5.61 정부채무(‘마스트리히트 채무’ 또는 ‘EDP 채무’)는 연말 기준 일반정부의 총채무의 명목가치로 정의되며,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부속서인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Protocol on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와 이사회 규정(EC) 479/2009 1 (5)조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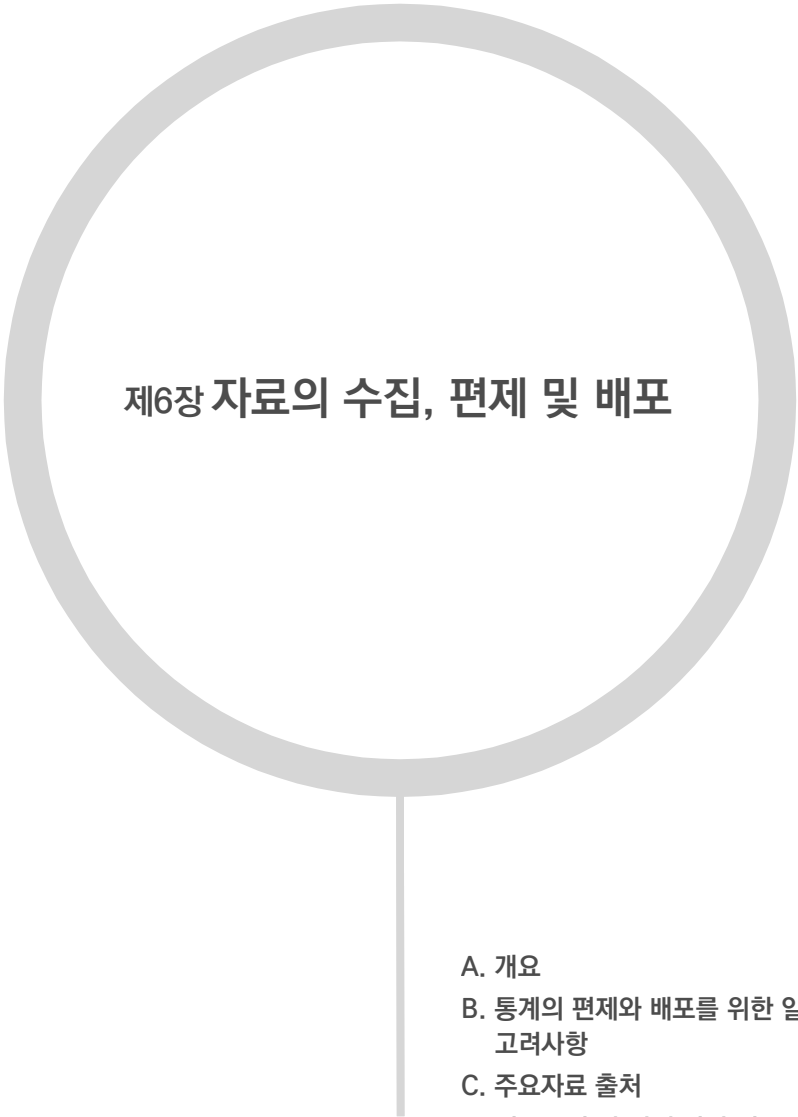
- 부문: 마스트리히트 채무는 일반정부 부문의 통합 부채로 구성되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과 주정부 등 모든 정부단위의 채무를 포함한다. EU에서 공기업 채무는 정부부채에서 제외된다.

- **상품유형:** 마스트리히트 채무에는 유럽회계기준 95(ESA 95)이 규정하는 현금 및 예금,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한 주식 외 유가증권, 용자 등의 일반 정부 부채가 포함된다. 보험 책임준비금, 기타 미지급 계정과 같이 측정하기 어려운 ESA 95 상품은 제외된다. 따라서 마스트리히트 채무의 정의는 총채무의 총계(제2장 문단 2.3)와 다르지만 제2장 문단 2.7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의의 채무와는 일치한다.
- **가치평가 기준:** 마스트리히트 채무의 규모는 '명목가치'로 측정되며, 정부가 계약을 통해 만기에 채권자에게 환급하기로 합의한 금액과 같다. GFSM과 PSDS에서는 이러한 가치 산정 방식을 '액면가치'라 지칭한다. 이는 특히 정부 채무가 시장 수익률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미지급 이자는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스트리히트 채무는 국민계정에서 대부분의 정부부채와는 달리 측정되며, 시장가치로 계상된다.
- **연결:** 마스트리히트 채무는 일반정부 부문 채무를 연결한 것으로, 일반정부 단위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부 채무상품은 정부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총채무:** 마스트리히트 채무는 '총' 채무로, 정부부채에서 일반정부의 금융자산을 차감하지 않는다.

5.62 모든 EU국가는 상품별 및 최초 만기별 정부 채무를 세분화하여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보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정부재정통계에 대한 유럽중앙은행 지침(ECB Guideline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ECB/2009-20)에 따르면 모든 유럽 지역 국가의 중앙은행은 잔존 만기, 보유 부문, 통화별 정부 채무를 추가로 세분화하여 보고해야 한다.

5.63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마스트리히트 채무는 국제기준과 조화되는 국민계정(ESA 95)에 기반하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각국의 국가 통계청, 중앙은행, 재정부의 협력을 통해 편제된다. EU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및 부채통계

편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Eurostat는 국가별 특수 거래를 처리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개발했으며, 중앙은행과 국가통계 연구소 소속 선임 통계전문가로 구성된 통화, 금융, 국제수지 통계 위원회(Committee on Monetary, Financial, and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CMFB)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중앙은행(ECB)도 CMFB의 구성원이다. Eurostat는 기술적 기준에 따라 모든 EU 가입국들의 유사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각 사안의 결정은 방법론적 요지를 기록하고, 언론을 통해 배포한다. 주요 방법론적 결정은 정부 재정적자 및 채무에 관한 ESA 95 지침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6장 자료의 수집, 편제 및 배포

- A. 개요
- B. 통계의 편제와 배포를 위한 일부
고려사항
- C. 주요자료 출처
- D. 자료수집 및 편제 관련 일부 고려사항

제6장 자료의 수집, 편제 및 배포

본 장은 다양한 자료의 출처로부터 기초자료의 수집과 공공부문부채통계의 편제 그리고 배포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설명한다.

A. 개요

6.1 공공부문부채통계 자료를 수집, 편제, 배포하는 과정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그림 6.1. 참조).

- 통계의 편제 및 배포
- 주요 자료의 출처
- 기초 자료 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초자료 관련 시스템 및 편제자

6.2 통계자료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려면 공공채무통계의 편제를 위해 적절하게 작동되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렇게 할 때 공공부문채무는 물론 정부보증채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UNCTAD, 1993 참조). 본 장에서는 먼저 공공부문부채통계의 편제와 배포 시 선결해야 하는 일부 기관단위 이슈를 다룬다. 특히 다음 사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편제와 배포를 총괄하는 기관 등 공식기구 간 협력 노력
- 공공부문부채통계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과 법적 지원

-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기성과 적시성 있는 공공부문부채통계의 배포

6.3 본 장에서는 공공부문부채통계를 수집하고 편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본 지침의 목적은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공공부문부채통계의 일부 요소는 다른 요소에 비해 수집과 편제가 더 용이한 경우가 있다. 일례로, 정부가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국내통화 융자에 대한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편제하는 것은 정부가 발행한 국내채권의 비거주자 소유권에 대한 정보 수집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통계자료가 모두 필요하다. 거래되는 증권의 소유권에 대한 통계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데, 이는 해당 증권의 소유권 변동을 매번 기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제7장에서 설명한다.

B. 통계의 편제와 배포를 위한 일부 고려사항

6.4 본 절에서는 공공부문 통계의 편제과정에 있어 최종 두 가지 측면, 통계의 편제와 배포에 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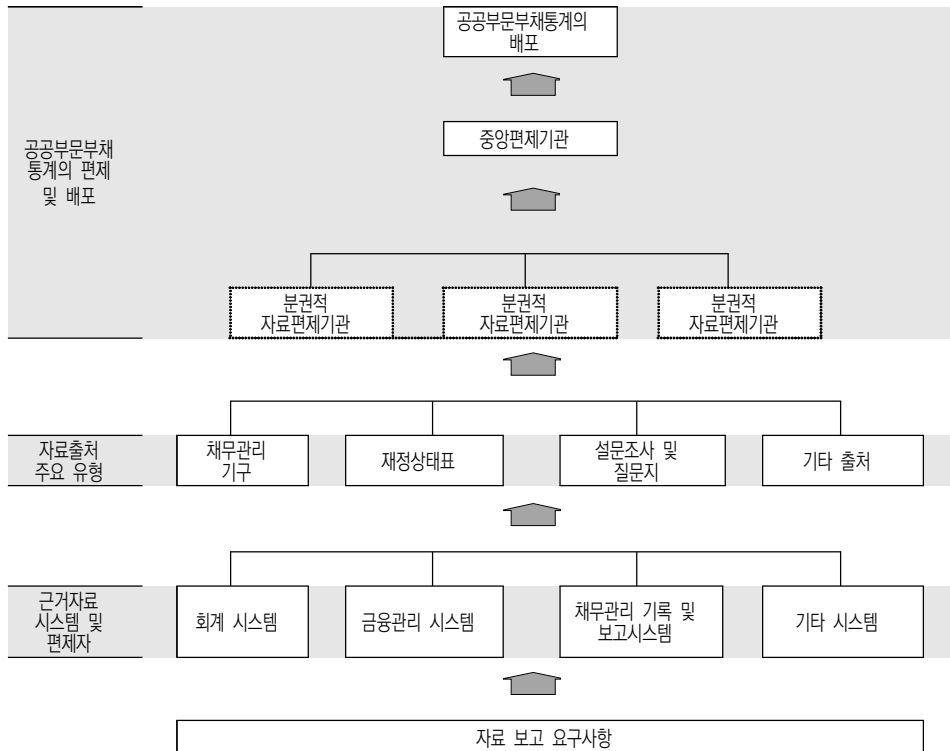
1. 공공기관 간 협력

6.5 여러 기관이 채무통계 편제의 책임을 공유하는 경우, 온전한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편제하고 배포하는 데 주된 책임 기관이 어느 곳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이 기관을 중앙편제기관(central compiling agency)이라 지칭한다. 책임성은 통계법 및 기타 법률상 규정, 기관 간 프로토콜, 행정부령에 규정할 수 있다.

6.6 본 지침에서는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편제하고 배포하는 책임 기관을 권

고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각 국가의 제도적 합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편제기관은 중앙은행, 재무부, 독립된 채무관리기구, 국가통계청이 담당할 것이다.¹⁾

그림 6.1. 공공부문부채통계의 수집, 편제 및 배포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



6.7 통계의 수집과 편제과정은 다양한 기법과 접근이 적용되므로 그 방식이 어떻든 광범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편제하는 데 하나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중복을 피하고 가능한 한 일련의 관련된 자료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있도록 가능한 협력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기관단위 간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컴퓨터 기술을 통해, 통계자

1) 국가통계청은 채무자료의 이용자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및 중앙은행이 당해 채무자료를 국가통계청에 제공하여 발행하도록 한다.

료의 보고와 편제의 어려움 없이 관련 기관의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능한 최대한 편제기관 간 원활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의 흐름(공유)을 보장해야 한다.

6.8 중앙편제기관과 기타 자료 생산기관(기초자료 생산기관 또는 분권적 편제기관) 간 자료 공유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충분한 합의절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해당 절차에는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편제하는 중앙(또는 분권)기관에게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6.9 다른 기관 소속 직원들 간 관계도 중요하다. 직원 간 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여러 문제와 난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관 간 자료 중복을 피할 수 있다.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을 장려하고,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예상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계수집 시스템의 추가 개발 및 개선이나 변경사항을 미리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러한 유형의 협력은 아이디어를 널리 알려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 기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요한 인적네트워크(연락망)를 구축할 수 있다.

6.10 공공부문부채통계가 여러 다른 기관들에 의해 편제되는 경우, 다음 사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사용되는 개념과 제출수단은 일관적이고 최소한 조정 가능해야 한다. 다양한 기초자료를 통합하는 경우, 본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중앙편제기관은 기타 조력기관이 핵심 개념과 보고 시 요구사항(거주성, 가치평가 등과 같은)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중앙편제기관은 이러한 기준(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중앙편제기관은 이러한 기준의 수호자

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기관들이 제공한 통계가 포괄범위, 개념, 가치평가 원칙, 기록의 준거는 물론 해당 통계가 제공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주기성과 적시성의 측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앙편제기관은 가능한 한 정기적(적어도 1년에 한 번)으로 데이터의 교차검토를 권고한다. 교차검토는 대외통계(국제투자포지션 및 대외채무)와 통화 및 금융통계 등 기타 거시경제통계는 물론 채권자의 자료와의 비교를 포함한다. 이러한 교차검토는 해당 통계의 수집을 담당한 기관에 의하여(특정 정부용자 등) 개별 채무상품별 또는 정부부문의 대외채무통계 등 여러 가지 거시경제 통계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배포된 공공부문부채통계가 계속해서 정책입안자 및 기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입안자와 기타 자료 이용자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공부문부채통계의 포괄성을 검토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요구조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부처 및 통계자문그룹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병행하여 이용자와 기타 편제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중앙편제기관은 공공부문부채통계의 질과 포괄범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자원

6.11 통계 편제를 위한 자원배분은 각국 관계당국이 결정할 영역이며, 결정된 사항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자원, 컴퓨터 기기 등의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핵심 인력은 공공부문부채개념과 편제 기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정통해야 한다. 또한 잘 교육된 공공부문부채통계 예비 전문가가 항상적으로 필요하다. 기존임무를 수행하는 매뉴얼은 잘 유지해야 한다. 새로이 참여한 편제자에게는 국제통계기준과 자료 취급 및 처리에 대한 시스템 절차

등 공공부문부채 편제기법에 관한 공식적인 현장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3. 법률체계

6.12 통계 수집을 위한 법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첫 번째 단계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 법적 지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법적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6.13 통계 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체계는 국가별로 다양하며, 통계 수집에 관한 제도적 합의와 역사 발달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법적 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가 포함된다.

- 중앙편제기관은 자료수집 목적(예, 공기업 부문 실체)과 특정 목적(예, 금융자산과 부채의 유량과 저량 편제)을 위해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의 유형을 지정해야 한다.
- 편제기관의 책임성 한계를 명시하되, 새로운 개발의 진전이 있을 경우 편제기관이 이를 채택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 무응답을 이유로 응답자에 대하여 집행에 적합한 법적 메커니즘을 수반한 과징금 부과규정이 있다.²⁾
- 국민에 대한 책무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정부 단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정부 부문에 속하지 않는 개별 공공부문 실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집계 형태의 통계(개별 기관이 정보 공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는 제외)만 발표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보가 공개된 경우, 해당 편제기관과 특히

2) 잘못된 보고(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자료 제공)와 보고 지연을 이유로 응답자를 처벌하는데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피고용자에 대하여 합당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 개별 실체가 제공한 정보를 통계 편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당국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기타 정부 활동으로부터 통계 편제 기능은 독립적이다.³⁾ 금지 규정은 과징금 징수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 기타 정부기관이 통계발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다.⁴⁾
- 독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제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6.14 이러한 법적 체계 내에서, 공공부문부채통계 편제자는 공기업이나 예산외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 수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편제자는 법적 지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공공부문 실체가 법적 체계에 기초하여 보고하도록 지원과 장려가 필요하다.

4. 공공부문부채통계의 배포

6.15 공공부문부채통계 편제는 정책결정자 및 기타 이용자가 해당 통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공공부문부채에 관한 포괄적이고 적시성 있는 통계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가 공공부문의 채무와 그 이자상환 의무에 대한 장기간에 걸쳐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채무상환 문제에 관하여 조기경보가 가능해야 한다.
- 정부와 공기업 정책의 지속가능성 지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기타 거시경제 통계 편제는 물론 정부의 예산안, 국회의 승인, 집행, 예측

3) 이는 정부 기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이며, 공기업의 기밀정보에만 적용될 수 있다.

4) 자료의 무결성은 통계 기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편제기관이 기록기능은 물론 운영기능을 수행한다면, 설명기능을 심사숙고하여 통계기능이 다른 기능들로부터 상호대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6.16 통계는 가급적이면 체계적이고 사전 공지된 발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반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통계의 배포는 인쇄 및 전자양식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배포과정의 측면에서 개념, 정의, 분류 및 방법론은 문서화하여 출판물 형태로 정기적으로 배포해야 한다.⁵⁾ 공공부문부채통계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경우, 이들 메타데이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항, 통계상 추정오류, 응답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IMF의 특별통계배포기준(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SDDS)과 일반통계배포기준(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 GDDS)은 공공부문부채통계를 주기적으로 적시성 있게 배포하도록 가이드라인과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⁶⁾

6.17 종종, 이용자의 합당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후 개정 대상이 될 수 있는 통계가 발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 발간 자료는 예비 자료이며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추후에 개정된 자료가 발간된 경우, 이용자에게 개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함께 개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통계 방식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개정판이 발간된 후에는 제공된 자료를 회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증대되고 결과적으로 편제 기관에 대한 '보고문화'를 정착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5) 이와 같은 메타데이터는 정기적인 공공부문부채통계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발행된다.

6) SDDS와 GDDS에 대한 상세 정보는 <http://www.dsbb.imf.org>를 참조.

C. 주요자료 출처

6.18 본 절은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편제할 때 편제기관이 이용 가능한 자료의 출처와 기법을 설명한다.

6.19 이상적으로, 공공부문부채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계를 편제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제5장 참조)가 정부와 공기업의 회계기준이 정립되어 있고 채무통계를 재정정보관리시스템과 채무기록 및 보고시스템으로부터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듯 이상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공공부문 단위에 국한될 수 있다. 그런 경우, 대체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통계는 채무자와 채권자로부터 수집하거나 간접적으로 설문조사, 보고서 또는 공공부문 단위가 발간하는 재무제표(특히, 재정상태표) 및 기타 행정 기록 형태의 정보로 수집될 수 있다. 통화 및 금융, 국제투자포지션 및 기타 거시경제 통계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초자료가 상세할수록, 편제된 공공부문부채통계가 더욱 정확해진다.

6.20 개별 채무상품 단위로 정보를 수집하면 편제기관은 융통성 있게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상품별로 세부정보를 확보하면 자료의 질적 수준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채무상품 단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⁷⁾ 따라서 자료의 연결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규모가 큰 공기업은 개별 채무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규모가 작은 공기업은 다른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예, 정기적 설문조사. 문단 6.32~6.38 참조).

6.21 표 6.1.은 공공부문부채상품 및 구성요소별로 공공부문부채통계의 편제

7) 대다수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채무를 제외한 공공부문(예, 공기업) 채무 대부분은 소수의 대규모 단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공기업 채무의 90%가 5개 대규모 공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특정 규모 이상의 차입은 소수의 공공부문 단위에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

를 위해 가능한 자료의 출처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네 가지 핵심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 채무관리기구(Debt Office)
- 재정상태표
- 질문지 및 정기적 설문조사
- 기타 자료의 출처

6.22 그림 6.1.과 같이, 자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초자료 시스템이나 편제자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한다.⁸⁾

- 회계시스템
- 재정관리시스템
- 채무관리, 기록 및 보고시스템
- 기타 시스템

8) 시스템은 기초자료 요구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표 6.1. 공공부문부채통계의 편제를 위해 가능한 자료 출처
A=채무관리기구 B=재정상태표 C=질문지/설문조사 D=기타 출처

채무상품 공공부문 구성 요소	특별 인출권	통화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및 표준화 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예산 중앙정부	B;D	B;C	A;B	A;B	B;D	B;C
예산외 중앙정부	—	B;C	A;B;C	A;B;C	B;C;D	B;C
사회보장기금	—	B;C	A;B;C	A;B;C	B;C;D	B;C
중앙정부 하위부문	산출(연결, 제8장 참조)					
주정부	—	B;C	A;B;C	A;B;C	B;C;D	B;C
지방정부	—	B;C	A;B;C	A;B;C	B;C;D	B;C
일반정부 부문	산출(연결, 제8장 참조)					
비금융 공기업	—	B;C	A;B;C	A;B;C	B;C;D	B;C
비금융 공공부문	산출(연결, 제8장 참조)					
중앙은행	B	B	B	B	B	B
중앙은행 제외 예금수취공기업	—	B;C	A;B;C	A;B;C	B;C;D	B;C
기타금융기관	—	B;C	A;B;C	A;B;C	B;C;D	B;C
금융 공공부문	산출(연결, 제8장 참조)					
전체 공공부문	산출(연결, 제8장 참조)					

1. 채무관리기구

6.23 자산 및 부채관리국/부서인 채무관리기구는 통상 채무증권과 융자의 저장(및 유량)의 주요 출처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공공부문 단위가 발행한 채무증권과 융자를 담당하는 단 하나의 채무관리기구, 즉 정부채무관리기구가 있다. 하지만,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채무증권의 발행인이거나 해외에서 대규모 차입을 한 경우 개별 채무관리기구를 두는 경우도 있다. 본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료의 출처로서 정부채무관리기구를 논의하겠지만, 동일한 원칙이 다른 공공부문 단위의 채무관리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6.24 통상, 정부채무관리기구는 재무부 산하에 있거나 정부부문 또는 중앙은행 산하의 별도 기관으로 구성된다. 본 장의 전반부에서 설명했듯이, 공공부문부채통계의 중앙편제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채무관리기구가 공공부문부채통계의 편제에 연관된 다른 기관과 적절하게 협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6.25 정부채무관리기구는 채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일곱 가지 기능이 포함된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장의 토론에서 설명한다. 채무에 관한 적절한 기록(문단 6.42~6.44 참조)은 효과적인 채무관리가 기본 요건이며 최신 통계자료의 이용 여부는 채무관리기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계의 기타 기능, 다시 말해 통계의 운영 또는 분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통계의 편제, 기록 및 배포(채무관리기구가 중앙편제기관인 경우)가 적시성이 있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정부채무관리기구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가능하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

2. 재정상태표

a. 일반 고려사항

6.26 통상 예산의 단위, 사회보장기금 및 공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재정상태표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정상태표는 1년에 한 번 작성되는데, 분기별로 작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중앙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단위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또는 국가)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재정상태표 포함)를 작성하고 있다.

6.27 재정상태표는 특히 특별인출권(SDRs)⁹⁾, 현금 및 예금, 보험, 연금 및 표준화 보증상품 및 기타 미지급 계정 등 ‘비전통적’ 채무상품에 관한 정보를

9) 특별인출권(SDRs) 부채는 해당 국가의 처리방식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재정상태표에 기재된다. SDRs은 제3장 3.21~3.24 및 제4장 4.161~4.165에서 논의한다.

제공한다. 또한 재정상태표는 채무상품의 형태로 보유한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재정상태표는 일반적으로 총계로 표시되기 때문에 편제자는 재정상태표의 주석에 표시되는 상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재정상태표와 재정상태표의 주석에서 채무통계를 편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거주지 등과 같은 추가 자료는 기타 자료의 출처를 통해 수집해야 한다.

6.28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에 추가하여 편제자는 공공부문 단위(예, 중앙정부 단위 또는 공공부문의 예금수취 금융공기업)가 제시한 보증에 관한 자료도 수집해야 한다. 이들 공공부문 단위는 공공 및 민간 비금융부문 차입자의 채무를 보증하며, 이 정보는 제5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채무통계의 부기항목으로 공표(배포)되어야 한다.

6.29 공공부문부채통계의 자료로서 재정상태표를 이용하는 경우, 편제자는 해당 재정상태표의 채무통계 방법론을 이해하고 채무통계편제에 적합한 가치평가, 분류 및 기록원칙이 편제 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초자료는 조정을 통해 적절한 가치평가, 분류 및 기록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b. 예금수취 금융공기업

6.30 금융공기업 채무 정보의 중요 출처는 예금수취 금융공기업 부문이다. 금융공기업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편제기관이 식별 가능한 것이 보통이다. 또한 감독과 통화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상태표를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상태표는 통상적으로 용자 및 예금의 만기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상환일정을 계산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¹⁰⁾ 이를

10) 금융기관의 재정상태표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분할정보의 종류의 예는 IMF(2000d)의

위해 개별 채무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편제기관이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편제자는 부채의 유형에 따라 저량 자료와 적절한 기준이자율을 이용해 예상 이자비용을 추정할 수 있지만, 원금상환을 추정하기 위해 상환일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

6.31 중앙정부와 공기업이 해외 용자기관에서 직접 차입하는 대신 거주자 예금수취 금융공기업을 통해 해외 용자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도 있다. 이러한 용자는 외화로 표시될 수 있으며, 환위험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접채무자인 예금수취 금융공기업이 아니라 최종 차입자인 중앙정부나 공기업이 된다. 정부와 예금수취 금융공기업이 대외 공공부문 부채로서 외화용자를 보고하는 경우, 중복 계산될 가능성이 있다. 예금수취 금융공기업이 대외적으로 차입한 경우, 정부가 아닌 금융기관이 대외채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예금수취 금융공기업에 대한 용자 형태로 국내부채가 발생한다.¹¹⁾

3. 질문지 및 정기 설문조사

6.32 개별 채무상품별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재정상태표 정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그 자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편제자는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편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질문지 및 정기적 설문조사를 이용해야 한다. 질문지는 예산외 정부단위, 주정부, 지방정부 및 일부 공기업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정기적 설문조사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와 같이 보고 실체의 수가 많은 경우에 사용한다.

〈통화금융통계 매뉴얼(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에서 다룬다(76p, Box 7.1. 예시 참조).

11) 정부에 대한 공공 예금수탁기관의 청구권은 공공부문부채통계에 두 단위 모두가 포함되는 통합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통계상에는 예금수취 금융공기업의 대외부채만 남게 된다.

6.33 지방정부 등 수많은 기관을 포함하는 정기적 설문조사에 대한 모집단을 결정하는 데, 가능한 다양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 인구 총조사(census): 인구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포함
- 부분 검사 수집(partial coverage collection): 특정 기준을 상회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조사를 포함
- 임의 층화추출(stratified random sample): 선정된 활동의 규모에 따라 모집단 구성을 그룹으로 나누어 각 층위에 속하는 조직마다 각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부분 검사 수집 및 표본 조사는 인구조사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적어도 매 3년마다 실시한다.

6.34 질문지 또는 설문조사 양식의 설계가 특히 중요한데, 이는 모든 예측 가능한 자료 요구를 충족하고 질적 특성(예, 양식 자체의 교차 검토 또는 관련 자료 수집의 교차 검토)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 양식이 너무 복잡하거나 상세한 경우,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설문조사의 질적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35 질문지와 설문조사는 모든 채무상품을 다루어야 한다. 채무상품에 관한 정보를 상품별로 제공하는 경우, 수집된 상세 정보에는 용자기관의 명칭, 용자기관의 거주지와 유형, 통화, 미지급 액수, 계약 시작일, 계약 만기일, 원금의 상환일정, 이자지급, 풋옵션 및 차입자와 용자기관과의 관계가 포함될 수 있다. 용자기관의 신원이 채무자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채무증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상세하더라도, 회계 목적상 기관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부 경우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 또한 가능한 경우, 순채무 통계를 산출 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설문조사 양식을 통해 채무와 채무상품형태의 금융자산의 정보를 모두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6 질문지와 설문조사는 높은 응답률과 질적 수준이 높은 응답을 얻기 위해 명확한 응답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응답요구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워크숍은 응답자와 편제 기관 모두에게 가치가 있으며, 본 지침에서도 권장한다.

6.37 편제기관의 응답을 촉진하기 위한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설문조사에 관한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응답자가 억지로 보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편제자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규는 제공받은 모든 자료가 통계 목적상 활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가 편제기관에서 명백하다(틀림없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일부 응답자는 자신의 자료를 편제기관이 다른 기관과 공유한다고 인식할 경우 자료 제공을 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공공부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책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부처는 정확한 보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할 때마다 공기업을 이슈를 다룰 때 이를 홍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좋은 정보는 더 좋은 정책결정에 기여한다. 다시 말해, 정부당국은 공공채무 분야에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양질의 보고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정책 책임이 있는 관련자는 공기업 또는 기타 정부단위의 고위 관리와 접촉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채무편제기관이 입수한 정보보다 더 양질의 보고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 통계 책임이 있는 기타 기관들과 더불어 편제기관은 '보고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이는 중장기적 시간을 요한다. 보고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잠재적 응답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슈에 관해 토론하고, 보고시스템에 부합하도록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 보고양식을 개발하며, 투명한 방법으로 최종결과의 배포 및 홍보하고, 최종결과의 유용성을 설명해야 한다.

6.38 자료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에 대해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첫째, 해당 자료가 감사를 거친 재정상태표를 근거로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신뢰도는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제공한 자료의 경우, 해당 기업이 공개한 재무제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¹²⁾ 둘째, 가능한 경우, 자료는 다른 출처로부터 얻은 자료와 교차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다른 출처에서 비롯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 자료를 저량의 변동과 비교할 수 있다. 수익과 지출 계정 또는 기업 손익계정으로부터 순차입 자료는 순금융자산과 부채의 증가와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두 요소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내재 자산수익률(implied rates of return on assets)이 현실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재산소득 형태의 수익에 관한 자료는 저량과 비교할 수 있다. 이자와 기타 재산비용 형태의 비용에 관한 자료는 부채의 비용에 반영해야 한다.

4. 기타 출처

6.39 채무관리기구, 재정상태표, 질문지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자료 출처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기 논의된 것 이외의 출처로부터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i)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부문 피용자의 연금금, (ii) 공공부문 피용자의 비적립식 연금제도, (iii) 표증화 보증제도하 청구권 등이다. 예, 채무통계 편제자는 보험회사에 고용주의 비적립식 연금제도에 대한 부채를 추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¹³⁾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동일한 출처와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6.40 일정 형태의 외환 통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중앙은행은 대외차입에 관하여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요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공기업의 대외채

12) 회계기준과 통계기준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상세한 검토보다는 광범위한 검토를 할 수 있다.

13) 본 지침 제2장의 가치평가 참조.

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D. 자료수집 및 편제 관련 일부 고려사항

6.41 본 절은 공공부문부채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채무상품¹⁴⁾에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채무증권 및 용자에 적용된다. 중앙편제기관은 모든 공공부문이 정부보증채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1. 자료를 어떻게 수집, 편제해야 하는가?

6.42 적절한 채무기록을 위해 채무상품 및 관련 유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적절한 채무자료 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채무저량을 수집하기 위해 먼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축적된 연체를 포함한 기존 채무의 목록(및 메타데이터)을 철저하게 편제해야 한다. 채무저량을 알고 있다면, 채무저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거래와 경제유량뿐만 아니라 기존 및 신규 차입 정보를 정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채무관리기구가 포괄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공식화된 제도합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6.2.는 각 채무상품에 대해 수집해야 할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이 표는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된다.

6.43 자료편제는 상품별, 트랑쉐별 기준, 당초 통화를 토대로 할 때 가장 효율적이다. 각각의 차입상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편제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의 정보가 있다. 즉, (1) 저량 자료뿐만 아니라 상각과 분배표를 산출하게 될 핵심 세부사항 및 조건, (2) (예, 프로젝트 용자를 통한) 면제 또는 증가와 같은 약정된 미지출 금액의 변동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 및

14) 당해 채무상품은 SDR, 현금 및 통화, 채무증권, 용자,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및 기타 미지급계정을 포함한다. 제3장 참조.

(3) 실제 채무상환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이외 요구되는 다른 유형의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추가적 자료요건'이라는 표제하에) 아래에서 다룬다.

6.44 채무상품이 거래 가능한 경우, 거주지별로 소유권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의 출처는 거래증권의 비거주자 소유권에 관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다른 기관일 수 있는데, 거래증권의 비거주자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제7장에 제시되어 있다.

a. 차입의 핵심 세부사항과 조건은 무엇인가?

6.45 각 채무상품에 관한 기본 정보는 일반적으로 용자 또는 신용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를 통해 획득가능하며, 가급적이면 법률규정에 의거해서 이러한 문서의 사본은 모든 공공부문부채관리기구 또는 정부(공적) 보증채무상품에 보관해야 한다. 정보는 채무자, 약정금액, 거치기간, 만기일, 이자율(변동 및 고정), 지급예정 수수료, 이자지급일, 원금 상환내역의 유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문단 6.52 참조).

6.46 가능한 경우, 채권자, 채권자 범주(정부, 중앙은행, 다자간 기구 등), 지급 통화, 채무상환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차입금의 목적 또는 최종 용도에 관한 자료는 그러한 차입으로부터 편익 부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채무상품의 지급보증은 정부가 여타 차입 실체들에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부의 위험 노출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6.47 조건들에 대한 정보는 채무관리기구가 각 채무상품에 대한 채무상환요건을 예상할 수 있다. 채무증권의 경우, 발행가격이나 수익률과 같은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b. 분배

6.48 채무관리기구는 실제 및 예상 분배를 포함하여, 분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채무상환에 관한 최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실제 분배는 분명히 미분배 총액은 물론 미래 분배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사업집행기관과 채권자를 비롯한 차입자로부터 (상품별 기준 또는 상품그룹) 분배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6.49 각기 다른 유형의 차입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분배자료 수집은 복잡하다. 예 사업용자의 경우, 분배는 차입기관에 대한 선금, 용자기관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에 대한 직접지급의 형태를 띠거나 또는 차입자가 이미 공급자에게 지급한 이후 변제를 기준으로 한다. 선금방식하에서는 용자기관이 지급의 대상이 되는 차입 정부에게 주기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진다. 직접지급방식하에서는 (재화가 공급되고 용자기관이 지급하기 전에 채무자가 공급자에 대한 거래채권자채무를 지닐 수 있지만) 용자기관이 공급자에게 지급할 때 이루어지며, 변제방식하에서는 차입자(예, 정부)에 대해 변제할 때 이루어진다. 채무관리기구는 이러한 거래를 기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업집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c. 채무상환 비용

6.50 채무상환 비용에 관한 모든 자료는 주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편제되어야 한다. 원금상환, 발생이자, 이자지급, 약정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기타 수수료 및 과금(별금형 수수료 포함)과 같은 정보는 채무관리기구가 제때에 만기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체납되어 있는 채무상품을 추적해야 한다. 채무상환자료는 주로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통해 입수하거나 채권자가 보내온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회계국

장 또는 대외지급부서와 같은 지급 관련 담당자나 부서 등을 통해 정부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기업의 채무에 관한 상환 자료는 차입기관 또는 채무를 감독하는 재무부 내 단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보증한 민간채무 자료는 지급보증이 처음 발행되었을 당시 합의된 보고체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6.51 채무관리기구가 정부의 금융행정과 공공부문 통제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경우, 채무관리기구가 직접 예산집행을 위한 지급을 명령하여 정부 내 공공채무 상황에 관한 공식적인 회계절차를 작동시킨다. 통합재정관리시스템(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FMS)*이라 알려진 이 체계는 세계은행이나 기타 지역개발은행이 공공부문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산집행과의 상호작용은 자원의 유출, 즉 채무상환뿐만 아니라 채무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이 재무성 계정에 예치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원의 유입을 말한다. 채무관리기구는 예산기구와 재무성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통지해야 한다.

【역자 주】 *: IFMS는 통상 IFMIS로 칭한다.

표 6.2. 채무상품별 편제 정보

정보유형	설명
I. 차입상품의 세부사항	
차입의 목적	설명적 제목
계약일	계약서에 서명한 일자
상품유형	차입상품 유형
효력발생일	차입의 효력발생일
차입의 유형	단일통화, 복수통화 또는 복수 트랑쉐 여부
차입금	당초 차입금 혹은 면제 또는 보강 후 수정된 원금
차입통화	당초 통화, 지출 및 상환 통화
참가자:	
· 차입자	정부, 공기업 또는 민간부문
· 이행기관	프로젝트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
· 채권자	채권자 이름 및 유형(다자간, 양자 간 등)
· 지출기관	이름, 용자기관과 상이한 경우
· 채권자 보험회사	이름 및 (비거주자인 경우, 국가)

보증상태 피보험자 경제부문 자금의 사용	일반정부 단위, 공기업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한 민간부문을 통한 차입 및 지급보증 비율 채권자 국가에서 수출지급보증기관이 차입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및 지급보증 비율 차입을 받은 경제부문(예, 일반정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 프로젝트 자금지원 등
II. 분배 분배기간 분배방법 예상지출패턴/내역 실제 분배	분배 발생기간 직접분배 또는 변제 등 차입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예상 각 분배의 발생 통화 및 금액
III. 차입조건 이자	이자에 관한 정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이자유형: 고정 또는 변동이자율 · 변동이자율의 경우, 이자 기준/참조 및 마진/스프레드 · 이자기간: 지급일 · 이자계산의 근거(변환요소: 일간, 월간, 반기, 연간 등) · 월: 실제 일수 또는 1개월 30일 · 이자가 제공되는 해의 일수 (360/365) · 미지출(잔액 또는 일부) 금액에 부과되는 비율 · 이자 및 원금의 연체에 대한 비용 · 기관수수료, 운영수수료, 부대수수료만기: 상환 기간/내역 · 상황유형: 만기일시상환, 균등 또는 연간 지급 등(이자, 원금 기타 비용)에 대해 이루어진 · 각각의 지급의 경우
약정수수료 별금형 수수료 기타 수수료 원금	
IV. 실제 채무상환지급	· 날짜, 통화, 거래통화와 당초 통화의 거래금액, 거래통화, 국내 통화, 미화 및 SDR · 다중통화 차입의 경우, 차입 통화로 지급된 동일한 금액
V. 환율	국내통화 대비 관련통화에 대한 각 거래일의 환율 최종 기간에 대한 환율(일, 주, 월, 분기, 년)
VI. 이자율	각 이자기간별 채권자가 사용한 기준/참조 이자율의 우세한 변동이자율
VII. 채무재조정	· 채무재조정, 채무일정재조정,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채용자, 채무제각의 결과로 · 발생한 조건 변경 · 필요 일자: - 관련채무, 연체금, 통합기간 - 채무구제 조건 (채무면제, 일정재조정) - 채무재조정된 채무의 조건 (적용이자율, 상환내역) - 실제 채무상환지급 또는 일정재조정 채무에 대한 거래 - 역구매 또는 전환/스왑으로 인한 기타 거래
VIII. 파생금융상품	·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인한 거래 · 시장가치 및 선도거래(스왑 포함)와 옵션의 금액으로 측정된 포지션

d. 추가 자료요건

i. 환율 및 이자율

6.52 채무계약이 다양한 통화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관리기구가 차입이 발생한 모든 통화의 환율 및 외화표시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 정보는 거래의 발생일과 종료시점(월, 분기, 년 그리고 특정 단기상품은 주 단위)을 포함하며 정기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분배와 채무상환이 당초 통화, 거래 통화(당초 통화와 상이한 경우), 국내 통화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변동이자율 상품은 모든 관련 이자율을 각 이자 기간별로 업데이트해서 채무관리기구가 해당 상품 관련 채무상환요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환율과 변동이자율에 관한 자료를 일 단위 기준으로 작성하면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전문화된 온라인 컴퓨터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매우 편리할 것이다.

ii. 채무상품금액 및 채무재조정의 변동

6.53 채무의 증가나 탕감, 채무면제, 재조정, 재융자, 전환, 조기상환 또는 채무인수를 통한 채무재조정과 같은 개별 채무상품의 변동에 관한 정보 또한 편제해야 한다.¹⁵⁾ 유사하게, 채무환매에 대한 할인을 통한 채무경감 정보도 편제해야 한다. 융자협상과정에서 채무관리기구는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ii. 파생금융상품 거래 자료

6.54 파생금융상품은 그 자체가 채무는 아니지만 채무관리에 영향을 미친

15) 사실상, 재협상으로 인해 융자계약조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신규 상품이 발생한다(제4장 참조).

다. 차입자가 위험 노출 관리차원에서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시장가치 및 명목금액으로 표시된 계약에 대한 저장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편제하고 기록해야 한다(파생금융상품의 통계 배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5장을 참조). 파생금융상품이 추가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의 시장가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헤징(hedging)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의 직접적인 증가(예, 수수료 비용)는 공공부문 단위의 비용으로 기록해야 한다.

2. 정보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6.55 채무관리기구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운영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컴퓨터 기반의 채무관리시스템(computer-based debt management system, CBDMS)에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CBDMS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¹⁶⁾

- 채무기록(용자별)
- 채무보고(용자별 및 총계기준)
- 채무분석
- 공공부문 단위의 시스템과 기타 패키지의 연계

3. 어떻게 자료를 검증하는가?

6.56 자료 검증은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편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데, 이는 국가의 재정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 및 전략을 운영하고 수립

16) CBDMS의 사례는 제10장의 부록을 참조. 본 부록에서는 영연방 사무국의 채무기록 및 관리시스템(Commonwealth Secretariat's Debt Recording and Management System, CS-DRMS) 및 UNCTAD의 채무관리 및 금융분석시스템(Debt Management and Financial Analysis System, DMFAS)에 대해 설명한다.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지침은 모든 편제자료가 적절하게 검증되고 기타 자료의 출처와 합치되도록 자료 편제와 기록 과정 등 여러 단계에서 관련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기관과 부서로부터 제공되거나 공급받은 자료는 상호 일관성 확보를 위해 검증해야 하지만, 이 자료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료 검증과정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차이점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자료 이용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6.57 다양한 절차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채무상품계약, 재무제표, 기타 문서에서 발췌한 자료로 자료입력시트에 기록한 자료의 검증
- 채무기록 및 관리시스템의 정보기록 시 불일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검증절차를 갖춘 시스템
- 채무절차 매뉴얼, 즉 지식을 축적하고 경험을 전달하는 ‘입문’ 매뉴얼의 자료의 출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채무 및 그 구성요소를 다루는 절차에 관한 설명
- 단일 출처에서 입수한 자료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정보들의 정기적 조정-예, 채무상환에 관한 자료를 중앙은행의 외환지급부서가 보관하는 기록과 대조해 볼 수 있고, 융자잔액을 채권자와 채무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으며, 현금흐름은 은행계정 및 발생기록과 대사(대조)해볼 수 있다.
- 재정 통제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감사체계

보론: 정부채무관리기구의 기능

6.58 정부가 효과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7개 기능이 있다(표 6.3.): 정책, 규제, 자원, 기록, 분석, 통제, 운영(적극적 포트폴리오 관리 포함). 정책, 규제, 자원 기능(채무관리기능의 집행이라고 알려진)은 아주 고위 레벨, 즉, 부처장관위원회, 이사회 또는 이들의 소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최고위층이 수립하는 ‘게임의 규칙(게임이론, rules of the game)’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관리시스템에 방향성과 조직구조가 제시된다. 일단 이 체계가 결정된 후, 합의된 일련의 ‘게임의 규칙’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등 기타 운영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는 정부채무관리기구이다.

6.59 정책, 규제, 자원: 이러한 기능은 채무의 지속가능성 수준의 확립을 포함하여 채무관리목표와 전략을 다룬다. 예, 전략은 의회 승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이나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차입 한도를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능은 또한 정책 및 운영차원에서 채무관리를 규제하는 법률 및 규정의 적용뿐만 아니라 자금의 결정, 조달, 분배와 관련 채무상환을 규정하는 제도적 합의를 다룬다. 자원기능은 자격을 갖춘 직원이 공공채무관리와 관련된 기록, 분석, 통제, 운영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 모집, 채용, 동기부여,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자원기능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6.60 기록, 분석, 운영: 기록기능은 채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기록체계와 융자자금 조성, 채무상환의 예산 및 준비금, 채무변제 등을 다룬다. 분석 또는 통제 기능은 기록기능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다. 전체적으로, 분석기능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선택, 경제 및 시장 여건, 공공부문 채무의 향후 구조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거시경제분석을 이용한다. 운영기능은 적극적 포트폴리오 관리뿐만 아니라 협상, 융자 수입의 활용, 채무변제를 다룬다. 이 기능은 채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일별 관리를 포함하며, 성과와 위험에 관하여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과 환율과 같은 시장

동향을 고려해야 한다.

6.61 통제: 통제기능은 채무관리활동의 조정뿐만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채무관련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채무통제 및 분석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이 기능은 정책목표 달성과 채무관리정책 결정에 일조한다. 무엇보다도 이 기능을 통해 신규차입의 조건이 고위층에서 수립한 지침을 따르고, 제때에 자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일정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등이 확실해야 한다. 총합적 관점에서 운영상의 채무관리는 집행적 채무관리활동(즉, 최고위 수준에서 이행되는 정책 및 규제기능)에 부합되도록 조정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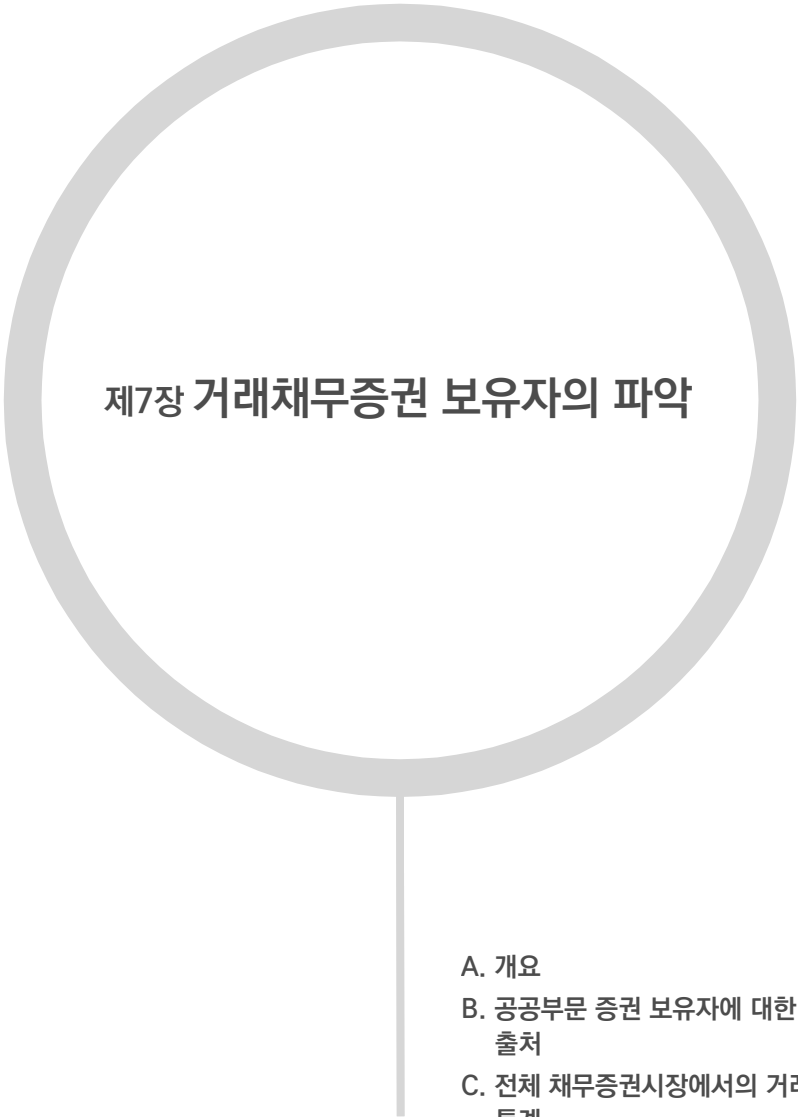
6.62 조직구조: 정부채무관리기구(일반적으로 채무관리단위로 지칭)의 위치 및 구조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자금조달의 출처의 차이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조직구조가 국가가 쌍방향 관계의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느냐 또는 국제금융시장에 채권을 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6.63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채무관리기능은 단일기구가 전담하지 않고 여러 기관에 분산하여 운영한다. 일반적인 구조로는 재무부 내 채무관리기구가 존재하는데, 중앙은행이 민간채무를 감독하는 반면, 채무관리기구는 공공부문의 국내 및 대외채무에 중점을 두며, 때로는 정부의 금융대리기관으로 정부채무와 관련된 운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각 채무관리에 대한 체계를 제공하고 경제상황을 예측한다. 재무부(혹은 총리실이나 경제조정 부처)가 이끄는 고위급 조정위원회는 거시경제목표의 전반을 구현하는 채무전략 및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에서 독립적 정부채무관리기구가 자산-부채 관리의 일부로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기반하여 채무관리를 수행하기도 한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은 별도 채무 및 통화관리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구조의 형태와 상관없이, 각국은 채무관리기구의 모든 기

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명성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표 6.3. 채무관리기구의 몇 가지 권고기능

기능	공공부문부채		민간부문 채무 (경제상황에 따른)
	국내	대외	
정책 및 규제	·채무관리 목표 및 전략 수립 ·규모, 상품유형, 시기, 빈도, 판매기법 결정 ·가능한 경우, 기존채무구조 개발 ·정부/내각/의회 내 통신연결 ·예산 및 재정정책 목표에 따라 차입한도 결정	·공공부문 지급보증 정책뿐만 아니라 법과 규정을 포함한 차입, 분배 채무상환에 대한 제도적 합의 ·채무 지속가능성 수립 ·우발부채에 대한 정책체계 ·차입수요, 해당조건, 차입자원 결정	·환율제도 및 자본수지자유화의 특성에 따른 (대외)민간차입 관련 정책결정 ·민간부문채무(단기·장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원 및 제도적 합의구축 ·우발부채관리에 대한 정책체계
기록 및 운영	발행시장 ·유통채널과 판매절차 구성 ·경매, 인수 등 채무운영관리 ·시장계약에 대한 제도적 합의 유통시장 ·정부의 미지급 포트폴리오의 적극적 관리 ·채무 유통화시장의 개발 ·시장개입 및 접촉에 대한 제도적 합의 상환 ·신규 및 기존 발행의 경우, 유가증권 인도 및 상환 관리 기록관리 ·채무운영에 대한 기록시스템 ·채무보유자/자랑 기록의 관리 ·정부채무상환 및 예산집행연계 ·정부채무상품기록의 관리	·운영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요구를 포함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흐름 기록 ·채무, 채무상환 우발부채, 외부화(externalization)에 필요한 적립금 계획을 위해 적절한 예산규정 마련 확인 ·송장(invoice) 점검 및 만기일의 채무상환 여부 확인 ·변제요청을 포함한 지출관리 ·산업시장 차입자의 경우, 시장참가 및 침투에 관련된 제반 활동	·정부가 외환준비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 외환준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민간부문채무의 채무상환요구 고려
통계/분석	·모든 차입상품에 대한 시의 적절하고 광범위한 자료유지 ·정기적 보고서 작성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위해) 매매계약, 지출, 채무상환, 채납금의 (예상 및 실제) 용자별 기준으로 시의적절하고 광범위한 자료유지 ·정기적 보고서 작성	·실행 가능한 경우, 예금수취기관과 기타 금융회사와 같은 다양한 부문으로부터 용자별 기준으로 (단기채무 포함) 시의적절하고 광범위한 자료유지 ·정기적 보고서 작성
통제/점검	·재정 및 통화목표와 적절한 채무 수준의 맥락에서 정부의 차입요건 계획 ·다양한 상품의 차입비용(수익률) 평가 ·연간한도 준수여부 감독	·채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지표 및 기타 수행기준 모니터링 ·거시경제 체계 및 국제투자대조표(IIP)체계에 있어 채무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수행 ·채무재조정을 비롯한 채무구조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분석 ·위험관리, 특히 환율 및 기타 시장위험의 관리를 위한 분석 수행	·채무수준, 부실용자, 기타 시스템적 위험을 내포한 부채의 모니터링 ·채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채무지표 및 기타 수행기준 모니터링
적극적 포트폴리오 투자	·적극적 위험점검(이자율, 환율 및 거래상대방 위험) ·기준 또는 기타 척도를 이용한 성과측정	·지속적 시장분석 ·지속적 혁신	·효과적 위험관리에 대한 장려 보장 ·신중한 은행감독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 모니터링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공개 원칙 수립



제7장 거래채무증권 보유자의 파악

- A. 개요
- B. 공공부문 증권 보유자에 대한 정보의 출처
- C. 전체 채무증권시장에서의 거래증권 통계

제7장 거래채무증권 보유자의 파악

본 장은 공공부문부채 가운데 거래 채무증권에 대한 통계를 거래당사자의 거주지와 유형을 중심으로 편제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거래당사자별 자금흐름 체계에 기반하여 공공부문의 거래채무증권을 전체 채무증권 시장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각국의 실제 적용방식을 소개한다.

A. 개요

7.1 거래채무증권은 단기증권, 채권, 차입증명서, 양도성 예금증서, 자산담보부증권 등 시장 및 기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거래 가능한) 채무증권을 일컫는다.¹⁾ 증권이 거래된다는 것은 유통시장이 있어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기타 채무상품의 경우, 통상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다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증권은 항상 거래 가능하지만, 일부는 매우 유동적인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반면 일부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증권의 매도 가능성은 채권자에게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채무통계 편제자가 기타 상품들에 비해 채무증권의 보유자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다양한 시장기관들이 원활한 거래와 이자지급을 위해 거래 및 현재 보유자 현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통계 편제자들이 이러한 자료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1) 거래 채무증권의 가치평가는 제2장 문단 2.132~2.134, 특정 채무증권의 정의는 제3장 문단 3.28~ 3.38 참조.

B. 공공부문 증권 보유자에 대한 정보의 출처

7.2 공공부문부채분석은 채권자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채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공공부문이 자국 통화로 발행한 증권 가운데 중앙은행 보유분은 통상 신용 창출을 나타내고, 기타 거주자 보유분은 공공부문의 국내 자금조달 경로이며, 비거주자 보유분²⁾은 외환시장 및 외환 보유고(준비금)의 미래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3 공공부문이 발행한 채무증권 보유자에 대한 정보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 발행자
- 보유자
- 금융시장 운영자(보관기관, 발행기관, 거래소, 청산소, 딜러, 등기소와 같은)
- 기타 통계 출처: 특정 보유자로부터 이미 수집된 정보(예, 은행, 보험사 보유분에 대한 정보 등)

7.4 그 밖의 정보 출처를 평가하기 위해 편제자는 공공부문부채증권 시장의 구조와 관련해 다음 내용들을 이해해야 한다.

- 공공부문부채증권의 발행과 거래에 관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 채무통계 편제자는 증권 보유자나 증권시장 운영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법적 권한이나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유통시장이 존재하는가? 딜러나 은행이 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뒤 고객들에게 다시 파는 경우가 있는가?
- 증권 보유자가 등록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등록은 항상 정확하게 등록되는가, 아니면 쿠폰 지급이나 만기에만 정확하게 등록하는가?

2) 비거주자 보유 거래 채무증권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3장 대외채무지침 참조.

● 공공부문부채와 관련해 기존에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가?

7.5 공공부문부채통계 편제의 제도적 체계는 제6장에 설명되어 있다. 증권 부채의 총가치와 그 구성에 대한 정보는 채무자로부터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는 부적절하고 틀린 정보를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출처로부터의 보유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장의 부록(보론)에서는 일부 국가의 거래 채무증권의 보유자 파악 방식이 소개되어 있다.

1. 발행자로부터의 정보

7.6 발행자는 통상 발행, 쿠폰 지급, 상환 시 채무 증권을 관리하는 단위(채무 관리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유자를 파악해야 한다. 보유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자는 다시 부문(제3장 문단 3.68의 정의 참조)별로 세분화된다.

7.7 채무 편제자는 발행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권한과 통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앙은행과 통계청은 이미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 발행정보는 채무관리기구 또는 재무부에서 획득할 수 있다. 대다수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나 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7.8 비거주자 보유자 정보는 조세 또는 규제 이유로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국제수지, 국제투자 포지션이나 대외채무통계를 목적으로 이미 파악되어 있을 수도 있다. 대외 공공부문부채는 공공부문부채통계와 대외채무통계에 모두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통계 사이에는 가치평가 및 유형 분류에 대한 개념이 조화(합치)되어 있어야 하고 동일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자료 수집

을 위해 통계 편제자들 간 협력은 중요하다.

7.9 보유자는 소유권 등록 양식에 체크 Box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세금 징수 또는 통계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링크를 활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그 밖에 채무 관리자가 보유자 명의를 기반으로 보유자를 분류할 수도 있다.

7.10 채무통계 편제자는 발행자가 제공하는 보유자 관련 정보의 장·단점을 이해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운영 절차와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광범위한 유통시장이 존재하는지 또는 거래가 매우 제한적인지, 또는 거래가 발행 직후에만 이루어지며, 아주 미미한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상황은 다른 정부증권 발행자 또는 금융시장 상품과 장기채권). 이러한 정보는 통상 채무관리기구나 증권거래소에서 얻을 수 있다.

7.11 발행자가 해당 증권의 수익적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미등록 유통시장 거래:** 최초 보유자 또는 쿠폰지급 보유자 또는 상환시점의 보유자의 경우, 각 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유통시장 거래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무이표채권(zero-coupon bonds)은 상환 전에는 대금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등록이 불완전할 수 있다.
- **최초 매입자 관련 정보:** 은행이나 그 밖의 딜러들이 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뒤 고객들에게 되파는 경우가 빈번할 때, 최초 매입자 정보는 실제 보유자 및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 데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 **보관기관 및 대리인 계좌:** 등록된 보유자가 실제 보유자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고객들을 대행하는 보관기관이 증권의 보유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은행이나 기타 금융시장 딜러들이 운영하는 대리인 계좌도 실제 보유자 파악이 어렵다.

- **장외 거래:** 중앙 증권예탁기관이 있더라도 매입자가 다음 대금지급 시점까지 증권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 **환매조건부 계약(repo)하의 증권:** 일부 국가의 경우, 증권의 상당비율이 환매조건부 계약을 통해 보유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 소유자'와 '통계 목적의 경제적 소유자'는 다를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법적 소유자일 수도 있고, 증권이 완전히 보유된 것인지, 환매조건부 계약을 통해 보유된 것인지 보관기관이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7.12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보유자나 금융시장 운영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보완적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2. 보유자로부터의 정보

7.13 발행자가 보유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증권 보유자로부터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공공부문부채자료를 수집하는 중앙은행이나 통계청은 보유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채무관리기구 또는 재무부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설문조사를 수행할 인프라나 전문성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7.14 공공부문부채통계 담당자는 새로운 통계 수집 방법을 개발하기보다 다른 통계목적의 수집된 기존 조사 또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문단 7.20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는 이미 다른 통계목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7.15 은행, 보험사, 연기금, 기타 투자펀드와 같은 대규모 거주 보유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정보는 통상 중앙은행과 기타 예금수취 기업이 통화 및 금융 통계의 일부로 이미 확보하고 있을 수 있다.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

사, 연기금 등 주요 증권 보유자들에 대한 정보도 금융 통계 또는 규제 목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 보유자들에게, 공공부문 증권은 민간부문 단위나 비거주자 발행 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항목일 가능성이 높다.

7.16 비거주자 또는 가계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보다 어려울 수 있다. 비거주 투자자정보는 법적, 실무적 이유로 수집하기 어렵다. 가계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수많은 가계들이 소규모 증권들을 산발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하기가 어렵다.

7.17 하지만, 비거주자와 가계 투자자들이 안전을 위해 국내 발행 공공부문 부채증권을 국내 금융자산 보호기관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문단 7.19 참조). 더 나아가, 개별 증권단위 보고 체계(security-by-security reporting system)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증권 보유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하위부문 또는 특정 정부단위의 세부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Box 7.1. 참조).

Box 7.1. 개별 증권 단위 데이터베이스

개별 증권단위(Security-By-Security, SBS) 데이터베이스는 개별 채무증권 단위의 통계를 저장하는 미시적 데이터베이스로, 국제증권식별번호(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ISIN), 발행자 명의, 발행자 거주지, 부문 및 하위부문, 발행일, 상환일, 증권 유형, 표시 통화, 발행가격, 상환가격, 미상환액 또는 시가총액, 쿠폰 지급액 및 지급일 등에 대한 정보를 주로 편제한다(증권통계 소책자(Handbook on Securities Statistics), 1부 표 A3.1 참조).

SBS 데이터베이스는 부문 및 하위부문으로 묶인 거주자 보유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보유자 증권보유 통계에 연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주자 보유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는 SB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ISIN 등을 통해 개별 증권단위로 연결한다.

대부분, 보유자 정보는 중앙 증권예탁기관과 보관기관을 통해 개별 증권단위로 수집하지만, 보유자로부터 직접 보고받을 수도 있다. 거주자에게 해외 보관증권에 대한 보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과 같은 특정 부문이나 하위부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정보는 통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SBS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분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7.18 증권 보유자로부터 수집 가능한 정보는 최소한 증권 발행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고의 잠재적 오류가능성, 정보 간 일관성 점검을 위한 좋은 통계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통계에서 은행 보유액이 발행자가 파악한 금액보다 훨씬 적다면, 이는 증권을 보유한 뒤 재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3. 금융시장 운영자로부터의 정보

7.19 증권은 보유나 거래가 특화된 거주자 서비스 제공자(보관기관, 발행대행사, 거래소, 청산소, 딜러, 등기소와 같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보유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권이 비거주자 서비스 제공자(특히 외화표시 증권의 경우)를 통해 보유 또는 거래되거나 직접 보유되는 경우가 있다. 환매조건부 또는 대리인 계좌에 보유되어 보관기관이나 딜러들도 해당 증권의 정확한 경제적 소유권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관기관을 통한 보고에 대한 설명은 〈국제 포트폴리오투자 공동조사 지침[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CPIS) Guide]〉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통계청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법적 권한이나 자료 수집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무관리기구 또는 재무부가 이러한 권한이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4. 기타 통계 출처로부터의 정보

7.20 거래 공공부문부채증권에 대한 정보는 통화 및 금융 통계, 대외채무통계 및 국제투자 포지션, 금융시장 자료 등 그 밖의 통계 출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통화 통계는 은행 및 기타 예금수취기업의 증권 보유 현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료들은 다양한 자료들 사이에 부문분류가 통일되어 있어 호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는 다른 자료를 보완하거나 별도로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금융부문 및 비거주자 보유액을 파악했다면, 나머

지 금액으로 일반정부, 비금융기업, 가계의 보유액도 추정할 수 있다. 대외 채무 및 국제투자 포지션 통계에서는 비거주자가 채무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료는 국제거래 보고체계의 일부로서 외환규정 또는 기타 자료수집 등에 따라 수집된다.

7.21 이들 자료를 활용한 가치평가기준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화 및 금융통계에서는 공공부문 증권보유액을 시장가치로 기록한다. 또한 유형 분류의 세부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표준 통화금융통계 지침 2000(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MFSM)〉의 재정상태표는 증권 보유현황을 중앙은행, 중앙정부, 주 및 지방 정부, 비금융 공기업 발행자별로 구분해 보여주지만, 금융 공기업은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7.22 수집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및 금융 통계 수집에 관여하는 주체들 사이에 협력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동일정보를 서로 다른 두 통계 기관에서 보고할 수도 있다. 또한, 공공부문부채통계 수치가 다른 통계의 등가가치와 다를 경우 사용자들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C. 전체 채무증권시장에서의 거래증권 통계

7.23 공공부문 증권 보유자 통계는 공공부문부채 자체에 대한 분석에 필요하다. 보다 광범위한 분석을 위해 공공부문 차입자와 공공부문 증권 보유현황은 기타 차입자와 전체 증권보유현황 부분에서 국민계정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7.24 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2008 SNA와 〈증권통계 소책자(Handbook

on Securities Statistics)) 2부에서 설명된 것 같이, 채무증권 보유현황 편제를 위한 개념적 체계를 간략히 소개한다. 이 체계에 기초하여 ‘자금의 흐름’이나 ‘거래 주체별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접근은 총채무 맥락에서 각 부문의 채무를 확인하여 총 금융유량과 저량 내 공공부문(기타 부문 포함)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공공부문부채통계 편제자는 다양한 자료 간 호환성을 확보하고 통계 이용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체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채무증권의 거래 주체별 자금흐름 체계

7.25 표 7.1.은 거래 주체별 자금흐름 체계의 표시 양식, 거주자 기관단위의 부문별 보유액, 비거주자 보유액을 대비해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보유자로서 거주자 부문 간 관계, 발행자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보유자로서 비거주자와 채무발행자로서 거주자 간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표 7.1. 거래 주체별 자금흐름 접근법의 통계 표시 양식

거주지 및 거주자 부문별 보유자(금융자산) 거주지 및 거주자 부문별 발행자(부채)		거주자				비거주자	
		비금융기업 ¹	금융기업 ¹	일반정부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거주자	비금융기업 ¹						발행자 거주지
	금융기업 ¹						
	일반정부						
	가계 및 가계지원 비 영리기관 ²						
비거주자							
발행자 전체							
		보유자 거주지					

¹ 공공부문 관련 정보파악을 위해 금융 및 비금융 공기업은 민간 및 공공부문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

²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은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가계의 경우, 주택 구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7.26 국가 경제에서 거래 주체별 자금흐름 체계는 저장, 거래, 가치재평가, 기타 자산규모변동을 보여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³⁾ 이들 자료는 거주자 부문(비금융기업, 금융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과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거주자의 부문 내 저량은 표 7.1.에서 가장 밝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표시된다.⁴⁾ 이 표는 국민계정체계의 주요 부문을 보여주는데, 공공부문의 구성요소는 금융 및 비금융 부문 안에서 별도로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7.27 비거주자가 보유한 거주자 발행 채무증권(발행자로서 거주자 부문) 보유는 국외 재정상태표(국제 투자 포지션)에 기록하고, 국외 금융계정(국제수지의 일부)에서 금융거래로, 국외 누적계정에서 가치 재평가나 기타 자산규모 변동으로 기록한다(표 7.1.에서 수직라인 중간색으로 표시된 부분).⁵⁾ 반면, 비거주자가 보유한 비거주자 발행 채무증권 보유는 한 국가의 경제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표에 반영되지 않는다(표 7.1.에서 가장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부분).

7.28 채무증권에 대한 거래 주체별 자금 흐름체계는 조달 및 채무증권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체계를 활용하여 공공부문 단위가 발행한 채무증권의 거주자 부문 및 비거주자별 보유 현황을 동시에 볼 수 있다.

3) <증권통계 소책자(Handbook on Securities Statistics)> 2부의 Box 5.1.에는 채무자/채권자 원칙에 따라 채무증권을 기록하는 자세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4) <증권통계 지침>은 이러한 통계를 비통합 기준으로, 즉 부문 내 저장 및 유량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지침의 경우, 관련 통계가 편제되는 공공부문 단위 간 부문 내 저장 및 유량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다.

5) 비거주자는 국가 또는 부문별로 추가적인 세분화를 할 수 있다.

표 7.2. 거래 주체별 자금흐름 체계에 근거한 채무증권의 저장

거주지 및 거주자 부문 별 보유자(금융자산) 거주지 및 거주자 부문별 발행자(부채)		거주자					비거주자	보유자 전체
		비금융기업 ¹	금융기업 ¹	일반정부	가계 및 가계 지원비영리기관	거주자 전체		
거주자	비금융기업 ¹	30	23	5	65	123	24	147
	금융기업 ¹	11	22	2	43	78	28	106
	일반정부	67	25	6	124	222	54	276
	가계및가계지원 비영리기관	-	-	-	-	-	-	-
	거주자전체	108	70	13	232	423	106	529
비거주자		34	12	19	43	108	-	
발행자 전체		142	82	32	275	531		

¹ 공공부문 구성요소 파악을 위해 금융 및 비금융 공기업은 민간 및 공공부문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7.29 표 7.2.는 표 7.1.과 동일하며, 거주자 전체 부분을 추가하고 실제 수치를 넣어 거래 주체별 자금흐름 체계에 채무증권의 저장량을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⁶⁾ 표 7.2.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 네 번째 열,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은 275의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비금융기업, 금융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각각 65, 43, 일반정부와 국외에 대한 청구권은 124, 43임을 알 수 있다.
- 첫 번째 행에서 비금융기업은 147의 채무증권을 발행했다. 이들이 다른 비금융기업에 대해 채무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30이며, 금융기업과 일반정부에 대해서는 각각 23, 5,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과 국외에 대해서는 65, 24의 채무증권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이 발행한 채무증권은 없음을 보여준다(네 번째 행).
- 비거주자 행에서, 비거주자가 발행하고 거주자가 보유한 채무증권은 108이다.

6) 거래, 가치 재평가, 기타 자산규모 변동에 대한 유사한 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표의 양식은 매트릭스 방식이 아닌 시계열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 비거주자 열에서, 거주자가 발행하고 비거주자가 보유한 채무증권은 106이다.
- 거주자가 보유한 총채무증권(거주자 및 비거주자 발행)은 531, 비거주자가 보유(거주자 발행)한 채무증권 106은 거주자가 발행한 총채무증권(거주자 및 비거주자 보유자) 529와 거주자가 보유한 비거주자의 채무증권 108을 합친 값과 동일하다.

7.30 거주자 부문 내 채무증권 저량은 어두운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금융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30은 동일 부문 내 다른 기관단위가 보유하고 있다. 각주 4에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부문 내 거래는 연결기준으로 기록할 경우 반영되지 않는다.

보론: 각국의 거래 채무증권 보유자 파악 방식

본 보론에서는 브라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의 거래 채무증권 보유자 파악 방식을 소개한다.

1. 브라질

a 중앙정부(국내 채무)

7.31 거래 채무증권 보유자 정보는 브라질 중앙은행(Brazilian Central Bank, BCB)이 운영하는 정부 증권 중앙 예탁기관인 결제 및 보관을 위한 특별 시스템(Special System for Settlement and Custody, Selic)과 CETIP-장의 청산소를 통해 수집된다. 이들은 각각 국내 연방 채무의 98%와 2%를 보관하고 있다. Selic의 계정체계는 증권 보유자의 유형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증권은 개별 또는 집단 계정에 등록한다. 중앙정부 국내채무의 경우, Selic에 집단 계정이 있으며 계정 소유주는 Selic 회원의 고객들이다. 이들 계정을 보유자 유형(개인, 비금융기업, 금융기업, 뮤추얼펀드, 기타 펀드)별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계정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Selic 회원만이 집단 계정 안에 어떤 고객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상황하에서, 중앙은행은 회원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과 매도 포지션에 관한 일부 특별한 자료는 연방 공공부문부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에 보고된다.

7.32 재무부는 국채 보유자들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여 매월 연방 공공 대외 및 국내 채무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관련 통계 마감일 후 1개월 이내 열람할 수 있다.

7.33 공공부문부채통계 편제자는 다양한 자료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보다 광

범위한 체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브라질의 경우, 중앙은행이 특정한 체계에 기반하여 매월 재무부에 제공하는 ‘거래 주체별 자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비거주자, 폐쇄형 및 개방형 연기금, 보험회사 등, 부문별로는 주요 채권 및 만기별로도 구분하여 채무 관리자들이 효율적인 분석에 기여하고 있다.

b. 주 및 지방 정부

7.34 2010년 현재, 주 및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은 없다.

2. 캐나다

a. 개요

7.35 캐나다의 공공부문부채증권 자산 보유자에 대한 자료는 통합 캐나다 국민계정체계(Canadi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of Statistics Canada)에서 수집된다. 총액의 세부 내용은 분기별 재정상태표 계정(National Balance Sheet Accounts, NBSA)에 부문별로 편제된다. NBSA의 경우 분기별 국제 투자 포지션(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IP)을 비거주자 부문으로 반영하는데, 증권 데이터베이스는 포트폴리오 거래 및 포지션 취합의 중요한 수단이다. NBSA는 기본적으로 기업, 연기금 및 기타 투자기금 대상의 분기별 기업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단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한다.

7.36 자산 채무 유형별 재정상태표 설문조사의 원 자료(정부 채무증권 세부 내용 포함)는 NBSA 내 각 부문에 해당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한다. 이 자료는 재정상태표 계정의 공급(채무)/처분(자산) 행렬을 통해 분석되며, 이때 증권 보유액은 시장(예, 연방정부 채권)으로 표시할 수 있다.⁷⁾ 이에

7) 이는 곧 채무증권에 대한 거래 주체별 자금 흐름 틀을 증권 유형별로 분류해 보여주는 것

추가하여, 국제수지통계의 분기별 비거주자 부문 거래 자료(유통시장 거래 포함)는 한 경제 내 부문의 자산-부채 거래 관련 자금 흐름 통계와 비교 검토할 수 있다. 분기별 IIP 및 NBSA 추정치는 저량 통계와 유사한 비교 과정을 거친다.

7.37 보다 포괄적인 비교 과정은 연간 단위로 실시된다. 즉, 부문의 거시경제 재정상태표 계정상 설문조사에 근거한 자산자료는 캐나다(개별 증권 단위) 국제 포트폴리오투자 공동조사(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CPIS)와 매년 비교하며, CPIS는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을 위해 거주자 및 비거주자 보유 현황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b. 보유자 유형별 정보

7.38 **기업:** 기업의 증권 보유현황 정보는 비금융 및 금융기업 대상의 분기별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며 공기업을 포함하여 세부 산업/부문별로 편제된다. 이에 추가하여 연기금에 대한 설문조사도 별도로 실시한다. 시장 가치 자료는 수집 또는 산출된다. 기타 정보출처에서 수집되는 통계는 자료 비교 과정의 일부로 연간 단위를 기초로 한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예는,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을 위해 거주자 및 비거주자 보유 현황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캐나다 (개별 증권 단위) 국제 포트폴리오투자 설문조사(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CPIS)이다.

7.39 **정부:** 연방 및 도가 보유한 증권자료는 연간 결산서(Public Accounts) 뿐만 아니라, 분기 보고서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특히, 이러한 자료는 사회보장기금뿐 아니라 일부 지방정부 단위의 투자기금이 포함된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을 의미한다.

7.40 가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인 및 비법인 기업 정보는 대체로 분기별 계정에서 다른 계정에서 수집한다. 하지만, 정부저축채권과 같은 주요 항목들의 경우 정부부채 대응 계정으로 편제된다. 이에 추가하여, 가계의 자산-부채 설문조사(2005년 마지막 설문조사 실시)를 활용해 주기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7.41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캐나다 증권 보유 자료는 월간, 분기별, 연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비거주자별 공공 채무증권(단기 및 장기 상품)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시스템이 활용된다. 이 시스템은 발행가격, 만기 가격, 장부가액, 기말 시장가격 등 네 가지의 캐나다 채권가격을 편제하며, 최초 발행 시장 등 공공 채무증권의 신규 발행에 대한 세부 정보도 담고 있다. 다음으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월간 세부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 채무상품에 대한 외국인 신규 보유 현황을 월간 단위 및 보유자 국적별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월간 거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편제한 연말 저량을 연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검토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채권이 만기시점에 도달하면 거래를 자동으로 생성시키는데, 외국인 보유액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연간 단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조기 상환분(원 만기 전 상환된 채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조기 상환 정보는 세부 시스템에 반영되며 해당 거래 발생 시 관련 보유액도 조정된다.

c. 특수 사례

7.42 환매조건부 계약(Repos): 캐나다 정부증권은 환매조건부 계약시장에서 담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채권을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 계약은 증권거래가 아니라 융자(융자/차입)로 처리된다.

7.43 수익적 소유자: 공공채무증권 보유자의 경우 캐나다 통계청의 관련 기

관단위가 금융자산의 수익적 소유자이다. 보관 기관이 고객을 대신해 설문 조사에 응하고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7.44 **대리인 계좌:** 캐나다 통계청은 현재 은행 및 기타 금융시장 중개기관 들로부터의 대리인 계좌 내 증권 보유현황 정보 취득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3. 남아프리카공화국

a. 채권시장

7.45 채권시장의 모든 매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4대 시중 은행과 요하네스 버그 증권거래소 소유의 Strate(Share Transactions Totally Electronic Ltd)를 통해 전자 결제되고, 안전하게 보관된다.

7.46 중앙정부 채권등록부는 재무부가 관리하며 중앙정부 채권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소유자 명의 및 Strate 명의로 등록된 보유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전체 중앙정부채권의 약 99%가 Strate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재무부의 경우, 요청 시 채무상품 보유자에 대한 정보를 Strate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7.47 국내에서 매매 가능한 채권의 소유권 분포는 남아프리카준비은행(South African Reserve Bank)의 분기별 고시를 통해 발표된다.

7.48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보고는 연기금, 외국인 투자자, 보험사, 은행, 개인, 단위 신탁 등 과 같은 다양한 부문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수익적 소유자의 채권 보유에 관한 전자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이다.

b. 단기금융시장

7.49 2010년 2월, 단기금융시장이 Strate의 단기금융시장 결제시스템(Money Market Settlement System, MMSS)으로 전환되었다. 그 이후, 신규 재정증권의 발행, 청산, 결제는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익적 소유권은 Strate의 증권소유권등록부(Securities Ownership Register, SOR)에 기록되며, 소유권 정보는 매주 재무부에 제공된다. 재정증권의 모든 유통시장 거래는 SOR에 기록되며 MMSS를 통해 이루어진다. Strate는 모든 재정증권 거래와 관련한 소유자의 세부 내용을 발급된 ISIN 번호에 따라 기록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모든 관련 세부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재정증권의 수익적 소유권 부여 방식은 재무부와 Strate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4. 터키

a. 정부 발행 국내 채무상품

7.50 재무부(Undersecretariat of Treasury)가 발행한 국내 채무상품의 총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터키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Turkey)의 전자증권 이전 및 결제 시스템(Electronic Securities Transfer and Settlement System) 내 정부증권 총액은 보유자 구분 없이 개별은행 명의로 기록된 개별 증권단위 정보(고객 포트폴리오 포함)를 알 수 있다.
- 이스탄불 증권거래소 결제 및 보관 은행(Istanbul Stock Exchange Settlement and Custody Bank Inc.) 계정은 몇몇 뮤추얼 펀드에 할당된 증권의 금액을 나타낸다.
-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증권의 금액
- 일부 정부펀드, 저축예금보험펀드(Saving Deposit Insurance Fund) 등이

보유한 증권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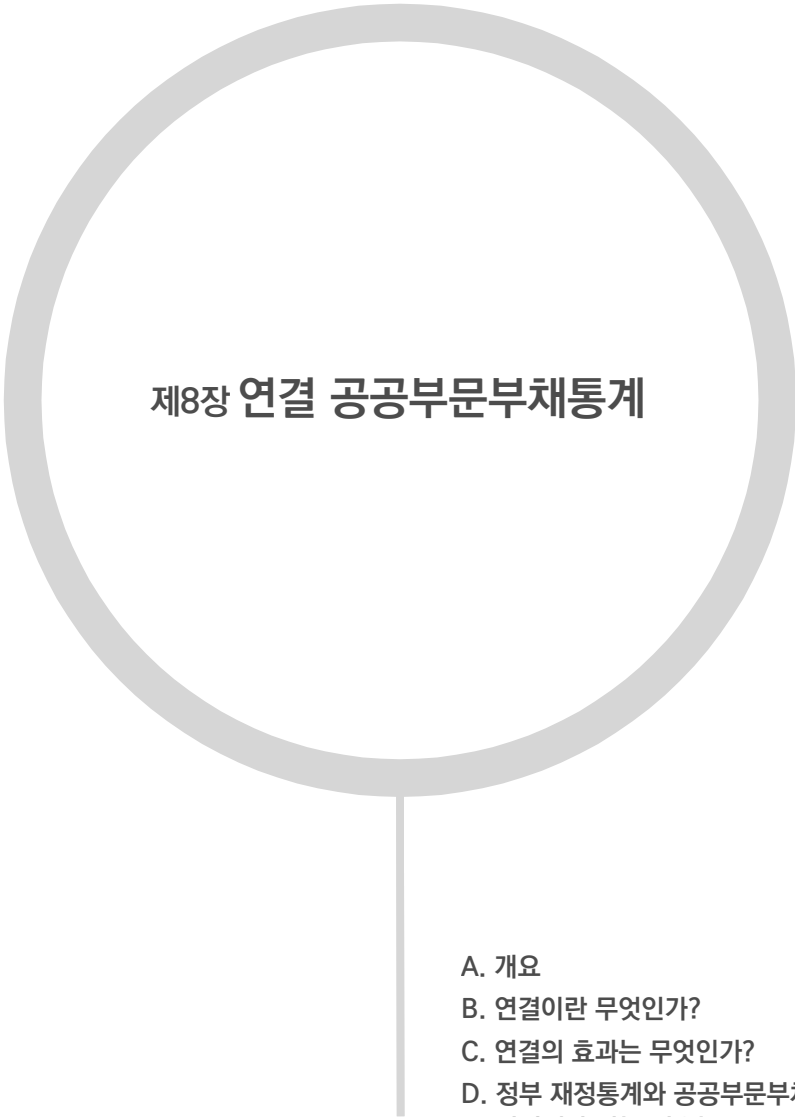
7.51 중앙은행은 거주자 비은행 부문 및 비거주자가 보유한 정부 국내 채무상품에 대한 세부통계를 편제하기 위해 40개 시중 은행 및 84개 중개기관들로부터 매주 자료를 수집한다. 이들 기관들은 자사의 포트폴리오와 거주자 및 비거주자 보관 계좌 내 증권들을 개인, 은행, 기타 법적 실체와 같은 보유자의 세부 정보를 함께 보고한다. 이 자료에는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도 포함된다. 은행 및 중개기관의 보고서에 기반해 편제된 거주자 비은행 부문과 비거주자 정보는 중앙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보유자별로 발표한다.

b. 해외시장 발행 정부 채무증권

7.52 해외시장에서 재무부(UT)가 발행한 채무증권[터키에서 유로본드(Eurobonds)로 지칭]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 및 중개기관들의 주간 보고서를 통해 수집한다. 이들 기관들은 자사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보관 계좌와 포트폴리오 내 보유 증권 금액을 보고한다. 이 금액은 총 유로본드 저장에서 차감하면 비거주자의 유로본드 보유액을 반영한 나머지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c. 은행부문 보유

7.53 은행부문이 보유한 모든 채무증권(국내 외 발행)은 국내채무 또는 유로본드 등 발행시장의 세부적 구분 없이 자금 및 은행 통계의 체계에서 중앙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제8장 연결 공공부문부채통계

- A. 개요
- B. 연결이란 무엇인가?
- C. 연결의 효과는 무엇인가?
- D. 정부 재정통계와 공공부문부채통계를
연결해야 하는 이유는?
- E. 공공부문부채통계 연결

제8장 연결 공공부문부채통계

본 장은 연결에 관해 정의와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또한 공공부문부채통계의 연결에 관한 실무적 지침을 제시한다.

A. 개요

“연결은 불안정한 과학이다.” _〈정부 재정통계 매뉴얼〉(1986)

8.1 〈정부 재정통계 매뉴얼(GFSM)〉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통계(채무통계 포함)를 연결하여 편제할 것을 요구한다.¹⁾ 국제기준에 따르면 연결은 정부 재정통계와 채무통계를 편제하는 최종 과정에서 중요하다.²⁾ 본 장에서 후반부에 논의하겠지만, 총계통계와 연결통계 간 구별해야 한다. 연결 공공부문부채통계 또는 기타 공공부문 통계를 편제할 때 실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결에 활용되는 자료와 연결에 적용되는 세부 수준의 자료는 수치의 중요도와 정비례해야 한다.

8.2 본 장은 연결이 총계와 수지항목에 미치는 영향과 연결통계의 편제 이율을 포함한 연결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개념적 사안을 논의한다. 본 장의

- 1) 거시경제통계나 기타통계의 연결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재정분석을 위해 연결의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2008 SNA는 국민계정통계 실체의 연결은 권고하지 않는다. 국민계정자료는 해당 부문(부문별 총계)이나 경제적 영역(경제 전반에 걸친 총계)에 속하는 모든 거주 기관단위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증권통계 소책자(Handbook on Securities Statistics)〉는 거주자에게 비연결 기준의 보유 채무증권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권고한다.
- 2) 본 절차는 네 가지 주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i) 기관범위 및 분류기준을 구체화한다. (ii) 자료의 출처를 선정한다. (iii) 근거자료가 GFSM 방법론에 부합하기 위해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브릿지 테이블(bridge table)을 개발한다(준비단계). (iv), (i)과 (iii)를 기준으로 통계를 편제한다. 네 번째 단계는 두 가지 과제, 즉 (i) 통계의 분류, 도출과 (ii) 통계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공부문부채통계 연결의 구체적인 사안을 다룬다. 이를 통해 연결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공하고 어떻게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연결하는지 보여준다.

B. 연결이란 무엇인가?

1. 정의

8.3 GFSM에 근거하면, 연결이란 일련의 기관단위(또는 실체)를 마치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취급하여 통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단위 또는 단위군에 대한 연결계정은 분석체계 내 모든 유량과 저량을 먼저 집계하고, 원칙적으로 연결되는 단위나 실체 간 관계를 나타내는 모든 유량과 저량을 제거하여 산출한다.³⁾

8.4 공공부문 통계를 편제할 때, 두 가지 유형의 연결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 장의 후반부에서 논의한다.

- 부문 내 연결은 특정 하위부문에 대한 연결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특정 하위부문 내에서 연결이다(예, 중앙정부 하위부문 내 또는 비금융 공기업 하위부문 내).
- 부문 간 연결은 특정 공공부문 단위 집단에 대한 연결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하위부문 간 연결이다(예, 중앙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3) 연결과정에서는 순채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두 단위(A와 B)의 통계가 연결되었다고 가정하고(하위부문 C), 단위 A, 단위 B 및 연결단위 C에 대한 순채무를 계산한다고 가정한다. 연결에는 A와 B 사이의 상호 채무와 채무 형태의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단위 A에 대한 순채무를 산정할 때, 단위 A의 총채무에서 채무상품 형태의 같은 단위 A의 금융자산을 차감한 금액이 단위 A의 순채무이다. 단위 B와 연결단위 C의 순채무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간의 연결 또는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간 연결).

2. 총계통계 vs. 연결통계

8.5 총계통계와 연결통계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개별 공공부문 단위/실체에 대한 채무통계(또는 기타통계)를 합할 때, 상응하는 저량(또는 유량)이 존재하지만 제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통계는 연결통계가 아니라 총계통계라고 칭한다(예, 총계 일반정부 채무통계 또는 총계 비금융 공공부문부채통계).

8.6 기술적으로 연결 과정은 통계의 수평적 총계 과정⁴⁾이며, 이는 연결통계를 산출하는 연결과정 이후에 이루어진다(예, 연결 일반정부 채무통계 또는 연결 비금융공공부문부채통계). ‘총계통계’와 ‘연결통계’라는 명칭은 통계를 편제하는 단위 간 상응하는 저량(또는 유량)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공공부문 통계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C. 연결의 효과는 무엇인가?

8.7 연결 대상단위 간 모든 상응하는 저량과 유량을 제거함으로써, 연결은 영역 외 연결 단위들의 저량을 측정할 수 있다. 연결은 기관단위군 내 경제적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없으며, 모든 기타단위(또는 국외)와의 상호작용과

4) 수평적 합계는 분석체계 내 기관단위/실체, 하위부문 및 부문에 대한 자료를 모두 통합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GFSM에서는 예산상 중앙정부, 예산외 중앙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의 채무통계를 (수평적) 합하여 ‘연결되지 않은 중앙정부’에 대한 총계를 산출한다. 반면, 자료의 수직적 합계는 개별 기관단위, 하위부문 및 부문의 계정에 있어 유량 또는 저량의 합계를 의미하며 분석체계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 ‘총계’를 산출한다. 일례로, GFSM에서는 특정 기관단위에 대한 채무상품 모두를 합하여 (수직적) 기관단위의 ‘총부채’의 총계를 산출한다. 수지항목(예, 순운영수지, 순자산 또는 순채무)은 총계 간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관련된 유량 또는 저량만 반영된다.

8.8 연결은 기관단위군 사이 거래 또는 저량의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 내부거래 또는 저량을 제외하여 통계를 산출한다. 이처럼 중복계산을 피함으로써, 연결군을 단일 실체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연결통계의 분석적 유용성이 증대된다.

8.9 Box 8.1에 설명되어 있듯이, 원칙적으로 연결은 GFSM 수지항목(예, 순운영수지, 순융자(+)/순차입(-), 순자산 및 순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단순 합계(총계 통계)에 의해 산출된 수지항목은 연결통계에 의해 산출된 수지항목과 동일하다. 이는 대칭적 연결과정의 결과로, GFSM 분석체계는 연결과정의 두 가지 대칭적 측면에서 동일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이다.⁵⁾

8.10 연결 자료는 연결되지 않은 (총계) 자료와 상이한 수지항목을 산출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연결조정은 원칙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대칭을 이루어야 한다.⁶⁾

5) 원칙적으로 거시경제 통계시스템에서 회계규칙은 거래가 거래당사자들 모두에게 동시에 발생하며, 이 거래는 거래당사자들에 의해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사중부기 기록방식(quadruple-entry accounting)을 의미하는데, 즉 각 단위는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은 모두 동일한 가치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양 당사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거래(또는 저량)를 분류해야 한다. 이들 기준의 변동은 거래와 재정상태표 저량 모두를 연결하는 데 있어 많은 실무적 문제를 야기한다. 회계 불일치뿐만 아니라 시기와 가치평가의 차이는 연결 금액들 간의 비대칭을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 또는 저량 양쪽 경우 모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수치를 사용한다. 비대칭 기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일치는 분석을 통해 해소하고, 연결과 자료 편제과정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6) <정부 재정통계 매뉴얼 1986>에서 이와 같은 대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중앙정부가 정책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제공한 융자는 중앙정부의 위쪽 선(above-the-line)으로 상환공제융자(적자 및 흑자 항목)로 분류되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조달인 '아래쪽 선(below-the-line)'으로 분류했다. 이와 같이, <정부 재정통계 매뉴얼 1986>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을 통해 거래를 단순히 합산 때와는 차이가 있는 전체 재정적자/흑자 및 조달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동일계정 내 금융자산과 부채에 관한 모든 거래를 같은 계정으로 분류함으로써 GFSM 체계 내에서 비대칭성은 제거되었다.

Box 8.1. 수지항목의 연결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적 예시

다음 예시는 연결이 채무통계의 수지항목인 순채무를 포함한 GFSM 수지항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그 예는 일반정부 부문과 공기업의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및 채무통계이다. 이들 두 부문에 대한 통계를 합산한 다음 연결과정을 거쳐 공공부문 연결이 산출된다. 이 예는 일반정부가 공기업에 제공한 융자 400이라는 부문 내 거래와 저장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공공부문 총계'와 '공공부문 연결'의 수지항목은 같지만, 금융자산과 부채(및 채무)의 거래와 저장은 총계에서보다 연결이 더 적을 수 있다.

재정운영표(해당 회계기간)

	일반정부	공기업	공공부문 총계	연결	공공부문 연결
	[1]	[2]	[3] = [1] + [2]	[4]	[5] = [3] + [4]
수익	1,200	500	1,700	0	1,700
비용	1,500	400	1,900	0	1,900
순운영수지	-300	100	-200	0	-200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250	350	600	0	600
순융자(+)/순차입(-)	-550	-250	-800	0	-800
금융자산의 순취득	450	600	1,050	-400	650
하위: 공기업에 대한 융자	400	0	400	-400	0
부채의 순 부담	1,000	850	1,850	-400	1,450
하위: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	0	400	400	-400	0

재정상태표(회계기간 말)

	일반정부	공기업	공공부문 총계	연결	공공부문 연결
	[1]	[2]	[3] = [1] + [2]	[4]	[5] = [3] + [4]
순자산	6,500	5,800	12,300	0	12,300
비금융자산	10,300	5,000	15,300	0	15,300
순금융자산	-3,800	800	-3,000	0	-3,000
금융자산	6,800	4,700	13,300	-400	12,900
하위: 공기업에 대한 융자	400	0	400	-400	0
부채	12,400	3,900	16,300	-400	15,900
하위: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	0	400	400	-400	0

채무통계 (회계기간 말)

	일반정부	공기업	공공부문 총계	연결	공공부문 연결
	[1]	[2]	[3] = [1] + [2]	[4]	[5] = [3] + [4]
순채무	4,300	-400	3,900	0	3,900
채무상품에 대응되는 금융자산	7,300	3,300	10,600	-400	10,200
하위: 공기업에 대한 융자	400	0	400	-400	0
채무상품 형태의 부채(총채무)	11,600	2,900	14,500	-400	14,100
하위: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	0	400	400	-400	0

D. 정부 재정통계와 공공부문부채통계를 연결해야 하는 이유는?

8.11 정부 재정통계는 항상 연결기준으로 발표되어 왔다.⁷⁾ 연결 일반정부 통계의 이유는 ‘일반정부 부문의 연결(Consolidation of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보고서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다.⁸⁾ 요약하면, 이 보고서에서 연결 통계의 주된 이유는 분석적 유용성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 연결은 국가 간 다양한 행정제도의 영향을 미치는 왜곡효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연결 통계의 주된 영향은 총계의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 전체(예, 수익, 비용 또는 GDP 대비 채무비용)와 정부총계를 연관시키기 위해 기금의 내부 과당매매를 제거하고, 경계를 넘어 다른 부문 또는 비거주자 간 실제로 발생하는 모든 유량과 저장만을 포함해야 한다.

8.12 공기업 통계와 공공부문 통계가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도 동일한 논거가 적용된다. 즉, 기금의 내부 유량과 저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모의 왜곡효과를 수정할 수 있어, 경제의 다른 부문 또는 비거주자 간 실제로 발생하는 경계를 넘어 영역 간 유량과 저장만을 포함해야 한다.

8.13 그러나 총계규모는 연결통계의 분석적 유용성 때문에 편제되어야 하며, 연결과정에서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기 전에 내부 유량과 저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일반 지침에 따르면, 수치상 중요도와 정비례하는 연결 항목을 파악하는 데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문단 8.17 참조).

7) 연결이 언제나 거시경제통계 및 기타통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다. 본 장 각주 1을 참조.

8) GFSM 2001 부속자료 일반정부 부문의 연결, 케빈 오코너(IMF 전문가), 예단 와이즈만, 토 바이어스 위켄스, 2004년 11월, IMF, 워싱턴 DC.

E. 공공부문부채통계 연결

8.14 본 절에서는 공공부문부채통계의 연결을 다룬다. 채무상품인 부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겠지만, 각 채무상품의 상대방(채권자) 계정에서는 금융자산(청구권)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특별히 연결과정과 관련이 있다.

8.15 다음과 같은 부채는 채무상품이다(제2장 문단 2.3 참조).

- 특별인출권(SDRs)
- 현금 및 예금
- 채무증권
- 용자
- 보험, 연금 및 표준화 보증상품
- 기타 미지급계정

8.16 연결 대상에 관해 간략하게 논의한 이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적인 지침과 규칙 몇 가지를 제시한다.

표 8.1. 공공부문부채통계의 부문 내/부문 간 연결

공공부문 단위	부문 내 연결	부문 간 연결
일반정부 부문		X
중앙정부	X	
예산상 중앙정부	X	
예산외 중앙정부	X	
사회보장기금	X	
주정부	X	
지방정부	X	
공기업		
비금융 공기업	X	
비금융 공공부문		X
금융 공기업	X	
공공부문		X

1. 무엇을 연결해야 하는가?

a. 개념상 지침

8.17 개념적으로, 채무통계의 연결은 연결 대상이 되는 기관단위 또는 실체들 간 발생하는 모든 유량과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제거해야 한다. 적절한 연결은 내부 저량(및 유량)을 인식하기 위해 계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는 완벽한 연결이라기보다는 최종 총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저량(및 유량)을 일관성 있게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주 작은 저량 또는 유량이 계정에서 파악되면, 그 저량 또는 유량과 그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자원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8.18 연결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편제할 때 두 가지 유형의 연결이 있다. 다시 말해, 부문 내 연결과 부문 간 연결이 있다. 부문 내 연결은 언제나 부문 간 연결 이전에 수행된다. 공공부문의 전형적 구성요소와 부문화⁹⁾에 근거하여 표 8.1.은 어느 공공부문 단위에 부문 내/부문 간 연결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8.19 원칙적으로 특별인출권(SDRs)은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편제할 때 그 어떤 연결에도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채무상품이다. 이는 SDR 채무에 대한 상대방(채권자)은 국외이기 때문이다(총칭, IMF의 SDR 계정 참가국).

8.20 연결의 두 가지 유형에서, 중요도 순서로 나열된 다음 항목의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및 저량은 공공부문 일부 또는 전체를 포괄하는 채무통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 융자
- 채무증권

9) 상세한 내용은 제2장을 참조.

- 기타 미지급계정

8.21 이미 언급한 채무상품에 추가하여, 금융 공기업의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및 저량을 포함한 채무통계는 부문 내/부문 간 연결 모두에서 제거되는 것이 원칙이다.

- 현금 및 예금
- 보험, 연금 및 표준화 보증상품

b. 감채기금의 연결

8.22 감채기금의 정의와 분류는 제2장 문단 2.73~2.76에서 논의되었다. 감채기금은 공공부문의 재정상태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부문부채통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단위가 통제하는 감채기금의 저량과 유량은 부문 내/부문 간 연결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통제편제가 이루어지는 기타 공공부문 단위의 저량과 유량과 함께 제거되어야 한다.

- 감채기금이 기관단위가 아닌 경우: 감채기금의 저량과 유량은 모 단위(parent unit)의 저량과 유량과 연결한다. 감채기금과 모단위 사이의 저량과 유량은 감채기금이 이러한 기금을 관리하는 단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문 내 연결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관단위가 아니며 예산상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감채기금의 저량과 유량은 그들 간 저량과 유량의 적절한 연결방법으로 예산상 중앙정부의 저량과 유량의 연결이 필요하다.
- 감채기금이 시장외적 기준으로 운영되는 별개 기관단위인 경우(예, 정부단위): 감채기금과 모 단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량과 유량은 감채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 단위군 자료 편제 시 부문 간 연결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다. 이러한 감채기금은 이를 통제하는 단위의 예산외 단위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결 중앙정부 GFS 또는 채무통계를 편제할 때, 예산상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감채기금은 기타 중앙정부단위의 저량과 유량에 연결될 수 있다.

- 감채기금이 시장기준(예, 금융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별개 기관단위인 경우: 감채기금과 모 단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량과 유량은 감채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 단위군 자료 편제 시 부문 간 연결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8.23 모 단위와 감채기금의 통계를 연결할 때, 연결 총계는 공공부문 이외, 국내경제 및 국외 사이에서 발생한 저량과 유량만을 나타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저량과 유량을 제거해야 한다.

- 부채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에 대한 모 단위의 출연금을 포함한 모 단위와 감채기금 간 거래 및 거래외 경제유량
- ‘모 단위’ 정부 채무의 보유를 포함한 모 단위와 감채기금 간 저량

8.24 통계에 포함된 단위군 이외 단위에 대한 감채기금의 지급(예, 민간부문 또는 비거주자)은 다음과 같다.

- 부채가 모 단위 재정상태표에 기록되기 때문에 모 단위의 채무 상환(이러한 이유로 감채기금을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감채기금이 별개의 기관단위인 경우 감채기금에 대한 금융자산의 취득. 감채기금이 별개의 기관단위가 아닌 경우, 감채기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모 단위의 재정상태표에 기록된다.

8.25 감채기금의 총채무를 계산할 때, 감채기금이 별개의 기관단위라면 감채기금의 보유 금융자산은 감채기금의 부채로 상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관단위인 감채기금의 금융자산은 감채기금의 순채무 산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동일한 계산법은 모 단위의 총채무와 순채무계산에도 적용된다. 별개 기관단위인 감채기금과 모 단위의 통계를 결합할 때, 연결단위의 총채무와 순채무는 부문 내/부문 간 저량으로 적절하게 연결한 후 산출한다.

2. 실무 지침

8.26 이전 절에서 연결과 관련된 개념상 문제와 연결이 필요한 저량(유량)을 파악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연결해야 하는 모든 저량(및 유량)은 일반정부 계정에서 저량(및 유량)에 대한 계정과목 코드로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의 저량(또는 유량)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근거자료는 정부 계정과목 코드와 계정과목 코드는 별개로 존재한다. 제6장에서 강조하였듯이, 공기업자료는 정부 재정통계 또는 공공부문 통계 편제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상적인 것은 공공부문부채통계 편제시스템 내에서 공공부문 회계자료가 GFSM 분류기준 코드와 링크(연계)되어야 하고, 연결과정에서 제거될 항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a. 연결의 우선순위

8.27 연결 공공부문부채통계를 편제할 때 실무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고, 연결에 적용되는 세부수준의 결정은 다음에 기초해야 한다.

- 연결 자료의 분석적/정책적 유용성
- 다양한 유형의 저량의 상대적 중요도

8.28 유의미하지 않고 인식이 어렵다면, 본 지침은 공공부문 또는 이에 대한 모든 하위부문의 연결 채무통계를 편제할 때 ‘기타 미지급계정(또는 미수계정)’의 부문 내/부문 간 연결을 권고하지 않는다. 사실상, 상세한 정보의 부족으로 ‘기타 미지급계정(또는 미수계정)’에서 부문 내/부문 간 저량을 제거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보험 책임준비금을 특정 보험계약자에게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다.¹⁰⁾ 정부와 금융공기업으로 분류되는 연기금 사이의 저량은 가계(정부 피용자)와 연기금 간 저량으로 간주 또는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단위 간 표준화 보증상품의 연결은 필요치 않을 것 같다.

8.29 따라서 공공부문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괄하는 채무통계의 경우, 저량(및 유량),¹¹⁾ 즉 용자, 채무증권, 현금 및 예금의 부문 내/부문 간 연결 시에는 잠재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¹²⁾

8.30 종종, 연결 대상인 두 단위 간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거래 또는 저량을 파악할 때(예, 중앙정부가 비금융 공기업에 제공한 용자), 이에 상응하는 기록은 거래상대방(이 경우 비금융 공기업)의 계정에서 파악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금융 공기업의 계정을 검토할 때, 용자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또는 용자가 다른 기간에 입금되었거나 또는 미수 용자(loan receivable)와 미지급 용자(loan payable)가 다른 가치로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용자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중 일부는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공부문 연결에 관한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논의하였다.¹³⁾ 이러한 불일치의 해소는 완전한 연결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자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10) 보험 책임준비금은 금융공기업의 부채이자, 보험 계약자에게는 금융자산이다.

11) 이는 채권자 계정에서 대응하는 금융자산과 채무상품이다.

12) 금융 공기업이 통계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 및 예금의 연결은 특히 중요하다.

13) GFSM 2001 부속자료, 일반정부 부문의 연결 및 GFSM 2001 부속자료 비금융 공공부문통계—연결, 토바이어스 위켄스, 2008년 10월, IMF, 워싱턴 DC (<http://www.imf.org/external/pubs/ft/gfs/manual/comp.htm>)

b. 경험에 근거한 규칙

8.31 일부 경험에 근거한 규칙은 결정에 도움을 준다. (i) 연결해야 할 저량 유무 여부 (ii) 수집의 규모와 비용에 근거하여 저량을 측정할지 여부, (iii) 어떤 단위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제공하는지 여부.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규칙을 선택할지는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달려 있다. 경험에 근거한 일반 규칙과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¹⁴⁾

- 연결대상 단위의 내부 저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된 계정분석으로 연결과정을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은 관련된 단위 간의 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일부 단위가 다른 단위에 용자를 제공하는지, 다른 단위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매입하는지, 다른 단위가 보유한 현금과 예금이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 관계가 설정되면, 편제자는 부문 내/부문 간 저량을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액이 분석적 중요도 측면에서 유의미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 금액이 유의미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결을 위해 자료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큰지 검토해야 한다(연결해야 하는 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은 예상되는 금액과 총계에 대한 영향과 정비례해야 한다).
- 통상 경험에 근거한 ‘일방의 규칙’을 사용한다. 거래당사자들 중 한쪽 당사자가 재정상태표에 저량이 존재한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면, 상대방의 기록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저량을 직접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단위의 자료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때, 해당 단위에 대한 기록이 적절하게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금융자산과 부채(채무 포함)의 저량(및 유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용자의 경우, 채권자 단위는 가장 온전한 기록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온전한

14) 연결의 성공 여부는 준비단계에서 정확성 여부와 공공부부채통계의 도출 여부에 좌우된다.

채무기록에 관한 국제기구의 강조로 채무자 단위의 자료를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다. 채무증권의 경우, 특히 무기명채권, 채권자만이 유일하게 연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무기명채권을 발행하고, 공기업이 이중 일부를 취득하였다면 중앙정부는 누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직접적인 정보가 없을 수 있다. 특히 유통시장을 통해 획득한 경우에는 더욱 알기 어렵다.¹⁵⁾ 따라서 공기업의 채권자 기록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3.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

8.32 연결 공공부문부채통계 원칙을 적용할 때, 편제자는 단위군 또는 실체에 대한 통계를 연결한 후 연결 단위 간 발생하는 부문 내/부문 간 저량을 차감해야 한다. IMF의 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금액을 마이너스로 기록함으로써 차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결통계는 모든 개별 구성요소의 자료와 연결금액(마이너스)을 모두 합해 산출된다. 이 원칙은 표 8.2의 예시에서 다루는데, 그 예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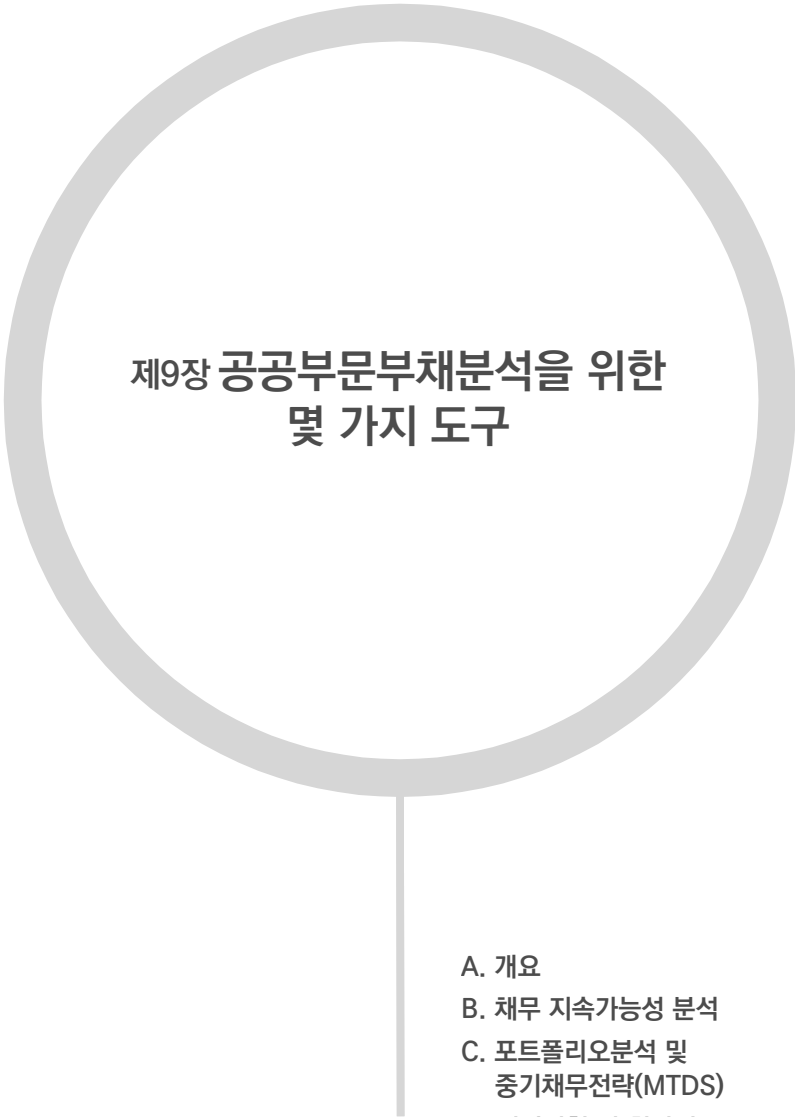
- 공공부문의 모든 주요 하위부문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 간략하게, 부문 내 연결은 제외하고 부문 간 연결 수준에서 연결대상이 되는 저량만을 나타낸다.
- 다음과 같은 채무자-채권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5)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기존 공공부문부채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가 비공공부문 단위와 이루어진 경우라면 거래 자료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취득은 재정상태표 또는 채무통계에 연결해야 한다. 공공부문 단위가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증권을 발행한 경우, 공공부문과 해당 증권의 보유자 사이의 채무자-채권자 관계는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변동될 수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채권은 기본적으로 은행에 판매될 수 있다. 이 거래로 인해 공공부문(및 중앙정부)의 채무가 발생한다. 이후, 중앙정부채권은 은행에서 비금융 공기업으로 매각될 수 있다. 이 거래로 인해 공공부문부채는 감소하는데, 이는 공공부문 재정상태표(및 채무통계)에서 비금융 공기업의 중앙정부 채무보유가 연결과정에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하위부문에 속하지 않는 두 당사자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로 인해 중앙정부의 채무는 감소하지 않는다.

- 사회보장기금은 예산상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의 통화단위 1,300을 보유한다.
- 예산상 중앙정부는 예산외 기금(통화단위 220), 주정부와 지방정부(통화단위 2,451)와 비금융공기업(통화단위 1,640)에 용자를 제공했다.
- 사회보장기금은 비금융공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통화단위 309를 보유한다.
- 모든 공공부문 단위는 금융 공기업에 현금 및 예금이 있다(통화단위 18,737).
- 금융공기업은 예산상 중앙정부와 금융공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보유한다(통화단위 6,523).
- 금융공기업은 모든 공공부문 단위에 용자를 제공했다(통화단위 7,114).

표 8.2. 연결 공공부문 재무통계의 수치적 예시(부문 간 연결)

	공공부문 연결													
	비금융 공공부문							연결 비금융 공공부문						
	일반정부부문							연결 일반정부부문						
	예산상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예산외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사회보장 기금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주정부	지방정부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순채무	3,852	-135	-846	0	2,871	2,270	2,262	0	7,403	1,980	0	9,383	5,935	15,318
채무상환에 대응하는 금융자산	7,640	748	3,473	-1,520	10,341	3,544	4,241	-2,451	15,675	10,699	-1,949	24,425	38,173	30,224
화폐용 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특별인출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현금 외 예금	3,177	600	1,312	0	5,089	2,200	1,605	0	8,894	5,555	0	14,449	11,146	6,868
채무증권	0	49	1,998	-1,300	747	0	0	0	747	875	-309	1,313	7,054	1,844
유사	2,776	0	0	-220	2,556	355	543	-2,451	1,003	1,449	-1,640	812	15,061	8,759
보험, 연금 및 표준화 보증상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마누개정	1,687	99	163	0	1,949	989	2,083	0	5,031	2,820	0	7,851	4,321	0
채무상환에 대응하는 부채(총 채무)	11,492	613	2,627	-1,520	13,212	5,814	6,503	-2,451	23,078	12,679	-1,949	33,808	44,108	45,542
특별인출권	0	0	0	0	0	0	0	0	0	0	0	0	591	591
현금 외 예금	0	0	0	0	0	0	0	0	0	0	0	0	20,959	2,222
채무증권	7,650	0	0	-1,300	6,350	0	1,737	0	8,087	4,876	-309	12,654	9,898	16,029
유사	1,232	490	210	-200	1,712	4,424	2,890	-2,451	6,575	5,178	-1,640	10,113	2,500	5,499
보험, 연금 및 표준화 보증상품	0	0	2,350	0	2,350	0	0	0	2,350	0	0	2,350	6,500	8,850
기타 마누개정	2,610	123	67	0	2,800	1,330	1,876	0	6,066	2,625	0	8,691	3,660	12,351



제9장 공공부문부채분석을 위한 몇 가지 도구

- A. 개요
- B.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 C. 포트폴리오분석 및
중기채무전략(MTDS)
- D. 재정위험 및 취약성

제9장 공공부문부채분석을 위한 몇 가지 도구

본 장에서는 세 가지 공공부문부채통계 분석에 활용되는 분석도구에 관해 논의한다. (i)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DSA*), (ii) 포트폴리오 분석, (iii) 재정위험 및 취약성 분석.

A. 개요

9.1 통계 및 회계 전문가들은 공공부문부채를 측정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의미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분야에 기준을 적용(채택)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일부 기준은 점차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다. 본 장은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재정위험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해 소개한다. 이러한 분석은 정의와 국가발전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단계를 적용해야 한다.¹⁾ 이러한 분석의 형태는 지속가능성과 취약성과 관련된 다양한 예측을 위해 채무통계를 활용한다.

B.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9.2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SA)의 목적은 한 국가가 정책의제 수행을 위한 자본조달능력뿐만 아니라 자국 또는 경제 파트너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과도한 대규모 채무조정을 수반하지 않고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Box 9.1. 참조). 잠재적 재정위기 감지, 예방, 해결을 위한 IMF의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부문과 대외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에 관한 공식적인 체계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²⁾ 이 체계는 DSA의 정확성, 효과성, 강제성, 투명성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1) 이러한 접근방식은 IMF의 감시활동과 기금활용 차원에서 사용된다.

2) IMF 2003 참조.

Box 9.1. 채무 지속가능성의 정의

차입자가 소득과 지출 수지의 비현실적인 대규모 조정을 가하지 않고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예상되면 그 채무는 지속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채무 지속가능성은 한 국가의 지불능력, 유동성, 조정능력을 반영한다.

- 현재 및 미래 주요 지출(순이자)의 현재가치(PV)³⁾가 현재 및 미래 소득 흐름의 PV보다 크지 않으면, 정부는 지불능력이 있다.
- 만기 도래 채무상환을 순차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면, 정부는 유동성이 있다.
- 또한 채무 지속가능성은 한 국가의 지급 의지(경제능력과 대조적으로)를 결정하는 지출 및 수익의 조정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제약이 존재한다.

1.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체계

9.3 DSA체계는 (i) 총공공부문부채와 (ii) 총 대외(공공 및 민간)채무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보완적인 평가로 구성된다. 이 체계는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순채무보다는 총채무에 중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자산 현황에 관한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적시성 있게 입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부문부채와 대외채무 두 가지의 경우, 기준 시나리오와 일련의 민감도 분석상 채무지표 경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기준 시나리오는 정부가 의도한 정책을 명확히 전달해주는 일련의 거시경제예측 기법에 기초한다. 이 체계는 기준 시나리오와 스트레스 분석의 기초를 이루는 주요 가정과 변수들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준 시나리오와 스트레스 분석의 채무지표의 경로를 통해 국가의 충격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다.

9.4 평가의 세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3) 지불능력 조건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식은 정부의 시점 간 예산제약인데, 이는 현재가치(PV)로 측정된 미래수익을 통해 부채상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반정부의 능력을 의미한다.

$$D_{t_0} - \sum_{t=t_0+1}^{\infty} \frac{PB_t}{(1+r)^{t-t_0}} = 0$$

여기서 D_{t_0} 는 장기 전망 이전에 해당연도 GDP 대비 총채무, PB_t 는 t 시점에 GDP 대비 구조적 기초수지(수익에서 순이자비용을 제외한 지출을 차감)를 의미하며, r 은 명목이자율과 명목 GDP 성장률의 차이를 말한다.

- 저량, 만기구조, 고정 또는 변동이자율 구성, 통화구성 및 채무보유자를 포함한 현재 채무상황을 분석한다.
- 채무구조 또는 정책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지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이전에 정책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급의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하려고 하는 경우, 대안적 채무안정화 정책경로의 영향을 점검한다.

9.5 DSA 결과는 기계적으로 또는 융통성 없이 해석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정책성과 정책여력을 포함하여 관련 국가의 특성에 기초하여 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어떤 국가에서 (채무비율의 추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 재정수지의 특정 경로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양한 시장위험(이자율 위험 또는 만기 연장위험 등)에 대한 노출 정도는 채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Box 9.2. 참조). 따라서 DSA는 거시경제정책 설계 시 가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만, 독자적으로 최적의 차입경로를 결정할 수는 없다.

Box 9.2. 채무 지속가능성 평가

채무 지속가능성은 채무상환능력의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채무와 채무상환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채무상환능력은 GDP, 수출선수금 또는 재정수익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 GDP 비율은 경제규모에 맞게 지표를 조정할 수 있다.
- 수출비율은 국가가 미래의 대외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 수익비율은 채무변제를 위해 국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측정한다.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기준은 특정 국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제약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상환능력 측정과 관련된 채무 저량의 비율은 국가의 미래부채를 의미하는 부담으로, 지불능력에 대한 장기적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 한편, 채무상환비율의 시간경로는 유동성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가능한 시기를 제시해준다.

채무 지속가능성 비율은 일반적으로 채무의 명목가치에 기반하지만, 양허성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 채무의 현재가치(PV)를 활용하여 미래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적절한 차입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국가별 특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한 국가가 신규로 자금조달을 생산적으로 흡수하여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은 여러 다양한 요소에 좌우되며, 대부분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요소에는 민간분야의 저축성향, 국가의 금융발달 정도, 생산성 증가, 정부 과세기준의 확대, 세율 인상, 공공지출 축소, 인구성장 등이 포함된다.

2. 저소득국을 위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SA) 체계

9.6 위에서 설명한 DSA체계는 저소득국가(low-income countries, LICs)⁴⁾를 제외한 국가들에 더욱 적합하다. LICs는 개발수요가 자국의 자원역량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외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고, 대외 및 국내 충격에 더욱 민감하며 공공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이 더 크며, 생산 및 수출이 협소하여 세계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인 1차 상품에 제한되고 집중되고, 사업집행과 채무관리에 포함되는 정책과 제도가 취약한 경향이 있다.

9.7 DSA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IMF가 공동으로 2005년 저소득국을 위한 채무 지속가능성체계(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for low-income countries, DSF)⁵⁾를 도입했다. DSF는 저소득국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에 대해 수정을 가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DSA에 5년 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DSF는 저소득국에 대해 20년 예측기간을 사용하여 만기가 긴 LIC의 채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LIC에 대한 채무지표는 채무가 대부분 양허성 채무이기 때문에 현재가치 기준으로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LIC의 경우 DSA체계는 대외채무 부실위험을 명시적으로 등급화하여 확대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외채무의 가장 큰 부분은 공공부문부채이다.

9.8 DSF는 주로 정책결정자가 개발목표 달성과 채무 지속가능성 유지 간 수지를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체계는 저소득국의 채무부실의 발생 또는 재발을 방지하지 위한 정책설계의 지침이다.⁶⁾ 이는 다음의 세 가지 토대를

4)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름.

5) 적절한 약자는 아마도 DSF LIC 또는 LIC DSF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더 짧은 약자인 DSF가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 지속가능성체계를 나타내는 약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6) DSF는 고채무빈곤국가(HIPC) 채무면제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DSA와 그 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DSA는 기존채무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기반으로 한다.

- 공공부문 및 대외채무, 채무의 충격 취약성에 관한 표준화된 미래예측분석(forward-looking analysis, 기본 시나리오, 대안적 시나리오, 표준화된 스트레스 테스트 산출)
- 대외채무 부실위험의 명시적 등급을 포함한 채무 지속가능성 평가
- 용자 부실위험을 제한하는 차입(및 용자)전략에 대한 권고사항

9.9 DSF하, 국가들은 강, 중, 취약의 세 가지 정책성과 그룹으로 분류된다(표 9.1. 참조).⁷⁾ 성과 범주에 따라 서로 다른 지시기준은 채무부담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가장 강력한 정책성과에 상응하는 기준이 가장 높다는 것은 좋은 정책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채무 누적위험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9.10 현재, 등급은 대외채무 부실만 편제한다. 공공부문부채와 유사한 비율을 편제할 수 있지만 전체 공공부문부채 부실위험에 대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이 없다. 이는 부분적으로, 대외채무 및 국내채무 간의 개념상 차이에 기인한다. 하지만 DSF는 국내채무 누적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을 고려하며, 이러한 위험의 서로 다른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⁸⁾

표 9.1. DSF에 따른 대외채무 부담기준

	채무의 현재가치(PV)(%)			채무상환(%)	
	수출	GDP	수익	수출	수익
취약 정책	100	30	200	15	25
중간 정책	150	40	250	20	30
강한 정책	200	50	300	25	35

9.11 대외채무 부실위험은 대외채무 부담지표를 지시적 정책의존적 채무부담

7) 세계은행의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CPIA) 지표가 사용된다.

8) IMF, IDA(2006b) 참조.

과 비교하여 측정한다.⁹⁾ 이 기준은 LIC가 유지할 수 있는 대외채무 수준이 해당 국가들의 정책 및 제도의 질¹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경험적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은행이 매년 편제하는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PIA) 지표에 근거하여 측정된다.

9.12 DSF에서는 대외채무 부실과 관련하여 네 가지 등급이 있다.¹¹⁾

- 저위험: 모든 채무부담지표가 한계치보다 훨씬 낮다.
- 중간위험: 채무부담지표가 기준 시나리오의 기준 이하이지만, 스트레스 분석에 따르면 외부충격 또는 거시경제적 정책에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할 때 한계치를 벗어난다.
- 고위험: 한 개 이상의 채무부담지표가 기준 시나리오의 한계치를 벗어난다.
- 채무부실: 해당 국가는 이미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13 2005년 도입된 이래, DSF는 LIC의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많은 원조국, 용자자, 차입자는 장기 공공부문부채 또는 대외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조달의 규모와 유형을 결정하고,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DSF를 활용한다. 또한 DSF는 여타 용자자가 지속가능한 용자정책을 조정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수출신용 및 신용보증 실무그룹(OECD Working Party on Export Credits and Guarantees)은 2008년 1월 LIC에게 지속가능한 용자를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원칙과 지침에 합의했다.¹²⁾

9.14 DSF는 LIC의 채무상태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질, 비교가능성, 적시성

9) SDR의 경우, 순채무 이자의무만, 즉 SDR 보유가 누적할당보다 더 적은 경우, DSA에 반영된다.

10) 크레이와 네루의 연구(2006), IMF, IDA(2004a, 2004b, 2004c, 2005, 2008) 참조.

11) IMF, IDA(2008) 참조.

12) OECD(2008) 참조.

을 향상시킨다. LIC DSAs는 IMF와 세계은행의 대외 홈페이지에 매년 게재된다.¹³⁾ DSA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는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최근의 동향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취약성을 초기 단계에서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09년 후반 이래, IMF 지원프로그램의 채무한도는 DSA의 결과에 크게 의존해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채무취약성이 낮은 국가(DSA 기준에 근거)들은 비양허성 차입에 관련된 전략을 포함하여 자국의 차입전략을 수립할 때보다 융통성을 갖는다.

9.15 DSF의 효과성은 적응성과 광범위한 활용에 달려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LIC 조달의 진화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요소들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DSF는 공공부문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외 조달의 출처로서 송금의 역할을 고려하여, 공기업의 대외채무 관리 시 유연한 접근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¹⁴⁾

C. 포트폴리오 분석 및 중기채무전략(MTDS)

9.16 세계은행과 IMF가 고안한 중기채무전략(Medium-Term Debt Strategy, MTDS)은 효과적인 공공부문부채관리전략에 대한 체계이다. 즉, 비용-위험 분석을 반영하고, 비용-위험 간의 상충관계(cost-risk trade-off)에 관한 정부 선호도를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공부문부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함이다. MTDS는 서로 다른 채무구성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관리하고, 재정 및 통화 관리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며,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MTDS는 국가당국의 채무관리 목표(예, 정부의 재정 수요와 지급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중한 위험 수준에 부합하며 최소한의 비용을 충족)이다. MTDS 체계는 건전한 공공부문부채관리 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¹⁵⁾

13) <http://www.imf.org/external/pubs/ft/dsa/lic.aspx> 및 <http://www.worldbank.org/debt> 참조.

14) <http://www.imf.org/external/pubs/ft/dsa/lic.aspx>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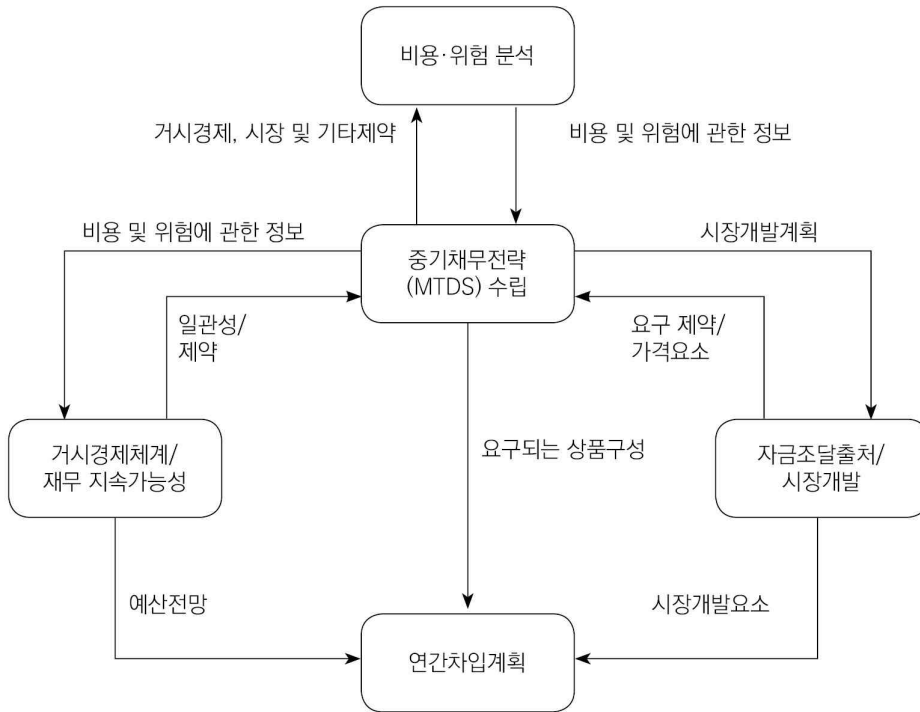
9.17 효과적인 중기채무전략 개발은 몇 가지 중요한 상호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그림 9.1. 참조). 이상적으로, 중기채무전략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총체적 고려가 필요하다.

-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 광범위한 경제체제 고려
- 이용 가능한 다양한 조달전략의 비용-위험 분석
- 연간차입계획
- 시장개발계획

9.18 적절한 채무관리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대안적 전략의 성과는 비용과 위험측면을 평가해야 한다(Box 9.3. 및 그림 9.1. 참조). 개별 전략은 핵심 거시경제 및 시장변수의 기본 시나리오와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을 측정해야 한다. 전략의 선택과 이와 연관된 미래 차입 결정이 건실하려면, 위험 시나리오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시 경제체제의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명목이자와 환율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인플레이션이 이자/GDP 또는 현재가치채무/GDP 등과 같은 핵심 재무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5) 본 체계는 2009년 3월 IMF와 세계은행의 집행이사회가 2009년 3월 채택했으며, <중기채무관리전략(MTDS) 개발: 국가당국을 위한 지침>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9.1. 유효한 중기채무전략 수립을 위한 상호연계



중기채무전략(MTDS)는 다음의 8가지 단계의 절차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 공공부문 채무관리 및 MTDS의 범위에 대한 목표를 파악한다.
2. 현재 재무관리전략을 파악하고 기존재무의 비용 및 위험을 분석한다.
3. 비용 및 위험 특성을 비롯한 잠재적 자금조달출처를 파악·분석한다.
4. 재정, 통화, 대외, 시장과 같은 핵심 정책분야의 기준치 전망 및 위험을 파악한다.
5. 핵심 장기 구조적 요소를 파악한다.
6. 비용·위험의 상충관계를 파악하고 대안적 전략을 평가 및 순위를 매긴다.
7. 재정 및 통화정책당국과 함께 예비 재무관리전략의 영향 및 시장상황을 검토한다.
8. MTDS에 관한 합의를 제출 및 확보한다.

Box 9.3. 비용-위험 간 상충관계

중기채무전략(MTDS)의 수립은 채무 포트폴리오의 비용과 위험의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채무관리자는 비용 및 위험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비용의 주요 측정수단은 다음과 같다.

- 이자비용: 예산준비과정의 핵심
- 이자/GDP 또는 이자/수익(자본화 및 지수효과를 감안한 이자 포함)은 채무의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 채무의 현재가치/GDP(또는 채무가 비양허성인 경우라면, 채무/GDP)는 채무부담의 정도를 의미한다.

채무관리자를 위한 주요 포트폴리오 위험 측정치는 <중기채무관리전략 개발: 국가당국을 위한 지침>(IMF 및 세계은행 발간, 2009년 3월)에서 다룬다.

비용-위험 간의 상충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 시장위험(예,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에 대한 노출)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위험은 비용이 예상결과에서 이탈될 개연성에 관한 측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채무관리란 리파이낸싱, 만기연장, 운영위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위험 관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리파이낸싱(또는 만기연장) 위험, 즉, 채무가 지나치게 높은 비용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험이 실현되는 경우, 정부조달비용이 예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거나 만기 도래유자에 대한 리파이낸싱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조달을 위해 특정 채권자 또는 세분화된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또는 어떤 환율제도를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악화될 수 있다. 일례로, 고정환율제도하 만기연장 위험은 환율이 시장상황에 따라 조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

9.19 MTDS의 수립을 위한 자료 요구사항은 까다로울 수 있다. 개별 국가는 강건한 채무기록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의 국내채무, 대외채무 및 지급보증채무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양질의 채무기록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손쉽게 제공해야 한다.¹⁶⁾

- 통화구성, 채권자구성, 당초 만기 및 잔존 만기, 양허성 유형, (이자율 유형 포함) 상품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특성에 따라 미지급 명목채무를 정확하게 분류
- 다양한 범주의 채무에 대하여 수집된 채무 및 이자지급 일정
- 평균만기기간,¹⁷⁾ 평균재조정기간,¹⁸⁾ 외화표시채무의 비율, 변동이자율 채

16) 제10장 참조.

17) 평균만기기간은 포트폴리오 내 모든 주요지급의 평균만기기간을 가중평균하여 측정한다. 이는 채무 포트폴리오의 만기를 연장하는 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무 등과 같은 기본 포트폴리오 지표

- 개별 채권과 유가증권의 이자 및 상각에 대한 지급일정 및 관련된 지급통지

9.20 이상적으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주요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i) 채무 상황에 활용되는 지급시스템, (ii) (관련이 있는 경우) 거래관리시스템, (iii) (거래관리시스템과 분리되는 경우) 경매시스템, (iv) 정부재정관리 및 회계시스템*

【역자 주】 *: 한국의 dBrain과 같은 통합재정관리시스템(IFMIS)

D. 재정위험 및 취약성

9.21 재정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재정위험은 이미 설명한 포트폴리오 분석체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위험을 넘어선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재정 위험은 실제 재정결과와 예상 재정결과(예, 재정수지와 공공부문채무) 간의 잠재적 차이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예산은 궁극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거나 애초에 예산의 사업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9.22 위험요인은 거시경제 변수(경제성장, 물가지수, 이자율, 또는 환율)로 인한 예측 불가항력적 충격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우발부채(예, 불확실한

지를 보여준다. 해당 지표의 기간 단축은 해당 포트폴리오가 더욱 빈번하게 연장되어 재용자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8) 평균재조정기간이란 채무 포트폴리오의 모든 주요지급이 새로운 이자율의 적용을 받기 전까지 가중평균기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고정 이표와 무이표채권의 경우, 이 기간은 해당 채권의 잔여 수명과 일치한다. 변동이자율 채권의 경우, 이 기간은 새로운 액면이자율이 재조정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 지표는 평균측정치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평균재조정시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표의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포트폴리오에 평균적으로 보다 빈번하게 새로운 이자율이 적용된 결과 재조정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으로 야기된 의무)의 청구권일 수 있다. 이러한 우발부채는 명시적(예, 법률 또는 계약으로 정의된, 일례로 채무 지급보증) 또는 암묵적(예, 대중의 기대나 압력에 근거한 정부의 도덕적 또는 예상된 의무, 예를 들어 은행 또는 공공부문 실체의 긴급구제)일 수 있다. 암묵적 우발부채는 공기업과 지방 정부 손실을 포괄한 은행위기와 자연재해, 특히 민관협력사업의 지급보증 청구권, 장기 미래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순의무 등 잠재적 재정비용이 포함된다.

1. 재정위험보고서

9.23 포괄적인 재정위험분석 및 관리를 위한 첫 단계로, IMF는 예산의 일부로 의회에 제출할 재정위험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행할 것을 권고한다.¹⁹⁾ 이 보고서의 주요 기능은 우발부채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각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9.24 재정위험보고서(statement of fiscal risks)는 정부가 직면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이와 연계하여 개별 위험이 실현될 가능성 및 기타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가 존재한다는 정도이며, 동 정보의 공개로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기초-기말, 정성적 부분(순수 통계라기보다)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정보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9.25 재정위험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현명한 위험관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보다 앞선 원활한 정책 대응(예, 상계조치를 사전에 파악가능)에 도움을 준다.

19) “재정위험: 출처, 공개, 관리”, 〈IMF 부처별 보고서〉, 09/01호, 2009년 1월 참조.

9.26 정보공개 없이도 재정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만, 재정위험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함으로써 위험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정책을 위해서는 위험 예측정보의 정확성과 포괄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 재정위험분석

9.27 재정위험평가는 정부가 보유하기로 선택한 채무(및 여타 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고, 어떤 부채가 장기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와 포트폴리오에서 제거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정부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²⁰⁾ 반면 재정위험은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위험은 서로 상쇄되거나 다른 환경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9.28 공공부문 지불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인식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위험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DSA와 같은 대안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시나리오는 거시경제 변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우발부채의 발생 가능성과 정부의 재정상태표상 금융자산의 가격 및 회수율과 관련된 가정 등 함의를 파악해야 한다.

9.29 정확한 공공부문통계의 편제는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 재정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관단위의 포괄범위**는 가능한 한 광의적이어야 하며, 재정(준재정 활동 포함)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계에는 중앙정부 또는 일반정부 정의에서는 배제될 수 있지만 상당한 재정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타 공

20) “글로벌 위기 이후 재정위험 공개”, 〈IMF Staff Position Note〉, SPN/09/18, 2009년 7월 참조.

공부문 실체(예, 예산외 기금, 비금융 공기업, 중앙은행, 여타 금융 공기업)가 가능한 한 포함해야 한다.

- 이러한 통계의 **범위**는 가능한 한 광의적이어야 하며, 유량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재정상태표상에 제시된 세부 저장(GFS와 연결체계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암묵적, 명시적 우발부채에 대한 정보가 배포되어야 한다(예, 명시적 우발부채 및 미래 사회보장급여를 위한 순의무에 관한 설명은 표 5.12. 참조).
- 공공부문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시장가치 추정**을 포함하여 통계의 질 개선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역자 주】 원 저서(PSDS)에 제시된 참고문헌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장 국제기구의 업무

- A. 개요
- B. 국제결제은행(BIS)
- C. 영연방 사무국
- D. 유럽중앙은행(ECB)
- E.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 F. 국제통화기금(IMF)
- 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H. 파리클럽 사무국
- I.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 J. 세계은행

제10장 국제기구의 업무

본 장에서는 공공부문채무와 관련해 자료편제 및 배포, 채무관리 및 보고, 방법론적 지침, 기술지원 및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 관여하는 국제기구 활동을 간략히 소개한다.

A. 개요

10.1 공공부문부채통계에 관여하는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 국제결제은행(BIS)
- 영연방 사무국(ComSec)
- 유럽중앙은행(ECB)
-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 국제통화기금(IMF)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파리클럽 사무국(Paris Club Secretariat)
-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UNCTAD)
- 세계은행(World Bank)

10.2 본 장은 각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활동은 공공부문채무나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 발표, 통계기준, 기술지원 및 훈련, 채무 관리 등이 포함된다.

10.3 본 장의 부록(보론)에는 ComSec의 채무보고시스템과 UNCTAD의 채무관리 및 재정분석시스템(DMFAS)의 세부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B. 국제결제은행(BIS)

10.4 국제결제은행(이하 BIS)은 공공부문채무와 관련하여 국제은행통계(IBS)와 국제증권통계 두 가지 주요 데이터셋을 산출한다. 이들 자료는 BIS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¹⁾ BIS 간행물인 분기보고서(Quarterly Review)를 통해 분기별로 발행한다. 이러한 통계는 우선 공공부문의 채무를 측정하기 위해 수집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포괄적인 국가 자료의 확보가 어렵거나 지연될 때 거래상대방(채권자) 및 시장에 대한 자료로서 유사한 채무를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1. BIS 국제은행통계

10.5 1980년대 초 중남미 국채사태 이후, 신용위험 측정을 위해 도입된 연결은행통계(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에서 ‘직접 차입자’(Immediate borrower, IB 기준)는 채권은행 본점의 소재국, 즉 국적을 기준으로 보고된다. 이는 각국의 세 가지 부문, 즉 은행, 공공부문, 비은행 민간 부문과 기타 부문에서 ‘직접 차입자’에 대한 은행권의 미상환 ‘국제 청구권(국제 청구권 및 현지 외화 표시 청구권)’을 전세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²⁾ BIS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일반정부, 중앙은행, 다자간 개발은행으로 구성되며, 공기업의 경우 신용위험의 유사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은행 민간부문으로 분류된다.

10.6 채권자는 연결통계 본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자료는 감독당국 보고자료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의 주된 목적은 보고 기관의 신용위험 노출을 측정하는 데 있다. 연결은 개별 보고기관의 국가 위험노출

1) <http://www.bis.org/statistics/index.htm> 참조.

2) 본 지침 초안 작성 당시 BIS CGFS(국제금융시스템위원회)에서 부문별 분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은 물론 채무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가의 위험노출까지 포함된다. 반면, 동일한 은행 집단의 관계사 간 저량(은행 내 저량)은 제외되며, 채무국 내 지점들의 현지통화 표시 청구권은 별도로 보고된다. 이러한 현지통화 표시 청구권과 국제 청구권을 합하여 ‘해외’ 청구권으로 분류한다.

10.7 연결통계(IB 기준)는 국가 채무의 기타 주요 범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범주들은 부문별로 세분화하여 보고하지는 않지만, 국가 경제전체와 공공부문의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잔존 만기가 최장 1년인 은행권에 대한 단기채무는 별도로 보고된다.

10.8 1999년 6월 말부터 보고시스템에는 ‘최종위험(Ultimate Risk, UR)’ 기준 청구권에 대한 보고가 추가되었다. ‘최종위험’ 자료 생산을 위해서는 IB 청구권이 보증자, 즉 명시적(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증을 제공하는 차입실체의 본점(지점의 경우) 또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하는 실체의 국적으로 재분류된다. 또한, 이러한 보증하에서는 차입자의 국적 외 국가에서 취득 가능하고 유동적인 담보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제공된 담보가 미국 거주자의 것이라면 ‘최종위험’ 자료의 청구권은 담보 제공자의 거주국에서 미국으로 재분류된다. UR 자료에서 공공부문이 보증한 청구권은 공공부문으로 재분류된다. ‘최종 위험’의 부문별 자료는 ‘해외 청구권’, 즉 채무국의 자국 통화 등 모든 통화로 표시된 국제 및 현지 청구권의 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해외은행의 현지은행 인수가 활발해지면서 각국의 현지 청구권은 상당한 규모로, 이에 대한 자금은 주로 현지 예금부채를 통해 조달된다. 보증 확대, 미지급 신용출연, 해당국 관련 파생상품의 양(+)의 시장가치와 같은 잠재 청구권은 UR 자료에서 별도로 보고된다.

10.9 최종 거래상대방에 관한 위험노출 자료는 국가 및 부문 위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 직접 거래상대방에 관한 노출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 실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최종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거래 상대방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함을 감안하여, 은행들에게 두 가지 기준(이중 위험노출 측정)을 기반으로 국가 위험노출을 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종 위험 노출은 채권자들의 청구권 회수 능력을 측정하는 데 더 유용한 경향이 있다.

10.10 BIS 은행 통계의 두 번째 부분인 소재지별 은행통계(Locational Banking Statistics)는 1970년대부터 시계열자료를 제공하며, 은행 지점에 대한 자료가 본점의 국적이 아니라 해당 지점의 거주국을 기준으로 보고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거래당사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국제 청구권 및 부채를 보여주는 소재지별 은행통계는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청구권으로만 세분화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대한 은행권 용자의 직접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은행권에 대한 대외채무의 통화 및 상품 구성과 같은 특정 국가의 총 대외채무에 대한 중요한 세부정보는 제공한다.

10.11 첫째, 소재지별 은행통계는 은행권에 대한 총 대외채무의 통화 및 상품 구성(예, 용자, 채무증권, 기타)에 관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데, 이는 한 국가 경제전체와 공공부문의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소재지별 자료와 연결자료셋 간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소재지별 자료의 통화 관련 세부 내용은 통화별로 분류되지 않는 연결 은행청구권에 환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소재지별 통계는 채권자 및 채무자를 거주지별로 분류하는 국제투자포지션(IIP) 체계와 마찬가지로 국가별 통계 조정이 가능하다.

2. BIS 국제채무증권통계

10.12 국제 채무증권 통계(International Debt Securities Statistics, BIS)³⁾는

1960년대 거래가 시작된 이후 발행된 모든 국제 채무증권⁴⁾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개별증권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해 편제된다. 증권이 각 개별 발행자에게는 발행자의 거주지를 나타내는 소재지, 발행 실체의 본사나 소유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는 국적 등 두 개의 국가 코드가 부여된다. 따라서 국제 채무증권 정보는 거주지와 국적 두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10.13 총액 자료는 분기 말 미상환 잔액, 발표된 신규 발행액, 순 신규 발행액(발행 완료액과 상환액의 차이) 등 분기별로 발표된다. BIS는 중앙정부 및 그 밖의 정부, 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정부 부문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는데, BIS 데이터베이스가 각 개별 증권에 대해 매우 세부적이고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부문에 금융 공기업, 비금융 공기업 등을 추가해 공공부문을 더 세분화할 수 있다.

10.14 공공부문부채측정을 목적으로 국제은행 및 증권통계의 총액을 산정할 때 은행권이 보유한 파악되지 않는 국내·외 시장 발행 증권 금액이 공공부문 관련 통합은행(채권자)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관련 국제은행 통계와 증권(시장)통계 사이에 중복되는 실제 규모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3) BIS는 국내 채무증권 발행에 대한 정부 부문별 통계도 수집한다. 이들 통계가 국가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국가(채무자) 통계에서 이미 수집된 것 이상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가능한 한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 연구에 원스톱 자료가 될 수 있다.

4) 국제 채무증권은 국제 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장기), 단기 금융시장 상품(단기) 등을 포함한다.

C. 영연방 사무국

1. 개요

10.15 영연방 사무국⁵⁾은 54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 국가들의 대표적 정부 간 기구로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다. 1980년대 채무 위기 이후 사무국은 각국 재무장관들로부터 가입국의 지속 가능한 채무수준 유지를 지원할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각국의 채무기록 및 관리 전문 소프트웨어[영연방 사무국 채무기록 및 관리시스템(CS-DRMS)] 개발을 시작으로 채무관리 프로그램 구축작업에 착수했다.

10.16 채무관리 프로그램은 이후 각 가입국의 수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쳤으며 현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영연방 사무국 채무관리 소프트웨어 장비(Commonwealth Secretariat Debt Management Software Suite) 제공 및 사용법 교육
- 채무관리 법안, 정책, 전략, 제도적 측면 등에 대한 자문 제공
- 공공부문 전체 채무관리 측면의 역량강화

10.17 이러한 기능들은 영연방 가입국들에 무료로 제공되며 사무국의 특별 자문서비스부(Special Advisory Services Division)의 채무관리과(Debt Management Section, DMS)에서 수행한다.

2. 채무관리시스템 제공

10.18 CS-DRMS⁶⁾는 1985년 가입국인 스리랑카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사용

5) <http://www.thecommonwealth.org> 참조.

되었다. CS-DRMS는 처음에는 당시 최우선순위 업무였던 대외채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능만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상당수 개발도상국들의 국내 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후 국내 채무기록 및 관리 기능도 추가되었다. 현재 CS-DRMS는 모든 정부차입 및 보증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기술과 채무관리 변화에 따라, 각국의 수요와 관행에 맞춰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10.19 CS-DRMS는 영연방 가입국⁷⁾에 무료로 제공되며, 2011년 기준으로 영연방 비가입국 15개국을 포함해 총 6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CS-DRMS는 국가 채무 및 그 하위부문 채무, 정부 용자, 보증, 민간부문 채무 등의 관리에 사용된다. 교육 및 사용자 지원은 시스템상 채무관리 지원과 보고 요건 충족을 위해 사무국에서 제공한다.

10.20 CS-DRMS에 추가하여 사무국은 가입국을 위해 보완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했다. 영연방 사무국 증권 입찰 시스템(Commonwealth Secretariat Securities Auction System, CS-SAS)은 가입국들의 정부증권 입찰관리를 지원하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인 영연방 사무국 공공채무 분석툴(Commonwealth Secretariat Public Debt Analytical Tool, CS-PDAT)⁸⁾은 채무 관리자들이 비용-위험 체계 내에서 차입 전략들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CS-PDAT는 또한 현금 및 채무 관리, 발행일정을 포함한 연간차입계획 마련, 채무환매, 교환, 재조정, 옵션 부여, 전환 등과 같은 부채관리 통합을 통해 채무관리자들이 결정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6) <http://www.csdrms.org> 참조.

7) 영연방 비가입국의 경우, 영연방 사무국과 비독점적 판매 계약을 체결한 Crown Agents (<http://www.crownagents.com>)를 통해 CS-DRMS를 구매할 수 있다.

8) CS-PDAT는 2011년 말 공개될 계획이다.

3. 자문서비스

10.21 영연방 사무국은 가입국들의 요청에 따라 공공채무 관리와 관련한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 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 협의절차 및 법적 체계 마련, 채무관리기구 설치, 채무관리부서 역량강화, 채무관리 전략개발지원은 물론, 국내채무 시장발전 방안 마련에 대한 자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추가하여, CS-DRMS 내 공공 채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자문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최근 사무국은 내부 분석 및 배포를 위한 채무공시개발 지원을 시작하였다. 모든 자문서비스의 주된 목표는 영연방 가입국들이 채무관리 개선으로 건전한 채무관리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10.22 한 국가의 공공채무 관리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대규모 협의가 끝나면, 공공채무 관리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들을 담은 진단 보고서가 작성되고 집행을 위해 해당 국가의 당국에 전달된다.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경우, 후속 자문단이 방문해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돕는다.

10.23 자문서비스와 별개로 사무국은 자문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입국들의 수요를 상시 측정하고 다른 협력 기관들로부터의 지원을 포함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보다 일관성 있고 순차적으로 채무관리 관행 개선방안들을 실행할 수 있다. 끝으로, 해당 국가의 세부개혁과 관련한 과정으로 정기적 점검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후속 자문도 제공한다.

4. 역량강화

10.24 공공채무관리 역량강화는 사무국의 중요한 우선순위 업무 중 하나이다. 역량강화 지원의 주된 목적은 가입국들의 지속가능한 채무관리 역량확

보이다. 자문서비스는 하향식, 상향식의 역량강화인데, 이는 성공적인 채무 관리 개혁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역량강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은 가입국들과의 합의를 통해 각국의 수요에 맞는 역량강화 활동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한다.

10.25 사무국은 CS-DRMS 사용자 교육과 함께 영연방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채무관리교육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세계은행, IMF, 지역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채무자료 편제 및 CS-DRMS 보고에 대한 e-러닝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현장교육, 동료 학습 등도 제공되고 있다.⁹⁾

10.26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융자협상,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비용-위험 체계를 활용한 채무관리 전략, 확정금리부증권을 포함한 채무분석의 다양한 측면을 채무 관리자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도적 절차, 위험관리, 국내 채무시장 발전방안 마련 등과 같은 기타 채무관리 관련 사안교육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된다.

10.27 또한 사무국은 각국의 수요에 맞는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 채무관리 고문들을 두고 있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채무자료 편제 및 CS-DRMS를 활용한 보고 측면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1년부터는 자문 대상 범위의 확대에 따른 채무통계지원과 CS-DRMS 활용, 채무관리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10.28 사무국은 다양한 회의와 워크숍 개최를 통해 채무관리에 관한 최근 현황과 당면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채무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영연방 사무국 채무관리 포럼(Commonwealth Secret-

9) 이는 영연방 학습공동체(Commonwealth of Learning)와 공동으로 진행된다(<http://www.col.org>).

ariat Debt Management Forum)은 영연방 각국의 채무 관리자 및 정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는 사무국의 대표적인 행사다.

5. 발간물

10.29 사무국은 채무관리에 대한 시리즈 간행물을 통해 가입국들에 공공채무 관리 모범사례를 알리고 운영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국은 국내 채무관리, 우발부채, 시장개발, 채무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등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했다. 분기별 회보를 통해서서는 특정 채무관리 분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무국과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6. 협력관계

10.30 사무국은 채무 관리를 위해 다른 기관들과 공조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은행,¹⁰⁾ IMF와 다양한 지역 기구들[동카리브 중앙은행(Eastern Caribbean Central Bank), 동남 아프리카 거시경제 금융관리협회(Macroeconomic and Financial Management Institute of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이하 MEFMI), 서아프리카 금융경제관리협회(West African Institute for Financial and Economic Management, WAIFEM)]이 있다. 사무국은 재정통계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Finance Statistics)의 일원으로서 채무자료 기록 및 보고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CS-DRMS가 세계최고감사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이하 INTOSAI)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만전을 기함으로써 INTOSAI가 효과적인 공공채무 관리 감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0.31 서비스 제공과는 별도로 채무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 사무

10) 영연방 사무국은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채무관리기구(Debt Management Facility)의 집행협력기관이다.

국은 채무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면제, 개발자금 지원을 포함한 국제 금융구조 강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가입국 재무장관 및 정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는 사무국의 연례 영연방 장관급 채무 지속가능성 포럼(Ministerial Debt Sustainability Forum)은 영연방 국가들이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채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협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 활동은 사무국 내 경제부(Economic Affairs Division)가 담당한다.

D. 유럽중앙은행(ECB)

1. 배경

10.32 유럽중앙은행(이하 ECB) 및 유럽중앙은행 연합(the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이하 ESCB)이 통화정책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려면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재정통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 재정통계(GFS)는 유로존 내 부문별 비금융 회계계정 및 금융 회계계정의 통합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이외에도 유럽집행부(the European Commission)와 마찬가지로 ECB는 유로화를 채택하고자 하는 EU 회원국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경제통합도(convergence)〉 보고서를 작성한다. 해당 보고서에서 연간 정부의 재정적자와 정부채무 정보는 경제통합도를 보여주는 주요 기준이다. ECB는 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이하 EDP)와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른다(문단 10.56~10.60 참조).

10.33 GFS 지침¹¹⁾에 근거하여 ECB에 보고되는 자료는 정부의 수익과 비용, 적자와 채무, 적자와 채무 간 관계, EU 기관과 일반정부 또는 기타 거주자

11) GFS에 관한 ECB 지침(20p, 2009년 ECB 발간)은 <http://www.ecb.europa.eu/ecb/legal/1005/96887/html/index.en.html>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경제부문 간의 거래 등이다. 또한 GFS 지침은 이러한 자료가 언제 어떻게 ECB에 보고되어야 하는지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1995년 유럽계정 체제(이하, ESA1995)〉¹²⁾ 및 EDP¹³⁾를 참고로 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다.

10.34 그 이외의 지침은 ECB의 〈정부 재정통계 지침(GFS)〉¹⁴⁾에 제시되어 있다. 해당 지침은 GFS 지침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유럽 각국 중앙은행이 ECB에 보고하는 정부 재정통계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보다 실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지침은 방법론적 변화와 보고양식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2. 방법론

10.35 EU 법률에 따라 회원국은 ESA95를 참조하여 거시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유럽집행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국 통계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ESA95는 경제계정 통합시스템으로서 GDP 등 다양한 거시경제 총계를 산출하는 토대가 된다. ESA95는 한 국가경제의 생산, 그러한 생산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득의 창출과 분배, 자본, 금융자산 및 부채의 축적, 재정상태표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10.36 ESA95는 EU의 상황과 데이터 요구사항에 중점을 두고 2008 SNA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12) 1996년 6월 25일 제정된 '유럽연합의 국민계정 및 지역계정에 관한 유럽 시스템'의 유럽 집행부 규정 NO.2223/96의 1996년 11월 30일자 개정 규정(1~469p).

13) 2009년 5월 25일 제정된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일환인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에 대한 규약 적용'에 관한 유럽집행부 규정 NO. 479/2009 (1~9p).

14) 정부 재정통계 지침은 다음 ECB의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ecb.int/pub/pdf/other/governmentfinancestatisticsguide201003en.pdf>

3. 간행물

10.37 GFS 연간 데이터, 중간 업데이트 사항, 수정사항은 매년 두 차례(4월과 10월) ECB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처럼 보고된 데이터는 ECB가 발간하는 월간 뉴스레터의 '유로존 통계' 항목 내 표 6.1.~6.3.으로 제시된 유로존의 일반정부 재정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ECB의 <통계 소책자(Statistics Pocket Book)>¹⁵⁾의 표 7.1.~7.2. 및 표 11.8.~11.10.도 그러한 보고 데이터를 통해 업데이트된다. 또한, 4월과 10월에 제출되는 데이터는 (t-1년까지의) 통계와 (t년부터 t+2년까지의) 재정 예측치를 담은 <연간 재정보고서(the Annual Public Finance Report)> 및 <추계 재정정책 사안(the Autumn Fiscal Policy Note)> 등의 내부 간행물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된다.

10.38 ECB는 ECB 월간 뉴스레터의 '유로존 통계' 항에 표 6.4. 및 6.5.로 제시된 유로존 각국 정부의 수익, 비용, 적자, 채무, 재정적자-채무 조정치(deficit-debt adjustment) 등의 총계 수치를 분기별로 발간한다. 반면 GFS 지침은 GFS 데이터를 분기별로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연합 통계청 및 회원국은 분기별 GFS 데이터를 ECB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채무통계

10.39 금융상품의 7가지 범주는 ESA95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유동성 요인과 법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재정상태표에 포함된 ESA95 코드는 아래와 같다.

-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AF.1)
- 현금 및 예금(AF.2)
-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AF.3)

15) <통계 소책자>는 ECB의 웹사이트(<http://www.ecb.europa.eu>)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융자(AF.4)
- 지분 및 기타 주식(AF.5)
- 보험 책임준비금(AF.6)
- 기타 미수/미지급 계정(AF.7)

10.40 ECB 간행물에는 ‘EDP’나 ‘마스트리히트 채무’가 자주 활용된다.¹⁶⁾ EDP 채무에 관한 추가정보는 본 지침 제5장의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41 GFS 지침은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와 원 만기일뿐 아니라 금융상품 보유자, 표시 통화, 잔존 만기일까지 공식 발표할 것을 권고한다.

5. 적자-채무 조정

10.42 GFS 지침은 재정적자와 마스트리히트 채무 간 관계 정보를 포함한다. 정부의 재정적자와 채무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이지만 특정연도의 채무수준 변동치가 재정적자보다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다. 채무 변동치와 재정적자 간의 차이를 가리켜 ‘재정적자-채무 조정(deficit-debt adjustment, 이하 DDA)’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저량-유량 조정(stock-flow adjustment, 이하 SFA)’이라고 한다. DDA는 재정적자/흑자(D9)로 설명되지 않는 일부 채무 변동치를 측정한 개념이다. DDA의 요소가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 채무 변동치와 재정적자 간의 차이는 해명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질적 수준에 관하여 우려할 필요가 없다. DDA가 양수(+)이면 채무 증가치가 재정적자를 초과하거나 채무 감소치가 재정흑자보다 작다는 얘기가 된다. 반면 DDA가 음수(-)이면 채무 감소치가 재정흑자보다 작거나 재정적자가 존재함에도 채무가 감소했음을 가리킨다.

16) ‘마스트리히트 채무’ 또는 ‘EDP 채무’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부록인 EDP 규약 및 유럽집행부 규정 NO.479/2009의 1조 5항에 매년 12월 31일자 일반정부 채무 총계의 액면가치로 명시되어 있다.

10.43 DDA는 다음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A 요소 - 주요 금융자산의 거래
- B 요소 - 기록의 시점과 기타 시점의 차이
- C 요소 - 가치평가의 효과 및 채무규모의 기타 변동

10.44 주요 금융자산의 거래인 **A 요소**는 재무부나 중앙은행 소속 기타 정부 단위, 통화금융기관이 보유한 예금 거래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향후 연금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을 축적하는)에 의한 비정부 유가증권의 순 취득, 공기업 지분에 대한 정부의 순 취득 등도 포함된다.

10.45 기록시점의 차이를 의미하는 **B 요소**는 다음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 차액 기록시점
- 파생금융상품 순 거래
- 통계 불일치
- 화폐용 금 및 보험 책임준비금 거래

10.46 **기록시점의 차이**는 비용 및 관련 경비 기록시점과 수익 및 그와 관련된 현금흐름 유입시점이 다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용은 재원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록되므로 정부가 실제 현금지급이 나중에(계약상의 결제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더라도 적자가 증가된다. 이러한 기록시점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정부에 대한 금융청구권은 기타 미지급 계정(F.7)으로 기록된다. 기타미지급계정은 EDP(본 지침에서 사용된 채무의 정의가 아닌) 시행을 위한 채무 정의에 따라 정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 마찬가지로, 세금은 실제 납부가 이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세액 평가 시점에 재정적자가 감소되는 것으로 기록된다. 이처럼 향후 납부되는 세액은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기타 미수금계정(F.7)으로 기록된다. 이외에도 정부가 EU를 대

신하여 지출한 재원을 EU가 선지급하거나 차후에 지급함에 따라 기록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0.47 금융파생상품 거래(F.34)는 현금을 창출하여 정부차입 요구액¹⁷⁾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는 전환계약에 따른 결제자금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정부차입 요구액은 증가될 수도 있다.

10.48 통계불일치는 비금융 계정(B.9)을 근거로 산정한 재정적자와 금융 회계계정(B.9f)을 근거로 산정한 적자 간의 차이를 지칭한다. 정부의 비금융 회계계정이 적자를 기록한다면 일반정부의 금융 회계계정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부채의 증가분은 재정적자 금액만큼 금융자산의 증가분을 초과해야 한다. 비금융 회계계정 및 금융 계정의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데 서로 다른 출처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활용되고 그에 따라 두 가지 재정수지로 구분되므로 B.9와 B.9f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0.49 유로존 회원국의 일반정부에서는 통상 화폐용 금과 보험책임준비금 등의 거래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10.50 가치평가 및 채무규모의 기타 변동을 의미하는 C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시가의 액면가치 조정
- 외화 보유손익
- 채무규모의 기타변동

10.51 일반정부 채무(및 채무 변동)는 액면가로 기록된다. 반면 ESA95의 금

17) 차입 요구액은 (EDP의 경우, 현금 및 예금, 용자, 채무증권으로 규정되는) 채무상품 형태인 부채의 거래 총액으로 규정된다.

용거래는 시장가(발생이자 포함)로 기록된다. 이러한 가치평가 방식의 차액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적자-채무 조정은 시장가의 액면가 조정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조정은 액면가와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신규차입 및 채무상환 또는 채무인수 등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즉, 액면가를 하회하거나 상회하는 채권의 발행과 상환에 대해서만 시장가의 액면가 조정이 적용된다.

10.52 외화로 표시된 일반정부 채무는 선물 파생상품이 아닌 한 재정상태표일 환율을 토대로 평가된다. 따라서 채무액이 일반정부의 재정적자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실제 차입시점과 재정상태표일 간의 외화 채무 거래금액이 다를 수 있다. 그에 따라 재정적자-채무 조정 시 외화 보유손익 또한 고려해야 한다. 선물 파생상품인 일반정부 채무는 선물 계약상의 환율에 따라 평가된다. 그러한 환율은 계약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는다.

10.53 재분류에 따른 채무의 변동은 채무규모의 기타변동으로 기록된다. 여기에는 통계 편제 시 일반정부 기관단위가 비정부부문 기관단위로 재분류되면서(또는 반대로 재분류) 발생하는 변동이 포함된다. 비정부부문으로 재분류된 기관단위의 부채는 더 이상 정부채무가 아니며, 일반정부 적자에 대응되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요소로도 금융 유량 및 부채 저장간 통계불일치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6. 기타 방법론

10.54 GFS 데이터는 일반정부 부문의 특정 사례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통계청(이하 Eurostat)이 ESA95에 관한 해석을 반영한다. EU 회원국 전반의 정부 재정적자와 채무를 일관되게 편제한다는 목표로 Eurostat는 경계가 모호한 거래를 명확히 규정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Eurostat는 내부 실무부서와 테스트포스 간의 협의를 거쳐 유럽집행부 산하기관이며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기관의 통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통화, 금융, 국제수지 통계위원회(the

Committee on Monetary, Financial and Balance of Payments, 이하 CMFB)¹⁸⁾에 자문을 제공한다. 그 다음 Eurostat는 단지 기술적 기준에 따라 거래를 최종적으로 규정하고 EU 각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방법론에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에 관해서는 <정부 재정적자와 채무에 관한 ESA95 지침>¹⁹⁾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10.55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대응과 그 대응 조치가 유럽의 금융기관, 정부, 중앙은행, 기타 금융시장 및 경제전반에 대해 안정조치를 시행한 정부당국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한 조치에는 (부분적인) 국유화, 자본투입(재자본화), 금융자산의 매입 및(또는) 교환 보증 제공(예금, 은행이 실시한 신규 채무, 은행 간 용자에 대한) 등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CMFB 위원들 간 정부의 몇 가지 회계처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입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Eurostat의 지침에 반영되었다.

E.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1. 개요 -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 및 ESA95 보고 프로그램

10.56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 EU 회원국 및 몇몇 기타 유럽 국가로부터 수집한 정부채무 데이터²⁰⁾를 발표한다.

18) <http://cmfb.org> 참조.

19) Eurostat 웹사이트의 정부 재정통계 항목은 <http://www.epp.eurostat.ec.europa.eu>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 이러한 데이터는 Eurostat의 웹사이트와 각종 발간물을 통해 발표된다.

- EDP 공지사항 표
- ESA95 보고 프로그램(ESA95 Transmission Program, 이하 ESA95TP)

10.57 EDP 체계(제5장 보론 참조)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 이전에 연간 정부 재정적자와 채무 데이터를 Eurostat에 보고해야 한다. 이 데이터는 4년분을 소급하여 제출해야 한다. Eurostat는 이처럼 각국이 보고한 정부 재정적자 및 채무 데이터를 명료화 작업을 거쳐 3주 후 발간한다.

10.58 EU 각 회원국의 국민계정은 ESA95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의 국가통계청 또는 (예외적) 정부가 지정한 기관(예, 중앙은행)이 개별적으로 편제한다.

10.59 Eurostat는 회원국별 재정적자와 채무를 통합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EU 총계를 편제한다. 회원국 간 보고 내용 및 시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보고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로 ESA95TP가 제정되었다. ESA95TP에는 부문별(일반정부 포함)로 세분화된 연간 금융계정 데이터가 포함되고, 비금융부문계정의 연간 및 분기별 데이터도 포함된다.

10.60 (위와 같이 EDP에 사용된 정의에 따라) 분기별 정부채무 데이터 및 분기별 정부 금융계정은 별도의 보고사항이다.

2. 채무 질문서의 구성

10.61 Eurostat는 EDP 및 ESA95TP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추가하여 매년 정부 채무구조에 관한 질의서를 각국 정부에 배포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EU 회원국의 채무 특성(상환일 및 표시 통화)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전년도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매년 초가을에 발표된다.

3. 채무통계 발간

10.62 채무통계는 Eurostat의 각종 간행물을 통해 배포된다.

- EDP 보고 표: EDP 관련 데이터는 매년 2회 3월 말과 9월 말에 Eurostat에 제출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ESA95TP를 통해 수집된 GFS 데이터와 완전히 부합하여야 한다.
- Eurostat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부 재정통계(GFS)
 - 분기별 정부채무 및 일반정부 금융 계정으로 구성된 분기별 GFS
 - 정부채무의 구조²¹⁾, 채무 표시통화, 정부보증 여부를 포함한 정부 재정적자 및 채무자료

10.63 연간 GFS 표는 4월 말과 10월 말, 연 2회 편제된다. 또한 분기별 GFS 표는 매년 4회 편제된다. 이러한 표는 정부 수익 및 비용, 재정적자/흑자,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 기타 금융자산 및 부채의 경제유량, 재정상태표를 통합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표에는 EU 회원국별 통화 100만 단위로 표시된 수치, GDP 대비 백분율 비중, 분기별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포함된다. 이 표는 유럽 GFS만을 위해 마련된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따라서 IMF에 제출되고 IMF가 발간하는 GFS 데이터와 일부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방법론

10.64 EU 국가의 재정적자와 채무데이터는 ESA95의 방법론 규정 및 EDP 관련 데이터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정부 재정적자 및 채무에 관한 ESA95 지침(ESA95 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 이하 MGDD)>은 정부 재정적자 및 채무산정 시 ESA95의 적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MGDD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Eurostat 및 유럽 각국에서 일

21) 일반정부 채무, 주 및 지방정부 채무, 사회보장기금 채무로 다시 분류된다.

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과 지침을 제공한다.²²⁾ 기존 지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장이 추가 보완되고 있다.²³⁾

10.65 MGDD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개념에 관한 지침 및 정부 재정편제 과정에서 회원국들에 의해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 출처와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는 지침들이 있다.²⁴⁾

- ESA95 금융 계정의 편제에 관한 데이터 출처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2판(Manual on Sources and Methods for the Compilation of ESA95 Financial Accounts, second edition)
- 정부기능별분류 편제에 관한 데이터 출처 및 방법에 관한 지침(Manual on Sources and Methods for the Compilation of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Statistics)
- 분기별 세금 및 사회보험료 편제에 관한 지침(Manual on Compilation of Taxes and Social Contributions on a Quarterly Basis)
- 분기별 일반정부 비금융계정 편제에 관한 지침(Manual on Quarterly Non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 분기별 일반정부 금융계정 편제에 관한 데이터 출처 및 방법에 관한 지침(Manual on Sources and Methods for Quarterly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10.66 Eurostat는 또한 다음의 방법론 관련 문서를 배포한다.

- GFS에 관한 결정사항(Decisions for GFS): Eurostat는 특정 거래유형의 기

22) MGDD와 ESA95의 지침이 상충될 경우, EU의 규정인 후자의 지침이 우선시된다.

23) 일반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증권화, 자본투입, 적립식 연기금의 분류와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금 지급의무의 이전에 따라 정부에 지급되는 일회성 자금, 정부 단위와 비정부 기관 간의 장기계약 등의 장이 추가된다.

24) 일부는 정부 채무통계의 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일부는 기타 GFS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있다.

록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거나, 또는 특히 복잡한 몇몇 사례를 다루는 등을 배포한다(문단 10.54~10.55 참조).

- EDP 및 GFS에 관한 회계규칙 지침(Guidance on Accounting Rules for EDP and GFS): Eurostat는 ESA95 및 MGDD 이외에도 특정 사안에 관한 주요 지침을 비정기적으로 발간한다.
- EDP 목록(EDP Inventories): 해당 문서는 Eurostat에 보고할 EDP자료편제 시 각 회원국이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와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 회원국에 대한 서면 조언: Eurostat는 EU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사례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쌍방 간에 교환된 서면을 발간한다.

10.67 이 정보는 Eurostat 웹사이트 상 정부 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F. 국제통화기금(IMF)

10.68 IMF는 공공부문부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다면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통계 방법 및 기준 개발, 이의 적용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교육, 통계 공표, 각국의 기준 준수 평가
-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과 감리의 통합²⁵⁾
- 제도적 절차, 채무구조, 채무운영, 조달 전략, 자본시장 개발, 채무재조정은 물론, 재정관리 측면까지 아우르는 채무 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교육

25) 감리는 IMF 협정 조항 의무 준수와 관련해 각 회원국의 정책을 감독해야 하는 IMF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IMF 협정 조항은 IMF의 목적, 원칙, 금융 구조를 명시한 국제조약이다.

1. 통계

a. 방법론

10.69 IMF는 다음과 같은 통계 분야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매뉴얼과 지침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그 밖의 국제기구들과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²⁶⁾

- 대외 부문
- 정부 재정
- 통화 및 금융
- 국민계정 및 물가

10.70 이러한 매뉴얼과 지침은 〈국민계정 최신판(2008 SNA)〉과 최대한 부합하고 있다.

b. 통계 기준 및 규범

10.71 IMF가 통계 공표 기준에 대한 작업에 착수한 것은 1995년 10월로, 당시 IMF 잠정위원회[Interim Committee, 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IMF가 경제 및 금융 통계 공표에 있어 회원국들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지지했다. 이러한 기준은 IMF 회원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통계공표기준(GDDS)과 국제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특별통계공표기준(SDDS)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0.72 IMF의 공표기준 게시판(Dissemination Standards Bulletin Board,

26) 이들 통계적 방법론은 모두 공공부문부채나 관련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든 다루고 있다.

DSBB)²⁷⁾은 회원국들이 일반인에게 경제 및 금융 통계를 공표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이 게시판은 SDDS, GDDS, 통계품질참조(Data Quality Reference, DQRS)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 SDDS는 경제 및 금융 통계 공표에 있어 국제 자본시장에 접근해 있거나 접근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1996년 마련되었다. SDDS 웹사이트²⁸⁾는 SDDS에 참여하는 IMF 회원국들이 공표한 경제 및 금융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GDDS는 회원국들이 일반대중에게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접근성 있고 신뢰할 만한 경제, 금융, 사회인구학적 통계를 공표하고자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1997년 마련되었다. GDDS 웹사이트²⁹⁾는 GDDS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생산하고 공표한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GDDS의 체계는 통계의 특성, 질, 접근성, 완결성 등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시경제, 금융, 사회인구학적 통계의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통계품질참조사이트(DQRS)³⁰⁾는 통계 품질에 대한 공동의 이해 제고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 통계 품질 문제 관련 기사, 기타 참조자료 출처 등 통계 품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73 IMF는 자료 공표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정 기준과 규범에 대한 회원국들의 준수 정도를 간략히 보여주는 기준 및 규범 준수에 대한 보고(ROSCs)를 한다.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 기준에 대한 각국의 준수 현황을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관련 당국과 기관들 사이의 정책 논의를 촉진하며 민간 부문(신용평가기관 포함)에서는 위험을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27) <http://dsbb.imf.org> 참조.

28) <http://dsbb.imf.org/Pages/SDDS/Overview.aspx> 참조.

29) <http://dsbb.imf.org/Pages/GDDS/WhatIsGDDS.aspx> 참조.

30) <http://dsbb.imf.org/Pages/DQRS/DQAF.aspx> 참조.

10.74 통계와 관련한 ROSC 데이터 모듈은 DQRS에 설명하고 있는 통계 품질 평가 체계(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DQAF)에 기반하고 있다. DQAF는 제도적 환경, 통계 절차, 통계 결과물의 특성 등 6개 측면을 기준으로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는 통합적이고 유연한 체계를 제공한다.

c. 정부 재정통계 발간

10.75 IMF는 정부 재정통계연감(GFS Yearbook)과 월간 국제금융통계(IFS)를 통해 채무통계를 포함한 정부 재정통계(GFS)를 공표한다. 이 두 간행물의 통계자료는 GFSM에 기초하여 발표된다.

10.76 GFS 연감은 회원국들의 일반정부 부문 및 하위부문의 연간 통계를 다루고 있으며, 인쇄물과 CD-ROM 형태로 공표된다. GFS 연감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세부적인 재정통계를 시계열로 편제한 것으로, 회원국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 편제된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몇몇 유럽 국가들의 자료 제출을 조정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 제출을 처리하는 데 GFSM 체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호환성을 높이고 있다. IMF는 국가 간 통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기술지원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GFSM 방법론은 물론 연간 GFS연감 통계 발간에도 기여하고 있다(아래 참조).

10.77 IFS는 GFS 연감보다 최신의 정부 재정통계를 더 자주 (즉, 월별 및 분기별) 제공하며, 인쇄물과 CD-ROM 형태로 공표된다. 일반정부 부문 및 하위부문의 통계를 다루는 GFS 연감과 달리 일부의 경우 중앙정부나 예산상 중앙정부(예, 예산외 부문 또는 사회보장기금 제외) 통계만 제공할 때도 있다. 더 자주 발간하는 IFS 정부 재정통계는 GFSM에 기초하여 발표하지만, 국가별로 기관의 포괄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10.78 IMF의 통계부(The Statistics Department)는 대외 및 공공부문부채통계의 수집 및 공표와 관련해 세계은행과 협력하고 있다(본 장의 세계은행 부분 참조).

d. 정부 재정통계 편제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0.79 IMF는 정부 재정통계(채무통계 포함)의 편제에 관해 기술적으로 지원하며, 회원국 관료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부채통계³¹⁾ 등 통계적 방법론 및 이의 적용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IMF는 공개 웹사이트³²⁾를 통해 자료와 통계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0.80 기술지원은 공식적인 통계의 수집, 편제, 공표를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한 것으로, IMF는 정확성, 포괄범위, 적시성 등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분류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보고 양식 및 스프레드시트 설계를 지원하며 통계적 절차 개선을 위한 중·단기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기술지원업무는 SDDS 요건 준수나 GDDS 참여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10.81 기술지원은 주로 IMF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단기 단일 주제 미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IMF는 다수의 주제와 관련한 통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거시통계 주요 분야에서의 제도적 절차, 방법론, 수집, 편제 실무 강화를 위한 전반적 평가 및 권고를 제공한다. 이러한 업무는 각 부문과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부문 간 일관성 있는 통계처리와 조정 절차를 검토하며 주제의 후속 미션을 포함한 통계 개선을 위한 중·

31) IMF의 기술적 지원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의 주소로 문의하면 된다.
The Director, Statistics Depart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431, USA.

32) <http://www.imf.org/external/data.htm> 참조.

단기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10.82 IMF는 워싱턴 D.C. 소재 IMF 연구소(IMF Institute)와 각 지역 교육센터를 통해 통계 방법론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제공한다. 1~6주 과정으로 실시되는 이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강의, 토론, 실무 연습, 사례 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의 중에 참여자들에게는 자국에서 업무 중 실제로 직면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 공공부문부채 감리 및 관리

10.83 IMF는 감리,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효과적인 공공부문부채관리를 위한 회원국들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 감리

10.84 양자 간 감리하에서는 채무 지속가능성(본 지침 제9장 참조), 채무구성, 채무구조, 채무전략, 채무시장, 채무제도, 채무통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회원국들이 개최하는 IMF의 IV조 협의³³⁾에 전달된다. 또한, 채무 상환선에 대한 IMF의 신규정책 적용 시 채무관리 능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진다. 채무관리 및 채무시장 관련 사안들의 경우, IMF와 세계은행의 공동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10.85 다자 간 감리 범주에서 채무시장의 주요변화 및 채무관리 현안들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33) IV조는 IMF 직원들과 개별 회원국 대표들이 해당국의 경제 및 금융 정책 관련 사안들을 정기적(통상 연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각 회원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강력한 감독 권한을 IMF에 부여한 IMF 협정 조항 IV조(개정 조항, 1978년부터 발효)에 근거하고 있다.

- 채무 자본시장 관련 민간부문과 연례 IMF 공공채무 관리자 포럼논의
- 세계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정기보고

b. 공공부문부채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0.86 IMF는 통계시스템을 제외한 공공부문부채관리의 모든 측면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기술지원은 법적 및 통계적(위의 ‘통계’ 참조) 측면뿐 아니라 공공부문부채관리체계³⁴⁾에 초점을 맞춘다.

10.87 대부분 기술지원은 IMF 직원들과 각국 중앙은행, 재무부, 채무관리기구 소속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미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종종 채무관리 전문가들이 개별 국가에 파견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들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IMF의 지역 기술지원센터(RTACs)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지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10.88 IMF는 워싱턴 D.C. 소재 IMF 연구소와 각 지역 교육센터를 통해, 각 지역 기술지원센터 및 세계은행 등 기타 다자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근에 통합 발족한 IMF-세계은행 중기채무관리전략(Medium-Term Debt Management Strategy, MTDS)³⁵⁾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선택할 수 있으며 채무관리, 채무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채무전략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다룬다.

i. 공공부문부채관리를 위한 전반적 체계

10.89 IMF는 공공부문부채관리를 위한 전반적 운영 체계와 관련해 정책자문, 기술지원, 교육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34) 여기에는 채무전략, 채무 포트폴리오 내 위험 측정, 채무-통화-금융 안정성 간의 상호작용, 채무시장 개발, 부채관리 등이 포함된다.

35) MTDS에 대한 논의는 본 지침의 제9장 참조.

- 채무 및 부채관리, 자산 및 부채관리, 재정상태표 위험관리,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기술자문 및 분석기준이 된다.
- 세계은행과 공동 개발한 <공공채무 관리지침(Guidelines for Public Debt Management)>³⁶⁾뿐만 아니라, <국채 시장개발에 관한 소책자(Developing Government Bond Markets: A Handbook)>³⁷⁾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다.

10.90 공공부문부채관리를 위한 전반적 체계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채무관리를 위한 제도체계
- 채무관리전략(채무 포트폴리오 위험평가, 발행 및 조달전략, 조달수단 선택, 국제 자본시장 접근)
- 채무시장 개발
- 부채관리(채무재조정과 채권자 관계 포함)
-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책임준비금 및 조정, 준재정 및 우발위험(부채)관리 및 파악 등]

이러한 업무의 목표는 회원국들이 국가재정상태표의 완결성을 유지하고 이들의 채무전략과 보다 광범위한 국가재정상태표 위험관리가 정책적으로 적절히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10.91 통상적인 기술지원은 공공부문부채관리 및 채무시장 개발을 위한 체계 전체를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범위는 채무관리 목표의 적절성, 포괄범위, 법적체계, 채무관리 전략 및 채무운영 등이 있다. 제도적 체계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내 기능에서 재정운영에 더 초점을 두는 채무관리기구 또는 독립 채무관리기구로의 변화 등 채무관리 기능의 변화에 따라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³⁸⁾ 따라서 이 분야의 기술지원은 일차적 목

36) <http://www.imf.org/external/np/mae/pdebt/2000/eng/index.htm> 참조.

37) <http://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cfm?sk=15114.0> 참조.

표로 제도적 체계가 변화하는 채무관리 기능을 최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타 기능(통화, 재정, 사업계획 및 선정)과의 조정은 매우 중요하다.

10.92 세계은행과 공동 개발한 ‘중기채무관리전략(MTDS) 툴 킷’을 적용해 MTDS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 이를 집행하는 것은 중요한 지원업무중 하나이다.³⁹⁾ IMF와 세계은행은 기타 국제 기술지원 협력기관들과 함께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을 대상으로 공동미션을 수행한다. 이 체계는 다양한 전략에서 최상의 비용-위험 간 상충관계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채무를 유지하면서 파산(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10.93 채무시장개발은 공공부문채무에 대한 수요증대를 진작하고 민간 금융부문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채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은 통상 전반적 채무관리 전략의 맥락에서 제공되지만 개별적으로도 실시되며, 기술지원은 다음과 같은 주제와 연계되어야 한다.

- 발행 및 유통 자본시장 개발(국내정부 입찰, 주요 딜러 네트워크, 결제시스템, 채무투자자 기반)
- 최초 채권발행자에 대한 조언 제공
- 채무 및 통화 관리 조율

10.94 지원은 일반적 채무관리(예, 채무환매, 채무교환, 기준물)나 보다 근본적인 채무포트폴리오 재조정의 일부인 공공부문부채의 자본시장 내 상호작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채무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통상 경제의 회생가능성을 높이는 IMF 지원 경제 프로그램

38) 채무관리청의 주요 기능은 본 지침의 제6장에 설명되어 있다.

39) MTDS 툴 킷에는 각 회원국 당국을 위한 사용지침, 분석 스프레드시트 및 사용자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http://www.imf.org/external/pp/longres.aspx?id=4326> 참조.

램의 맥락에서 실시된다.

10.95 채무 및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 및 모델링에 기반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는 중요하다. 이러한 업무에서는 위험관리 능력제고, 채무와 자산 최적 조합 구성, 이를 위한 채무 및 자산 관리 운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ii. 공공부문부채관리를 위한 재정체계

10.96 IMF는 또한 재정관리 전반(채무관리가 그 밖의 공공 재정활동에 통합)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부채관리의 재정정책 측면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이 업무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특히, 중기재정전략 수립의 맥락에서, 재정 및 채무 지속가능성
-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준칙(채무준칙 포함)
- 재정위험 관리
- 현금 및 채무관리 조정
- 재무부 기능 전반
- 재정개혁의 제도적 측면

10.97 IMF는 재정적자 및 채무경로 설정을 위한 재정체계 설계와 채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전략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10.98 제9장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문은 우발부채 및 재정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관리가 포함된다. 재정위험에 대한 자문은 국가 재정상태표의 규정 방법과 채무 포트폴리오의 인지 및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 또는 국가 하위부문의 정부보증과 같은 직접적 우발위험은 등록과 보증 수수료를 통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암묵적 재정위험은 분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예로는 중앙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부

보증, 민관협력사업(PPP)과 같은 정부사업의 노출위험이 포함된다.

10.99 기술지원은 현금흐름 계획 및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제공되며, 이는 채무 포트폴리오 관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재무부의 현금흐름 유출입 중 가장 큰 부분은 채무조달 및 채무상환과 관련된다. 정부가 현금 계획의 정확성에 대해 충분히 확신한다면 단기 자금시장 및 증권시장을 통해 현금 흑자 및 적자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온전히 조정되어야 한다.

10.100 공공부문의 제도적 절차의 개혁에 관한 기술지원은 채무관리기구(DMO) 및 현금관리단위 설립, 이와 관련된 재무부, 관련 부처, 중앙은행, 금융 부문 및 금융 시장과의 관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101 OECD는 정부 채무와 관련해 두 가지 통계를 생산한다. 하나의 통계는 중앙정부 채무(Central Government Debt)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채무 관리에 대한 실무위원회(Working Party on Public Debt Management, WPDM) 주도로 특정 중앙정부 채무상품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또 다른 통계는 금융통계에 대한 실무위원회(Working Party on Financial Statistics, WPFS) 주도하에 생산되는 것인데, 일련의 재정상태표(SNA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정상태표는 일반정부 및 하위부문의 부채(및 채무)에 대한 정보를 금융상품별로 분류해 제공한다. 이 두 실무위원회(WPDM 및 WPFS)의 모위원회는 금융시장 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Markets)이다.

1. OECD의 중앙정부 채무 관련 업무

a. 배경

10.102 OECD는 WPDM을 통해 공공 채무관리 및 정부 증권시장 분야의 기술적, 정책적 사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WPDM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OECD 고위 채무관리자들에게 실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기전략의 일차적 초점은 이러한 실무적 접근을 강화하는 데 있다.

10.103 WPDM은 출범 이후 정부 고위 채무관리자들에게 정부 채무관리 및 정부 증권시장과 관련한 자신들의 견해와 경험을 비공식적이고 솔직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를 위해 WPDM 연례 총회(및 세계 포럼)에서는 정부 채무정책 및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면밀히 반영한 의제들을 다룬다. 이에 따라 WPDM은 정부 채무상품의 비용 효과성, 전자지불시스템 사용, 채무관리기구(DMOs)의 구성, 국가 자산/국부 관리차원의 채무관리자(DMs)의 역할, DMOs의 성과측정, 새로운 발행기법, 정부증권의 발행 및 유통시장 조직, 위험 관리의 발전, 현금관리 조직, 파생상품의 역할, 우발부채 측정 및 관리차원의 DMs의 역할 등 다양한 정부 채무정책 관련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104 이를 통해 WPDM은 특별한 정부활동 및 정책 영역에 관한 고유의 공신력 있는 최신 정보의 편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WPDM의 두 번째 목표는,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매우 전문적인 정부 정책분야의 OECD 채무관리자들 간 논의를 바탕으로 선도적 관행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WPDM은 국제 채무관리자에서 단일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실상 국제기준으로서 기능하는 일련의 선도적 관행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왔다. WPDM 중기전략의 두 번째 초점은 이러한 선도적 관행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표하는 데 있다.

10.105 이머징 마켓 채무관리자들은 발행 및 유통 채무시장 운영, 정부 채무관리 정책 등과 관련한 선도적 관행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WPDM은 이를 위해 일부 지역 및 세계 정책포럼에서 1990년부터는 ‘과도(transition) 국가’들과, 그 이후에는 이머징 마켓과 정책적 대화의 장을 열었다.⁴⁰⁾ 그 결과, 이머징 마켓 채무관리자들과 기타 금융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WPDM이 보유한 정보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WPDM의 세 번째 목표는 WPDM 세계 정책포럼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머징 마켓 정책결정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세계포럼에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채무 관리자들이 OECD의 관행과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포럼 회의에서는 WPDM에서 논의된 주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논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WPDM 중기전략의 세 번째 초점은 기존의 두 개 세계포럼을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다.⁴¹⁾ 또한 OECD 비회원국 채무 관리자 및 기타 관련 다자간 기구와의 관계 강화 및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10.106 OECD는 OECD 회원국과 아프리카 국가의 중앙정부 채무통계를 편제하고 공표한다.⁴²⁾

b. 중앙정부 채무: OECD 국가 통계연감

10.107 OECD’s 중앙정부 채무: 통계연감을 통해 OECD 회원국들의 광범위

40) 예를 들어, OECD는 이탈리아 재무부와 함께 이머징 마켓 공공 채무 관리 네트워크(Network for Public Debt Management in Emerging Markets)를 구축했다. 이 네트워크는 모든 공공부문부채 관리 측면에서의 경험과 지배 관행과 관련해 WPDM가 보유한 정보에 지속적인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http://www.publicdebttnet.org/public/> 참조.

41) 연례 OECD/세계은행/IMF 글로벌 채권시장 포럼과 연례 OECD 글로벌 공공 채무 관리 포럼을 지칭한다.

42) www.oecd.org/daf/publicdebtmanagement 참조.

한 중앙정부 채무통계를 연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이 연감은 OECD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발간되며 정책 결정자, 채무관리 전문가, 시장분석가 등과 같은 이용자들의 분석적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한다.

10.108 통계연감과 그 기반이 되는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모든 OECD 회원국의 시장성, 비시장성 중앙정부 채무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양적 정보 제공
- 정책결정자, 채무관리 전문가, 시장분석가 등 이용자의 분석적 수요 충족을 목표로, 예산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OECD 회원국 정부의 차입 수요에 대한 정보 제시.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채무연감은 OECD국가들의 정보 포함
- 상품별 미상환 잔액
- 시장성, 비시장성 중앙정부 채무의 상품별 총 발행액 및 순 발행액
- 국내, 대외, 총채무의 듀레이션 및 평균상환기간
- 투자자 유형별(거주자 및 비거주자) 미상환 잔액

10.109 통계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⁴³⁾의 채무발행만을 대상으로 주 및 지방정부의 채무, 사회보장기금은 제외한다. 다음의 개념이 사용된다.

- **시장성 상품**은 단기 금융시장 상품(예, 단기 재정증권, 기업어음)과 채권(고정이자율 수익 상품, 더 세분화하면 단기, 중기, 장기 채권, 지수연동채권, 변동이자율 채권) 등으로 구성되며, 장기채권 및 지수연동채권의 만기에 대한 세부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기타 정보도 제공되는데, 비거주자 보유 시장성 채무 총액, 외화표시 시장성 채무 총액, 시장성 채무의 가중

43) 중앙정부 하위부문은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NPI)을 구성하는 기관단위들로 정의된다. 중앙정부는 해당 국가 내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거주자 및 비거주자 단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평균만기 및 가중평균수익률 등이다.

- **비시장성 상품**은 저축채권 및 기타 비시장성 상품으로 구성된다.
- **듀레이션**은 중앙정부 채무의 듀레이션으로, 맥컬리 듀레이션이나 수정 듀레이션 기법을 통해 산정된다.
- **상환기간**은 어떤 금융상품이 상환되거나 만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지칭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만기구조로 해당 상품의 만료나 상환시점까지 남은 기간인 잔존 만기를 사용한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의 경우, 원 만기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주를 통해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명시한다.
- **명목가치**는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치, 즉 특정 시점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진 금액을 나타낸다. 명목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가 사용될 경우, 각주에 방법론을 명시한다.

10.110 통계는 OECD의 정부채무관리에 대한 실무위원회(Working Party on Government Debt Management) 주도로 설계된 설문지에 기반하여 각 국가로부터 수집된다. 그 개념과 정의는 가능한 한 SNA93을 따르고 있다. 개별 국가 통계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포괄적 기준체계에 표시된다.

10.111 통계에 첨부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각주, 메타데이터는 각 국가 채무상품의 세부내용, 채무상품 판매기법 및 기관과 규제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0.112 1980년부터의 통계를 제공하는데, 통계는 각국 통화 및 미국 달러와 해당 회계연도의 GDP 대비 비중으로 표시된다. 각주에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파생금융상품은 제외된다.

c. 아프리카 중앙정부 채무: 아프리카 국가 통계연감

10.113 OECD's 아프리카 중앙정부 채무: 통계연감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앙정부 채무상품에 대한 정보를 연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이 연감은 OECD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발간되며 정책결정자, 채무관리 전문가, 시장분석가 등 사용자들의 분석적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한다.

10.114 통계연감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앙정부 채무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감은 2003년부터의 통계와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이들 통계는 해당 회계연도의 각국 통화 및 유로화로 표시된다. <아프리카 중앙정부 채무: 통계연감>은 아프리카 각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 시장성, 비시장성 채무의 미상환 잔액
- 시장성, 비시장성 중앙정부 채무의 누적액 및 감소액
- 시장성, 비시장성 채무의 상환기간 및 평균재조정기간
- 자국 통화표시 시장성 채무의 소유권
- 이자율[유통시장의 만기수익률(YTM)]

10.115 통계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 채무발행과 중앙정부에 제공된 양자간, 다자간, 양허성 융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 및 지방 정부, 사회보장기금은 제외한다.

10.116 2010년 기준, 통계연감은 앙골라, 카메룬,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등의 국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10.117 통계는 OECD 주도로 설계된 설문지에 기반해 각 국가로부터 수집

된다. 개념과 정의는 가능한 한 국민계정체계 1993(SNA93)을 따르고 있다. 개별 국가통계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포괄적 기준체계에 표시된다.

10.118 통계에 첨부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각주는 각국 채무상품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상품의 발행 및 유통시장, 기관 및 규제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품과 정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아프리카 각국의 채무관리기구로부터 수집된다.

2. 재정상태표 관련 활동(SNA)

a. 배경

10.119 WPFS는 OECD 회원국들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키고 이들 국가의 실물경제와 금융활동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OECD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WPFS는 SNA 회계장부의 일부인 재정상태표를 포함한 금융통계 및 방법론 정보의 수집을 모니터링한다.

b. 일반정부 및 그 하위부문의 채무

10.120 일반규칙에서 SNA의 항목들은 연결기준의 기록이 아니다. 하지만 특정한 분석목적상, 특히 일반정부 부문(S13)의 항목들은 연결기준⁴⁴⁾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OECD 재정상태표는 일반정부 부문 및 그 하위 부문이 보유한 금융자산 및 부채의 저량을 연결 및 비연결 기준으로 기록한다.

10.121 여기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⁴⁵⁾

44) 연결은 동일 부문이나 하위부문에 속한 단위들 사이의 거래와 저량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45) 모든 개념과 정의들은 SNA93을 따른다. 단, 상당수는 2008 SNA와 일치한다.

- **기관부문은 일반정부 부문(S13)과 그 하위부문(S1311, S1312, S1313, S1314)의 다섯 가지 범주의 기관단위로 구성된다.** 다섯 가지 범주가 합쳐져 총 경제부문(S1)을 구성하며, 반면 모든 비거주 기관단위는 해외부문(S2)에 해당된다.
- **일반정부 부문(S13)은 개인 또는 집합적으로 소비되는 시장외적 재화 및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면서 관련 활동을 관리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정부 실체와 정부단위가 통제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들로 구성된다.** 이들 기관단위들의 산출물은 거의 대부분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공된다. S13부문은 중앙정부(S1311), 주정부(S1312), 지방정부(S1313), 사회보장기금(S1314)으로 분류된다.
- **저량은 특정 시점의 금융자산 및 부채금액을 표시하고 있다.** 재정상태표는 수지항목, 순금융자산이 포함된다(제3장 참조).
- **금융자산 및 부채는 유동성에 근거하여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SDRs, F.1), 현금 및 예금(F.2), 주식 외 유가증권(F.3), 용자(F.4), 주식 및 기타 지분(F.5), 보험 책임준비금(F.6), 기타 미수/미지급 계정(F.7) 등 하위 그룹으로 일곱 가지 상품 범주로 분류된다.** F.1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상응하는 부채가 존재한다.
- **일반정부 총채무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의 하위 부문으로 구성되는 일반정부 부문(S13) 내 모든 기관이 보유한 상품(AF.2~AF.7)의 총부채(단기 및 장기)를 의미한다.** 중앙정부 총채무는 중앙정부 하위부문(S1311)의 총부채를 지칭한다.
- **동일 부문의 하위부문 간, 동일 하위부문의 기관단위 간 금융자산 및 부채의 연결계정** 저량은 제거된다. 이러한 계정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재정상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 **가치평가는 SNA에 명시된 일반적 가치평가기준에 따라, 정규금융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될 때마다 현재 시장가격을 반영한다.** 또한, 금융자산 및 부채가 자산으로 표시되든지, 부채로 표시되든지 재정상태표에서 동일한 가치이다.

10.122 통합 OECD/유럽연합 통계청 설문지(Joint OECD/Eurostat questionnaire)에 기반한 통계는 각국 중앙은행, 통계청 등으로부터 수집되며, 이 통계는 모든 OECD 국가의 재정상태표에서 확보할 수 있다.

H. 파리클럽 사무국

10.123 파리클럽은 아르헨티나가 양국 차원의 단일채권국을 접촉했던 1950년대부터 양국 간 공식채무의 기한을 일괄적으로 재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파리클럽은 수출신용 보증 및 정부 간 용자와 관련된 채무면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채권국(주로 OECD 회원국)들의 임시조직이다.

10.124 파리클럽 공식채권국에 대한 채무는 1997년 러시아가 가입한 이후 파리클럽을 통해 재구성되었다. 상업은행에 대한 채무는 상업은행 컨소시엄을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용자기관의 신용 및 파리클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채무는 통상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 재구성된다.

1. 파리클럽

10.125 파리클럽은 채권국들로 이루어진 비공식기구이다. 프랑스 재무부가 상설 사무국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무부 고위 관료가 의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프랑스 이외의 채권국을 대신하여 파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상임 회원국은 총 19개국이며, 특정 국가의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대해 상당한 채권을 갖고 있는 비상임 채권국들이 회의⁴⁶⁾에 참여할 때도 있다.

46) 2010년 현재, 파리클럽의 상임 회원국은 아니나 일부 합의에 참여한 국가는 아부다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한국, 쿠웨이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등이 있다.

파리클럽은 사실상 매달 파리에서 회의를 갖고 상임 회원국의 채무 관련 사안과 특정 채무국의 채무재조정에 관하여 논의한다.

10.126 파리클럽 회원인 상대 채권국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은 파리클럽 의장을 접촉하여 채무면제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국가가 IMF로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자금조달이 필요하여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채권국은 월간 회의를 통해 해당 채무국의 채무면제 신청을 검토한다. 채권국의 숫자가 매우 적을 경우, 대면 협상이나 서면을 통해 합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파리클럽은 채무국 정부 및(또는) 공공부문이 채권국 또는 채권국 기관에 발생시킨 (상환을 약속하거나 보증한) 채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채무에는 통상 정부 보증 수출 신용 및 양국 간 융자가 포함된다. 파리클럽 채권국의 대표들은 채무면제가 적용되는 기간[연결기간(consolidation period)], (기존 상환일, 연체액, 기존 재조정 적용 여부를 감안하여) 대상 채무, 연결채무에 대한 상환조건(유예기간, 상환기간) 등을 결정한다.

10.127 파리클럽에 의한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예정된 채무상각 및 대상 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이자의 상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유량처리
- 재조정 프로세스를 탈피할 수 있을 만큼 파리클럽에 대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여준 국가의 특정 일자 미상환 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하는 저량처리

10.128 파리클럽 협상을 통해 다자간 합의서(합의 의사록)가 작성되며, 이어 채무국은 채권국 신용기관과의 양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조정된 채무의 이자율(재조정 이자, moratorium interest)은 파리클럽이 아닌 양국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시장이자율을 반영한다.

10.129 파리클럽 채권국은 채무면제 프로세스 초기에 ‘기산일(cutoff date)’을 정한다.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용자계약은 파리클럽⁴⁷⁾에 의한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국은 기존 일정대로 신규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신뢰도를 재구축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채무면제 기간은 파리클럽 합의가 연이어 체결될 경우 수년 씩 연장되기도 하지만 통상 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10.130 1980년대 들어 외채규모가 큰 저소득 국가 일부가 유동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불능력 위험에 직면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파리클럽은 오랜 기간 동안 저소득 국가에 대해 채무재조정 조건을 점차 양허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상업채권에 대한 채무 감면수준은 1988년 토론토 조건의 33.33%에서 1991년 런던 조건의 50%, 1995년 나폴리 조건에서는 50%에서 67%로, 1996년 리용 조건의 80%, 1999년 쾰른 조건의 경우(고채무 빈곤국가 채무면제 계획에 따라 필요 시) 90% 이상까지 계속 확대하였다.

10.131 1996년 고채무 빈곤국가(HIPC)에 대한 채무면제 계획이 수립되어 사상 최초로 다자간 채권국들이 특정 채무국에 대해 채무면제를 실시하게 된다. 파리클럽은 HIPC 채무면제계획의 일환으로 과거에는 리용 조건, 현재는 쾰른 조건을 적용하여 채무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10.132 파리클럽 채무면제의 혜택을 받는 국가는 기타 대외채무국으로부터도 유사한 재조정조건을 적용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단, 고채무 빈곤국가 채무면제 계획에 따라 자격이 되는 채무국에만 채무면제를 제공하는 다자간 채권국은 제외). 이는 파리클럽에 속하지 않으며 통상 채무국과 양국 차원에서 협상하는 양자 간 채권국은 물론 민간 채권기관(채권업체, 은행, 채권보유자 등)에 해당된다.

47) 고채무 빈곤국가 채무면제 계획의 강화에 따라 계획 완료시점에 해당 채무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차입계약의 파기가 필요하다고 간주될 때는 기산일 이후 서명된 차입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10.133 고채무 빈곤국가 채무면제 계획은 채권국이 채무 처리방안을 결정할 채무국별 맞춤형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따라서 파리클럽은 2003년 10월 파리클럽에 소속된 채권국은 고채무 빈곤국가가 아닌 채무국에 대하여 ‘에비앙 접근법(the Evian Approach)’이라는 새로운 채무조정 방식을 채택했다.

10.134 파리클럽 합의서에는 채무-전환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통상 전체 상업채권의 20% 한도로 한다. 양국 차원의 파리클럽 채권국은 채무-전환거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파리클럽은 1997년부터 채무국의 채무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파리클럽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일부 채권을 시장가치로 조기상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 상업은행 채무면제

10.135 상업은행은 다자간 채무면제 시 공식 채권국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별 채권국이 수출보험공사를 내세워 협상에 참여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국유 상업은행의 채권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대신 개별 채권은행이 최종 합의서를 승인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융자 은행단(loan syndication)에 참여하는 은행 수는 통상 수백 개 정도 된다.

10.136 협상 패턴은 1970년 필리핀과 상업은행으로 이루어진 채권은행단 간의 합의를 통해 확립되었다. 채권은행단은 주요 채권은행을 대리하는 십여 명으로 구성된 (런던클럽으로 알려진)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사안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각국 은행에 적용되는 다양한 세제와 규제 체제를 감안하기 위하여 통상 컨소시엄에 포함된 은행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회는 채무국 대표단과 ‘원칙 합의서’ 마련을 위해 협상한다. 채권은행에 의해 만장일치로 승인된 후 합의서가 서명된다. 수수료 및 연체 지급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합의서가 효력을 갖는다. 공식채권국에 의한

채무재조정의 경우, 상업은행의 채무면제는 통상 IMF 합의에 따라 채무국 조정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파리클럽 채권국과는 달리 런던클럽은 ‘기산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10.137 상업은행 합의서에 따라 원금은 재구성되고, 기존 이자비용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 파리클럽 합의서와 같이 단기채무의 연결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그러나 연체금의 대부분이 단기채무에서 발생한 경우, 통상 재구성 외 대안이 없다). 상업은행의 채무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계획안은 브래디 플랜(Brady Plan, 1989)이다. 시장기반의 채무재조정 계획에 따라 채권은행은 다양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채무국 정부가 채권은행 단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할인율로 채무를 재매수하는 채무 환매(buyback), 가격이 할인되었으나 시장이자율을 제공하는 할인채권과 채무를 교환하는 방식, 시장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제공하는 이자감면채권(interest-reduction bond)과 액면 교환방식이 포함된다. 할인채권 및 이자감면 채권의 원금 전액과 이자비용 일부는 미국정부의 무이표채권을 담보로 보증되었다.

I.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10.138 UNCTAD는 채무문제의 통합처리를 위한 UN의 핵심기구이다. 채무 및 개발 재정부(이하 DDFB)를 통해 UNCTAD는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연구와 정책분석에 관여한다.

10.139 UNCTAD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개발도상국과 제전환국의 대외채무 문제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례보고서는 최근의 동향과 새롭게 부각되는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UNCTAD는 또한 유엔총회에서 채무에 대한 의제사항을 숙고할 수 있

도록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다.

10.140 이에 추가하여, UNCTAD는 그 중에서도 채무관리에 대한 제도적 합의를 비롯해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국내채무, 채권시장에 대한 분석 체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10.141 UNCTAD는 지속가능한 공공채무 전략을 수립하고 파리클럽 채무재협상과 같은 관련 협상을 설계하는 데 있어 채무국에게 선별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DDFB는 책임 있는 국가 용자와 차입 및 공공채무 위험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

10.142 UNCTAD의 DDFB는 또한 개발도상국이 효율적으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협력은 채무관리 및 재정분석시스템(DMFAS)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

1. 채무관리 및 재정분석시스템(DMFAS)의 개요

10.143 UNCTAD의 채무관리 및 재정분석시스템(Debt Management and Financial Analysis System, 이하 DMFAS)은 1980년대 초반 이래 각국 정부의 채무관리 능력을 개선하는 데 성공적인 지원을 해왔다. 2010년 들어, 66개국과 102개 기관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지난 3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채무여건이 진전됨에 따라 DMFAS 프로그램은 각국의 변화하는 채무관리 수요에 맞게 기술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10.144 DMFAS 프로그램은 관리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입증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공공부채를 관리하고 정책결정자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채무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채무관리 소프트웨어인 DMFAS는 채무관리기관의 업무를 더욱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채무관리에 대한 자문서비스와 교육이 포함된다.

10.145 DMFAS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각국의 새로운 요구 사항과 채무관리에 있어 모범사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는 기술 협력사업과 국제/지역 간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여러 국가들과 공유한다. 국제연합(UN)의 주요 업무로서 프로그램의 기술지원은 어떤 국가이든 요청하면 제공된다. 또한 아랍어, 영어, 프랑스 및 스페인어 버전으로 제공된다.

10.146 DMFAS 프로그램은 업무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가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DMFAS 사용국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10.147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 기능을 제공한다.

- DMFAS를 통한 역량강화로, 채무 전략을 수립하고 사용자 교육에 참여하는 채무관리자와 운영, 통계, 분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다.
- 프로그램 자문서비스를 통한 역량강화로, 수요평가 및 채무관리 기술, 행정, 법률, 제도상 문제에 대한 조언과 소프트웨어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 채무관리기술에 관한 역량강화로, 프로그램의 채무자료검증, 통계 및 채무 분석관련 모듈을 통해 이루어진다.

10.148 DMFAS 채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본 장의 보론에 제시한다.

2. DMFAS 자문서비스

10.149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UNCTAD는 자국 채무관리능력에 대한 수 요평가를 해야 한다. UNCTAD와 정부는 협력하여 DMFA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개선 가능한 채무관리 분야를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된 활동은 기술협력사업문서(technical cooperation document)에 개략적으로 명시하여 잠재적 자금지원 기관에 제공한다. 사업집행은 해당 문서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UNCTAD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 중 DMFAS 시스템의 설치와 사용, 기타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채무전략, 의사소통과 정보흐름, 조달 기술, 신용분석 및 채무 재협상 등의 조언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문활동은 각 사업이 끝난 뒤에도 업무지원 등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3. DMFAS 교육 및 역량강화

10.150 프로그램은 기타 시스템의 분석과 연계를 통해 다른 유형의 채무상품과 서로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고안된 다양한 보고서의 생성을 포함하여 DMFAS 시스템의 기능 및 기술 교육에서 분석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교육과 폭넓은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채무자료 평가, 채무통계 및 채무포트폴리오분석 분야에서 포괄적인 역량강화 모듈을 제공한다. 이 모듈은 정부당국이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적용하여 사전에 설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정부(통상 재무부 및(또는) 중앙은행 총재)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산출물이 나오도록 전념해야 한다. 이러한 산출물은 자료 검증 일정표, 채무통계 분석자료 및 채무 포트폴리오 검토를 의미하며,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0.151 상향식 접근방법은 이러한 역량강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적용된

다. 이 방식은 우선 채무 데이터베이스 생성(DMFAS 소프트웨어 설치, 교육, 채무 정보 등록, 채무자료 검증)을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채무통계의 작성 및 생산에 대한 교육(채무통계 분석자료 포함), 채무 포트폴리오 분석(채무 포트폴리오 구성의 적정성) 수행 및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육은 국가적, 지역적으로 제공된다.

4. UNCTAD's 채무관리 회의

10.152 UNCTAD는 2년에 한 번 채무관리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대부분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민간 금융 및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한다. 이 회의는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궁극적 목표 아래 채무관리 및 재정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다수의 핵심사안에 관해 국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이 회의는 글로벌 채무관리자와 정책결정자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5. 기타 활동

10.153 DMFAS 프로그램은 채무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 여타 국제기구들이 지원한다. 중요한 기구 중 하나는 세계은행의 채무관리기구(이하 DMF)이다. 이 기구의 두 가지 중요한 산출물은 국가의 채무관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채무관리 성과평가(이하 DeMPA)툴과 채무전략을 개발 및 갱신할 수 있도록 국가들을 지원해주는 엑셀 기반의 도구인 중기채무전략(이하 MTDS)이다.

10.154 UNCTAD는 최고 감사기구가 공공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INTOSAI 개발 계획(이하 IDI)을 광범위하게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공식 양해각서를 통해 제공되며, 이러한 양

해각서에 따라 DMFAS 프로그램은 교육자료 개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의 감사관들에게 광범위한 교육 실시, 국가 감사 계획 초안 검토, 이러한 모든 활동에 관련된 지원 이행을 위해 IDI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IDI 채무관리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이다. DMFAS 소프트웨어는 IDI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량한다.

6. DMFAS 및 공공부문부채통계 지침

10.155 DMFAS 시스템은 <공공부문 부채통계지침(PSDS)>에 부합한다. 핵심 개념 정립 노력은 일관성이 있으며, 정의, 포괄범위, 가치평가, 현재가치 산정, 분류, 보고 등이 포함된다.

- **정의:** 채무, 공공부문부채 및 관련 용어에 관한 모든 정의는 일관성을 지닌다.
- **포괄범위:** DMFAS는 공공부문부채통계지침에 포함된 대부분의 상품을 다룬다. 공급자로 인해 발생한 연체를 비롯해 상품에 관한 일부 정보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입수 가능한 자료는 포함될 수 있다.
- **가치평가:** 저량과 유량의 가치평가는 일관성을 지닌다. 저량은 기말 환율로 평가되며, 거래는 거래 당일 환율로 평가된다. 또한 상품에 대한 시장 가치평가가 가능하다.
- **현재가치:** 현재가치 산정은 DMFAS에 통합되어, CIRRs과 같이 요청에 따라 일련의 특정통화 이자율이 사용된다.
- **분류:** DMFAS는 채무자 부문, 상품, 만기(당초 및 잔존)를 포함하여 공공부문부채통계지침에 포함된 모든 분류를 포함한다. 이에 더해 채권자, 지급 보증상태, 경제부문을 비롯한 많은 다른 유형의 분류들이 포함된다.
- **보고:** DMFAS는 공공부문부채통계지침의 핵심표에 부합하는 일련의 포괄적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유연한 보고방식으로 이용자가 맞춤형 보고서를 제작하며, 기관/국가의 부가적인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

기 위해 상당량의 보고서를 산출한다.

J. 세계은행

10.156 세계은행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채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배포한다. 이러한 자료는 분기별로 수집 및 발간된다. 해당 자료는 본 지침에 기초한 분류기준과 정의에 부합하고, 기타거시경제자료의 분류와 정의에 부합한다. 이러한 거시경제자료에는 SNA, 국제수지통계 편제기준(BPM), 대외채무통계(EDS), 정부 재정통계 편람(GFSM), 증권통계 지침, 통화 및 금융통계 편람(MFSM) 등이 포함된다.

10.157 세계은행은 공공부문부채통계에 대한 분석적·운영적 측면에 관심이 있다. 분석적 차원에서,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상황에 관한 정보 및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자료이다. 정부 채무관리 성과평가(이하 DeMPA) 측면에서, 세계은행은 다양한 정부 채무관리기능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공공부문부채관리 성과를 평가한다. 운영적 차원에서, 은행의 융자 및 차입 활동은 채무상환능력과 같은 각 차입자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10.158 2010년, 관련 부처 간 TFFS의 지원을 받아 세계은행과 IMF는 공공부문채무(public sector debt, 이하 PSD)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 자료는 세계은행 웹사이트⁴⁸⁾에 공시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부채자료의 주요 출처는 재무부, 재무성, 중앙은행이다.

10.159 PSD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목적은 공공부문부채통계자료를 표준양식에 맞추어 적시성 있게 배포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계와 메타데이터를 한

48) <http://www.worldbankorg.qpsd> 참조.

군데 결합시킴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거시경제분석 및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 일반정부의 채무통계자료는 이용 가능하고, 대외채무자료(일반정부 포함)와 비교 가능하며, 일반정부 총채무와 이에 상응하는 대외채무의 차액인 일반정부 국내 채무를 산출할 수 있다.

10.160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공공부문 요소, 즉 예산상 중앙정부, 중앙정부, 일반정부, 비금융 공기업, 금융 공기업에 관한 표로 구성되었다. 이 표는 채무상품, 만기, 표시통화 및 채권자의 거주지 별로 통계자료를 수집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제5장의 표와 일치한다.

10.161 세계은행의 공공부문부채통계 웹사이트는 공동대외부채허브(Joint External Debt Hub),⁴⁹⁾ 분기별 대외채무통계(Quarterly External Debt Statistics),⁵⁰⁾ BIS은행 및 증권 자료, IMF 국제포트폴리오투자 공동조사, 연간 정부 재정통계(GFS 연감), 국제재정통계(IFS)와 같은 보완적이고 관련된 출처에 관한 정보 및 링크를 제공한다.

49) <http://www.jedh.org> 참조.

50) <http://www.qeds.org> 참조.

보론: 채무기록, 채무관리 및 재무분석시스템

본 보론은 영연방 사무국의 채무관리 소프트웨어 제품군과 UNCTAD의 DFMAS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다.

1. 영연방 사무국 채무관리솔루션

10.162 영연방 사무국 채무관리솔루션(이하 CS-DMS)은 세 가지 소프트웨어 제품(CS-DRMS, CS-SAS, CS-PDAT⁵¹⁾)으로 구성된다. 2011년, 해당 소프트웨어는 60개의 영연방 국가 및 비영연방 국가, 재무부, 중앙은행, 재무성, 회계감사원 및 지방정부 등 100곳이 넘는 곳에서 활용된다.

a. 주요 기능

i. CS-DRMS

10.163 CS-DRMS는 공공부문이 지급보증하는 채무기록,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를 위한 통합도구이다. 상품별 및 총계기준의 모든 유형의 대내·외 채무(유가증권 포함)와 보증에 대한 포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민간부문 채무와 보조금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한 국가의 채무운영 및 거래의 전 주기(융자협상/증권발행에서부터 채무상환)에 걸쳐 활용된다.

10.164 이 시스템은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채무관리자가 다양한 합계를 통해 정부의 차입과 관련 거래를 손쉽게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사용자-친화적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그림 10.1. 참조).

51) CS-PDAT는 2011말에 출시 예정이다.

10.165 CS-DRMS는 국제기준과 협약을 준수하고 채무자료를 기록한다. 편제범위, 회계, 분류, 가치평가 및 보고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채무통계를 위한 기관 내 테스크포스팀(Inter-Agency Task Force on Finance Statistics)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채무통계편제 지침(본 지침과 대외채무통계: 편제와 사용을 위한 지침)에서 명시한 보고 및 기록 요구사항에 부합한다.

10.166 CS-DRMS는 특정 채무관리 운영지원을 위해 쉽게 설정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자료가 저장될 수 있도록 많은 통제와 검증절차를 제공한다. 전체론적 접근법은 다양한 기능과 건설하고 안전한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를 제공하여 제3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허용한다.

10.167 이 시스템은 채무관리, 채권자 관행, 채무보고기준 및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고객국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변모하고 있다. CS-DRMS의 주요 기능은 본문과 표10.1에서 간략하게 요약한다.

채무기록

10.168 CS-DRMS는 대내·외 채무, 보조금, 정부 용자와 같은 여러 유형의 유량을 기록하는 통합시스템으로 다양한 채무운영 관련 일상적 행정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이 시스템은 단기채무와 민간부문 채무를 포함한 광범위한 공공 및 민간상품을 기록할 수 있는 포괄적 용자 모듈이 포함된다. 포괄적 증권모듈은 단기국채, 채권(고정, 유동, 할인 및 물가연동 상품), 약속어음 및 기업어음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정부채권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국제자본 시장에 발행된 국채(sovereign bond)는 CS-DRMS에 기록할 수 있다.

10.169 채무상품의 특성에 근거하여 채무지급을 예측하고, 이를 시스템의

실제 거래와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기준으로, 시스템은 모든 연체를 포함하여 채무저량과 예측 유량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

10.170 지출모듈은 사업집행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지출(예, 변제, 현금 선급, 직접 지급)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지출모듈은 정부 계정과목과 지출항목을 파악하고, 예산 및 계정과목 형식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0.1. 영국연방 사무국의 CS-D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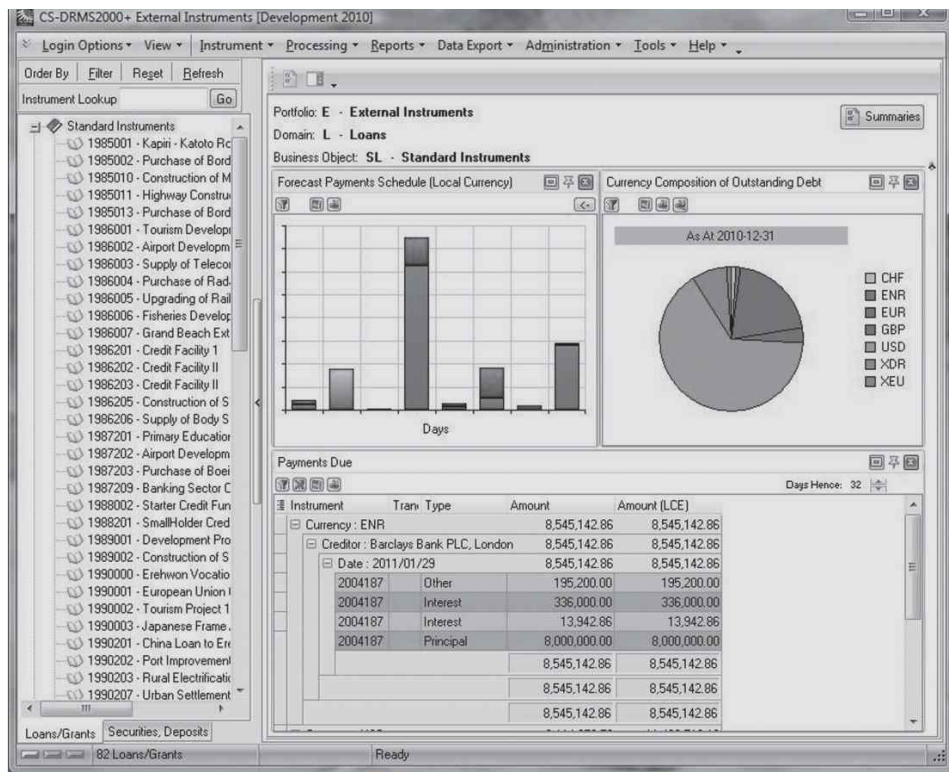


표 10.1. 영국연방 사무국의 채무기록 및 관리 시스템(CS-DRMS)의 주요 기능

기록 및 관리	보고	분석	기타 기능
·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 모든 국내의 채무상품 (및 보조금) · 공공부문부채 및 지급 보증 · 단기채무 및 민간부문 채무 · 재조정 등 채무재조정 합의 · 관련 문서의 사본 등 상품의 모든 조건 기록 · 환율, 이자율 및 거시 경제 자료 등 기타 관련 정보 기록 · 미래의 지급 여부와 함께 상품별 및 총액 기준으로 채무상환 예측 · 채무상환의 실제거래와 거래별 기준으로 지급을 기록 · 연체된 채무를 파악하고 벌금지급액 계산 · 용자와 보조금 사용자 및 지급 모니터링 · 지급보증, 용자 및 간접 용자 기록 및 모니터링 · 재조정 및 파생금융상품의 사용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	· 국제 채무자료 편제 기준준수(예, 공공채무통계 및 대외채무통계에 대한 지침) · 운영, 분석 및 통계 기능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100개 이상의 표준 보고서 · SDDS, GDDS, 채무 보고시스템 및 공공부문부채의 국제보고서 템플릿에 기초한 내장 보고서 · 모든 상품 또는 상품군에 대한 정보 및 보고서를 제공 · 기타 보고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고객맞춤형 보고서의 용이한 생성 · 세계은행의 채무보고시스템과 GDDS-QEDS에 전자적으로 자료를 전송 · IMF-세계은행의 MT-DS 툴킷과 저/중간 소득 국가를 위한 DSA 템플릿 등 기타 분석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전환	·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이자율과 환율의 차이에 따른 민감도 분석 실시 · 통화, 이자율 및 상환 조건에 대한 각기 다른 가정을 기준으로 신규 차입이 미치는 영향 실험 · 각기 다른 용자 옵션 평가 · 재용자와 재조정에 대한 각기 다른 제안을 평가하고 채무구제 요구사항 산출 · CS-DRMS 채무자료와 외생적 경제 자료를 결합하여 명목가치와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중요한 채무지표 예측 · 다양한 비용 및 위험 지표를 산출하고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한 노출도를 평가(예, 환율, 이자율, 만기연장, 재용자)	· 데이터베이스의 완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증 도구 · 데이터베이스와 보안 관리 옵션을 통한 실무, 중간, 지원부서 기능 통합 · 백업과 복원 등 접근과 실행 기능을 통제하여 운영위험 최소화 · 기타 재무관리 정보시스템과 용이한 통합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운영위험을 최소화 향후 개발 · 온라인 기록과 보고를 가능케 하는 웹 · 발생주의 회계기준과 시장가치평가 능력 · 우발부채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기능 강화

채무보고

10.171 CS-DRMS는 고객맞춤형과 유연한 보고기능을 갖추고 있다. 시스템 상에서 100개 이상의 표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운영, 분석 및 통계 기능과 관련하여 대다수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추가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사용자-친화적 마법사와 고급보고서툴을 활용하여 자

신만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10.172 시스템은 IMF와 세계은행의 주도하에 SDDS, GDDS, QEDS, 채무보고시스템(이하 DRS), 공공부문부채(PSD) 통계 데이터베이스 계획에 근거한 국제보고요구조건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에 추가하여 CS-DRMS는 다양한 자료배포 계획에 따라 명시된 템플릿에 부합하는 수많은 보고서가 내장되어 있다. 또한 시스템은 세계은행 채무보고시스템과 GDDS-QEDS와 자동 연계가 가능하다.

채무분석

10.173 CS-DRMS는 포괄적인 분석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체 채무포트폴리오에 관해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분석 모듈은 채권자 프로필, 통화구성, 만기 프로필, 이자율종류와 이자율, 다수의 위험지표를 포함하는 채무 포트폴리오에 대한 특성을 요약하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분석기능을 제공한다.

10.174 사용자는 거시경제변수와 차입시나리오에 대한 자신만의 예측을 통해 이것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분석시 표준값으로 기록되지만, 기타비율은 특정 국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그래프 형식으로 제시되며 추가적 분석과 작업을 위해 엑셀 등과 같은 제3의 응용프로그램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CS-DRMS는 DSA-DSF 체계에 기초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과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개발한 중기채무전략(MTDS) 체계의 일부로써 MTDS 툴킷으로 미리 정해진 템플릿(저소득 및 시장접근 국가 템플릿)에서 내장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채무재조정

10.175 CS-DRMS는 채무재조정을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재융자, 환매, 파생상품(옵션, 전환 등)의 관리에 추가하여 고채무빈곤국가 채무면제계획(HIPC), 다자간 채무면제 계획(MDRI) 등 런던클럽과 파리클럽을 통한 특별 재조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재정관리시스템과 통합

10.176 보고포털과 채무관리도구 구축의 인터페이스를 넘어, CS-DRMS는 통합 재정관리 정보시스템(IFMIS)과 연계될 수 있다. 영연방 사무국은 특정 고채무국가에서 해당 통합에 대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러한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의 사업과정분석 전반을 지원한다.

ii. CS-S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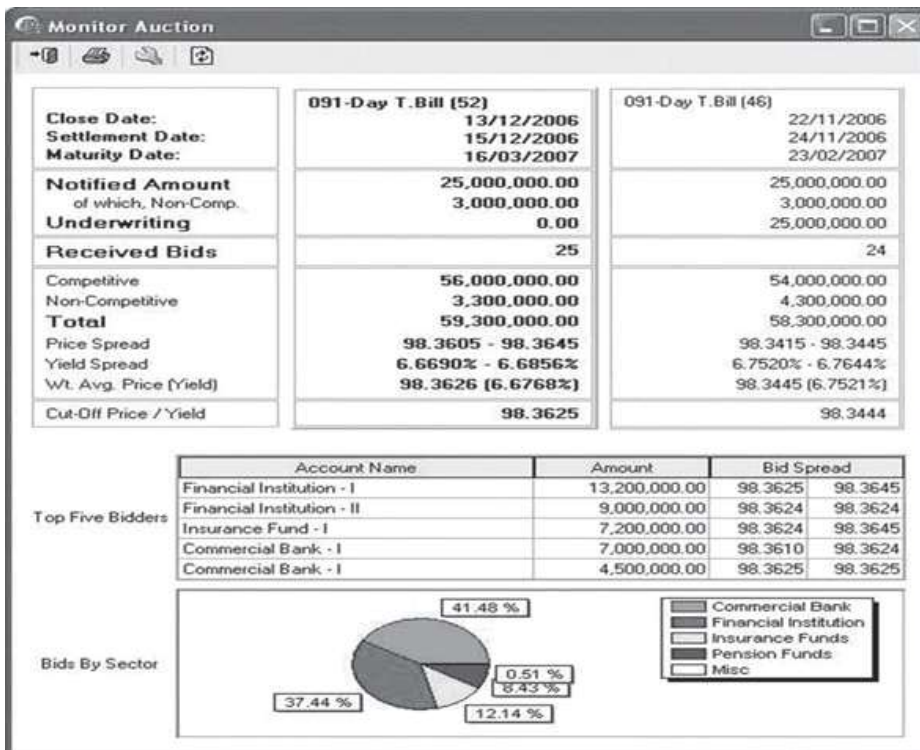
10.177 CS-SAS는 경매의 통보일로부터 낙찰자의 지급, 전자고지서 발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경매에 참여하는 채무관리기관(debt offices)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재무부 증권 및 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 경매
- 균일가격 및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경매
- 수익률 기준 및 가격기준 입찰 적용
- 경쟁입찰 및 비경쟁입찰 모두 가능한 프로세스
- 낙찰 지급기록
- 전문딜러에게 수수료 지급

- 전과정의 업무흐름 관리(end-to-end workflow management)
- 낙찰기록의 전송을 위한 CS-DRMS/기타 시스템과 연계

10.178 CS-SAS는 많은 경매 운영보고서를 제공하며, 이는 과거 경매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보고서로 보완한다. 과거 경매의 응찰률과 수익률을 추이는 그래프로 표시되어 고지액, 입찰액, 할당액과 비교된다. 경매과정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동시에 다른 경매실적과 비교할 수 있다(그림 10.2. 참조).

그림 10.2. 영연방 사무국 CS-SAS 회계시스템



10.179 영연방 사무국은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입찰자들이 전자적으로 입찰하고 자신의 입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웹기반 입찰시스템을 제공한다(그림 10.3. 참조).

그림 10.3. 영연방 사무국 온라인 입찰시스템

Commonwealth Secretariat You are logged in as org4 [Logout](#)

[Auctions](#) [User](#) [Reports](#)

Agency: Account No:

[Current Auctions](#) [Previous Auctions](#)

Instruments: Maturity Period: [Show All](#)

Auction No	Description	Close	Status
	BOND 3 YEAR9	09/03/2010	Complete
158	091-Day T.Bill	19/02/2010	Closed
153	091-Day T.Bill	19/02/2010	Results Published
149	091-Day T.Bill 16/04/2010	15/01/2010	Complete
56	364-Day T.Bill - 22/12/2006	20/12/2006	Closed
55	091-Day T.Bill - 22/12/2006	20/12/2006	Closed
54	5-Year Bond 2006 @10.70% - Reissue	13/12/2006	Closed

[Summary](#) [Bids](#)

Select Status: [Show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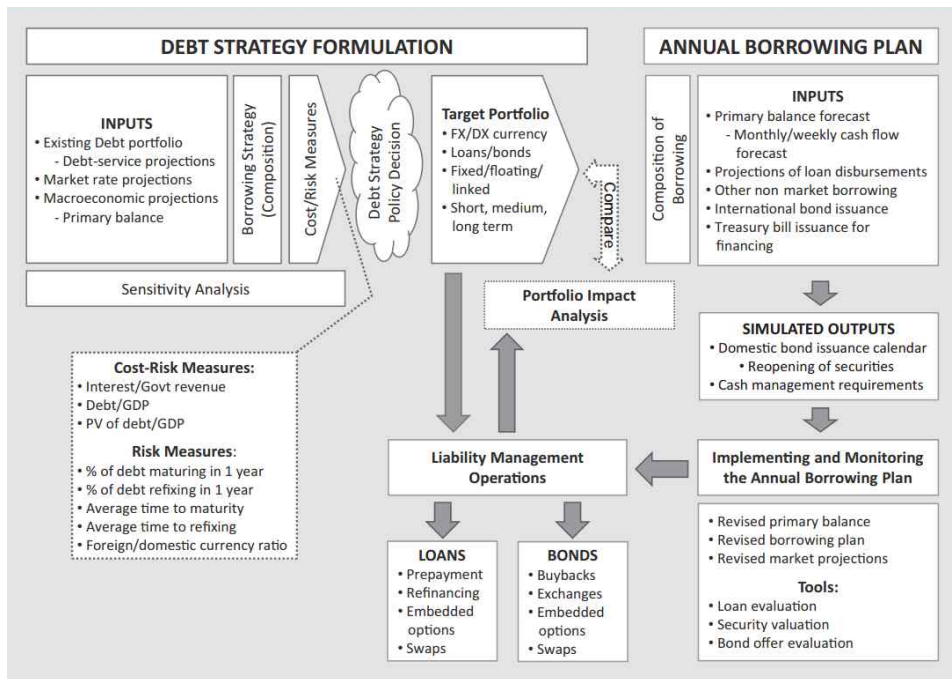
Bid No	Amount	Price	Source	Competitive	Status	Allotted Amount	Allotment Price	Allotment Yield	Cost Price	Payment Amount
1.979	600,000.00	97.89	Online	Y	Paid	600,000.00	97.89	12.31	587,340.00	647,340.00
1.978	100,000.00	67.89	Online	Y	New					
1.977	700,000.00	98.78	Online	Y	Cancelled					
1.976	200,000.00	0.00	Online	N	Paid	200,000.00	97.89	12.31	195,780.00	215,780.00
1.975	100,000.00	99.78	Online	Y	Paid	100,000.00	99.78	10.24	99,780.00	109,780.00

iii. CS-PDAT

10.180 CS-PDAT는 중간/실무단위 부서의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시스템으로, 공공채무관리자가 비용 및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한 채무관리를 위해 고안되었다. CS-PDAT는 채무관리전략의 개발과 집행을 위한 통합체계를 기반으로 채무관리자가 대안적 차입전략의 비용과 위험을 평가할 수 있으며(그림 10.4. 참조), 채무관리자가 현금 및 채무관리의 통합, 발

행, 부채관리(예, 환매, 교환, 옵션, 재조정 및 스왑)를 포함한 연간차입계획의 수립을 통해 적절한 전략의 이행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CS-DMS의 일부로, 채무 포트폴리오자료를 불러오기 위해 다른 채무기록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림 10.4. 영연방 사무국 CS-PDAT 체계



10.181 CS-PDAT는 채무관리자에게 공공채무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기초에서 심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대안적 전략의 분석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각기 다른 차입전략과 관련된 비용과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다양한 시장위험과 재융자 위험은 CS-PDAT 시스템을 적용을 통해 광범위하게 분석한다.

10.182 적절한 전략이 선택되면, CS-PDAT는 채무관리자가 정부채권의 발행

일정의 시뮬레이션을 포함하여 연간 차입계획의 수립을 통한 전략을 집행할 수 있다. 국내채무시장의 경우, 해당 시스템은 기존 증권의 거래재개를 통해 기준채권의 형성을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10.183 CS-PDAT 내 특정 전략을 집행할 때, 환매, 교환, 선납, 선용자, 전환 및 옵션 이행과 같은 다양한 부채관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채무관리는 포괄적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간차입계획의 일부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채무관리자가 명시한 모든 재용자 위험에 대한 제한을 근거로 특정 부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10.184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은 용자 전략과 운영이 결합되어 자산-부채 위험관리체계 내에서 모든 채무관리 전략에 대한 종합분석이 가능하다.

b. 시스템 보안

10.185 CS-DMS 제품군은 개별국가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다중 보안기능을 갖추고 있다. 보안설정으로 작업군과 역할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 중간, 지원부서 모듈 등 해당 국가의 구조(설정)에 맞출 수 있다. 이용자는 보안설정에 따라 이용화면 및 보고서에 대한 접근이 되므로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c. 기술적 특성

10.186 이 소프트웨어 제품은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로서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 SQL 모두운영 가능하다. 이 소프트웨어는 영어와 불어로 제공되며, 다른 언어로의 번역이 용이하도록 독립적 언어 설계기능을 갖추고 있다.

10.187 이 소프트웨어는 온라인과 책자로 도움 기능(Help)을 제공하고 있는데, DMS 웹사이트에 자주하는 질문섹션(FAQ)은 물론 런던에 위치한 기술자로부터 직접 상담전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⁵²⁾

2. UNCTAD의 DMFAS 채무관리시스템

a. 개요

10.188 DMFAS는 여러 국가들이 개발한 특화된 채무관리 및 재무분석시스템이다. DMFAS는 공공 및 공적(정부)보증 장·단기 (국내·외)채무, 일반협정, 보조금, 민간부문 무보증 대외채무뿐만 아니라 간접융자방식 및 채무재조정 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채무관리분야의 모범사례이다. DMFAS는 재정관리 전반의 개선을 위해 여타 재정관리시스템과 간편하게 연계되어 있다.

10.189 DMFAS 6은 2009년 11월에 발표되었다. DMFAS 6은 모든 DMFAS 모듈, 정보, 어플리케이션, 자료, 이용자들이 흔히 활용하는 중앙집중식 웹 인터페이스(포털)이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지원기능을 갖추고 있다. DMFAS 인터페이스는 고객 맞춤형 제작, 수정, 전환이 용이하다. 표준버전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5가지 언어가 제공된다. 이 소프트웨어는 단일사용자 환경과 네트워크 환경(인트라넷 또는 엑스트라넷)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자 프로필과 접근권한은 시스템 보안모듈에서 정의된다. DMFAS 6의 주요 특징은 그림 10.5와 같다.

52) 추가 정보는 <http://www.dsdrms.org> 참조.

그림 10.5. UNCTAD의 채무관리 및 재무분석시스템(DMFAS) 버전6의 주요특징



10.190 모든 모듈은 사용자 맞춤형 요구에 따라 쉽고 독립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 모듈은 채무협정(관리, 금융지원, 채무상환)의 운영 주기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협상(채무증권에 대한), 보고서, 분석기능이 보완되었다. 이들이 실무부서(채무증권 발행), 중간부서(분석) 또는 지원부서(등록 및 운영관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채무관리기구의 포괄적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b. DMFAS 6의 모듈

i. 협상

10.191 DMFAS에서 협상은 채무상품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경매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듈은 단일 가격/수익률(비경쟁 매매) 또는 다중 가격/수익률(경쟁 매매)을 기준으로 어음 또는 채권에 대한 입찰을 기록할 때 사용한다. 투자자 및 입찰자의 시장참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낙찰과 유찰 모두 DMFAS의 데이터베이스에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다. 이 데이터는 채무증권 모듈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상품 청약자료에 표시된다. 거래에 관한 자료는 클린가격과 더티가격(clean price and dirty price)*과 같은 상품의 가격과 가치평가에 활용된다(제2장, 문단 2.119 참조).

【역자 주】 *: clean price는 경과이자(accrued interest)를 제외한 가격이고, dirty price는 clean price에 경과이자를 포함한 가격임.

ii. 관리

10.192 관리모듈에서, 사용자는 용자, 채무증권, 민간부문 무보증 대외채무, 단기채무, 보조금, 일반협정, 채무재조정, 간접용자뿐만 아니라 참조파일과 관련된 모듈에 접근함으로써 채무협정의 유형에 관해 일반적이고 세부적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10.193 용자모듈에서, 거래당사자, 용자 ID, 서명 등과 같은 용자협정과 관련된 일반정보를 기록한다. 또한 원금, 이자, 수수료 조건과 같은 세부정보도 기록한다. 기록된 각 용자는 일련의 트랑쉐를 포함하며, 각 트랑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시한 상세지급일정에 명시된 것처럼 용자의 특정 부분을 나타낸다. 채권자가 명시한 개별 상각은 시스템에서 개별적 트랑쉐로 표시된다.

10.194 채무증권모듈은 장·단기 모든 유형의 채무증권을 등록하는 데 사용된다. 이 모듈은 네 가지 주요 상품 범주로 구분된다.

- 금융시장상품(할인 및 이자지급)
- 채권 및 어음(무이표채권, 고정 및 변동 이자율, 계단식 연금, 종신연금 등)
- 약속어음(할인 및 이자지급)
- 기타 유가증권

10.195 민간부문 무보증채무와 단기채무는 총계단위로 입력할 수 있는데, 수기로 입력하거나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기타 응용프로그램으로 전송할 수 있다.

10.196 일반협정모듈은 일부 개별상품의 협정자료를 수집하도록 고안되었다. 일반협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협정 간 연계가 구축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일반협정이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본협정과 재조정관련 협정(예, 파리클럽 의사록)이다.

10.197 재조정모듈은 재융자, 재조정, 면제, 채무전환, 선납(환매)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채무재조정을 다룰 수 있다. 이 모듈은 재조정의 모든 단계를 처리하며 기존채무와 신규채무 간 관계를 정립한다.

10.198 간접융자모듈은 공공부문 실체를 대신해 정부가 차용한 융자를 기록한다. 채권자와 정부 간 직접융자는 융자모듈에 기록되지만, 채권자로서의 정부와 공기업 간의 간접융자는 간접융자모듈에 기록한다.

10.199 참조파일은 DMFAS 작업의 시작점이 된다. 이 파일은 다수의 DMFAS 화면에서 참조할 수 있는 세부정보를 담고 있다. 이 파일은 참가자, 환율, 예산선, 협정과 관련된 자금조달에 관한 필수 및 선택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iii. 금융지원(Mobilization)

10.200 DMFAS는 채무증권 청약뿐만 아니라 용자 및 보조금 인출과 관련된 모든 개별거래를 기록한다.

10.201 DMFAS에서, 실제⁵³⁾ 용자인출은 현금, 현물 또는 직접지급으로 기록될 수 있다. 수혜자(또는 용자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용자를 직접 제3자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경우 인출은 직접지급의 형태이다. 실제 인출이 기록되는 경우, DMFAS는 관련된 용자 트랑쉐의 미인출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며, 당해 트랑쉐의 추정인출을 자동으로 재계산하고 상각 명세를 재계산한다. 보조금 인출의 경우, 용자와 그 과정이 유사하다.

10.202 DMFAS에서, 청약은 청약자가 기금, 재화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채무증권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자신들이 속한 기관이 요구하는 세부 수준에 따라 청약을 기록할 수 있다. DMFAS는 두 가지 청약 입력 방식은 청약모듈 또는 채무증권모듈을 통해서 입력할 수 있다.

iv. 채무상환

10.203 DMFAS 6은 용자와 채무증권 두 가지 채무상환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듈은 원금, 이자, 수수료, 벌금이자와 관련된 채무상환을 기록하기 위함이다.

10.204 DMFAS는 지급, 미납(예, 연체), 선납(용자에 대한), 환매(채무증권에 대한), 채무재조정, 면제, 전환, 분할증권(stripped securities) 등 다양한 유형의 채무상환 운영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한다. 모든 채무상환 운영은 어떤 통

53) '실제 인출'은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실제로는 '추정 인출'과 반대되는 개념이며, '재조정 상품의 인출'과 상반된 개념이다.

화로든 입력과 추적이 가능하다.

10.205 이 모듈에는 또한 채무상환과 해당 예산시스템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할당 하위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v. 보고서

10.206 DMFAS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확하고, 완전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산출하는 것이다. DMFAS는 광범위한 맞춤 및 표준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는 용자, 채무증권, 보조금, 사업(프로젝트), 일반협정, 재조정 협정, 참조파일에 관한 총계 또는 세부 보고서가 포함된다.

10.207 표준보고서는 시스템에 사전 정의된 보고서이다. 이는 DMFAS 프로그램에 의해 이미 작성해 놓은 보고서를 의미한다. 이 범주의 보고서는 분석 및 관리보고서뿐만 아니라 운영보고서를 포함한다.

10.208 표준 운영보고서는 용자, 채무증권, 사업, 일반협정, 보조금, 참조파일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한다. 분석 및 관리보고서는 채무상태, 재조정, 세계은행보고, 회전신용(revolving credits)을 포함한 일반협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0.209 사용자 정의 보고서는 특정 국가의 DMFAS 사용자가 작성 및 생성한 보고서이다. 이러한 보고서는 또한 운영 또는 분석 및 관리보고서로 분류되며, 자료검증, 채무상태 및 통계분석자료를 다룬다. 자료의 타당성검증은 DMFAS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자료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정의된 보고서를 말한다. 채무상태 및 통계분석자료는 일반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내·외 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지칭한다.

vi. 분석

10.210 분석모듈은 중간부서의 채무관리자들이 채무 포트폴리오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고 채무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 모듈은 채무비율, 재정지표, 민감도 분석, 채무 포트폴리오 분석, 채무 지속가능성 인터페이스, 위험모델 인터페이스를 포괄한다.

10.211 DMFAS의 채무비율모듈은 공공부문부채, 대외공공부문부채, 국내 채무를 포괄한다. 이 비율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공공부문부채/국내 총생산(또는 PSD/GDP)
- 대외 공공부문부채/명목 및 현재가치(또는 XPSD/XGS)
- 국내 공공부문부채/공공부문부채(또는 DPSD/PSD)

10.212 재정지표모듈은 선택된 상품군에 대한 평균 조건 및 보조금 요소를 DMFAS에서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계산결과는 보고서에 표시된다. 평균 조건은 평균이자율, 거치기간, 용자 또는 채무증권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10.213 DMFAS는 사용자가 환율 및 이자율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유형의 분석은 이자율 및(또는) 환율 변동이 국가의 채무상환에 미치는 영향과 채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때 활용된다. DMFAS는 서로 다른 재융자 전략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또는 ‘가정’의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c. 감사 및 가치평가

10.214 이 시스템은 감사 및 기타 유형의 가치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상품 및 거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며, 감사 추

적은 이 시스템 내에 통합된다. 증빙서류와 백업은 항상 DMFAS 집행과정의 일부로 권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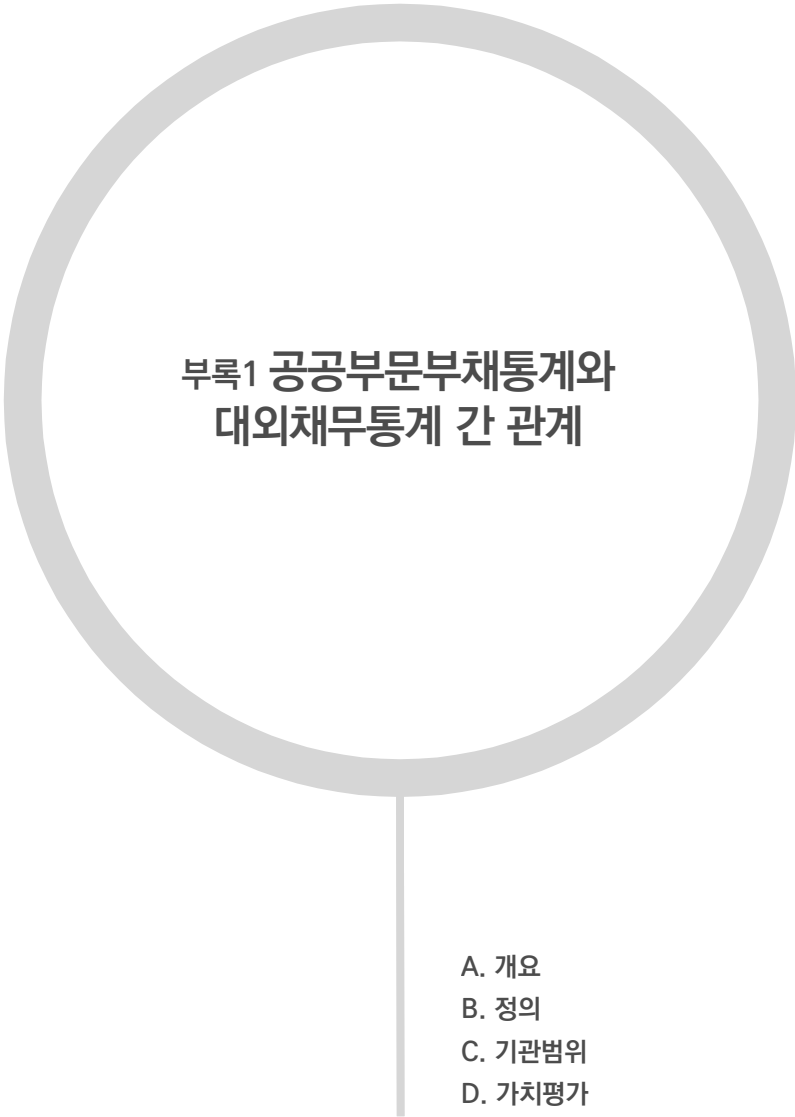
d. 기타 시스템과 연계

10.215 DMFAS는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가 용이하다. 통합재정관리시스템(IFMIS)과 연계가 가능한 표준 인터페이스체계로 특히 예산 및 회계간소화를 추구하고 있어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10.216 채무 지속가능성 모델(DSM+), 중기채무전략(MTDS), DSF, 위험 모델을 포함한 모든 표준 분석도구와 DMFAS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 또한 DMFAS 프로그램은 가까운 미래에 원조관리시스템(Aid Management systems)과 연계 구축할 예정이다.

e. 기술적 특성

10.217 DMFAS 6은 모든 표준 인터넷브라우저에서 구동된다. 이 소프트웨어는 오라클(Oracle)사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RDBMS)을 이용하며, 자바와 오라클 개발도구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부록1 공공부문부채통계와 대외채무통계 간 관계

- A. 개요
- B. 정의
- C. 기관범위
- D. 가치평가
- E. 분류

부록 1 공공부문부채통계와 대외채무통계 간 관계

본 부록은 공공부문부채통계와 대외채무통계 간 관계를 간략하게 논의한다.

A. 개요

A1.1 본 지침의 제3장은 GFSM 재정상태표와 공공부문부채통계 간 연관성에 관해 설명한다. 본 부록은 공공부문부채통계와 대외채무통계(대외채무통계 지침에서 설명)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아래의 절은 정의, 기관범위, 분류 등 관련성을 요약한다.

B. 정의

A1.2 본 지침은 여타 거시경제통계체계와 부합되게 총채무 및 순채무를 정의한다.¹⁾ 제2장에서 총채무는 채무상품형태의 모든 부채로 정의하고 있다. 채무상품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자 및(또는) 원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을 지칭한다. 지분 및 투자기금주식, 파생금융상품, 임직원 스톡옵션은 채무 또는 채무관련 상품이 아니다(제2장의 문단 2.4~2.6 참조).

1) 본 지침에서 채무의 표준적 정의는 특별인출권(SDR)과 표준화 보증상품의 준비금을 포함하는 2008 SNA 및 BPM6에 부합한다. 대외채무지침 2003년판은 1993 SNA와 국제수지편람 제5판(BPM5)에 기초하며, 채무에 이러한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C. 기관범위

A1.3 그림 A1.1.은 공공부문채무와 대외부문채무의 관계를 설명한다.²⁾ 공공부문 총채무는 일반정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의 국내·외 채무를 포함한다. 총 대외채무란 한 국가경제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대외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대외채무는 총 대외채무의 일부분이다.

A1.4 공공부문 단위는 민간부문 기관단위 및 기타 공공부문 단위 채무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³⁾ 공적보증 민간부문 채무는 공공부문부채통계 부기항목에 채무자의 거주지, 즉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공적보증 민간부문의 대외채무는 총 대외채무에 속한다.

D. 가치평가

A1.5 제2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지침에서는 채무상품을 기준일 명목가치로 평가하고, 거래된 채무증권은 시장가치로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제5장의 표에서는 채무통계를 명목가치와 시장가치 둘 다를 표시한다. 유사하게, 대외채무지침에서는 채무상품은 명목가치로, 채무증권은 시장가치로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2)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무는 채권자 거주지에 따라 분류된다. 비거주 채권자에게서 차용한 채무는 대외채무라고 지칭한다.

3) 하지만, 기타 공공부문 단위는 총채무통계가 공공부문 기관단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기항목의 보증채무로 공공부문부채통계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적보증 공공부문부채는 정의상 '0'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5장의 공적보증채무에 관한 논의(표 5.8a. 및 5.8b.)를 참조.

E. 분류

A1.6 제5장에 요약된 바와 같이, 공공채무통계는 채무상품의 유형, 당초 만기 및 잔여 만기, 표시통화, 이자율 형태, 채권자의 거주지, 채권자의 부문 유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대외채무지침 2003년판에서는 채무자의 부문 유형, 당초 만기, 채무상품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채무통계를 표시한다. 보충표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자율 형태, 표시통화, 잔여 만기에 따라 채무통계를 표시한다.

A1.7 본 지침은 채무상품과 채권자의 부문에 대한 2008 SNA와 BPM6 분류를 따르는 반면, 대외채무지침 2003년판은 1993SNA와 BPM5를 따른다. 본 지침과 대외채무지침 2003년판에서 분류 범주의 차이는 표 A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A1.1. 채무상품 및 비거주 채권자의 부문 유형에 따른 공공부문부채통계 지침과 대외채무지침(2003) 분류 간 차이

〈공공부문부채통계 지침〉	〈대외채무지침 (2003)〉
채무상품 유형별 분류	
특별인출권(SDRs)	-
현금 및 예금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단기금융상품 ¹ 채권 및 어음 ¹
융자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
기타 미지급금	신용거래 기타 채무 ² 연체 기타 ²
비거주 채권자의 부문 유형별 분류	
중앙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기타미분류 금융기업 기타 비거주자	다자간 기구 일반정부 통화당국 은행 기타 부문

주: SDRs과 표준화 보증 충당부채는 대외채무지침 2003년판에서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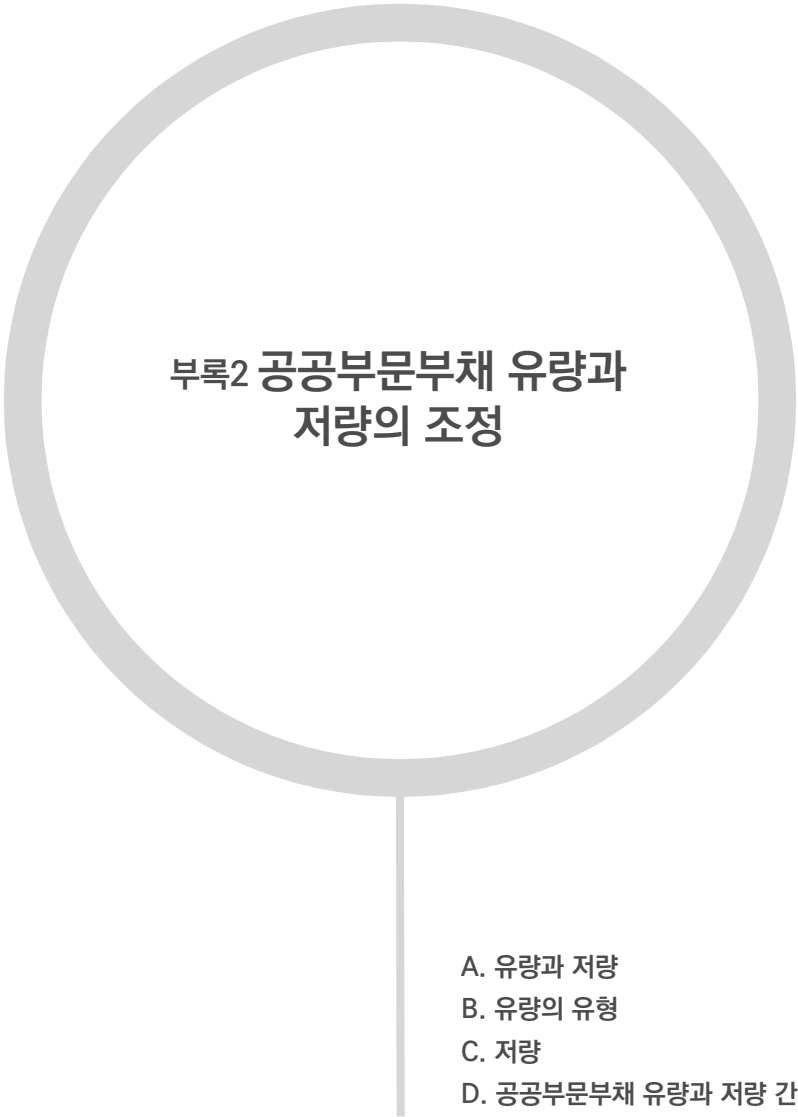
¹ 〈공공부문부채통계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항목들은 채무증권, 즉 당초 만기를 기준으로 한 단기채무, 당초 만기를 기준으로 한 장기채무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다.

² 보험 책임준비금 채무는 포함한다.

그림 A1.1. 공공부문부채통계와 대외채무통계 간 관계

부 문 거주성	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정부	비금융 공기업	금융 공기업	비금융	금융	총계
국내						
대외				공적보증 민간부문채무 포함	공적보증 민간부문채무 포함	총 대외채무
총계	일반정부 총채무	비금융 공기업 총채무	금융 공기업 총채무			

음영처리가 된 부분은 공공부문부채와 대외채무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음.



부록2 공공부문부채 유량과 저량의 조정

- A. 유량과 저량
- B. 유량의 유형
- C. 저량
- D. 공공부문부채 유량과 저량 간 조정

부록 2 공공부문부채 유량과 저량의 조정

본 부록은 공공부문채무의 유량과 저량 간 관계를 간략하게 논의한다. 유량과 저량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는 GFSM 제3장, 2008 SNA 제3장 및 BPM6 제3장을 참조하라.

A. 유량과 저량

A2.1 거시경제통계체계에 기록된 모든 자료는 유량 또는 저량에 해당된다(또한 저량은 ‘포지션’ 또는 ‘저량 포지션’으로 언급됨). 유량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가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반면, 저량은 특정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 경제적 가치란 기관단위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말한다.

A2.2 거시경제통계체계에 기록된 유량과 저량은 통합되는데, 저량의 변화는 유량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각 저량은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S_0 + F_1 = S_1 \quad (1)$$

여기서 S_0 과 S_1 은 회계연도의 기초와 기말시점의 특정 저량의 가치를 나타내며, F_1 은 특정 저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기간 동안의 유량의 순가치를 의미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정해진 시점에 한 단위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저량 가치는 해당 단위가 저량을 처음 취득하였을 때의 가치에 그 이후 발생하여 당해 저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량을 누적한 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체계는 기본회계원칙에 기초하며, 저량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B. 유량의 유형

A2.3 유량은 경제적 가치의 창출, 변화, 교환, 이전 또는 소멸을 반영한다. 또한 기관단위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규모, 구성 또는 가치의 변화를 포함한다. 유량은 융자 원금상환을 위한 현금지급과 같은 단일의 사건이거나 또는 정부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의 지속적 발생과 같이 회계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누적가치일 수 있다. 유량은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구분된다. 상기 항등식 (1)로부터 다음 항등식을 도출할 수 있다.

$$S_0 + T_1 + OEF_1 = S_1$$

여기에서 T는 거래의 순가치를 나타내며, OEF는 해당 기간 동안 **거래외 경제유량**을 의미한다.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1. 거래

A2.4 거래는 상호합의나 법운용에 의한 두 기관단위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분석목적상 거래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개별 기관단위 내 행동을 말한다(종종, 해당 단위가 각기 다른 역할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상호합의’란 단위 간에 사전지식과 동의가 있었음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단위 간 자발적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¹⁾ 지급보증에 요구될 때 보증인에 의한 단위 채무의 인수는 거래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이 두 단위 사이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보증인이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²⁾ 채무면제 또한 거래로 간주된다. 하지만, 채무제각 또는

1) 예를 들어, 세금 지급과 같은 일부 거래는 법적으로 부과된다. 비록 개별 기관단위들이 자신들이 지급하는 세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는 없지만, 세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의 공동 인식과 수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금 지급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거래로 간주된다.

2) 일부 상호합의는 세 당사자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채무 지급보증에는 보증인, 채무자, 채

채무취소는 채권자에 의한 일방적 행동이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라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간주된다(아래 참조).³⁾ 채권자에 의한 담보권 행사 및 자산 압류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합의로 인해 상환 청구수단이 제공되기 때문에 거래에 해당한다.

A2.5 모든 거래는 교환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교환은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자산취득, 피용자 보상, 배당금 등 교환에 해당한다.⁴⁾ 이전은 한 당사자(기관단위)가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을 수령(제공)하지 않고 제공(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계정은 비대가성 유량계정에 해당하는 계정으로 기록된다. 세금, 채무면제, 교부금, 보조금은 이전의 예이다.⁵⁾

A2.6 모든 거래는 화폐성 거래 또는 비화폐성 거래이다. 화폐성 거래는 한 기관단위가 다른 기관단위에 통화단위로 표시된 지불을 하거나(대금 수취) 부채를 부담하는(자산 취득) 거래이다. 비화폐성 거래는 당초에 거래 당사자에 의해 통화단위로 표시된 거래가 아니다(예, 상품 형태의 원조 제공). 유량은 화폐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화폐성 거래의 화폐성 가치는 간접적으로 측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추정해야 한다.

2. 거래외 경제유량

A2.7 ‘거래외 경제유량’은 거래에서 비롯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 규모 또는 가치의 변동이다. 규모의 변화는 자산 규모의 기타 변동 또는 간략히 기타

권자가 관여한다.

- 3) 대조적으로, 채무자에 의한 일방적인 제각 또는 채무면제의 거부는 거시경제 통계체계에 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4) 교환은 때로는 ‘합당한 대가’가 있는 거래라고 불리기도 한다.
- 5) 이전과 관련된 거래는 또한 ‘합당한 대가’가 없는 거래로 불리기도 한다.

규모변동으로 설명되며, 가치의 변화는 보유이득 및 손실 또는 가치재평가로 표시된다.⁶⁾

a. 자산 규모의 기타 변동

A2.8 자산 규모의 기타변동은 아래 예와 같은 다양한 사건을 포함한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금융청구권이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채권자는 재정상태표에서 기타 규모 변동으로 기록함으로써 금융청구권을 제거한다.
- 현금 또는 무기명채권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청구권은 기타 규모변동을 기록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정상태표에서 제거된다.
- 전체 공공부문 기관단위 또는 단위군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재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타 규모변동은 공공부문 단위의 자산에서 이러한 구성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록된다.⁷⁾

b. 보유이득 및 손실

A2.9 보유이득 및 손실(또는 가치재평가)은 자산이나 부채의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배제한 가격의 수준과 구조의 변동(예, 이자율 변화) 및(또는) 환율 변동에서 초래되는 자산 또는 부채의 금전적 가치의 변동이다. 보유이득 및 손실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⁸⁾

-
- 6) 모든 경우, 자산의 규모 또는 가치 변화는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부채변화가 수반된다.
 - 7) 관련 단위 또는 부문의 순자산을 변동시키지 않고 재분류를 통해 자산과 부채를 재조정한다.
 - 8) 보유이득 및 손실은 항상 순자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익'과 '손실'은 순자산의 변화 방향과 일치한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부채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유량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며 보유이익이라고 지칭한다.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부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량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며 보유손실이라고 부른다.

- 모든 자산과 부채에 적용할 수 있다.
- 가격 변동으로 인해 회계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보유된 모든 경제적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자산을 전체기간 동안 보유하는지, 기중에 자산을 취득하여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기초에 보유하다 기중에 처분하거나 동일 기간 내에 취득 및 처분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각각의 경우, 보유이익의 발생이 가능하며 이는 기록되어야 한다.
- 실현되거나 또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자산의 양 또는 질의 변화에서 발생한 자산가치의 변화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특히, 할인발행된 어음과 채권은 이자발생으로 인해 상환 이전에 가치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자발생으로 인한 어음 또는 채권의 시장가치 증가는 보유이익이 아니라 자산거래로 기록되어야 한다.

A2.10 보유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모든 개별적 거래와 자산 규모의 기타 변동뿐만 아니라 재정상태표상 기초 및 기말시점의 각 자산의 가치, 거래, 자산 규모 기타변동에 관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모든 요구 자료를 입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량의 정보를 이용하는 여타 간접적인 추정기법을 채택해야 한다.

A2.11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간접추정방식은 자산에 해당하는 재정상태표상 기말가치는 재정상태표 기초가치에 거래의 순가치, 자산 규모의 기타 변동,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유이익을 합한 값과 일치해야 한다. 재정상태표, 거래, 자산 규모의 기타변동에 관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면, 보유이익의 순가치는 이러한 항등식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잔존가치로 계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식이 보유이익의 가치가 잔존 항목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개념적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보유이득과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회계기간 동안의 보유이득과 손실은 일반적으로 기말시점에 추정한다.

C. 저량

A2.12 저량은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규모를 말한다. 저량은 재정상태표에 기록되는데, 이는 기관단위 또는 단위군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특정 시점 기준에 작성한 보고서이다.

A2.13 본 지침에서 저량은 채무상품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의 규모뿐 아니라 채무상품의 규모를 의미한다. 제3장, 문단 3.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시경제 통계체제에서 기록된 자산은 경제적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은 본질적으로 금융자산이거나 비금융자산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량은 회계연도의 기초와 기말에 표시된다. 문단 A2.1~A2.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기간 사이의 저량은 해당 기간 동안의 유량과 연관된다.

D. 공공부문채무 유량과 저량 간 조정

1. 개념체계

A2.14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준일에 시장가치로 평가된 공공부문 총채무와 순채무 간 조정은 표 A2.1.에 설명되어 있다. 이 표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열은 각각 채무상품 형태로 보유한 총채무, 금융자산, 해당 기간의 기초(예, 기초 재정상태표)와 기말(기말 재정상태표) 시점의 순채무 저량을 나타낸다.

A2.15 저량 사이의 세 개의 열은 유량(거래, 거래외 경제유량)을 나타낸다. 첫 번째 유량 열은 기간 동안 거래를 보여준다. 거래에 대한 통계는 GFS와 2008 SNA에 기록된 금융거래와 동일하다. 하지만, GFS와 2008 SNA는 채무 또는 채무관련 상품이 아닌 지분 및 투자기금주식과 파생금융상품, 임직

원 스톡옵션을 금융거래로 기록한다. 나머지 두 개의 유량 열은 보유이득 및 손실과 자산 및 부채규모의 기타변동을 각각 나타낸다.

A2.16 문단 A2.1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보유이득과 손실의 순가치는 기본항등식을 완성시키는 잔존가치로서 계산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 및 기말 재정상태표에서 입수가 가능하고 기타 규모변동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장가치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⁹⁾ 명목가치로 평가된 모든 채무통계의 표시는 시장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가치의 변화를 배제한다. 그 결과, 명목가치로 평가된 상품의 보유이득 및 손실 열은 오직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가치이다.

표 A2.1. 공공부문 유량과 저량 간 조정

	저량: 기초재정상태표 가치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저량: 기말재정상태표 가치
			보유이득 및 손실(재평가)	기타 규모 변동	
A. 채무상품 특별인출권 예금 및 현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기타 미지급금					
B. 채무상품 형태의 금융자산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 예금 및 현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기타 미수급금					
C. 순채무 (A - B)					

9) '시장가치'란 시장가치로 평가되는 채무증권을 의미한다.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은 시장평가와 상응하는 원칙에 따라 평가되며 기타 모든 채무상품은 명목가격으로 평가된다. 명목가격은 시장가격 중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최선의 대체가격으로 간주된다.

2. 몇 가지 실무 지침

A2.17 실무적으로, 자료의 출처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통계의 목적으로 완벽하게 통합된 저량과 유량을 입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량자료는 유량자료에 비해 보다 다양한 자료의 출처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자료의 부족은 유량과 저량을 조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¹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제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저량과 유량 각각에 동일한 기관범위, 분류, 평가기준이 적용해야 한다.
- 외화로 표시된 채무상품에 대한 가치재평가 시에는 통화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통화로 표시된 채무 및 채무상품 형태의 금융자산은 국내 통화로 환산될 때 가치재평가 대상이 된다. 각기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 특히 출처가 다른 경우 저량과 유량에 관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잔존가치로 계산되는 보유이득 및 손실(문단 A2.11 참조)은 검증과 해석절차를 거쳐 측정된 가격변동의 본질을 반영해야 한다.

A2.18 채무 저량과 유량의 조정은 시장가치 또는 명목가치로 평가된 채무보다 액면가치로 평가된 채무의 경우 더욱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을 포함한 정부운영에 관한 통계자료¹¹⁾는 현금기준으로 기록되고, 채무통계는 현행 시장가치로 평가되며, 저량과 유량의 결합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내·외 채무(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각각 보유한 채무)의 순 변동은 다음의 합계와 동일하다.¹²⁾

10) 저량과 유량에 대한 다른 출처의 원천자료를 이용해 해당 자료와 대조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량과 유량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출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1) 금융자산의 순취득 및 부채의 순부담

12) 이러한 조정은 “순차입의 조정”, GFSM 1986, 227p 참조.

- 채무(부채)의 순부담에서 채무상품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의 순취득을 차감
- 채무의 신규발행과 상환에 대한 순할인과 순할증(순발행에 대한 할인/할증에서 상환에 대한 할인/할증을 차감)
- 채무에 대한 이자, 즉 채무에 합산된 이자에서 채무를 합산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지급을 차감
- 채무상품의 비현금 흐름[예, 정부의 채무제각과 부외거래(off-balance sheet)에서 부내거래(on-balance sheet)로의 채무인수 및 기존채무 인식]
- 채무증권의 시장가격 변화
- 국내통화 대비 외국통화의 환율 변화로 인해 야기된 가치재평가
- 포괄범위, 분류 변동, 통계불일치

[역자 소개]

정성호

(현) 한국재정정보원·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위원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지침

발행일 : 2018년 8월 31일

저 자 : IMF

발행인 : 김재훈

발행처 :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 02-6908-8200

홈페이지 : www.kpfis.or.kr

조판 및 인쇄 : 조명문화사 (02-498-3017)

© 한국재정정보원 2018